제20대 총선
정의당 정책공약집

정의당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로운 대한민국

PART 1
분야별 공약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민월급 300만원, 복지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

PART 1
분야별 공약





인사말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이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협동조합'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거대양당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절실한 이때, 오히려 노동개악으로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책자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환경과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담았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기득권, 재벌기득권, 금수저기득권, 불로소득기득권,
교육기득권 등 5대 기득권을 해체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알바생과 골목사장,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농어민과 도시소비자가 서로 연대할 때만,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가능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2016. 3. 31
정의당 상임대표 심 상 정



발간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정의당의 약속

20대 총선이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어느 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도 모르고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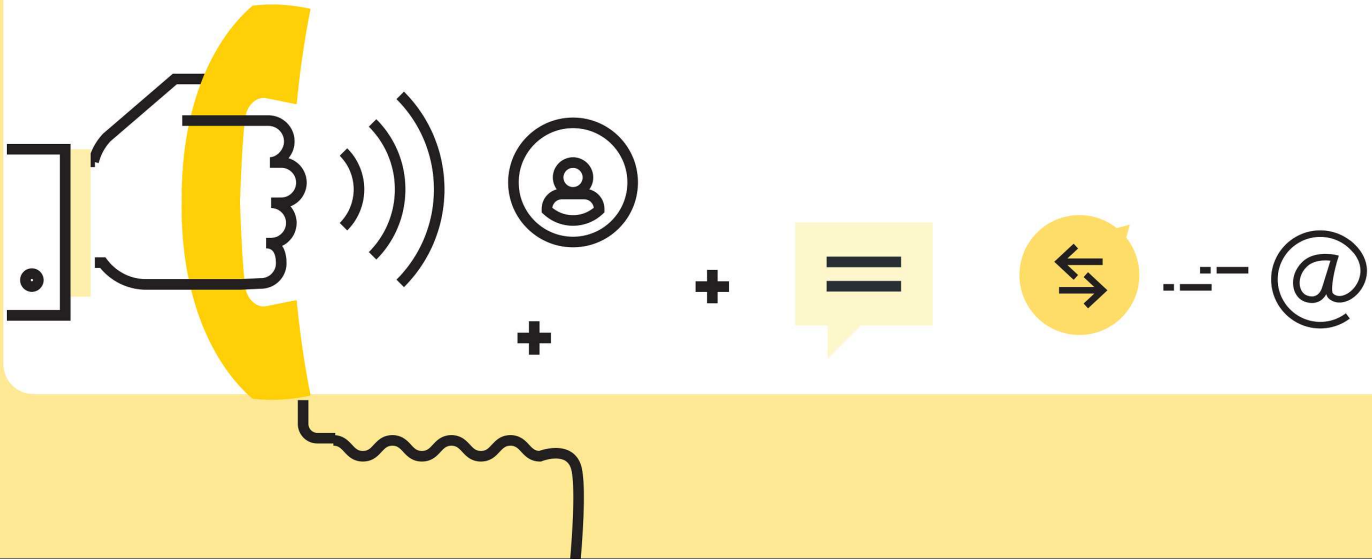
정책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반한, 국민이 아니라 계파가 우선인 낡은 정당체제가 이런 진풍경을 낳았습니다. '조직'과 '바람'에 의존하는 거대정당들에게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다릅니다. 다른 당들이 공천을 가지고 막장드라마를 펼치는 동안 정의당은 그러거나 말거나 분야별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했습니다. 다른 당들이 부실한 공약, 재탕삼탕 공약으로 공약집을 채울 때 정의당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공약을 고민했습니다.

정의당의 공약은 이 시대 낭떠러지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건네는 작지만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정의당의 청년공약은 노량진 학원가에서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에게 내놓는 공약입니다. 정의당의 노동공약은 계약종료를 앞두고 마음 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놓는 공약입니다.

정의당의 보육공약은 눈치 보며 칼퇴근해 어린이집으로 뛰어가는 워킹맘을 향한 약속입니다. 정의당의 교육공약은 학원비 걱정하는 학부모, 등록금 고지서 앞에 두고 한숨짓는 대학생과의 약속입니다. 정의당의 주거공약은 전세금 올려주지 못해 이삿짐을 싸는 세입자와의 약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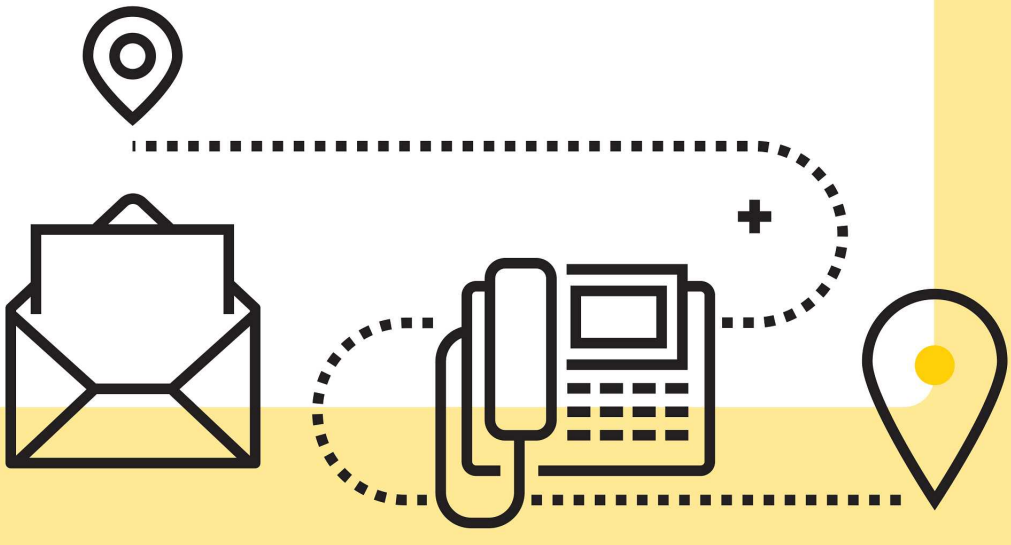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복합쇼핑몰 입점에 폐업을 준비하는 상인에게 건네는 다짐입니다. 정의당의 농업공약은 개방과 가격폭락에 속 타는 농민에게 내놓는 맹세입니다. 정의당의 동물복지공약은 좁은 케이지 속에서 자라는 닭과 돼지, 위험에 노출돼있는 길냥이에게 내놓는 약속입니다.

정의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정책연구위원, 당 부설 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의원실 보좌진을 비롯한 당내외 정책단위가 6개월 넘는 작업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지난 진보정당의 정책적 성과를 잇는 한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책적 진보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고군분투한 정책단위 구성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을 선거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20대 의정활동의 지침서로 사용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공약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낭떠러지에 내몰린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31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 용 신



정책기조

불평등 해소,
정의로운 대한민국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미래는 나아질 것이란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벌주도 수출경제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입니다. 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해고는 이미 일상입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은 9.7%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화두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실종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정책은 실종되고 복지공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가계소득은 오르지 않고 가계부채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5대 기득권 해체' 등 4대 과제를 실천해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최저시급 1만원,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소득격차를 서유럽 수준인 5배로 줄이겠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한 GDP 성장이 아니라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추구합니다. 재벌개혁으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조세개혁으로 소득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시장의 정의를 넘어 '인간적 가치들의 회복'과 '훼손된 존엄성'을 치유하겠습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볼모로 잡힌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정의롭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은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을 통해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평생복지, 교육·주거·의료 등을 책임지는 기초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GDP의 10.4% 수준인 복지지출을 2025년까지 OECD 평균인 21.6%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책임복지를 실현하고, 가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민생개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미래를 여는 선도정당으로서
대한민국에 인권·생태·안전·평화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정의당은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자살률도 올라가는 성장의 역설에 맞서 시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제적 평등에 더해 더 생태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인권적인 사회가 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진 평등사회, 2040 한국 탈핵과 안전사회, 안보 민주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체제로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불의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해체를 통해 불평등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공정을 낳고, 불공정이 불신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 형성을 통해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목차

PART 1
분야별 공약

인사말 2

발간사 4

정책기조 6

분야별 공약

노동 13

농업 57

중소상공인 95

빈민 109

재벌개혁 115

금융·산업 133

균형발전 151

주거 169

탈핵에너지 205

국토환경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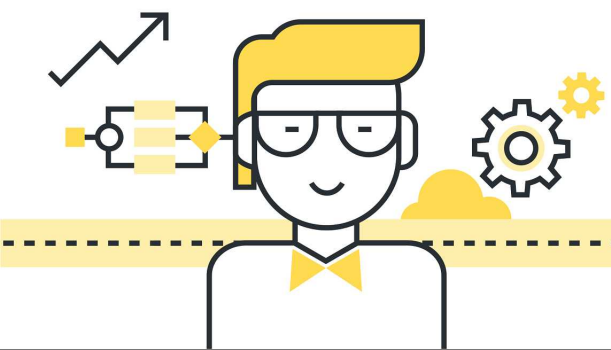
동물복지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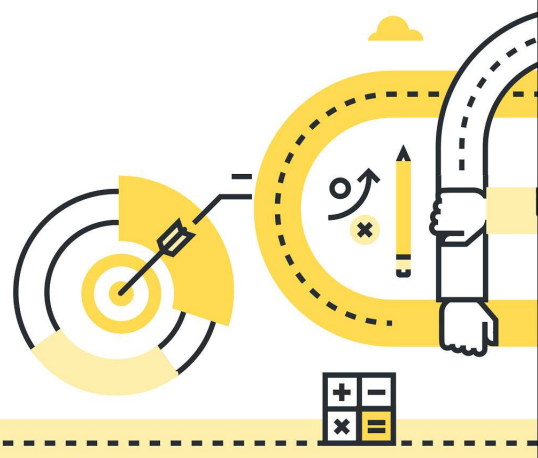
과학기술 253

조세·재정 273

아동·청소년 295

청년 311





노인 339
여성 361
장애인 391
인권 · 소수자 413
보육 431
교육 451
보건의료 475
복지일반 491
안전 509
문화예술 529
언론미디어 553
ICT 571
정치 · 국회 579
정부행정 617
사법 631
지방자치 647
국방개혁 673
외교통일 685



정의당 20대 총선

분야별공약



노동/농업/중소상공인/빈민/재벌개혁/금융·산업/균형발전/주거/탈핵에너지
국토환경/동물복지/과학기술/조세·재정/아동·청소년/청년/노인/여성/장애인
인권·소수자/보육/교육/보건의료/복지일반/안전/문화/언론미디어/정보통신
정치·국회/정부행정/사법인권/지방자치/국방개혁/외교·통일

1 노동공약

노동개악을 막고 노동존중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존중받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대합니다. 대신 우리는 노동조합 가입방식을 개혁해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확장된 단체협약으로 산별노동합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ILO 등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준수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을 배울 것입니다. 노동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될 것입니다.

1.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2.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3.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4.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5.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6.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

1.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❶ 위법한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치짐 폐기
❷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❸ 살찐 고양이법 제정, 실패한 경영진 우선책임제

2.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❶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
❷ 공기업·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❸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❹ 성별 임금격차 해소로 여성노동자 임금 인상
❺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3.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❶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❷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감축
❸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❹ 연차휴가 한달 이상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❺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❻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기회균형채용 도입
❼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4.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❶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❷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❸ 20대 국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반드시 비준
❹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
❺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
❻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5.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❶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정규직화
❷ 산재사망·재난사고처벌강화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❸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개편
❹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❺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6.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❶ 노조설립 신고제 개혁으로 노조 결성의 자유 보장
❷ 산별 교섭의 제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❸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중장기 노동법원 추진
❹ 공격적인 직장폐쇄 금지, 파업 손배·가압류 금지
❺ 노동, 경제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1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쉬운 해고를 막고 기업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❶ 위법한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 폐기

진단

-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저성과자 해고지침'을 『공정인사 지침 :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을 위한 가이드북』이란 이름으로 발표함.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고용기간 중 인사평가, 근로계약의 해지(해고)까지 인사의 전 과정을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쉬운 해고' 지침임.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계량적인 성과평가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함. 따라서 '공정해고'라고 이름붙인 일반해고 지침은 오히려 '공정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만 양산할 것임
- 일반해고 지침은 평범한 직장인들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 노동자들이 회사의 괴롭힘을 못 이겨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최근 금융권에서 희망퇴직 거부자들을 잉여인력으로 분류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환 배치하거나 직무역량향상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비난을 받은 바 있음. 정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에 앞서 배치전환, 교육훈련 등을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 지침은 잦은 전환배치로 인해 성과개선을 방해하는 것이며,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직을 유도하는 교육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을 통한 학대해고를 허용하는 것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로 규정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변경으로 임금·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 필요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제거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 결정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됨. 정부는 행정지침으로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시 필요한 근로기준법(제94조 제1항 단서) 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취업규칙은 무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노사 대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만큼 취업규칙 제·개정시 집단적 동의절차, 예를 들어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2대 지침은 해고와 취업규칙의 요건을 완화하여 개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 법률이 아닌 지침의 형식으로 마련되었다는 점, △ 지침을 제정할만한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다는 점, △ 현행 법령·판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고 부당함. 일선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의 해석·적용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취급되어 노·사 당사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즉각 폐기되어야 함
- 정부는 2대 지침 발표에 뒤이어 공공부문에서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1월 26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8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함

약속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개정 : 사용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배치전환, 교육훈련 명령, 폭언·폭행 등 괴롭힘을 행사할 경우 해당 인사명령 무효화
- 학대 해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해자를 옹호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취업규칙 공동결정제도 도입 : 취업규칙 제·개정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
- 입법권 무력화시키는 행정지침 남발 규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으로 공공부문의 성과 퇴출제 저지

❷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 회피노력 구체화

진단

-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수출부진, 내수침체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금융권 구조조정에 이어 그동안 중국 수출로 호황을 누렸던 조선, 철강, 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서도 구조조정 위기에 휩싸이고 있음.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이란 정리해고를 의미함.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실패와 귀책사유로 발생하지만 노동자들은 실업에 따른 생계위협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자살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함.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 요건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명시하고 있으나 개념이 불명확하여 쌍용자동차 사례 등 극심한 노사갈등과 경찰력 투입의 악순환을 겪었음

- 국가의 의무는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대한 엄격한 규제, 장기간 실업에 방치된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이미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우선 재고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 을 제출한 바 있음

약속

- 근로기준법 제34조 개정
- 정리해고 규제 강화,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해고 시 행정통제 강화

① 해고협의 시 노동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협의 수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경영상 해고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② 희망퇴직 등 정리해고 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해고 제한, ③ 전직계획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고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우선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거나 혹은 실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 ④ 고용불안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⑤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보장

❸ '살찐 고양이법' 제정, 실패한 경영진 우선책임제

진단

- 경영위기와 구조조정의 결과로 노동자들은 해고에 따른 실업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지만, 경영진은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은커녕 고액의 퇴직금이나 스톡옵션을 받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최고경영진의 탐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음
- 스위스의 무소속 국회의원인 토마스 마인더가 제안하고 국민투표 청원운동을 거쳐 2013년 3월 3일 법제화된 '살찐 고양이법'은 임원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고,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라 임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특별 보너스 금지, 이를 위반할 시 최대 6년 간의 보수에 상당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의 실형처분 등을 담고 있음. 기업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한 재벌 총수와 최고 경영진에게 상법상 손해배상책임과 형법상 배임죄 적용과는 별개로 경영상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함

약속

- 한국판 '살찐 고양이법' 제정 및 통합도산법 개정
- 경영위기 초래한 재벌총수 및 최고경영진의 법정관리인 선임 금지
- 부실경영 이사진의 급여(50%이내), 스톡옵션, 퇴직수당의 지급금지 및 환수조치
- 노동조합과 모든 주주(상장회사)에게 경영실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기를 허용
-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책임 전환 및 완화, 책임범위 확대

2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시급 1만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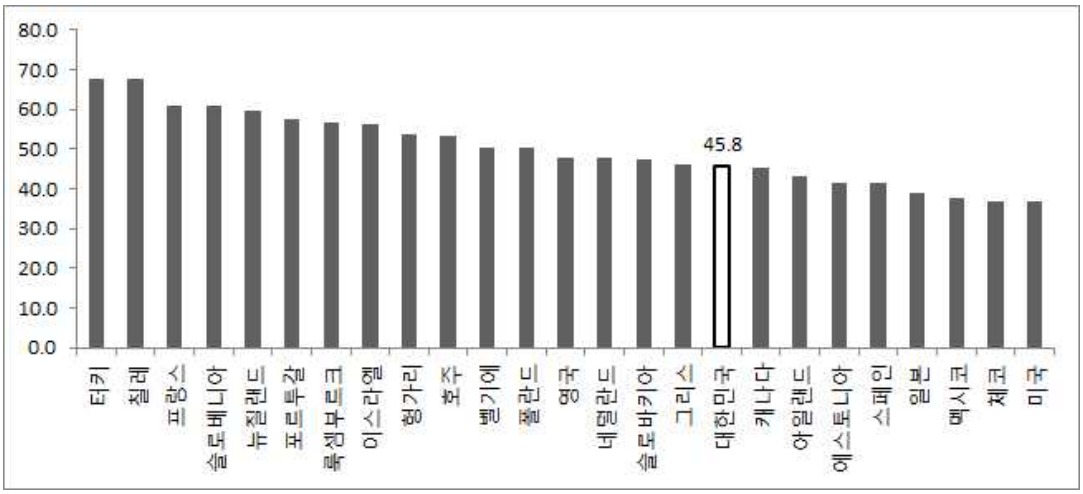
❶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

진단

-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월 환산 1,260,270원)으로 2013년 미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약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201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41.1%, 임금총액 대비 32.7%에 불과함
- 2013년 현재, 한국은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5%, 중위임금 대비는 43%에 불과해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각각 20위, 21위로 하위권임. 여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는 없지만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이 높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통계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함

[OECD 회원국 중위임금 대비 평균임금 수준]



자료 : stats.oecd.org (2014)

- 1988년부터 최저임금은 노사단체와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으나, 노사단체 대표가 동수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은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가지고 있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선출한 공익위원들은 특히 사용자 편향으로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더디다고 할 수 있음
- 2015년 법정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수는 222만 명이며, 전체 노동자 대비 11.5%로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함
  - 최저임금 미달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 최저임금 근로감독(2015.1~9월) 결과, 감독 규모와 적발 건수는 점점 감소해 행정감독이 부실함을 반증. 최저임금 미달 488건 중 사법처리는 고작 3건(0.6%)에 불과(참여연대)
-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을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과 시중노임단가의 전면적용 확산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약속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혁
  -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회의 공개 등 결정 절차 개선
-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근로감독 강화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②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③ 반복적으로 최저 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처벌 ④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명예 근로감독관 운영 ⑤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⑥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⑦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구상권 행사, ⑧ 미성년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직접 구두로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제외, 감액규정 삭제
  -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삭제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과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을 뒷받침하는 법제화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종합대책 병행 추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통해,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함. 다만, 당장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155만명 등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상당한 부담이 늘어나게 됨. 따라서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정책은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함.

① 복합쇼핑몰 ·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과 의무휴일제 확대 등 영업제한, ② 중소상공인 적합 업종 · 품목 대폭 확대 및 조정절차 간소화, ③ 변종 SSM 규제를 포함해 사업조정에 대한 강제 조정권 부여, ④ 모든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 재산권 보호, ⑤ 가맹점 · 대리점 ·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 규제, ⑥ 가맹본부-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도입, ⑦ 우대 수수료율 매출액 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⑧ 국민연금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과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⑨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⑩ 과중한 부채부담 경감

❷ 공기업 ·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진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 기업 임원들에 대해 최고임금제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었음. 2009년 독일 총선에서 수상 후보로 나선 사민당의 프란츠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임원 임금상한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0배로 제안하였음. 201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해 11.11%의 득표를 올린 좌파당의 장 뤽 멜랑숑 역시 세금 제도를 개선해 임원 임금이 중간 소득의 20배가 넘지 못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음
- 2014년 10대 재벌 등기이사 1인당 평균연봉은 16억 81백만원이며, 전체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은 35백만원, 최저임금은 13백만원임. 2014년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 평균연봉은 2,676만원(월 223만원)으로 188명의 등기이사 평균연봉과 62.8배 차이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5인 이상 상용직 연평균 임금은 4,054만원(월 3,377,970원)로 10대 재벌의 5억 이상을 받는 등기이사의 평균연봉 16억 81백만원과 약 41.5배 차이임.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주40시간 기준 월환산액 1,088,890원)으로 연봉은 13,066,680원에 불과하며 이는 등기이사 평균연봉과 무려 128.7배 차이임. 정의당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공기업 임원 및 30배를 초과하는 민간기업 임원 연봉에 대해 연봉상한제를 도입하여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등기이사 연봉과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비교] (백만원, 배)

구 분	연봉	격차	비고
전체 노동자	26.76	62.8	188명의 등기이사 평균연봉 16억 81백만원
전체 정규직	34.68	48.5	
5인 이상 상용직	40.54	41.5	
최저임금	13.07	128.7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공시자료(2015. 8. 추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2014. 8),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14년)

약속

-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 3,240원
  - 2016년 기준 공기업은 10배(약 1억5천만원), 대기업은 30배(약 4억5천만원)로 설정
  - 2014년 기준 4억 초과 근로소득자는 총 11,500명이고 이들의 근로소득 총 8조 9,351억원.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4억 초과분은 4조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14년 기준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 연봉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은 총 130곳

❸ 대기업 ·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진단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익은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거나 비용절감 등을 위한 협력기업의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 대기업-하청 · 협력업체간 수익성 격차가 늘면서 기업 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도 확대
  - 자동차 대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에 비해 1차 부품협력업체들의 월급은 절반, 3차 협력업체는 1/3 수준. 전자, IT업종 역시 대기업은 평균 월급이 493만원이나 1차 협력업체는 263만원, 2차 협력업체는 253만원, 3차 협력업체는 172만원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은 미미. 이에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원청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

약속

-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 ·

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 하청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관련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과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병행]

원청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와 공유하는 것과 함께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하고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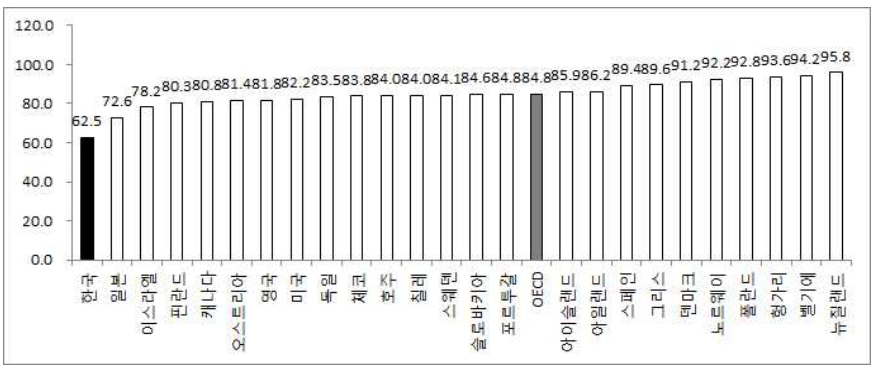
① 원청의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②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 근절, ③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방지, ④ 대기업의 공공입찰 시 하청협력업체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입증, ⑤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최저임금 30배) 실시, ⑥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⑦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하청 · 협력업체와 나누는 초과이익 공유제 실시, ⑧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❹ 성별 임금격차 해소로 여성노동자 임금 인상

진단

- 2013년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 보다 중졸이하는 12.1% 높고, 고졸은 8.4%, 대졸은 17.4% 낮은 수준. 고학력 여성은 자녀출산과 양육 등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저학력 여성은 생계를 위해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
- 2013년 우리나라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6.6%로 남자가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의 임금 수준. OECD에서 조사한 11개국의 남녀간 임금 격차는 평균 15.5%

[2011년 기준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 (단위 : %, 남자=100)



자료 : stats.oecd.org를 재구성

● 2015년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2,900개 사업장 점검한 결과, 여성근로자 비율은 평균 37.41%, 여성관리자 비율은 평균 19.37%에 불과

약속

●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으로 여성 일자리 개선

● 성별 고용 ·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페널티 강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공기업 · 대기업에 5% 청년 의무고용 도입 시 채용 인원의 30% 이상 여성할당 병행

● 임신휴직 도입,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과 차별금지기본법 제정으로 직장 문화 선진화

❺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진단

● 현재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거나 전무한 상황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

●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비중이 매우 낮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이마저도 감소한 상황임. 특히 시간제의 사회보험 가입 비중은 국민연금 13.3%, 건강보험 17.5%, 고용보험 18.8%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2014. 8			2015. 8					
	국민연금1)2)	건강보험1)	고용보험	국민연금1)2)	증감	건강보험1)	증감	고용보험	증감
〈 임금근로자 〉	67.9	71.4	68.8	67.4	-0.5	71.5	0.1	68.6	-0.2
ㅇ 정 규 직	82.1	84.1	82.0	82.0	-0.1	84.8	0.7	82.4	0.4
ㅇ 비정규직	38.4	44.7	43.8	36.9	-1.5	43.8	-0.9	42.5	-1.3
- 한 시 적	56.0	65.3	62.8	54.4	-1.6	64.1	-1.2	60.4	-2.4
·기 간 제	58.5	69.3	66.0	58.2	-0.3	69.4	0.1	64.6	-1.4
·비기간제	47.1	51.1	51.3	40.4	-6.7	44.6	-6.5	45.4	-5.9
- 시 간 제3)	14.6	17.8	19.6	13.3	-1.3	17.5	-0.3	18.8	-0.8
- 비 전 형	21.8	31.2	29.2	21.0	-0.8	31.1	-0.1	29.0	-0.2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제외자인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자가 포함되어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 보다 낮음
※ 자료 : 통계청.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약속

-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월 18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가입자로 전면 전환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 지급
  - 실업급여 기간 확대 : 최대 1년
-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등
  - 최저임금액의 80%, 최대 1년 지원

※ 청년실업자의 경우는 '청년디딤돌급여'로 별도 지원

3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불안정 장시간' 나쁜 일자리를 줄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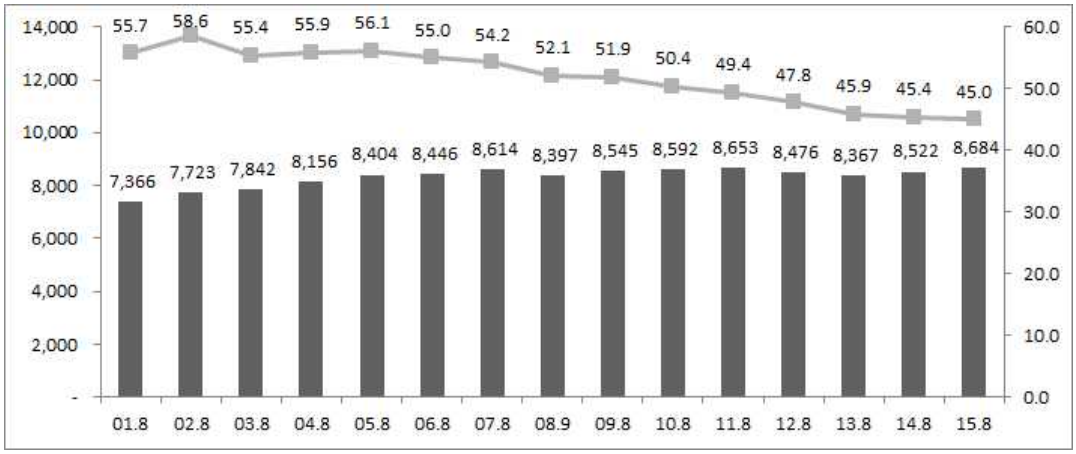
❶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진단

-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86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0%를 차지함.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이후 최대이나 비정규직 비중은 가장 낮은 수준임.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사내하청 노동자는 별도의 설문

문항이 없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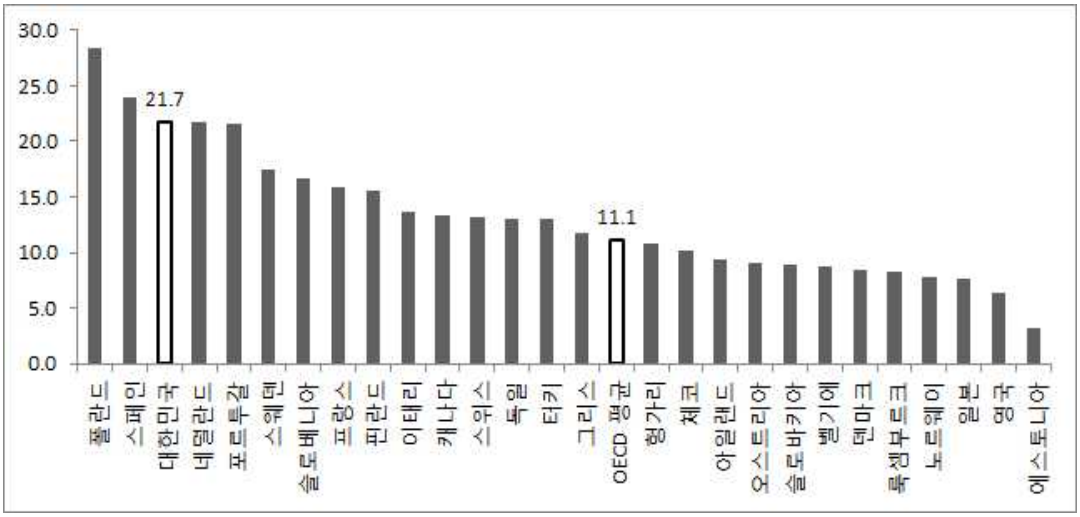
[2001~2015년 비정규직 규모 추이] (단위 : 천명, %)



자료 : 김유선(201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 11)

- **기간제)** 2005년 8월 273만명(18.2%)을 정점으로 2015년 8월 286만명(14.8%)으로 14~1% 대에서 고착화. 김유선은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감소효과를 3.9%로 추정함
- **시간제)** 2002년 8월 81만명(5.9%)에서 2015년 8월 224만명(11.6%)로 꾸준히 증가. 상용직 23만명(10.2%), 임시직 142만명(63.4%), 일용직 59만명(26.4%)이며,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8,423원으로 정규직 대비 52% 수준. 시간제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4만명(16.3%)로 2001년 8월 대비 71만명(21.8%)으로 증가함
- **간접고용)**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파견근로자는 21만명(1.1%), 용역근로 66만명(3.4%)로 나타남. 하지만 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3월)의 300인 이상 대기업 사내하청 92만명(4.9%)를 포함하면 실제 파견근로(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은 179만명(9.4%)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파견, 용역근로, 사내하청을 합한 실제 파견근로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2014년 현재 OECD 평균 임시직 비율이 11.1%인데 반해 2014년 8월 현재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21.7%로 2배나 많음. 우리나라 보다 임시직 비율이 높은 나라는 폴란드(28.4%), 스페인(24.0%) 뿐이며, 확인이 가능한 OECD 국가 중에서 3위에 해당함

[OECD 임시직 비율 국제비교] (단위 : %)



자료 : stats.oecd.org

약속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도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 차별적 처우의 범위 확대, 차별시정제도의 전사업장 적용과 노동조합에 신청권 부여
  - 정규직과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 중규직 등 변종 고용형태에 대한 규제
- 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의 단계별 축소→하도급 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등 3단계에 걸쳐 폐지
  - ① 도급업체 변경시 노동조건 승계 명문화, ② 불법파견 · 하도급업체 공시의무제 도입, ③ 미등록 불법파견노동자 사용 시 원청업체 즉시 고용 의무화, ④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임금인상을 이유로 단가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
  -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로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으로 파견노동자 보호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❷ 공공부문 · 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절반 감축

진단

● 2014년 정부부문 노동자는 222만명(13.0%)이고, 민간부문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는 516만명(30.3%)로, 둘을 합치면 전체 노동자의 43.3%로 노동시장에 큰 영향 (통계청)

●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03년 23만명(18.8%) → 2012년 36만명(20.5%) → 2014년 33만명(18.1%)으로 변화. 기간제 등 직접고용은 감소했으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불변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서 일시·간헐적 업무와 정규직 전환 예외 조항을 폭넓게 허용

●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59만명 중 비정규직은 182만명(39.5%). 직접고용 90만명, 간접고용 92만명(노동부). 10대 재벌 노동자 130만명 중 비정규직은 49만명(37.7%), 기간제 등 직접고용은 9만명,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은 40만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고,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 1인당 세액공제액이 일부 확대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에 대한 유인효과는 제한적임

약속

●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비정규직 감축

-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임시직이 OECD 평균보다 2배 많은 점을 고려하면, 통계청 기준으로 2015년 현재 863만명인 비정규직을 매년 1,078천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해 4년 내 절반인 431만명으로 축소

[4년 이내 비정규직 규모 절반으로 감축 목표] (통계청 조사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63만명	755만명	647만명	540만명	431만명

● 공공기관에 간접고용 상한제, 간접고용 현황 공시제 도입하고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 공공기관 정원과 표준인건비제의 합리적 조정,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 반영 등

● 지난 4년 동안(2009~2013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증가액 234조원의 1.7%인 4조원이면, 탈법적인 사내하청 4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봉도 1천만원씩 인상 가능

- △ 법률로 정규직 전환 강제, △ 고용형태 공시제와 공공조달계약 입찰 등 연계 유도,

△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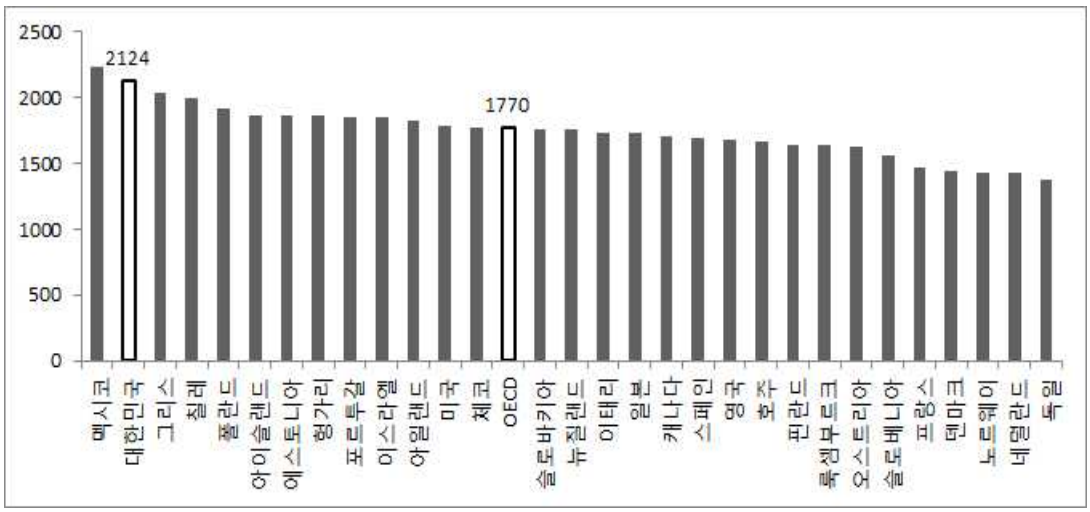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액을 현행 1인당 2백만원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와 동일한 수준인 5백만원으로 확대

❸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진단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4년 2,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

[OECD 회원국 연간 노동시간] (2014년)



자료 : stats.oecd.org

● 2015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초과한도인 주 52시간(주 40시간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연장노동 한도인 12시간을 더함)을 벗어난 장시간 노동자는 216만 9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2%에 이르고 있음

- 서비스직의 24.7%(454천명), 판매직의 16.5%(273천명)가 주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 1~4인 규모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17.4%(630천명), 5~9인 사업체 노동자의 14.9%(508천명), 10-29인 사업체의 10.4%(448천명)이 장시간 노동

● 장시간 노동체제는 ①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운수, 의료 및 위생사업, 금융보관업 등은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의 문제, ②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하는 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과 근로한도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 사례의 부재, ③ 추가고용 없이 최소 노동력으로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이해관계, ④ 왜곡된 임금체계와 포괄임금제 등이 맞물린 결과임

- 장시간 노동체제 근절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함. 우선, 법정 초과근로한도(주52시간)를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가 2014년 357만명(19%)으로 최대 6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유럽연합 지침대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면 새로운 일자리 105만개 창출이 가능함. 또한, 장시간 노동체제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시급히 근절되어야 함

약속

-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어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을 시정하도록 강제
-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의 독소 조항 개정

  ① 단시간 근로 관련 1주의 의미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 ② 포괄임금계약의 금지, ③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규정 삭제, ④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임산부와 18세 미만은 12시간 이상) 보장, ⑤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100을 가산 지급, ⑥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제한, ⑦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

-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제정
- 하루에 한 시간 씩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❹ 연차휴가 한 달 이상 도입

진단

- 휴식은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에 둔 권리이며, 시민권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휴식제도가 연차휴가임. 따라서 국가는 보편적 최소 휴식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 연차휴가는 임금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결정하여 노동자들이 일정기간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시민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휴가정책은 노동자들의 건강권 강화 측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짐. 오늘날 관광은 국가와 지방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핵심산업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주된 분야가 되었으며 휴가는 이를 촉진할 것이 분명함. 선진 각국이 관광수요 활성화와 내수확대 도모 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보편적 최소휴식 확대를 추구하여 왔음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 수준에 매우 미치지 못함. ILO 1936년 제52호 협약과 1970년 제132호 협약의 연차 휴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선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1년의 근속 기간에 대해 3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2주간 최소휴가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1993년 근로시간편성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며 1년에 최소한 4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음. 독일은 6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18일의 연차를, 영국은 연차는 4주 이상이며 13주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는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일본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0일의 휴가권을 부여하고 있음
- 2015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급휴가가 보장된다는 노동자는 11,640천명(60.3%),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 7,872천명(39.7%)에 이르고 있음. 보편적인 최소 휴식권으로부터 배제된 이들은 성별로 여성의 47.6%(4,016천명)와 남성의 33.6%(3,656천명), 고용형태별로 비정규직의 75.5%(8,625천명)와 정규직의 10.8%(1,158천명), 사업체 규모별로 29인 이하 사업장의 56.1%(6,360천명)과 30인 이상 사업장의 16.4%(1,312천명)이 해당됨. 보편적 휴가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유급휴가일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짧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가 2015년에 26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유급휴가는 평균 20.2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7일로 26개국 중 꼴찌를 차지했음. 26개국 중 연간 열흘 미만의 유급휴가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유급휴가 일수 역시 연간 15일로 26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유급휴가가 30일 이상되는 나라는 프랑스, 핀란드, 브라질, 독일,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 6개국이며, 덴마크는 28일,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25일임. 고용노동부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휴가일은 11.4일이나 실제 사용한 7일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휴가사용일수도 짧음

- 유급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790만 노동자들은 근기법상 연차휴가가 보편적 근로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다는 뜻임. 이에 국제수준에 맞추어 고용형태에 구분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권을 부여하고자 함. 나아가 15일에 불과한 유급휴가를 선진국 수준인 1달로 늘리고자 함. 우리나라의 직장 분위기는 휴가가 있어도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휴가 시기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집단·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약속

-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화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 입사 첫해부터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 최소 2주 휴가제 도입
-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공휴일제도 도입

❺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감정노동자 보호

진단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정신적 학대'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직장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직원 폭행 사태 이후 사회

적 관심이 확대되어 왔음

- 서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음. 스웨덴은 1993년 '직장 괴롭힘 조례'를 채택하였으며, 핀란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장 괴롭힘과 기타 부적절 행동에 관한 특별조항'을 추가하였음. 국제노동기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심리적 괴롭힘, 감정적 학대, 집단적 따돌림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4년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직장 괴롭힘 1건이 개인과 회사에 초래하는 피해를 비용으로 바꾸면 최소 1,548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음
- 이에 정의당은 직장 내 폭언 및 폭력, 허위사실을 직원들에게 퍼뜨리는 행위, 공식 업무 이외 개인적 업무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 지시 반복,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 지시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평범한 직장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
- 또한 정의당은 서비스경제가 확대될수록 서비스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함. 한국 전체 취업자의 70%에 이르는 7~9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고객대면 노동을 하고 있음. 공공기관, 병원 사업장, 사무금융 등 서비스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의한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자살에 이르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제8조 폭행의 금지에서 사용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객 또는 상급자에 대한 폭언, 폭행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음. 사업주들은 오히려 "미스터리 쇼퍼" 등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하고, 진상고객에 대한 인격적 모독을 방치하고 있음
-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 산업의 증가와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조치는 전무한 상태임. 현행 산재보상 기준의 정신질환은 감정노동 등 일상적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산재신청 건에 대하여 승인한 건이 거의 없음.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해당 노동자를 파괴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은 정비되어 있지 않음

약속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직장 내 폭언 · 폭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괴롭힘 처벌 및 산업재해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감정노동 보호 관련 법제화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의무화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인정 법제화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법제화

❻ 공기업 ·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기회균형채용 도입

진단

- 2015년 9월 현재 전체 실업률은 3.2%이나 청년(15~29세) 실업률은 8.5%. 청년 실질실업률(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실업자)은 작년 상반기 현재 22.4%
  - 청년층의 비정규직 바율은 60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 특히, 고졸 취업자의 상용직 바율은 42.8%, 월평균 임금은 145만원으로 대졸 이상(188만)원의 77.3%
- 청년들이 취업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임금, 근로시간 준수, 정규직 여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7차년도 자료)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3%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2016년 말로 끝나고, △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 비정규직로 채용도 무방하고, △ 취업취약계층(고졸, 여성 등)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한계

약속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을 청년 정규직으로 고용
  - 2014년 공공부문 정원 300,599명 기준 5% 고용할당 시 약 1만5천개 일자리
  - 2014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59만명 기준 5% 고용할당 시 약 23만개 일자리

● 청년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 이하, 전문대 졸업자,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할당하고, 여성 취업자의 비율도 30% 이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채용제도를 도입

❼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진단

●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에 달하나, 재작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청년은 29만 3천명에 불과함. 또한, 고용노동부가 시행중인 '청년성공패키지' 사업은 신청자가 6만 7천명에 불과해, 둘을 합해도 80만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공식적인 실업안전망 밖에 있음

● 청년성공패키지는 연간 13만명을 대상으로 2~3개월 동안 최대 40여만원씩 지원함. 하지만 청년성공패키지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 탐색의 기회와 내실 있는 직업훈련의 제공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보다, 일자리의 질에 상관없이 당장의 고용률을 올리는데 치중하고 있어 실제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함

약속

● 15-34세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단순 소득지원이 아닌 구직활동을 지원
  -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정부 정책과 달리 공공 위주의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

●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보장

4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생애 첫 노동부터 황혼 노동까지 존중받아야 합니다

❶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진단

- 한국전쟁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불온시하는 시각이 많음. 일상에서도 경찰서에 붙은 수배전단에 범죄 용의자의 용모를 '노동자 풍'이라고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남
-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1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도록 편성한 교과서가 있으며,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1/4 정도의 분량을 노동문제로 채우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시민사회 과목에서 1년 동안 1/3정도의 비중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임
-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2016)에 따르면,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고교생 가운데, 부모한테 용돈을 받지 못해 교통비 · 통신비 · 급식비 · 간식비 등을 스스로 벌어 쓰는 경우가 29.0%에 달함. 2013년 기준 근로 청소년은 대략 22만여명 정도로 15~18살 중고생의 3분의 1 이상이 알바를 경험함. 단순 경험이나 추가적인 소비를 위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상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근로 청소년도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2014)에 따르면, 업무 전 근로계약사를 작성한 비율은 25.%에 그쳤으며,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31.9%로 나타남. 반면,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은 경험은 중학교 15.8%, 고등학교 16.8%(일반고 14.8%, 특목고 · 자율고 13.4%, 특성화고 27.3%)에 그쳤음. 또한, 201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등에 총 241개소의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었으나, 상당수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됨

약속

- 현재 학교 위주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
-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 안심알바신고센터의 확대 및 운영 개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화
- 권리구제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지원체계 구축
-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 또래상담 등 청소년 역량 강화

❷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진단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348만(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 6.)에 이르며 전체 노동자 가운데 19.1%를 차지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유급휴일,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였음. 박근혜 정부 2년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583천명에서 639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여성은 429천명에서 463천명으로 늘어났음
-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같은 감시단속 업무 노동자를 비롯하여 농림사업, 축산, 양잠, 수산, 사육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유급휴일, 근로시간 및 휴게, 연장근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함.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비전형노동자의 규모도 확대대고 있음. 정부 통계로도 220만(2013.)에 달하는 비전형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189호 협약)'이 채택되고 국회 외통위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채택되는 등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 및 여성계의 지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는 원천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음

약속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 단시간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 이내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

❸ 20대 국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반드시 비준

진단

- 우리나라는 ILO 가입국 중 국제협약 비준 정도를 볼 때 120위에 그치고 있음. 1991년에 ILO에 가입한 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노사관계가 대응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과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가 개정되긴 했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과 '필수유지업무 제도'로 바뀌어 계속해서 기승을 떨치고 있음. ILO가 규정한 국제적 기준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 등도 그치질 않고 있음
- ILO가 정한 총 189개 협약 중 2012년 현재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은 고작 28개, 협약비준률은 12.7%로 185개 ILO 가입국 중 120위에 그치고 있음. 특히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29호 105호)는 국제사회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준되지 않고 있음. 또한, 4개 우선협약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 역시 3개만 비준한 상태임

약속

-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 즉각 비준, 우선협약 등 비준

❹ 교원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

진단

-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임.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빌미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전교조에 대해서는 법외노조를 통보함
-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체로서, 계층과 계급, 성별 등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보편적인 정치적 기본권임.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수인 공무원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으나, 일반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정당가입 제한 등 참정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 OECD 가입국 중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음. 또한,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한 정치활동에 대해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음. 다른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따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UN 인권이사회와 ILO, EI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도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음

약속

- 교사, 교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수노조 합법화
-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정당가입 및 정치후원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❺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

진단

- 2004년 8월부터 시행중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을 최대 4년 10개월간 (최초 3년 + 사업주 동의하 1년 10개월 연장) 허용하며, 이후에는 사업장과 재계약을 체결

하고 3개월 동안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자발적 사업장 이동 불가능,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 허용에 따른 산업보험 미혜택, 기준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및 식사, 알선장 없는 구직 활동, 사업장 변경기간 제한(3개월 이내 재취업 및 1개월 이내 변경 신청)으로 인한 미등록이주노동자화 문제, 출국 후 수령하게 되는 출국만기보험제도' 등 수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로 불리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재입국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임. 첫째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 둘째 '농축산업 · 어업 또는 30인 이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 등임. 그런데 사업장 비변경 조건은 사실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게 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이 요건은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재입국을 위해 이주노동자가 악화되는 노동조건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임
- 더구나 지난 10월 18일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숙련기술 없는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숙련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능해 결국 상당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남게 될 것임

약속

- 숙련도와 상관없이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노동비자 도입
- 노동비자 제도 도입 전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 사업장 변경 및 고용계약 단기화(1년) 허용,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폐지, 사업장변경기한 연장 및 구제제도 마련, 이직 활동 지원, 숙식 기준 마련,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만 이주노동자 취업 허용, 출국 전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

❻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진단

-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노동운동을 기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날을 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정부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 · 행사하는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단체는 “노동절(노동자의 날)”이라 지칭하며 별도의 자체적인 기념행사를 갖고 있음
- 지난 1963년 박정희 정부 시절 기존의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뀌었음. 근로자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사용자의 입장만이 강조된 용어임. 반면,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하며,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부르는 용어임. 따라서 5월 1일을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부르는 것은 노동절의 유래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시대의 유산임
- 정의당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자기 이름을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음. 이는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돌려주자는 의미임. 하지만 정부의 비협조로 국회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황임

약속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 변경

5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❶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정규직화

진단

- 위험공정 및 안전업무, 설비보수 업무의 외주화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건설업은 물론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되어 왔음. 예를 들어, 서울대 병원도 전기 및 시설과 설비를 외주화 하고 있는데, 2009년 태풍 콤파스로 인한 전기 공급 중단 시 심각한 상황 발생하였으며 2014년 도급업체 단가 하락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며, 수술실화재, 병동 누수가 발생한 바 있음. 2011년 이마트 냉동설비보수 노동자 4명이 질식 사망하였으며, 원인은 매장설비 보수 외주화로 가스 측정 없이 작업하였기 때문임. 서울메트로를 비롯하여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에서 안전업무 외주화가 확대되어 왔음
-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 또한 중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음.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안전관리 대행기관 위탁 전 사업장 적용되어 사업주와 갑을 관계에 있는 대행기관은 점검 및 개선 결과등 사업주 요구에 종속되기 마련임. 심지어 사업주 단체가 안전점검과 인증한 사례로 철도신호 시스템 제작업체 477개사의 회원사인 '한국철도 신호기술협회'가 안전점검한 결과,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발생시킨 신호기 제작 업체는 협회로부터 사용 전 점사에서 모든 부분 정상으로 판정되었음. 삼성 불산 누출사고 이후 점검에서 법 위반 2,000여건 적발. 여수 대림산단 폭발사고 이후 점검에서 법 위반 1,000여건 적발. 그러나 삼성과 대림은 안전과 환경에서 우수 평가 받은 자율안전, 녹색환경 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관리감독 제외 대상이었음
- 안전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하고 있음. [2012년 전국 건설현장 비정규직 안전 관리자 배치 현황에 의하면 세종시 건설현장 56개소 중 82%인 46개소에서 비정규직 안전 관리자를 고용하였음. 삼성물산(100%), 대림산업(90.9%), 포스코건설(72.7%)로 대기업도 안전관리자는

비정규직임. 이들은 상시적 해고 위협으로 비정규직 안전 관리자 안전점검, 예방조치 독립적 권한 행사가 불가능함

약속

- 유해위험 업무 정규직 전환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금지, 상시고용업무 정규직화

❷ 산재사망 · 재난사고 처벌강화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진단

- 우리나라의 일터는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어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률은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로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해당됨. 산재사망 및 사고는 교통사고의 1.3배나 됨. 정부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13년간 산재노동자 118만명, 산재사망 노동자 3만1천7백6십8명에 이르고 있음. 경제 손실액 2012년 약 19조 2천5백억(2,000만원 연봉노동자 86만 명 임금)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OECD 최악의 산재국가인 우리나라는 산재사망 · 사고 책임자인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이 미미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이마트 4명 사망사고의 경우처럼 사망사고에 대한 직접 처벌은 없고, 사고이후 진행된 점검에 의한 과태료 100만원만 부과하는 등 산재에 관대한 법 · 제도가 반복적 산재사망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산재사망 처벌현황]

원청	사고	사고내용	처벌
코리아 2000	40명 사망	물류창고 화재	벌금 2,000만원
이마트	4명 사망	냉동기 수리 질식사고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4명사망, 25명부상	용접 폭발화재사고	처벌 없음
한라건설	12명사망, 8명부상	작업선 침몰 익사	하청업체만 처벌
현대산업개발	3명 사망	추락	원청 무혐의
대림산업	6명 사망 부상11명	가스폭발	원청 사업주 불기소
삼성 불산	1명 사망 5명 부상	불산 누출	원청사업주 무혐의(시민단체 고발)
당진현대제철	1년 반 17명 사망	추락, 질식 등	원청사업주 무혐의(시민단체 고발)
청주 SK	8명 사망	폭발	원청 팀장만 처벌 원청사업주 무혐의(시민단체 고발)

자료 : 민주노총(2015)에서 재인용

● 지난 해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준 세월호는 영업정지 되지 않았는데,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기업살인법 제정 등으로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008년 영국은 '기업 살인법' 제정으로 산재사망이 감소하였으며, 2003년 캐나다가 '단체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 같은 해 호주도 '산업 살인법'을 제정하였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기업살인법 제정을 발의하였으나 국회는 몇 해가 지나도록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 등 처벌 조항이 있으나,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약속

● 산재사망 ·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자 처벌 강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하한선 제도 도입, 하청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처벌, 산재사망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산재사망 사업장 영업정지 및 사업장 공표제도 도입

●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시민안전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공공안전 사고에 대한 정부 주요 책임자 처벌 강화

❸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진단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철강, 조선, 플랜트, 자동차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청 노동자는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등 현장의 안전 보건 실태가 열악하고, 산재사망 · 사고를 당한 하청 노동자의 8% 정도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은폐되고 있음. 같은 해, 노동부 산업안전공단이 철강, 조선, 자동차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산재은폐 실태가 심각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제조업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 사고 피해대상은 하청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대부분 위장도급인 원하청 구조에서 시설 및 설비는 원청 소유이며 지휘 및 현장통제는 원청에게 있음. 하청 사업주는 시설, 설비 개선에 대한 권한도 없고, 공정

의 흐름이나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 정보를 알 수 없음. 하청 사업주는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능력도 권한도 없으며, 원하청 수탈구조에서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을 할 여력도 없음

- 반면, 원청 사업주는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원청은 산재 발생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하청 산재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하청 노동자는 산재은폐를 강요받고, 산재보상도 받지 못함. 2012년 현재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총 1조 1,376억이며, 그중 20대 대기업 감면액 3,461억이며, 삼성 869억,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858억, LG 242억, SK 234억임
-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나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다수 업종을 적용제외하고 있음.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노동자는 산안법 29조뿐 아니라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31조 안전교육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학교 급식 조리사 노동자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상하수도 준설원, 주정차 단속원, 농기계 수리등 공공행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위험이 다발함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나 안전교육에서 적용 제외되고, 방치되고 있음
- 원청에 대한 규정에서 건설업의 발주처, 서비스업의 장소 및 판매 임대, 위탁관계, 자치단체의 위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화학산단, 철강, 조선 등 발주처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및 대형 백화점, 유통매장, 자치단체에서 임대 위탁관계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 적용 불가능함
-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원청책임 및 하청노동자 참가를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불가능함. 예를 들어, 중대재해의 최대 당사자인 건설노동자는 사고조사에 노동자 참여조차 배제되고 있으며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조사의 근로자 대표 확인에 건설노동자를 적용제외 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규정으로 서비스, 공공기관 하청노동자들의 산재가 방치되고 있음

약속

-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 중규모 이상 사업장의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전 산업에 대한 안전보건 규제로 강화하고, 사업장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청 및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 안전보건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지원과 감독기능이 안전보건공단과 지방노동청으로 분산된 것을 직업안전보건청으로 통합하여 규제를 강화함. 직업안전보건청의 인력 및 예산을 두 배 이상 확충
- 전면 개정 또는 신설될 직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및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가 감시 활동 및 정책결정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

❹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진단

- 한국은 직업성 손상과 질환으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에 비해서도 2배가 높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높은 사망만인율에 비해 직업성 손상 및 질병의 발생률을 반영하고 있는 재해율은 OECD 평균에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해율이 낮은 독일 등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일반적으로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비가 유사한 것에 비추어볼 때에 한국의 재해율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직업성 손상 및 질병의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에 일하다가 다친 직업성 손상은 1,080,000건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그 해 실제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직업성 손상은 89,000여 건에 불과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직업성 손상자수가 2010년 기준으로 21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직업성 손상 및 질병에 이환된 노동자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이 아닌 개인 부담이 매우 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사업주에서 노동자로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발생함. 국회 보고서에

의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3조5746억 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노동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국의 건강보험은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 기능이 전혀 없어서 기업에서 별도의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 규정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재활과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치료비 부담 뿐 아니라 소득손실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서둘러 직장으로 돌아가게 됨. 특히, 대부분의 산재환자가 산재병원 등과 같이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갖춘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으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터를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함. 결국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서야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됨. 이처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되어서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현 산재보험체계는 산재환자의 조기 직장 및 사회복귀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전혀 실현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자가 영구적인 장애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음

약속

- 재해노동자가 최상의 치료, 재활을 통한 조기 직장 및 사회 복귀 실현
- 건강보험과 같이 병의원에 산재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권한 부여
- 산재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책임 부과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평가 기능 독립

❺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진단

- 새누리당이 발의하여 환노위를 통과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6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한 산재보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산재보험 확대적용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음. 보험설계사의 경우 이미 민간보험에 단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민간 보험사들의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 5개 직종(건설기계, 화물, 버스, 퀵 서비스, 문화예술인) 대상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은 보험료 전액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임의가입제도임. 시행한지 10여년 가까이 되고 있으나, 0.0003%만 가입하여 실효성이 없음
-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거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스스로 공단을 상대로 입직신고를 해야 함. 대다수 배달대행 업체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사업주 형식을 띤 수수료 지급형태의 계약을 요구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음. 2015년 7월 기준으로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42%에 불과한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음
- 1998년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임의 가입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건설현장은 2011년부터 임의 가입 적용대상이 되었음. 현행 산재보험법은 해외 현장 노동자 출장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파견은 임의 가입대상임. 출장과 파견 구분기준에서 통상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처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견처리하고 있음. 중동,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 근무 시 해당 국가 치료시설 미비로 귀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밖에도 소규모 건설공사는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배제되고 있음
- 소규모 음식점 등과 같이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동일한 재해 위험을 안고 있는 1인 사업장 또는 농민 등 자영업자들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산재보험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사업장이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예방 효과라는 이유로 차등보험요율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재해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도 효과가 불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산재 은폐의 기전으로 작동함.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

증가는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으로 반영되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을 더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사회적 연대를 원리로 하는 사회보험의 연대적 원리 및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에 위배됨. 산재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동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만들었는데, 위험에 따라 기여를 다르게 한다면 사회적 연대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강제 가입의 원칙과도 맞지 않게 됨.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평등이라는 인권적 가치에도 위배됨
-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실제 위험을 생산한 자는 보험요율이 낮고 힘이 없어서 위험을 떠안은 자는 보험요율이 높은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부정의한 제도임. 실제 상당수의 위험은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하청이나 용역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발생한 산재 결과에 의해 보험요율을 높이 설정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을 두 번 죽이는 것임

약속

-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 특수고용 · 해외파견 노동자 및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농민,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단계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중소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입
- 개인실적요율제 폐지 등 영세사업장에 불리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6 정의로운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❶ 노조 설립 신고제도 개혁으로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보장

진단

- 정의당이 제안한 최저임금 1만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의 출발점은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전통적으로 개별적 근로조건을 직접 보호하는 근로기준법과 조직된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결정을 보호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됨. 근로기준법은 최저 보호조항이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때 최저수준 이상의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음
- 미국 오바바 대통령은 2015년 노동절 대국민연설에서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히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밝혔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노동조합을 통제해야 할 불온세력이나 귀찮은 세력으로 보는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은 모두 10% 수준에 불과함.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도 20% 수준이며, 북유럽의 강국들은 여전히 높은 노조 조직률을 자랑하고 있음. 노동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이 진리임.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를 위해서는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설립신고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약속

-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보장
-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도 전면개혁 : 설립신고서 반려제도 폐지, 설립신고증 또는 접수증의 즉시 발급,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금지 조항 폐지 등

❷ 산별교섭의 제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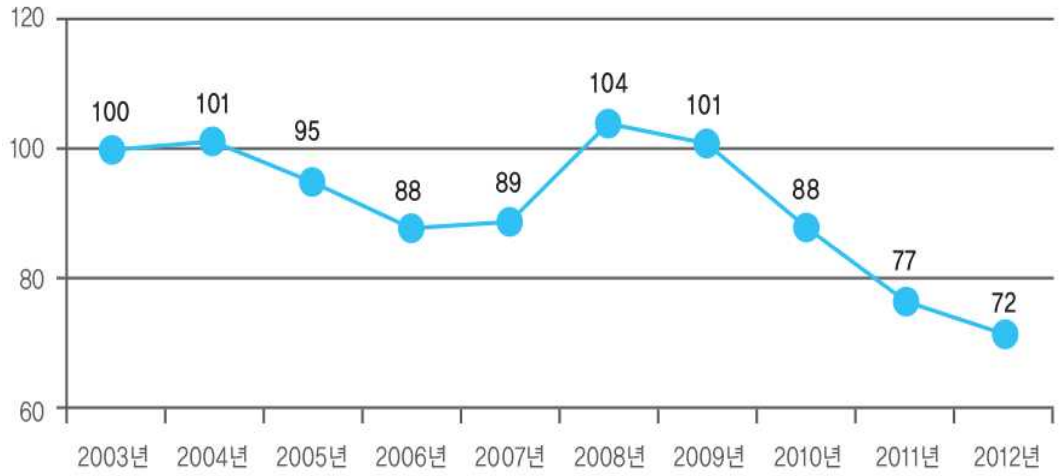
진단

-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2004)에 따르면, 산업적 수준의 단체교섭 성사여부와 단체협약 적용률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즉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전 산업 또는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 불평등이 낮음. 협약의 효력 확장을 담은 산별교섭 제도화는 노동자 임금격차 축소와 보편적인 노동조건 향상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유력한 경로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

- 2010년 11월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산별전환율은 81.3%로, 전체 조합원 679,487명 중 552,603명이 산별노조로 조직돼 있음. 산별노조 전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사 교섭체계는 각 기업별로 지나치게 분화되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을 위한 상부의 조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이로 인해 교섭제도가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못해왔음. 산별노조 전환 움직임에 조응하는 안정적 교섭구조가 마련되어 않아 조직구조와 교섭제도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남
- 특히, 기업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대상에 초기업 노조를 모두 포함시켜,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산별노조의 사업장 지부(혹은 지회, 분회)가 사업장 내 과반 미만의 소수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게 됨. 현재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노조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산별교섭에 대한 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대각선 교섭도 불가능해짐
-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제도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 내지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없음. 이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함.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노동3권의 법적 성질에서 자유권적 요소가 존재하는 측면을 부정하며, 노동3권의 중심적 권리로서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 '교섭방식은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노사관계와 노사문화 등에 따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과 함께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국은 해당 국가의 노사문화와 교섭관행 등에 따른 교섭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산별교섭은 동일산업 내 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 균등화를 지향하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성과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며, 교섭비용 절감이란 측면에서도 시급히 제도화돼야 함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한 중앙교섭 감소 현황] (금속노조)



※ 연도별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수 : 2003년 100개 사업장으로 출발했으나 이탈 지속. 2006년 사용자협의회 설립과 2007년 대대적인 산별교섭 참가 확약서 작성으로 2008년 104개 사업장으로 늘었으나 이후 다시 이탈 지속, 2013년 현재 72개사로 축소.

약속

-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산업별 교섭구조 안착을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 및 교섭 의무화
-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 제외
- 사용자의 기업별노조 특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

❸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중장기 노동법원 추진

진단

- 노사정 3자합의제 기구이자 준사법적 기구인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 노사분쟁의 합리적 해결, 노사평등의 실현을 위해 운영 전반에 사회법 및 노동법 정신이 관철되어야 함. 그러나, △ 노동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점 △ 노동위원 제청권이 장관에게 있는 점 △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에 대해 상호 배제 절차를 두어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정부)가 추천한 위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 등 사건의 판정과 의결 처리에 있어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편향될 우려가 높음

- 노동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수가 과도하게 많으며 (단순히 수가 많은 문제보다도 이들이 현직이 없는 관계로 회의 참여횟수가 다른 위원들에 비해 대개 월등히 높은 문제점), 대부분 부문별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어 노동부로부터의 비독립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음
- 노조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각종 의결사건의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진행 됨. 이에 따라 행정관청만 당사자의 지위로 노동위원회 의결절차에 참가가 허용되고 실질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참가할 수 없음
- 실제 피신청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해당 노동조합과 최초 행정관청에 명령 또는 지명을 신청한 실질적인 신청인인 근로자는 의결사건에 있어 당사자 지위를 갖지 못해 어떠한 주장이나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특히 심문회의 참석권도 없으며 사건 진행 통보조차 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함. 의결 사건의 경우만 초심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잘못되거나 부족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박탈되는 것도 큰 문제임
- 현재 심문회의 이전단계에서의 사건조사 등 모든 절차가 조사관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음. 실제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위원회는 심판회의 2~3주 전에야 구성되며, 빨라야 1주일 전에야 사건서류가 위원들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조사·심리가 진행되기 어려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 위촉, 감정·검증, 문서제출 요구권, 사실조회, 증인 및 당사자 심문권 등이 노동위원에게 부여되지 않는 것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심리를 어렵게 하고 있음

약속

-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및 노사정 합의제 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
- 중장기적으로 노동법원 설립 추진

❹ 공격적인 직장폐쇄 금지,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진단

- 한국에서는 '노조의 파업 → 조합원 퇴거와 시설보호를 명분으로 사설경비용역 투입 → 물리적 충돌 유발, 사업장에서 배제 → 교섭거부, 해태,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조치 등 노조에 대한 공격적 태도 동시 수반 → 노조 무력화 시도'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
- 이는 직장폐쇄가 '근로제공에 대한 집단적 수령 거부'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법원이 이를 마치 직장폐쇄가 사업장 출입 또는 점거의 배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기 때문임. 다수 사용자들은 행정부와 법원의 태도에 기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파업참가자들에 대해 사업장 출입봉쇄 및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고 비조합원들과 파업 미참가자들을 동원하여 조업을 강행함으로써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 직장폐쇄 과정에서 경비용역에 의한 폭력을 수반하는 현상은 최근 직장폐쇄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임. 이는 전근대적인 폭력적 노무관리가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최근 SJM, 유성, 만도, 등 사건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음
- 경비업법의 제약을 받는 경비업체는 단순 배치 업무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이른바 '일용직'이라는 이름의 '미배치인원'을 동원하여 불법 무기를 이용한 심각한 유혈 폭력을 일으키거나, 작업현장에 투입하여 불법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함

약속

- 기업의 무분별한 파업 방해로부터 노동자 보호
-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 파업에 대한 손배 · 가압류 금지
- 용역인력 노사관계 개입 금지

❺ 노동, 경제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진단

- 현재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는 양대노총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져있고, 지난해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한국노총 역시 불참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노동자의 이익 보호보다 오히려 정부와 재계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동

약속

-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해 노동, 경제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2

농업공약

우리 농업을 지키고 농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것입니다.
주요농축산물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직불금을 확대해 농업소득과 농민소득을 보장할 것입니다. 농촌에 대한 교육 의료 주거 지원은 확대되며 농업과 농민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체로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1. 우리농업과 먹거리안전 보호
2. 농업소득과 농민소득 보장
3. 농민의 교육·주거·의료 보장
4. 농민참여로 민주농정 실현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혁신농정

1. 우리농업과 먹거리안전을 지키겠습니다.

❶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
❷ 농지 공개념 강화로 식량자급 기반인 적정농지 확보
❸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
❹ 귀농·귀촌인 지원 강화로 농업인력 육성
❺ 대북쌀지원특별법 제정 및 남북농업교류협력
❻ WTO, FTA 농업피해영향평가 및 대책 마련
❼ 무역이득부담금제로 농업피해 보전 의무화
❽ 학교·공공급식 기초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확대
❾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먹거리체계 구축
❿ GMO 농산물 규제 및 토종종자 육성 지원

2. 농업소득과 농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❶ 주요농축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❷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❸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직불금 확대
❹ 중소농 협업공동체 육성 및 가공·유통지원 강화
❺ 지속가능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

3. 농민의 교육·주거 · 의료를 책임지겠습니다.

❶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❷ 마을 공동생활주택(그룹홈) 지원 확대
❸ 농부증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❹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

4. 농민참여로 민주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❶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개혁
❷ 여성농업인 지위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❸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협치농정 실현

1 우리농업과 먹거리안전을 지키겠습니다

❶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식량주권 실현

진단

- 한국과 일본 같이 단립종 쌀 중심의 식품소비 패턴과 아울러 제한된 국토 자원을 지닌 나라의 경우 필요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이나 비축 방식 외에 국내 농업 생산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함. 특히 지구 온난화 따라 식량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취약한 식량자급 기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는 2004년 쌀개방 관세 유예화 협상을 전후로 꾸준히 논의되어 온 과제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정도임. 그나마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으로 품목별 자급률 확대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5년마다 농업발전기본계획에 식량자급 목표치를 반영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정농지, 소득안정, 농업인(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해 자급률 목표치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음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4%로 매년 하락하고 있음. 2007년 이후 국제 곡물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2011년 2015년 및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함. 하지만 2006년 0.9%에 머물러 있는 밀 자급률을 2015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 등으로 자급률은 2014년 현재 1.1%에 그치고 있음. 또한, 곡물자급률에서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역시 2014년 기준 49.8%로 2015년 목표치 57%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2015년 자급률목표치 재설정 및 2020년 목표치](정부안)

품 목	2010년	2015년 목표치		2020년 목표치 (신 설)
		기존	재설정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26.7%	25%	30%	32%
식량자급률(식용곡물)	54.9%	-	57%	60%
주식자급률(쌀+밀[+보리])	64.6%(2008년)	54%	70%	72%
칼로리 자급률	50.1%(2009년)	47%	52%	55%

※ 주식자급률 2015년 재설정 목표치와 2020년 목표치는 농림축산식품부(2011.7.8.)

[양곡연도별 자급률]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p)
곡물자급률(사료용 소비 포함)	29.6	27.6	24.3	23.7	23.3	24.0

※ 곡물자급률 : 사료용소비를 포함한 국내소비량 대비 국내생산량 비율(농림축산식품부 2015.3.30.)

약속

● 2014년 24%인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020년까지 30%, 중장기는 50%로 설정함

- 현재 자급률로는 식량주권을 포함한 농업의 공공적 역할을 실현할 수 없으며, 최소한 절반 이상의 자급률 달성을 중장기 정책목표로 설정

●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반영하여 법률적 의무로 강제

-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최초 5년은 매년 1%씩 자급률을 높여 5% 증대를 목표로 설정함. 이후 평가를 통해 다음 5년의 목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 농업발전기본계획에 품목별 자급률 목표와 방법, 이행실적 등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

● 쌀 생산기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생산조정, 중기적으로 대북 쌀지원 재개, 장기적으로 가공용을 포함한 소비촉진운동을 중점에 두고 진행해야 함

●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육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

● 공공급식 프로그램과 먹거리복지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국내 농산물 식재료 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소비체계을 마련함

❷ 농지 공개념 강화로 식량자급 기반인 적정농지 확보

진단

● 자급농정의 핵심 요소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농지를 유지·보전하는데 있음. 그러나 정부는 도시자본 유치를 이유로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소유 규제마저 대폭 풀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훼손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과 난개발을 부추김. 이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면서 농업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2008~2012년 농지전용 추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지면적(천ha)	1,759	1,737	1,715	1,698	1,730
전용면적(ha)	18,215	22,680	18,732	13,329	12,677

※ 농림축산식품부(2013.4.4.)

[2005~2014년 경지면적 및 감소율 추이] (단위 : 천ha,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지면적	1,824	1,800	1,782	1,759	1,737	1,715	1,698	1,730	1,711	1,691
증감면적	-12	-24	-19	-23	-22	-21	-17	-	-19	-20
증 감 율	-0.6	-1.3	-1.0	-1.3	-1.3	-1.2	-1.0	-	-1.1	-1.2
비 고	현지조사							원격탐사		

※ 시사주간

●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2014년 기준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49.9%에 달하고 있음. 전체 농가 112만 가구 중 순수자작농가는 45만 가구에 불과하고 임차 겸 자작농가가 57만가구, 순수임차농가가 9만가구로 임차농가가 전 농가의 58.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농지는 전체 국토 면적(998만9천ha)의 17%인 169만1천ha에 불과하고, 1인당 농지면적 역시 선진국들에 비해 절대 면적이 작음

●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됨. 임차농은 농업소득과 경영안정성 면에서 자작농보다 불리하며, 토지개량투자나 고정자본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업에 불리함. 따라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농지의 소유 · 이용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농지공개념 강화는 농지보전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 및 확대하게 하고, 식량자급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

약속

- 농지공개념 강화로 안정적인 영농보장 및 식량자급기반 확보, 농업의 다원적 가치 유지
- 연차별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치를 기준으로 농지의 최소 유지 규모를 법률로 규정
  - 농지전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민소유를 강화
- 국토관리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지원 강화
  -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농촌경관유지 등 농지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직불금 확대

❸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

진단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농업인력의 육성이 필수적임. 정부의 농업인력육성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이 주요정책이나, 그 숫자는 매년 1,500명 내외로 당초 목표한 5,000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귀농귀촌을 농업인력 육성의 중요한 창구로 여기고 있으나, 이 역시 정예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후계농업인 선정·육성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1981-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육성인원	138,403	124,379	1,507	1,705	1,435	1,559	1,550	1,564	1,849	1,861
지원금액	31,360	23,676	700	830	880	880	880	880	1,012	1,012

※ 2014.10월 현재 후계농업인 수 1,100,000명 (농림축산식품부 2015)

- 젊은 사람들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 문화등 부가적 요인도 중요하만,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의 불안정임. 젊은 후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뒷받침 되어야함. 그러나 지금처럼 농업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얻는 것은 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임

약속

● 매년 신규농업인력 5,000명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복원과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유지

● 일본이나 유럽처럼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후계농업인들이나 승계농, 창업농 등에게 최대 3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농 지원제도〉를 도입함

- 지원대상) 만 18세~45세의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의 청년
- 지원내용) 준비기간(최대 1년) 및 독립기간(최대 2년) 등 최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 ▸ 준비단계는 영농을 목적으로 상담 및 연수를 받을 경우 훈련수당으로 지급
  - ▸ 독립단계는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소득이 안정화될 때까지 소득보전 형태로 지급
- 지원조건) 취업농은 지원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농종사 의무를 이행

[정부의 청년창업농 vs 정의당의 청년취업농]

정부의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구분	정의당의 청년취업농 지원
만18세~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 신규 영농창업(예정)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자	지원대상	만18세~45세 신규자 또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의 자
2016년 300명 선발	지원규모	매년 5,000명 육성
창업기간(준비포함) 동안 최대 2년간 월 80만원 지급	지원내용	준비기간(1년), 독립기간(2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및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농지(논, 밭, 초지) 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농기계 등의 농업생산기반을 무료 혹은 저리에 중장기 임대(최장 10년 이상)해주는 리스제도를 조기에 도입함

EU, 프랑스와 일본의 취업농 지원제도

유럽의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EU 공동농업정책(2014~2020)에서는 18~39세 청년 신규 취농자(영농경력 5년 이하)에게 직접지불금 지급

프랑스는 이미 40년 전부터 농업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청년농업종사자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73년에 시작한 '청년취농지원금제도(DJA)'이다. 18세부터 40세까지 농고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취농희망자가 청년농업자연합회(JA), 농업회의소 등에서 본인의 경험에 따라 필요한 장단기 연수를 받고 5년후의 영농계획을 포함한 취농발전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취농자로 선정되면 평지, 조건불리지역, 산악지역 등 지역조건에 따라 1인당 1000여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지원받아 농기구 구입과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다. 세금과 사회보험금도 경감받고 필요한 자금에 대해 저리융자 혜택도 받는다. 은퇴하거나 이농하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우선 임대

받을 수 있게 한다.
일본은 2012년 4월부터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5세 이하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등 총 7년에 걸쳐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연간 150만 엔(한화 약 2200만 원)이다. 단 급여를 받은 기간의 1.5배(최소 2년) 기간 동안 독립 · 자영농으로 농업에 종사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총 수급액수는 1억5000만 원 이상이다. 다만 연소득이 25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의 청년농업인 지원제도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 농업경영체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 유도
  - 채용지원금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도며, 지원분야 및 연차에 따라 1인 월 180 만원 이내 차등지급(경영체당 1명 신규채용 인력 지원, 다만 농업계 졸업생을 채용 시 1명 추가 채용 가능)
  - 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영체 기준 최대 36개월 지원(추가채용을 통해 2명을 채용한 경우는 2명의 지원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6개월 지원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실습시 월 80만원을 5개월간 지급(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지급)(연 560명 규모)
- 청년 농산업창업지원 사업(2016년 시작)
  - 39세 이하 성장잠재력이 큰 신규 영농창업자에게 최대 2년 훈련수당(1년) 또는 창업안정자금(1년) 지원 (연 300명 규모)
    ① (창업 준비단계) 독립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일정한 영농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 시 훈련수당(최대 1년, 월 80만원 지급)
    ② (창업 초기단계) 창업(예정) 소재지 시·군에서 주거 이전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 일정요건 확인 후 창업안정자금(최대 2년(준비단계 포함), 월 80만원) 지급

❹ 귀농 · 귀촌인 지원 강화로 농업인력 육성

진단

- 2012년 5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도시계획법, 농지법, 국토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자체 정책은 '인구늘리기'라는 양적 확대에 머물러 있음.

또한,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2014년 8만명)에 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귀농 전 교육이수지원 2800명, 선도농가 실습지원 517명에 불과한 실정임





- 귀농귀촌의 증가는 저성장 경제하에서 청장년의 고용 불안정, 도시 일자리 부족, 사회적 서비스 후퇴 등 경제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고 다양한 일자리가 함께 발굴되어야 함
- 귀농·귀촌을 시도했으나 도시로 돌아간 역귀농 역시 매년 10% 정도이며 이들의 귀농·귀촌 실패의 주된 이유는 일자리 부족(34.6%)과 부족한 소득(26.9%)등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의 문제를 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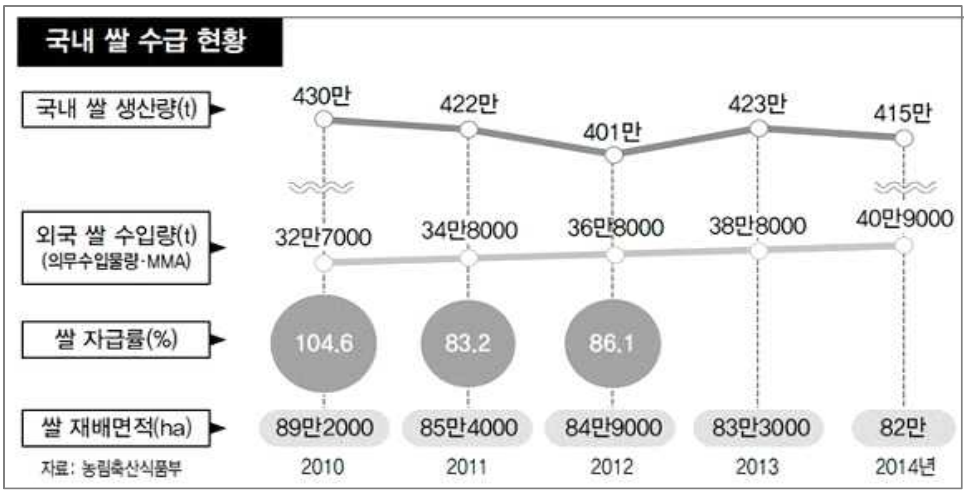
약속

-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 고령자와 저소득층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공급과 건강유지를 위한 급식, 일자리 제공 등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과 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
-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공동체 복원과 우수농업인력 육성
  - 귀농·귀촌 희망자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 내에서 철저한 실습교육을 거쳐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자만 농업에 진입할 수 있게끔 제도화
  - 대부분의 귀농인들은 작은 땅을 가지고 특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을 출하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상장경매의 대가로 공제하는 위탁상장수수료(7%) 이내에서 판매목적의 하차, 진열, 배송 등과 관련된 공동물류비와 시장사용료 등 전체 비용을 해결

❺ 대북쌀지원특별법 제정 및 남북농업교류협력

진단

- 2015년부터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면개방의 길로 들어섰음. 지난해 쌀 생산량은 사상 유례 없는 풍년인 반면 쌀 소비량은 30년 만에 반도막이 나 쌀가격이 20년 전으로 후퇴함. 이에 따라 농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음
- 정부는 쌀 관세화 개방을 앞두고 국가별 쿼터, 밥쌀 수입, 해외원조 등 관세 유예화의 부가조건이 해제되었다고 하면서도, 밥쌀 수입을 강행하여 심각한 쌀 재고 문제와 가격 폭락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음



- 당면한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적인 대북지원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 농민들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통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대북 쌀지원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상태임

정부의 연도별 대북식량지원 현황 (단위:억원)

연도	지원내용	지원방식	지원금액
1995	국내산 쌀 15만t	무상	1854
2000	외국산 쌀 30만t, 중국산 옥수수 20만t	차관	1057
2002	국내산 쌀 40만t	차관	1510
2003	국내산 쌀 40만t	차관	1510
2004	국내산 쌀 10만t, 외국산 쌀 30만t	차관	1359
2005	국내산 쌀 40만t, 외국산 쌀 10만t	차관	1787
2006	국내산 쌀 10만t	무상	394
2007	국내산 쌀 15만t, 외국산 쌀 25만t	차관	1505
합계	쌀 265만t, 옥수수 20만t		1조976

자료 : 통일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2년~2007년 쌀 대북지원에 따라 농가의 쌀 판매가격이 평균 1.3% 상승하여 5년 동안 약 7,000억원의 가격지지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이는 북에 대한 쌀 지원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왔음을 입증함

● 남북은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위원회는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개성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농업분야의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 내용 (2005년 8월 19일)

- 협동농장 시범사업을 위하여 남측은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을 북측에 지원하고 그 성과에 따라 협력 사업을 확대
-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 보관, 처리시설을 지원
- 우량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재배기술 및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교류, 농작물의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 구축, 농업전문가의 교류
-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분야 협력
-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

약속

● 대북쌀지원 특별법 제정 및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

● 2009년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북한에 대한 쌀지원 특별법」 재추진

- 남측의 쌀농사와 북측의 밭농사(잡곡)과 같이 남북이 자연지리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 및 분업생산체계를 통해 상호보완성 실현
- 상호보완적 농업공동체란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실현해야 할 미래의 농업공동체로서, 구체적으로는 농업생산, 영농자재, 가공·유통 등의 역할분담 및 분업생산 등
-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ODA), 해외자원개발자금, 국공채 등을 통해 마련

❻ WTO, FTA 관련 농업피해영향평가 및 대책 마련

진단

-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현재 53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4개국과 협상 중에 있음. 또한, 아시아 · 태평양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 FTA 발효에 따른 농어업의 피해는 직접피해 뿐 아니라 수입증가에 따른 농업생산과 연관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따지면 천문학적 숫자에 달함. 또한, 각종 법 · 제의 제 · 개정으로 인한 비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한 · 미, 한 · EU, 한 · 중 FTA가 농업생산액 감소에 미치는 직접 피해액은 15년간 최소 43조원 이상 (농촌경제연구원)
  - 한중 FTA 체결에 따라 농업생산액이 2020년 최대 20%, 약 3조3600억원까지 감소 (대외경제연구원)
- 현재의 통상 시스템은 통상관료에 대한 견제, 통상 과정에 대한 검증시스템 부재, 국민의 의견수렴과 국내 협상 전무 등으로 인해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확대되고 있음

약속

- 「통상절차법」을 개정하여 통상절차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과 검증시스템을 강화
- 농업 피해영양평가를 농어민들이 참여하는 독립적 기구를 통해 실시하고, 재협상을 추진
-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와 국가기간산업인 농업 · 먹거리는 통상협상에서 제외

<표 2> FTA 발효 이후 농업부문 직접 피해영향 요약

항목		피해영향
1	농산물 수입증가 무역적자의 확대	□FTA발효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합계 : ('04)1억1천1백만달러 → ('13)153억 1천4백만달러 □FTA발효국과의 무역적자 합계 : ('04)1억1천만달러 → ('13)133억3천4백만달러
2	국내 농산물 시장점유율 하락	□수입과일비중의 확대 : ('03)16.3% → ('13)23% □칠레산 포도 시장점유율 증가 : ('03)1% → ('13)6% □미국산 과일의 시장점유율 증가 : ('11)32.2% → ('13)36.4% □수입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증가 : ('03)7.4% → ('13)17.8 □수입유제품 시장점유율 증가 : ('03)5.5% → ('13)9.2%
3	관세감축 확대에 따른 피해 가시화	□한우가격 및 송아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 : ('09)610만원/600kg → ('11)487 → ('12)530 : 송아지 ('09)228만원 → ('11)171 → ('12)144 □포도생산액 감소: ('03) 6,360억원 → ('12) 5,056억원 □돼지고기 가격하락(110kg) : ('12.5)40만원→('13.5)30만원 □향후 관세감축율 확대에 따른 피해증가예상 □동식물 위행검역조치 해제시 피해증가예상
4	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농가기대소득의 손실	□육류, 과일, 채소류 소비시장의 확대 □FTA로 관세감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농가기대소득의 손실 : 예)포도, 년간 20억원의 기대소득손실
5	FTA체결후 농가 수익구조의 악화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 ('03)107 → ('12)94 □도농소득격차 확대 : ('90)97.4 → ('12)57.5 □예) 포도농가 순이익 저하 : ('03) 59.7% → ('12) 49.7%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2014.5

표 1-11.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2016년 1월 기준)

구 분	대상 국가	진행 상황	비고
협정발효 (14건, 53개국)	칠레	발효(2004.4.1)	* 우리 측 양허율: 99.8% (공: 100%, 농: 72.5%)
	싱가포르	발효(2006.3.2)	* 우리 측 양허율: 91.6% (공: 91.6%, 농: 66.6%)
	EFTA[1](4)	발효(2006.9.1)	* 우리 측 양허율: 96.5% (공: 99.7%, 농: 화스위스 34%, 화노르웨이 46%, 화아이슬란드 58%)
	아세안(10)	발효(2007.6.1)	* 우리 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3.2%)
	인도	발효(2010.1.1)	* 우리 측 양허율: 93.2% (공: 98.8%, 농: 55.2%)
	EU(28)	발효(2011.7.1)	* 우리 측 양허율: 99.6% (공: 100%, 농: 97.1%)
	페루	발효(2011.8.1)	* 우리 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4.5%)
	미국	발효(2012.3.15)	* 우리 측 양허율: 99.9% (공:100%, 농: 98.0%)
	터키	발효(2013.5.1)	* 우리 측 양허율: 99.6% (공:100%, 농: 52.5%)
	호주	발효(2014.12.12)	* 우리 측 양허율: 98.6% (공:99.9%, 농: 89.5%)
	캐나다	발효(2015.1.1)	* 우리 측 양허율: 98.2% (공:100%, 농: 85.9%)
	뉴질랜드	발효(2015.12.20)	* 우리 측 양허율: 98.2% (공:99.3%, 농: 86.4%)
	중국	발효(2015.12.20)	* 우리 측 양허율: 92.2% (공:97.1%, 농: 66.0%)
	베트남	발효(2015.12.20)	* 우리 측 양허율: 95.4% (공:99.5%, 농: 75.0%)
서명/타결 (1건, 1개국)	콜롬비아	비준(2014.4.29)	* 우리 측 양허율: 98.7% (공:100%, 농: 89.9%)
협상진행 (3건, 16개국)	인도네시아	제7차 협상(2014.2)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에 대한 입장 차 상존
	한-중-일	제6차 협상(2014.11)	상품 양허 협상 모멀리티와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논의
	RCEP[2](16)	제6차 협상(2014.12)	제7차 협상 개최 예정(2015.2, 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8개국)	GCC[3](6)	제3차 협상(2009.7)	제4차 협상일정 미정
	멕시코	제2차 협상(2008.6)	제3차 협상일정 미정
	일본	제6차 협상(2004)	협상재개 실무협의 9차례 개최, 차기협상 여부 미정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7건, 19개국)	Mercosur[4](5)	TA(무역협정) MOU체결 (2009.7)	한-MERCOSUR TA 추진 협의를 위한 MOU체결
	이스라엘	공동연구 완료 (2009.6-2010.8)	향후 일정 미정
	중미[5](5)	FTA 추진 가능성 검토회의 (2012.10)	향후 일정 미정
	말레이시아	타당성연구 완료 (2011.5-2012.12)	향후 일정 미정
	러시아	제2차 협상(2008.7)	경제동반자 협정 공동연구 회의 개최, 향후 일정 미정
	SACU(5)	공동연구개시합의(2008.12)	향후 일정 미정
	몽골	공동연구개시합의(2008.10)	향후 일정 미정

주 1)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RCEP: ASEAN 10개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3)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4) Mercosur(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 중미: 과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6)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7) 양허율은 전체 HS코드 중 양허 제외/현행 유지를 제외한 품목 수의 비중이며, 협상단계별 국가 수는 중복 제외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FTA 강국, KOREA), 농림축산식품부

❼ 무역이득부담금제로 농업 피해보전 의무화

진단

-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23조 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방농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국민(농어민)이 생긴다면, 당연히 국가와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에서 동반성장, 사회적 차원에서 손해 보는 쪽에 피해를 보전해줘야 함
- 2004년 3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한·칠레 FTA 비준과 함께 제정, 시행중이나 50여 개국과 FTA, TPP 등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함
- 정부가 한·중 FTA비준과 함께 발표한 '농어촌상생기금'(매년 1천억원, 10년간 1조원)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다른 제도임. 농어촌상생기금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현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정부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주요국 농민 지원제도 비교

	미국	유럽	대만
성격	무역피해지원 특별프로그램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예산	무역피해지원 특별프로그램
지원 대상	수입증가로 인해 생산물 가격, 생산액 등이 하락해 소득이 감소한 농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사양산업 지역, 구조조정 필요지역 등에 지역단위로 지원	농산물 수입 피해를 본 농협, 수협, 농업회사, 농민
지원 내용	새로운 상품 및 시장, 대안사업 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원, 교육훈련, 사업 조정 계획 설계 및 이행 지원 등	농업투자, 정착비와 직업훈련, 농산물 마케팅, 농업관광상품 개발, 조기 퇴직자 보조금 지원 등	- **불명확한 손해** : 생산 및 판매 지도조치 - **명확한 손해** : 보조금 지급 등 긴급구제 - **심각한 손해** : 생산자 전업 지원, 직업훈련, 시설보조 등

그래픽 : 이승현 the300 디자이너

약속

●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에게 목적세금을 부과하여 피해보전을 제도화

- 무역이득부담금제(공유제)는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 목적세를 부과해 피해를 보는 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
- 국회에는 '한 · 미 FTA 발효시점(2012.3.15.)을 기점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이익과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향후 15년간 3조원의 기금을 마련, 농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하자'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계류 중

❽ 학교 · 공공급식 기초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확대

진단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가 빈곤에 노출되어 있음. 절대적인 섭취량이 부족해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소득수준 하위 25% 이내의 저소득층임. 굶지는 않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먹거리의 선택에 곤란을 느끼는 비율도 절반에 달함. 먹거리 양극화는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식원성 질병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공공급식은 학교, 병원, 복지시설, 군대, 그리고 직장 등에서 정부 혹은 지자체 등이 식사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급식을 지칭함. 단체급식 중에서 비상업적이고 정부 혹은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 지원을 하는 급식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의 34%가 1일 1끼 이상을 단체급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급식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공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급식의 식재료 공급과 국내농업의 연계를 통해 농업도 살리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실제 국민들의 품목(군)별 소비량을 바탕으로 공공급식에 필요한 농산물 필요량을 계산하면 곡물자급률이 3.7% 향상되는 효과

[공공급식을 통한 품목군별 농산물 소비와 자급률 추정치]

구분		공공급식소비량(천톤)	자급률 향상
곡류	전체	623.4	3.7%
	쌀	363.7	7.6%
	밀가루	137.2	42.2%
	보리	5.6	0.1%
	기타	116.8	1.5%
서류		61.3	6.4%
두류		43.6	3.0%
견과류		6.9	0.5%
채소류		682.6	6.3%
과실류		213.4	6.6%

-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급식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농산물 사용을 우선할 수 있으며, 친환경 사용 비율 등의 지정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먹거리 질의 향상도 꾀할 수 있음

약속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기초농산물 현물지원을 통한 질 좋은 먹거리 보장
- 정부와 지자체의 단체급식에 국내 농산물 우선 사용 및 친환경 사용 비율을 확대함
  - 곡물류, 구근류 등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면서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정부가 수매·비축 등을 통해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하고 공공조달 방식으로 급식 시설에서 구매
  - 채소류 등은 가까운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계약재배 등을 지원하고 일정비율 이상 지역산/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조례 제정

❾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의 먹거리체계 구축

진단

- 먹거리 복지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즉, 누구나 질 좋은 먹거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임
-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한국의 농업과 먹거리를 세계 먹거리 체계로 완전히 편입시켜, 먹거리 안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립농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음

- 지역먹거리체계는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담보하는 먹거리 체계임. 중소농의 협업생산체제,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프로그램(결식아동,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 소비공동체와의 연계망 등이 가능하여 시장지배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경제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약속

- 먹거리 안전 보장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 지속가능한 농업 · 먹거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먹거리보장체계 수립
  - 지역의 사회적 수요 확보와 지역 내 합의를 통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 비용의 감소 등 지역 자원순환형 농업 활성화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법」(2015.5.29.)이 제정되었음. 농가가공 활성화 및 판매 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이외 공공조달 영역의 확보, 현물지원 방식으로 지역먹거리 공급의 안정적 유통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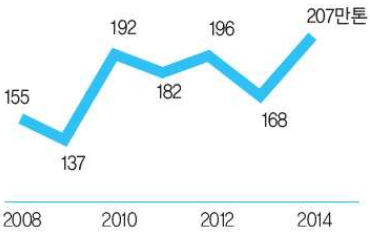
⑩ GMO 농산물 규제 및 토종종자 육성 지원

진단

- 우리나라는 GMO작물 수입 세계 2위국가로 무차별적으로 GMO 농산작물과 가공식품들이 도입되고 유통 소비되고 있어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있음. 2014년 기준 약 1000만 톤 내외의 GMO를 수입하고 있는데 전체 옥수수 · 대두 수입물량(약 1,148만 톤)의 약 70%에 달함. 식용 옥수수의 50%(126만톤), 식용 콩의 85%(100만톤)는 GMO 농산물임
- 우리나라도 GMO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농촌진흥청 이외 정부기관에서는 2014년 9월 기준 총 17개 작물 180종의 GMO가 개발되고 있음. 기관별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농업과학원 99종, 국립식량과학원 33종, 국립원예작물특작과학원 30종, 국립축산과학원 9종, 공동연구(농과원/식량원) 9종에 이름

식용 지엠오 연도별 수입량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통합정보망 통계)



GM작물개발사업단 국내 상업용 GMO작물 개발현황

목표형질	대상 작물						합계
	벼	콩	배추	고추	화훼류	기타	
불량환경 내성	9	1	2		3	3	18
병해충 저항성	5	3	2	2	6	1	19
생산성	6	1				1	8
품질/기능성	4	1	2		4	2	13
계	24	5	6	2	13	7	58

화훼류 : 국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난
기타 : 감자, 토마토, 마늘, 사료작물

출처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약속

-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가공 유통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국민 건강권 확보
  - 유전자조작식품을 최종 제품으로부터 최초의 수입 원료에 이르기까지 추적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체계 구축
-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종 다양성 유지
  - 토종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육성과 토종종자의 보전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 확보, 식품안정성 강화를 위해 토종종자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2 농업소득과 농민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❶ 주요농축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진단

- 농업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시장의 실패'라는 문제가 발생함. 농업생산은 자연조건과 기후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취약성으로 소득 하락의 위험성이 상존함. 개별적인 다수의 생산자로 인해 가격결정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서는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함

- 가격 폭락은 생산자인 농민의 생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가격 폭등은 국민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어 먹거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확대로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농산물가격 관련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책은 다음 두가지로 요약됨
  - 가격지지정책 : 정부수매, 최저보장가격제도 등
  - 가격안정정책 : 정부비축, 민간비축, 유통명령 등

약속

- 품목별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조정을 통한 가격안정
- 적정가격보장제는 채소류 등 농축산물에 대하여 기준가격(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함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 폭락과 폭등을 방지하고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의 손실과 피해를 막고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이를 위하여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별 최저가격(하한선)과 국민이 수용 가능한 최고가격(상한선)을 설정하여, 기초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폭락과 등락을 방지함
-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수급·출하 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계약재배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농협의 손실을 가격안정기금을 통해 보전함
  - 농협이 가격안정기금으로 수매 혹은 계약재배를 시행하며, 가격안정기금의 손실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
  - 정부가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되,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농협 등 생산자 조직이 일부 출연하며, 운영수익을 기금에 적립

❷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진단

-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만성화 되고 있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의 식량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있음.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식량독과점이 심화되고 투기자본에 의한 국제 곡물가 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농산물 가격의 급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민과 농민 모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 2008~2009년 식량위기를 겪으며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국가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태국은 '쌀 국가수매제'를 부활하여 쌀 시장가격이 정부의 수매가격보다 높아질 때까지 수매정책을 지속하여 농가소득을 보장
  - 인도는 '식량보장법'을 통해 주요 식량에 대한 최소가격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비료, 관개, 동력 등에 대한 농민보조를 확대하고, 전 국민의 75%(농촌인구의 90%와 도시인구의 50% 해당)에게 배급체계를 통해 최저가격으로 식량 공급
- 기초농산물의 취약한 국내 생산·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 50%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정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정책이 필수적임
- 농산물 가격대란 및 가격폭등,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함

약속

- 기초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유지하고, 농산물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가격파동을 방지하여 국민과 농민의 생활안정 실현
-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식량정책을 국가의 책임 하에 구축하고 운영함
- 곡물류에서 우선 시행 후 채소류, 원예, 축산물 등으로 사업대상 품목 및 부류 확대
- 정부 직접수매 품목은 주식으로서의 비중이 높은 품목인 쌀과 밀, 보리를 중심으로 함. 5대 곡물에 속하는 콩, 옥수수는 농협과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하되, 식량으로서의 비중과 정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에서 직접수매 여부를 결정함
- 수매방법은 정부기관이 직접 계약 후 수매하는 방식으로 함. 다만, 정부 책임하에 농협이

수매를 대행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보전 방식을 마련함

[곡물류 수매제도의 개요]

구 분	쌀	밀	보리	콩	옥수수
수매량 (국가+농협)	생산량의 30%	자급율 10%	생산량의 30%	생산량의 30%	생산량의 30%
가격결정	• 국가수매 : 생산비 보장 수준에서 결정 • 농협수매 : 시군별 농협과 농민단체 대표가 협의결정(생산비 보장)				
직불제	고정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가격 상하한제도	• 하한가격(최저가격) :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정한 가격 • 상한가격(최고가격) : 생산비, 물가인상률, 가격변동폭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정한 가격				

❸ 직불금 확대로 농민소득 보장, 도농격차 해소

진단

-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농업구조조정과 수입개방은 농업의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켜왔으며,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점진적 감소 등 농가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음. 특히, 54개 국과 체결한 FTA는 자립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극소수 대농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농업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 1991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7.4%였으나 2013년 62.5% 수준으로 도농간간 소득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약 1.5배 증가한데 비해, 농가부채는 약 6배 증가하였음. 농가의 빈곤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2012년 기준 약 23.7%의 농가가 가계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절대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빈곤율) 농어촌 9.76% 〉 중소도시 4.34% 〉 대도시 4.07%
    (한국복지패널, 2014.3.)
- 농가소득의 구조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임. 2004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9.3배였으나, 2010년에는 12.1배로 늘어나 도시보다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됨. 도시의 5분위 소득격차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도시는 소득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비해 농촌은 소득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채] (단위 : 천원,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농가소득(A)	11,026	21,803	23,072	30,503	32,121	30,148	31,031	34,524
도시근로자가구소득(B)	11,343	22,771	28,659	39,025	48,092	50,983	53,908	55,275
비중(A/B)	97.2	95.8	80.5	78.2	66.8	59.1	57.6	62.5

※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14)

약속

- 현행 직불금제도 개선해 경지면적별 구간을 설정하고 경지면적이 적은 농가에게 역누진율과 함께 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WTO가 허용하는 허용보조를 최대한 활용
  - 논 고정직불금 현재 1ha당 100만원 → 150만원 이상으로 확대
  - 밭 고정직불금 현재 1ha당 40만원 → 80만원 이상으로 확대
  - WTO 허용대상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활용
- 중장기과제로 직접소득보조 방식의 직접지불제도를 모든 농업 · 농촌 · 농민에 대해 전면 도입하되 전 · 겸업별, 영농규모별, 영농형태별, 작목별 기준을 마련함
  - 목표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95% 수준을 기준으로 3~5년 단위의 농가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농가별 기준소득(평균)을 설정하여, 목표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이를 직접 자불금으로 농가에 자불하는 방식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보전을 위한 해외 사례

영국 등 해외에서는 농어촌 경관자원을 문화적, 생태적, 사회적 가치 등의 다원적 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이행 시 직불금을 지원

① (영국) 농어촌의 환경 · 생태 · 경관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관활동을 점수로 하고, 일정한 점수가 되어야만 이를 등급화 하여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원보조프로그램* 운영

* CSS - 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② (미국) 경관의 특성과 형태적 요소, 크기 등으로 구분하여 원형 경관 및 미적자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관의 시각가치를 목록화 하고 시각자원관리계획* 수립

* VRM - Visul Resource Managment

③ (프랑스) 협약에 근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계약을 통해 사회경제와 환경보조금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적농업계약* 추진

* CAD - Countrat d' Agriculture Durable

④ (독일) 역사 깊은 농촌문화경관 유지, 다양한 생물서식지 제공 등에 농민과 계약하여 문화경관 보전 보조금* 지급

* KULAP - Kultur landschacfts programm

⑤ (일본) 법 또는 보조금 제도 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합의를 중심으로 경관협의회, 경관 인정제도 및 경관협정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연경관보전조례를 마련



❹ 중소농 협업공동체 육성 및 가공 · 유통지원 강화

진단

- 1989년 이후 농산물수입 전면개방을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규모화, 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를 내세워 규모화된 개별 생산주체를 육성하는 농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농어민의 소득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상업화, 단작화에 따른 기초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만 커지고 있음
- 농업생산의 핵심 주체인 중소농민이 줄어들고 농업생산기반마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대안은 기존의 개별 단위(농가, 기업) 주체의 규모화 정책을 폐기하고, 다양한 방식과 영역에서 중소농의 협업화를 통한 규모화와 생산주체 육성을 추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중소농의 협업이 다양한 형태로 조직되고 있어 이러한 생산, 유통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및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함

[중소농협업공동체육성을 통한 기대효과]

- 생산자원(토지, 기계, 종자 등)을 공유함으로써 생산비 절감효과
- 농민에게서 농민에게로 생산기술 및 생태농업으로 전환/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 공유
- 가공, 유통, 판매에 있어 협상력을 가짐으로써 농민통제권 강화
- 지속가능한 순환 재생산 환경농업 실천과 회원소득 보장
- 사라져가는 농촌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

- 중소농협업화를 통해 친환경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농가소득 안정화
- 중소농 협업체의 생산물(농축산물, 가공품 등)을 학교급식/공공급식을 비롯한 먹거리 복지 등의 공적조달에 우선 구매
- 안정적인 가공·유통을 위한 거점조직인 소규모농산물 가공유통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농협업공동체에 대한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에 대한 장기·저리 임대를 통해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촉진

❺ 지속가능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진단

-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영세소농이 전체농가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농촌에는 공공일자리를 제외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농업을 둘러싼 여러 외부적 요인에 따라 개별 경영단위의 규모화는 효율적 경영이 어려운 실정임. 때문에 지역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마을단위 영농활동을 조직하고 공동경영을 통해 범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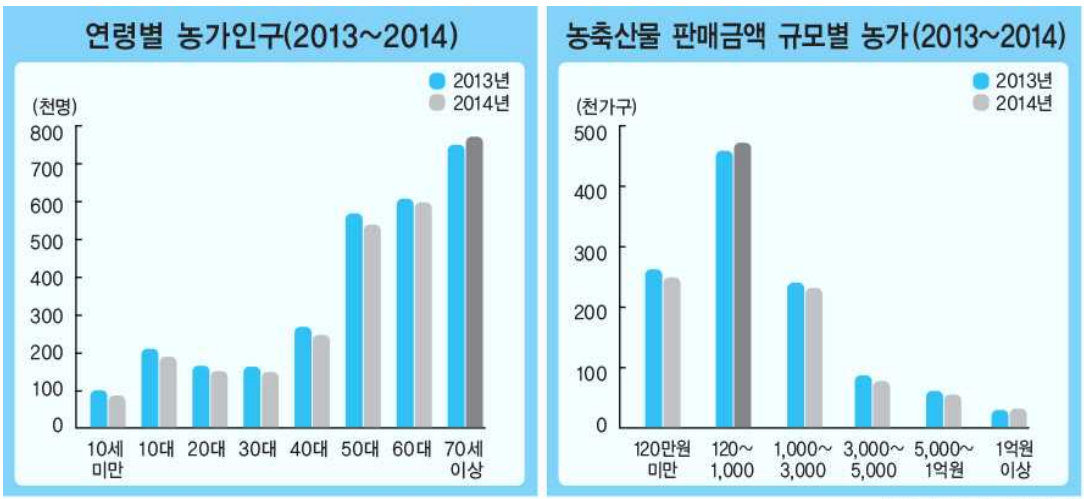
약속

- 중소농 협업공동체 조직화 및 농촌공동체 리더 육성으로 일자리창출
- 신규 귀농인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농지우선임대, 농가주택 및 정착지원금 등)
-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 유통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농업생산, 자연경관, 문화자원을 연계한 농촌형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농촌마을 공동급식(먹거리복지+노인복지+보건정책+지역먹거리)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 고령농의 전통지식을 자원화한 일자리 창출
- 농업관련 연관 산업(농자재, 농기계) 농촌지역에 집중육성, 농공단지 가동률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농민의 교육 · 주거 · 의료를 책임지겠습니다

- 보편적 복지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와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에서 출발함
- 기존의 복지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하는 선별주의적인 복지였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삶의 질’ 문제가 중요해지고, 모든 계층의 기본적인 요구가 수렴되는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특히 농촌복지가 필요한 것은 심화되는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해 빈곤이 일상화되면서, 안정적인 생활과 보편적인 삶의 질을 스스로 책임지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연간 소득 1,000만원 미만의 반농이 전체 농가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때문임
- 교육, 문화, 의료, 일자리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가 도시 행정권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 농민들은 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 시간과 비용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39%대에 이르고 후계농업인이 없는 농가가 90%에 이르는 등

보편적복지의 사각지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출처:통계청 2014 농림어업조사

❶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진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폐합된 소규모 학교는 총 246개교이며, 주로 농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지역별로는 전남이 68개교로 가장 많고, 경북 61개교, 강원 29개교, 경남 27개교, 충남 18개교 순으로 나타남
- 게다가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교부금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함
  -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학생수 60명 이하)에 대한 교육재정지원 축소를 통해 학교통폐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 조손가정과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학교는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음.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부금 배정기준 변경은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권영길, 강기갑, 정진후 의원 등이 꾸준히 발의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안은 '농산어촌지역 작은 학교'를 농촌교육의 근거지로 유지 · 보존

하고, 창의력과 인성개발을 함양하는 학교로 특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약속

-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 '농산어촌지역 작은학교'를 유지하고 창의력과 인성개발을 함양하는 학교로 특성화
  - 교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자녀를 위한 교육여건 마련 (통학 · 하숙비 지원 또는 기숙사 제공)
  - 교원 임용과 근무조건 개선(근무수당, 현지거주 인센티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 등)
-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자녀, 조손가정자녀가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 및 교사 지원,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 방과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로 사교육 걱정 없는 농촌 교육시스템 구축
- 고령·여성·이주민 등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❷ 마을 공동생활주택(그룹홈) 지원 확대

진단

- 농어촌의 혼자 사는 독거노인 수는 1995년 19만 8976가구에서 36만 6800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주민의 50%를 넘어선 한계마을도 급증하고 있음. 한계마을에서는 농업생산 지속의 어려움, 전통적인 상부상조체계의 약화, 고독사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새롭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농촌 고령화율(농가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통계청)

    2010년 31.8%→2011년 33.7%→2012년 35.6%→2013년 37.3%→2014년 39.1%
- 마을별 공동생활주택은 지역의 공동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마을 주민 간 상호 돌봄이 가능하도록 해 복지를 통한 자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내는 방안으로 2013년부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범 실시되고 있음
-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2014년 기준)에 따르면, 공동생활주택은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등 8개 광역시도에 총 684개소가 운영 중임. 그중 68%인 463

개소가 전북에 있으며, 진안군은 209개소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그룹홈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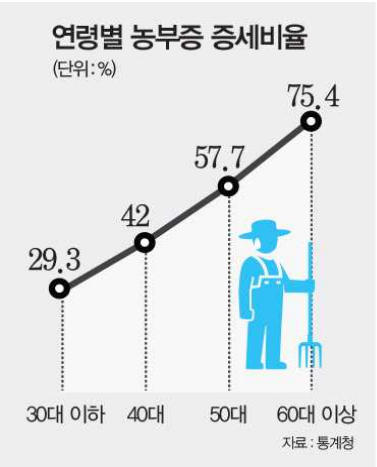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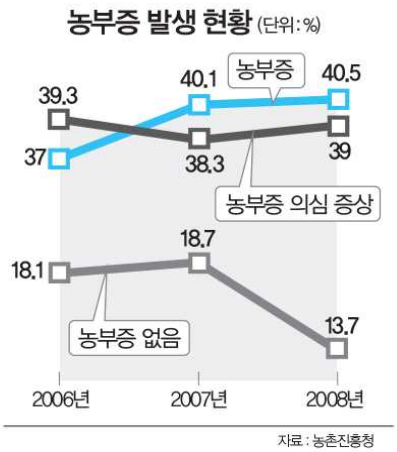
- 1마을 1 공동생활주택 운영
-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통해 공동생활형 경로당을 조성하여 노인여가 프로그램, 공동작업장 등을 연계하여 여가활성화 추진함. 이를 통해 취약 노인들의 고독사, 우울증 예방 등 심리 · 정서적 안정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실현

❸ 농부증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진단

- 농촌 주민의 유병률은 2014년 현재 31.8%로서 도시민의 23.2%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농어촌의 유병일수 역시 1999년의 6.7일에서 2014년 10.3일로 3.6일이 늘어난 반면, 도시의 유병일수는 5.8일에서 8.5일로 2.7일 증가하는데 그침. 이처럼 농어촌의 유병일수가 길어진 것은 치료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만성질환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난 탓임
- 농부증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정신, 신체적 장애 증상군으로 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야간 빈뇨, 호흡곤란, 불면, 어지러움, 복부팽만감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칭함





● 농촌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부증을 농민직업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의료보험지원 확대와 전문적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약속

● 직업성 질환인 농부증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는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 치료의 지원(제14조)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바용을 지원(제15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4대 중증 질환과 동일하게 농부증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추도록 함

❹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진단

●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3대 위험업종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농업분야 재해율(1.44%)은 전산업 평균 재해율(0.6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 2009년 기준 전국에서 매일 80여건의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한 달에 20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매일 한 명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진단을 받고 있음

● 농가인구 중 1% 정도만이 산재보험의 혜택 받고 있으며, 농작업 재해에 대한 보장은 농민 개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규모는 2011년 현재 81만명 수준(전체 농가인구의 27.3%, 농림업 경제활동인구의 52%)이나, 산재보험보다 보상수준이 낮으며, 요양과 휴업급여, 유족급여 등 소득보장 수단이 없고, 임의가입 형태로 보험료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음

[농업인안전공제와 산재보험 비교]

구분	농업인안전공제	산재보험
가입대상	만 15~84세 농업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가입형태	임의가입	의무가입
보장수준	사망시 최대 5,000~8000만원(11년) 휴업급여 등 소득보장수단이 없음.	사망시(평균임금 1300일치 지급), 요양급여(치료비전액), 휴업급여(임금의 70 %),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재활비용 등

정부지원율	공제료의 50% (자부담 50%)	사용자 100% 부담 (자부담 ×)
사업시행주체	농협중앙회	근로복지공단
비고(2008)	81만명 (농업활동인구의 약50%)	3.8만명(농업인 가입자수)

자료 : 농업노동재해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2010)

● 농민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없어서는 안 될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농업노동에 따른 재해의 경우 그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산재보험처럼 요양급여, 농업노동결손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재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보장 수단까지 확보해야 함

약속

● 2009년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발의한 「농업노동재해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은 △ 농업인의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 재해 농업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보험시설 설치 · 운영, △ 재해예방, △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담고 있음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의 주요 내용]

○ 농업노동재해의 의미

- "농업노동재해"라 함은 농민이 농업노동에 관계되는 농기계·농기구·농약·시설물·토양성 병해충·화분·포자·분진 등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 "농업노동"이라 함은 농기계, 농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도작, 축산, 시설원예, 일반원예, 밭작물, 특작, 임업 등을 행함을 말한다.

○ 적용대상

- 대통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규정을 적용하면 실제 농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농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농민이 다수 존재하게 된다.
- 농업노동재해보험법에 적용되는 자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농민, 자영농민, 임차농민과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농민을 그 대상으로 포함한다.
-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재해율은 인구수가 아니라 농업 단위 면적에 비례하고, 재배 작물에 관계한다.
- 농업노동자의 경우 농업노동에 종사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 대상연령은 농업인 안전공제에서 기존에 인정하고 있는 영농 연령인 80세를 그대로 인

정한다. 단, 70세 이상은 50% 감액 기준을 적용한다.

○ 보험급여 적용 농업노동재해

- 농업노동사고 / 농업노동 질병

(농업노동관련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토양성 질병, 동식물 오염에 의한 질환, 소음성 난청 및 진동장애)

○ 보장되어야 할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농업노동 결손급여 / 장애급여 / 간병급여 / 사망급여

○ 가입방식 : 강제가입 방식

○ 재원조달 : 정부 50%, 농협 50%(본인부담액 농협 대납)

4 농민참여로 민주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❶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개혁

진단

●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2009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뀌고 전국 1,150여명의 회원조합장 중에서 선출된 291명의 대의원조합장이 농협중앙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선출하고 있음. (정관 제 47조 2항)

역대 정부	농협중앙회장	회원조합장(지역+품목)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정권)	농림부장관 추천 → 대통령 임명	농협중앙회장 임명 ← 농림부장관의 승인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전두환 정권)	〃	농협중앙회장 임명, 장관승인폐지
1988년 노태우 정권	전체 회원조합장 투표	조합원 직접투표
2009년 이명박 정권	대의원조합장 투표	〃

● 중앙회장 간선제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선거과정의 과열 혼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으나 중앙회장의 법적 권한은 줄었지만,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또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되면서 중앙회장과 회원조합 그리고 농민조합원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음. 중앙회장은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만을 관리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구조임. 금품선거・ 줄 세우기 등과 같은 선거과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회원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약속

●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지역농협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

● 농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총의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로 중앙회장 선거방식을 바꾸어 농협을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개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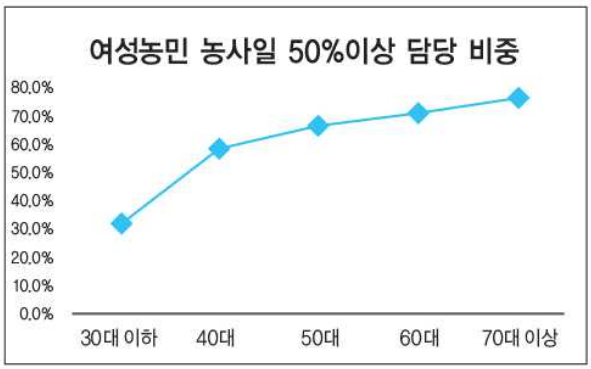
● 중앙회를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연합회로 재편하고 연합회(지역별, 품목별) 중심의 사업체계 확립하며 비사업조직화와 기능 강화 및 중앙회의 고유기능인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 · 사업 · 경영의 지도, 감사, 교육,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농정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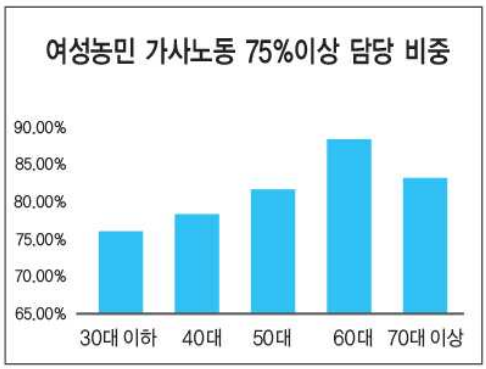
❷ 여성농업인 지위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진단

● 농가인구 중 여성이 51.1%이고(1,488천명, 2012년 통계청),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이 53%를 차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모성보호 및 삶의 질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2013년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여성농민의 평균 농사경력은 32.8년, 농사일 50% 이상을 담당하는 비중이 66.2%를 차지함. 여성농업인은 도시의 맞벌이 여성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음. 집안일도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으로 가사노동의 75%를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이 시급함





약속

-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 그에 맞는 사회경제적 지위보장
- 모든 농업 · 농촌 · 농민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실시
-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농민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보장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율 30% 이상 의무 보장)
- 고령여성농민의 전통지식을 자원화 (예시 : 전통 농가공 사업, 토종농사관련 지식 등)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관 배치 의무화
- 이주 여성농민들의 농촌정착과 농업후계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여성농민의 삶의 질 높여내기 위한 방안으로 바우처 제도 시행 (의료, 문화생활 이용)

❸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협치농정 실현

진단

- '농 · 어업회의소'는 "농 · 어업인의 민의를 수렴하여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조사와 연구, 교육과 지도, 국가와 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사업을 통해 지역의 농어업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농 · 어업정책 파트너"를 목적이자 정체성으로 삼고 있음
- 농업회의소는 "농 ·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며 농 · 어업정책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 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한정된 지역의 농 ·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반민 · 반관 형태의 농 · 어업인 자조 조직"의 성격을 지님

- 농식품부는 2010년 진안, 나주, 평창을 시작으로 매년 3곳의 시군을 지정, 현재 9곳의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음
- 농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도화하고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방안으로 상공회의소법이 제정되어 상공업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해 온 것처럼 법제화가 필수적임

[유럽형과 일본형 농업회의소의 특징]

구분	유럽형 농업회의소		일본형 농업회의소
	독일	프랑스	
위상 성격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상공회의소에 대응 독일농민총연맹(DBV)의 농업행정적 형태	농업인 자치조직 상공회의소에 대응 최상위 농업기구는 프랑스 농업위원회	농업인 자치조직(반관반민) 상공회의소에 대응 서독연방의 농업회의소를 모델로 삼음
조직	3단계 조직, 주 농업회의소가 핵심, 군지부 운영, 중앙의 농업회의소 연합회는 대의제	도-지역-중앙 3단계 계통조직, 도 단위 조직을 기초로 전국조직 구성	3단계 계통조직 : 시정촌 농업위원회(2,351), 도도부현 농업회의(47), 전국농업회의소(1)
사업	고유업무 : 지도상담, 농업교육 수탁업무: 일반 농정업무	고유업무 : 지도상담, 직업교육, 농촌관광 수탁업무: 없음	고유업무 : 경영지도, 농정활동 수탁업무: 농지행정 대행
재정	농민회비(25%), 주정부 보조금(50%), 서비스 수수료(상담료 등)(25%)	국고지원(토지세의 일부인 소위농업회의소세)(50%), 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업개발기금, 지도사업 등 자체 수익금	국고보조와 현, 시정촌 일반회계에 의존, 1998년 전국농업회의소의 국가보조금 비율 82.5%
농정 참여 방식	농정집행의 민영화 지방농정청과 업무 분담	파트너십 참여(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농정참여에 중점)	국가업무인 농지업무 대행, 건의, 답신의 형태로 농업인 의견 국가시책에 반영
설치 근거	주 차원의 설치법 제정 (주 정부의 선택사항)	1924년 중앙정부 차원의 설치법 제정	1951년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에 농업위원회, 농업회의, 전국농업회의소 규정
정부와 의관계	농정업무 수위탁	농정자문기구	농정업무 수위탁, 농정자문

약속

- 농업회의소법 제정으로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협치농정 실현
- 농업회의소는 농정방향 기조에 대한 정부와 농민단체 간 합의에 의해 추진
- 농민단체 및 유관조직간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한 연구 및 시범지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형 농업회의소의 기능과 제도에 대한 합의 필요

3

중소상공인 공약

맘 편히 장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골목경제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정의당은 가맹점과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며 갑질을 끝낼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 만든 이익이라면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무절제한 확장을 억제하며, 자영업자와 유능한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입니다.

1.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지키겠습니다
2.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돕겠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지킴이, 정의당

1.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지키겠습니다

❶ 복합쇼핑몰·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❷ 변종 SSM 규제, 사업조정제도 강화
❸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대폭 확대
❹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규제
❺ 모든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장

2. 중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돕겠습니다

❶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1%, 체크카드0%실현
❷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인하
❸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부담 경감
❹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원

1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겠습니다

❶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 허가제 도입

진단

● 1997년 4월 이전까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개설은 허가제로 운영되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유통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개설 허가가 등록제로 전환되었음. 대형마트와 할인점의 문어발식 확장은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다 줌

● 1999년 처음 들어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2012년 37조원으로 5배나 급증한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46조원에서 20조원으로 반토막이 남.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매출은 2010년 990만원 수준에서 2013년 877만원 수준으로 하락함. 전통시장의 점포당 매출은 2005년 1억 3,700만원에서 2014년 1억원으로 감소함

[2008~2012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변동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통시장	22조2천9백억	22조	21조3천5백억	20조9천7백억	20조5백억
대형마트	31조8천7백억	33조177억	31조3천8백억	35조9천4백억	37조1천8백억

출처 : 중소기업청 국회 제출자료

● 이에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의무휴업일, 영업시간 규제)가 시행되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대기업의 상품공급점(변종 SSM), 드럭스토어 등이 잇달아 신규 출점하고 있음

‖복합쇼핑몰 주변소매점 매출은 평균 46.5%(연평균 1억6천만원) 감소. 음식업종 79%, 의복신발가죽제품 53%, 개인서비스업 42%, 이·미용업 38% 감소 (소상공인진흥공단, 2014)

‖대기업 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 감소, 매출액은 평균 43.5% 감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아웃렛 포함)은 등록제 점포로, 시장 진입 과정에서 사실상 제약이 없음. SSM이나 대형마트 역시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1㎞ 이내에만 등록제로 입점이 제한됨.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며,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또한 형식적으로 심사·검토 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2013년 법 개정으로 1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나, 의무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함

약속

● 대규모 점포 등 개설시 상업지역내로 입지 제한

- 상업지역내에서도 대규모 점포 등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

●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출점 제한

- 주변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

● 대규모 점포 등의 월 2회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하는 등 영업 제한

- 위반 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❷ 변종 SSM 진출 규제, 사업조정제도 강화

진단

●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중소상인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제도에 따른 규제를 회피함으로서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 특히 △ 사업조정 신청기간은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후 90일 이내로 너무 짧고, △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완료기간은 조정신청일로부터 1년으로 너무 길며, △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만 가능해 중소상인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신청된 사업조정 737건 중 543건이 자율조정을 통해 처리되었는데, 이 중 443건의 자율조정 결과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중소기업청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대기업 등이 현행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상품공급점'은 매장의 소유주는 개인사업자이지만,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등 기존의 SSM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상품공급점은 현행법상 사업조정 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주변지역 중소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약속

● 현행 사업조정절차 간소화와 이행명령의 강제력 강화
  - 사업조정 신청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완료기간을 조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단축
  - 적합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 사업이양 권고, 공표 및 이행명령
  -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
  - 상품공급점을 대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정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❸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대폭 확대

진단

● 2006년 고유업종 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들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도소매업에 대한 대기업의 영역확대는 최근 중소자영업자의 소득 저하와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업합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며 권고사항

에 머물러 강제적인 구속력이 떨어짐. 즉, 대기업이 동의 해 주지 않는다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대기업이 합의에 반해 사업확장을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이 없음

●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로 지정된 적합업종은 5개에 불과하며, 동반성장위원회는 한해 예산의 40%가까이를 전경련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지금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73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신규업종 지정은 미미한 수준임

> ‖적합업종 신청 후 최장기간 계류 중인 문구소매업은 2007년 19,600여 개에서 2013년 13,500여 개로 6,100여 개 감소. 50㎡ 미만의 문구소매점 1,000여개 폐업
>
> ‖2010년~2014년 슈퍼마켓 1,730개, 베어링판매업 1,084개, 식자재도매업 984개, 계란도매업 750개가 폐업

● 지난 2월 2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빵집(제과점업), 플라스틱봉투, 중고자동차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화초및산식품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 7개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함. 하지만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18개 업종 가운데 빵집을 비롯한 7개 업종을 2019년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에 불과함

약속

● 현재 73개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 품목을 대폭 확대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 · 고시

-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적합업종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간소화와 신청자격 완화

●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 개시 · 확장할 경우에 제재 강화

-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
- 중소기업청장은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불이행시 2차적으로 주식의 처분, 기업분할 명령,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의 필요할 조치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

❹ 가맹점 · 대리점 ·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규제

진단

-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대표적인 갑질 행위는 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임
- 불공정거래 근절 관련 입법화는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 입점업체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은 부분적 반영,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만 일부 적용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은 미처리,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처리 등의 문제가 여전함

약속

-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집단소송제도 도입
  - 「하도급법」, 「대리점법」 외에 「가맹점법」, 「대규모유통거래법」 등에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대상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
- 「공정거래법」 상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및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도입
  - 법 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피해 당사자, 협동조합, 공익적 시민단체의 금지 청구제
- 「대리점공정화법」과 「하도급법」에도 단체 구성 및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의 담합금지 규정에서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은 예외로 인정
- 대기업-하청 · 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도입

※「공정거래법」,「가맹점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거래법」,「하도급법」등 개정

❺ 모든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 · 재산권 보장

진단

-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적용범위와 독소조항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는 임차상인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음. 상가임차인들에게 '상가'란 삶의 터전으로 창업 시 인테리어비용 · 시설비용 등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점포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함
-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4억 이상인 경우에도 임차상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가 최초로 도입됨. 하지만 임대차계약기간 연장 등 핵심적인 사항은 빠져있으며,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이 빠져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역시 제외하는 독소조항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음
- 한편,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리고 원주민이 내모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함. 성동구에서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든데 이어, 서울시는 △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 체결, △ 지역특성을 대표하는 앵커시설 설치, △ 장기안심상가 운영 등의 대책을 발표함.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 주요 OECD 국가들은 상가 임차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영업망 형성을 위한 영업비용 등의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함. 또한, 법정 임대차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 동규모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전비용, 영업개시 지원금, 임대료 차액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약속

- 임대차 보장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 제한, 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
  - 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인 환산보증금을 폐지하고 실제 계약한 보증금으로 변경
  - 현재 9%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하향 조정

- 상가분쟁에 대해 강제조정권한을 갖는 시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재개발, 재건축 관련 퇴거보상제도(영업장소 이전비용 또는 영업불가 손실비용) 도입

●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관련 재래시장 적용 제외 등 독소 조항 폐지
-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 상가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등 대규모점포의 권리금 적용 대상의 예외
- 건물주가 18개월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권리금 배상의무 면책 등

●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 결정 등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실시
- 상가임대차영향평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수립

> 상가임대차영향평가 후 예방대책의 내용) ① 입점 업종의 일정한 제한, ② 지역별 특성화사업 육성, ③ 마을공동체 복원, ④ 상생협력지역 선정, ⑤ 임대료 인상 억제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젠트리피케이션방지법」 제정 등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습니다

❶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진단

● 지난해 11월 2일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위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함
- 영세(연매출 2억원 이하)·중소(연매출 2~3억원)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7% 인하
- 일반 가맹점(연매출 3억원~10억원)은 평균 0.3% 인하(추정)

●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2억원 이하)과 중소가맹점(연 매출액 2억원~3억원)은 카드수수료율을 단일률(각각 0.8%/1.3%)로 적용해 모든 가맹점에 직접적으로 인하 효과가 발생함. 하

지만,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상한선(2.5%)내에서 카드사들이 개별 가맹점과 협상 등에 따라 각각 책정함. 또한, 현행 법령상 연 매출억 2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들은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없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추지 못함

-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6,700억 감소(영세·중소 4,800억원, 일반 1,900억원 추정)하고,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마트 등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함. 이에 올해 초 각 카드사들이 협상력이 없는 2억 이상 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 등의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바 있음

약속

- 영세·중소가맹점(우대 수수료율)을 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
-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상한선 인하, 중소상공인단체에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권 부여
- 가맹점단체에 부당계약 여부를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신용카드 수수료 1%로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0%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❷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건강보험료 인하

진단

-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고용보험도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경우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없음. 특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 및 납부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가입 유인

을 제고하고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566만 9,000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 6,399명으로 가입률이 0.3%에 불과함.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파산으로 인해 실직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에 건강보험료 부과로 실제 소득보다 과중한 건강보험료 부담. 반면, 일부 고소득층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 사례 발생

약속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두루누리사업 2' 도입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사업'과 동일하게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
  - 전체 지역가입자의 73%인 552만세에에게 평균 월 46,668원의 보험료 인하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건강보험법」 개정

❸ 자영업자 부채 부담 경감

진단

- 최근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이 감소하고 부재차 증가하는 등 경영환경 악화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2010년 평균 7,132만원에서 2014년 평균 8,995만원으로 증가함. 같은 기간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1.4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영업자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합) 규모는 519조 5천억원이며 차주는 252만 7천명에 달함. 이 중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중복 보유한 차주는 100만 8천명(399.9%), 330조 5천억원(63.5%)임.

한국은행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자 기업대출)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해 이를 포함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함

약속

- 공적 신용보증 확대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금리 대출 확대
-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상한이자 일치 및 20%로 인하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

❹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 지원

진단

-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탐욕을 제어하는 것과 더불어 자영업자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함께 도입해야 정책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음
- 우선,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임.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만, 지역노동청에 비해 숫자가 적고 소극적인 지원 업무만을 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역마다 소상공인 관련 모든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형유통업체는 소매 유통만이 아니라 도매 유통에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전통시장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질 좋은 지역 공산품 유통을 위해서는 지역 상인협동조합이 통합물류센터를 만들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약속

- 지역별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로 원스톱 서비스
  -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분쟁, 부채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 지역상권 마일리지 제도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공공 배달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

● 지역상인협동조합 주도의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 「유통산업발전법」의 지자체가 '통합물류센터' 조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소상공인의 조직화 · 협업화를 촉진하는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4

빈민공약

우리동네 거리가게 노점상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거리와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노점기본법으로 노점상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하며, 위생기준을 정비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의 음식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1. 노점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❶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점기본법 제정
❷ 국회 차원의 지자체 노점상생방안 마련
❸ 노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와 위생기준 마련

2. 노점상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❶ 행정대집행법 개정으로 노점단속 남용 규제
❷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전통시장내 노점상생대책

1 노점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❶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점기본법 제정

진단

- 도시의 역사와 함께 해온 노점은 도시 빈민과 서민의 주요한 생계수단이자 전통적인 생계형 자영업의 일종임. 동시에 여전히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비공식 부문임. 노점은 누구나 한번쯤 이용하는 우리 일상 속의 존재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함. 경제 악화와 빈곤 확대 속에서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 늘면서,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늘어나고 있음
- 노점의 영업장소인 도로의 점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노점정책의 방향이 서로 다름.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지자체는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음. 지역행사에 따른 대규모 단속, 절대금지구역의 확대, 민원을 이유로 한 지속적 단속, 허가제를 통한 노점의 축소 및 이전 등이 주요한 노점대책임. 지자체들은 신규노점은 막고, 기존노점을 점차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노점은 줄어들고 있음

[서울시 거리가게(노점상) 현황]

연 도	계	포장마차	손수레	차량노점	좌 판	기 타
2000년	18,464(100%)	1,809(9.8%)	6,037(32.7%)	1,900(10.3%)	8,718(47.2%)	-
2013년	8,826(100%)	869(9.8%)	2,071(23.5%)	736(8.3%)	2,770(31.4%)	2,380(27%)
2014년	8,677(100%)	851(9.8%)	2,067(23.8%)	638(7.3%)	2,771(32%)	2,350(27.1%)

- 하지만 도시의 역사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점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음. 노점기본법은 '존재하는 노점에 대해 인정'하고, 보행권 등 다른 권리보다 생존권이 우선하며, '공공의 거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노점상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제도와 정책을 사회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임

약속

- 노점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 노점상 생활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점기본법 추진

  ① 노점에 대한 인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 ② 지자체마다 다른 노점대책을 대신할 상생방안, ③ 노점상 생존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보행권 등 다른 권리와 조화, ④ 이를 바탕으로 노점단속 보다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

❷ 국회 차원의 지자체 노점상생방안 마련

진단

- 서울시는 노점 허가제 관련 노점단체 및 소속 회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① 현자리에서 ② 재산 및 주거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③ 최대한 보행폭을 확보하여 노점상의 생존권과 보행권이 상생하도록 하고 ④ 단체가입을 전제로 하여 허가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음
- 그동안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에서는 허가기준으로 규격 및 보행폭, 이격거리에 대한 논의 및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삭제하기로 했던 재산기준과 주거지기준을 다시 제시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 결국 노점정책은 노점상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거리환경 개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도의 경우 노점상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권리법안이 제정되어 각 지자체별로 노점상 주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을 위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약속

- 국회 내 노점정책포럼을 구성해 지자체 노점상생방안 마련
  - 노점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완화 및 용역폭력 근절방안 등
  - 지자체의 허가제의 문제점 개선과 노점상생위원회 구성 방안 등

❸ 노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와 위생기준 마련

진단

- 음식을 조리하는 노점은 점용허가를 받아도 식품위생법상의 문제가 발생함.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많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벌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위생상 문제가 아니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적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악의적 민원이나 구청 단속의 빌미가 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위생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있음. 또한 지자체도 노점 점용을 허가하면서 식품노점을 배제함. 현재 노점단체들은 스스로 위생지침을 세우고 위생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하는 곳도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일자리 창출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푸드트럭을 언급한 후, 지난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허가가 가능해짐. 최근 서울시도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해 1,000개 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푸드트럭의 사례를 보면 식품노점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약속

- 정부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 노점에 대한 위생교육과 위생인증제 도입 등 위생기준 마련

2 노점상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❶ 행정대집행법 개정으로 노점단속 남용 규제

진단

- 현재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분의 행정대집행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고 있는 현실임
- 실제 노점에 대한 대집행 과정에서도 적치물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부수는 형태로 집행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상의 심각한 손실을 만들고 있으며, 적치물을 압수하여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임. 최근 법 개정으로 야간 대집행이 금지되었나, 이 역시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자체가 갈등을 조정하고 노점상 생존권을 존중하도록 행정대집행의 최소화 및 집행절차의 의무화가 시급함

약속

-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 시행령의 '대집행 시의 준수사항'을 법으로 규정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
>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명시 또는 노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❷ 과태료 부과방식 개선, 전통시장내 노점상생대책

진단

- 현행 도로법상 과태료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할 경우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노점의 경우 최하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매일 부과가 가능함. 몇몇 지자체의 경우 연 1회 혹은 2회 일정금액을 정하여 노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나, 대부분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최근 노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태료를 매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노점상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됨. 이미 점용허가를 받지않은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는 '일시적 무단점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과태료 남용이 이뤄지고 있음. 극히 일부 지자체만 조례를 통해 도로법보다 낮은 과태료 기준을 두고 있음
- 한편 전통시장 안팎에 많은 노점상이 존재하고 있음.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장내 노점상을 내쫓았으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다시 노점을 유치하는 경우도 발생함. 노점상과 상인회가 함께 시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민원 및 대립이 첨예한 곳도 있음. 또한 중소도시 5일장의 경우 상인들은 대부분 노점상임

약속

- 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식 개선

  ① 과태료 부과 전까지 개선유도 기간을 두는 방식, ②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설정하여 금액은 낮추는 방식, ③ 거리가게의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변상금만 부과하는 방식, ④ '일시적 무단점용'에 기존 노점은 포괄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방식 등
- 전통시장 내 노점상 보호대책 마련, 중소도시 5일장 안정화/활성화대책 마련
- 통행권 등과 무관하거나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처리방식 개선

5

재벌개혁 공약

실종된 경제민주화, 정의당이 되찾겠습니다

우리는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이룰 것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제주체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겠습니다.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을 키워 스스로 땀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1.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2. 재벌 대기업의 갑질 · 특권 · 기득권 근절
3. 재벌의 독식 방지와 사회적 책임 강화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정의롭게

1.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❶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❷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소액주주와 근로자 추천 이사 선임
❸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실시
❹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❺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방안 강화

2. 재벌 대기업의 갑질 · 특권 · 기득권 근절

❶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 징벌적 조치
❷ 불공정 행위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 도입
❸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
❹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❺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3. 재벌의 독식 방지와 사회적 책임 강화

❶ 재벌 대기업 CEO 등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실시
❷ 과다 사내유보금 중소기업과 이익공유 재원 활용
❸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및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❹ 본사와 가맹점·대리점간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이익공유제 실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❶ 3년 내 기존 계열사 간 순환출자 해소

진단

- 순환출자는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며, 다시 계열사 C가 A에 대해 출자하는 식으로 환상형 출자구조를 형성함
- 현행 상법은 50% 초과지분 보유를 기준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도 적용)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음.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음. 이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또, 어느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그 기업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함
-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순환출자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순환출자 해소가 재벌의 소유구조의 개선을 가져왔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61개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가 있는 경우는 8개 그룹, 이 중 순환출자가 총수의 지배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산업개발 등 3곳으로 분류됨

약속

-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와 신규 순환출자를 포함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모두 금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주식을 처분토록 함
-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함

  - 실현방안 :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❷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소액주주와 근로자 추천 이사 선임

진단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들이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이는 회사 대표이사들의 집단성명 자체로도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종속적인 전문경영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임
- 국내 재벌대기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임. 그 결과 총수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계열회사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 그러한 총수의 의사결정이 마냥 올바를 수만은 없다는 것은 수많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음. 재벌 총수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회사 내에서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이 전혀 없다는 데 있음
-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와 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반 이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임. 지배주주나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임. 2014년 한 중앙지 기사에 의하면,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서울대 교수 9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이사회에서 단 한 건도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대주주의 횡포와 전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그 존재 이유와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음
- 기업의 위험은 자본을 댄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도 함께 부담하게 됨. 이러한 점에서 지배주주의 경영에 노동자가 적절한 수준의 견제역할을 해야 함. 지배주주의 전횡의 결과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노동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임

약속

- 감사위원의 전원 분리선출제 도입
- 재벌대기업 및 주요 금융회사 근로자대표 추천 사외이사 1인 의무 선임

  - 실현방안 : 「상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❸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실시

진단

-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이사 및 지배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임. 그러나 현재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지분 보유요건이 엄격하고(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의 지분 필요),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등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임
- 소수주주가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보완이 필요함. 전자·서면투표제 등 외부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집중투표는 1주당 이사후보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그 투표권을 한 명의 이사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가 보다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재벌대기업 계열사는 대부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음. 또한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 폰 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인 전자투표가 2010년 5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기업이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대부분 무용지물임
- 한편 회사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임무를 해태하거나 사익을 추구하여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가 다른 회사의 손실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다른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약속

-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집중투표제(누적투표제)와 함께 온라인 투표방식인 전자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해당 회사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를 행한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 및 다중장부열람권 도입

  - 실현방안 : 「상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

❹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진단

- 현재 국민연금은 500조원의 자산 중 약 100조원 가량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우량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롯데그룹 상장계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현재 롯데푸드 13.31%(단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 12.18%(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11.06%(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7.38%(단일 4대주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5%를 넘지 않아 공시를 하지는 않고 있으나) 롯데쇼핑 등의 일부 계열사의 경우에도 주요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님
- 국민연금은 주주 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 나아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 가능함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규정·모범규준을 시행하여 왔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Stewardship Code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도입하였음

약속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시행

  - 실현방안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근거규정 마련

❺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방안 강화

진단

-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경우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태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고, 그 때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원칙임

- 금산분리 강화 관련 금융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은 진척이 없으며,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을 빌미로 관련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였으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 제기

약속

-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방안 강화

  - 실현방안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2 재벌 대기업의 갑질 · 특권 · 기득권 근절

❶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 징벌적 조치

진단

-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대표적인 6대 갑질은 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
- 이와 관련 입법화는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 입점업체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은 부분적 반영,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

게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만 일부 적용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은 미처리,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처리 등의 문제

약속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한도 증액
- 하도급 계약 정보공개 및 대기업의 공공입찰 시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현황 및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입증 요구

❷ 불공정 행위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 도입

진단

-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조차 "공정거래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나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음. 이는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의미. 하지만 2013년 6월 감사원 · 중기청 · 조달청 등에 부당공동행위(담합)에 한해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질되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바 있음.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부당공동행위(담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관계, 가맹사업관계, 대형유통업체 납품관계 등 공정위가 관할하는 거의 모든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것임. 또한 피해 당사자나 소비자단체가 직접 경찰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다른 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
- 한편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힘들고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도 어려운 실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약속

-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피해 당사자나 공익적 시민단체에도 고발권 부여
-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❸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

진단

-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당국이 조사절차를 개시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음.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독과점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용도로 활용하는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약속

- 불공정거래 피해자 해당행위 금지 청구제 도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 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소비자기본법 개정)

❹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진단

- 재벌의 사익편취 행위는 이사 또는 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부당주식 거래와 회사기회 유용 일감몰아주기가 대표적임. 특히 재벌

의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일가의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임

- 2015년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삼성 · 현대차 등 5대 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13조 8,088억원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2015년 기준 삼성 · 현대차 등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계열사가 112개에 달하고 있음

약속

- 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율에 대한 차감 없이 거래비율 전체 증여세 적용
- 규제대상 지분 요건 20%로 하향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 적용 대상 확대
- 특가법상의 업무상 배임 · 횡령죄의 특례 조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

❺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진단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은 분식회계, 탈세,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 7939억원 규모의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1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한화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 받음
- 이재현 CJ 회장 횡령 · 배임 ·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음
- SK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을 횡령함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을 최종 선고 받았으나, 2015년 생애 두 번째 사면을 받아 형기 중에 풀려남
- 또한 재벌 일가는 형기 중에도 일반 국민과 달리 황제면회에 이어 형집행 정지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받고 있음

약속

- 재벌 등 이득액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는 특가법상 집행유예 불가능하도록 함
- 재벌 일가의 황제면회와 황제노역 금지,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 횡령·배임 등 특가법 상 징역형 이상 선고 받은 자는 기업체 임원 등록 제한

3 재벌의 독식 방지와 사회적 책임 강화

❶ 재벌 대기업 CEO 등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실시

진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 기업 임원들에 대해 최고임금제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었음. 2009년 독일 총선에서 수상 후보로 나선 사민당의 프란츠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임원 임금상한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0배로 제안하였음. 201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해 11.11%의 득표를 올린 좌파당의 장 뤽 멜랑숑 역시 세금제도를 개선해 임원 임금이 중간 소득의 20배가 넘지 못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음
- 2014년 10대 재벌 등기이사 1인당 평균연봉은 16억 81백만원이며, 전체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은 35백만원, 최저임금은 13백만원임. 2014년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 평균연봉은 2,676만원(월 223만원)으로 188명의 등기이사 평균연봉과 62.8배 차이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5인 이상 상용직 연평균 임금은 4,054만원(월 3,377,970원)로 10대 재벌의 5억 이상을 받는 등기이사의 평균연봉 16억 81백만원과 약 41.5배 차이임.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주40시간 기준 월환산액 1,088,890원)으로 연봉은 13,066,680원에 불과하며 이는 등기이사 평균연봉과 무려 128.7배 차이임. 정의당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공기업 임원 및 30배를 초과하는 민간기업 임원 연봉에

대해 연봉상한제를 도입하여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등기이사 연봉과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비교] (백만원, 배)

구 분	연봉	격차	비고
전체 노동자	26.76	62.8	188명의 등기이사 평균연봉 16억 81백만원
전체 정규직	34.68	48.5	
5인 이상 상용직	40.54	41.5	
최저임금	13.07	128.7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공시자료(2015. 8. 추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2014. 8),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14년)

약속

-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6,03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 3,240원
  - 2016년 기준 공기업은 10배(약 1억5천만원), 대기업은 30배(약 4억5천만원)으로 설정
  - 2014년 기준 4억 초과 근로소득자는 총 11,500명이고 이들의 근로소득 총 8조 9,351억원.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4억 초과분은 4조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2014년 기준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 연봉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은 총 130 곳

❷ 과다 사내유보금 중소기업과 이익공유 재원 활용

진단

- 2015년 3월 말 기준 30대 재벌기업 산하 268개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3천2억원임. 1년 전보다 38조2천378억원(5.7%) 증가함. 올해 정부예산(약 375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기업들의 곳간에 쌓여 있음
-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25%의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부터 기업의 임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했음. 기업들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기업 자신이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은 줄고 기업소득은 늘었음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가계소득분배율이 6.2%포인트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분배율은 5.7%포인트 높아졌음.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72%에서 2011년 62.3%로 축소됐음.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16.6%에서

23.3%로 커졌음. 이렇게 대기업에 과도하게 쌓여 있는 이윤은 대기업만의 생산성의 향상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 가계의 실질소득이 정체되고, 하청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의 이윤만이 급격히 쌓인 것임. 이는 가계, 즉 노동자와 하청 중소기업의 일정한 희생 위에 대기업만의 파이가 커졌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쌓아 둔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 국민경제의 선순환으로 환류 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에 120조원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87만명 정규직화에 10조4천400억원 △45만명 청년실업 해소에 16조원 △공공병원 기반 확충에 9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음. 네 가지 민생문제를 푸는 데 157조원이 필요하다는 뜻임.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710조원 중 일부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순환 될 경우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약속

-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 부활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산운용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대기업의 자산운용 소득에 대해 10% 추가 과세

  - 실현방안 : 「법인세법」 개정

❸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 및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진단

-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가 없음. 재벌대기업은 수요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이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음. 그 결과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재벌대기업으로 이전되게 됨. 이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삼성전자와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이윤율의 격차 증대가 그 단적

인 예일 것임. 2009년 삼성전자의 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율은 8.23%였고, 그 하청 부품업체는 5.66%였다. 2010년 1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율은 14.56%로 올랐지만, 하청 부품업체는 4.87%로 오히려 더 떨어져 이익률의 차이가 10%에 가깝게 형성되었음.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익은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거나 비용절감 등을 위한 협력기업의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

- 이와 같은 재벌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에 따른 보상은 중소기업으로 돌아오지 않게 됨.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이유임. 이처럼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제몫을 챙길 수 없는 구조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확보, 직원들의 임금인상이나 후생복리의 확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대기업-하청 · 협력업체간 수익성 격차가 늘면서 기업 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도 확대
  - 자동차 대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에 비해 1차 부품협력업체들의 월급은 절반, 3차 협력업체는 1/3 수준. 전자, IT업종 역시 대기업은 평균 월급이 493만원이나 1차 협력업체는 263만원, 2차 협력업체는 253만원, 3차 협력업체는 172만원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은 원가절감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은 미미. 이에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원청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

약속

-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 · 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 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 하청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관련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의 일정액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유도

- 실행방안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과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병행]

원청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와 공유하는 것과 함께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하고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함.

① 원청의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②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행위 근절, ③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방지, ④ 대기업의 공공입찰 시 하청협력업체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입증, ⑤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에 대한 임금 상한제(최저임금 30배) 실시, ⑥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⑦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하청·협력업체와 나누는 초과이익 공유제 실시, ⑧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❹ 본사와 가맹점·대리점간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이익공유제 실시

진단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만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이 가운데 제조업의 조직화율은 9.5%에 불과함. 그러나 일본은 조합 수가 4만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달함.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직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됨
-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인가절차가 까다롭고, 교섭력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대기업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 공동사업 등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일본이나 대만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 · 공동해외진출 · 공동기술개발 등 공동행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임.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하고 있음

-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대표적인 갑질 행위는 ①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④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임
- 불공정거래 근절 관련 입법화는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 입점업체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은 부분적 반영,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만 일부 적용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은 미처리,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처리 등의 문제가 여전함

약속

-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집단소송제도 도입
  - 「하도급법」, 「대리점법」 외에 「가맹점법」, 「대규모유통거래법」 등에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의 대상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
- 「공정거래법」 상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및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도입
  - 법 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피해 당사자, 협동조합, 공익적 시민단체의 금지 청구제
- 「대리점공정화법」 과 「하도급법」 에도 단체 구성 및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 의 담합금지 규정에서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 등은 예외로 인정
- 대기업-하청 · 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도입

- 실현방안 : 「공정거래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거래법」, 「하도급법」 등 개정

6

금융 · 산업공약

우리는 균형잡힌 산업,
정의로운 금융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금융, 균형적인 산업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금융기관 중심의 약탈적인 금융체제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마저 짓밟는 야만적인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층적이고 균형적인 산업전략을 추구할 것입니다.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은 함께 성장할 것이며, 공공 사회서비스와 풀뿌리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혁신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1. 과중채무 해소, 금융복지 확대
2. 지역금융 활성화로 금융격차 해소
3. 공익적인 금융생태계 조성
4. 균형있는 전략적 산업 육성

다차원 산업발전, 약탈금융 혁신

1. 과중채무 해소, 금융복지 확대

❶ 저소득층 부채탕감 및 부실채권 규제
❷ 채무자 우호적인 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지원
❸ 최고이자율 일치 및 20%로 인하
❹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2. 지역금융 활성화로 금융격차 해소

❶ (가칭)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❷ 광역시도별 도민은행 설립

3. 공익적인 금융생태계 조성

❶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억제
❷ 우리은행 및 국책금융기관 매각 중단
❸ 사모펀드·헤지펀드 규제 강화
❹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4. 균형 있는 전략적 산업육성

❶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
❷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공급체계 혁신
❸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로 주민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❹ GDP 10% 목표로 풀뿌리 사회적경제 육성

1 과중채무 해소, 금융복지 확대

❶ 저소득층 부채탕감 및 부실채권 규제

진단

- 지난해 3/4분기말 현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3.2조원(1.41%) 규모이며,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이 20.9조원(90.1%), 가계여신 2.2조원, 신용카드채권 1천억원
  -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5.3조원으로 여신정상화(1.6조원) 〉 대손상각(1.5조원) 〉 담보처분 등을 통한 여신회수(1.3조원), 매각(0.8조원) 〉 기타 출자전환 등(0.1조원) 순
- 2011년~2015년 상반기 은행권이 매각한 부실채권은 총 34조 2,175억원이며, 공적자산관리회사에 매각된 부실채권은 2조7,374억원(전체의 8%)에 불과한 상황
  - 민간자산관리회사(22.7조원), 대부업체(1조7,637억원), 저축은행(1조6,785억원)에 매각
  - 청년(20~35세)이 차주인 부실채권을 매각한 규모는 총 4,019억원인데, 민간자산관리회사가 1,718억원이고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도 각각 866억원/650억원을 매각
- 2010년 ~2015년 3월 바은행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총 4,121억 원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함. 매각가는 120억원으로 미상환원금 대비 2.9% 수준 (강기정 의원실)
- 은행에서 매각한 부실채권이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 되는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도 모르게 채권자가 대부업체 등으로 바뀌면서 부당한 추심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음.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한 채무자 중 약 54%는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로 총 채무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국회입법조사처)
- 한편, 부채를 보유한 저소득층은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임. 저소득층은 대출을 통해 생활비나 가계생활에 긴급히 요구되는 지출을 하고 있으며 감소하고 있는 소득 분을 차입을 통해 채우고 있는 상황

약속

- 채무자 중심의 대책으로 채무자의 회생 및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

①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감독 강화

- 개별 은행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부실채권 매각기준, 매각절차 등의 사항을 법제화
- 파산 · 면책 · 사망자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개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신용회복 또는 확정이 결정된 채권 등은 매각 금지

② 소멸시효 완성채권 거래, 추심 금지

-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물론 이런 채권을 사고파는 것도 금지

③ 저소득층 부실채권 탕감

- 공적기구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 은행에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대손상각 등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방안 검토

❷ 채무자 우호적인 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지원

진단

-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다중채무자가 15만 명 늘어났음. 다중채무자의 총 채무금액도 338.7조원에 달해 1인당 평균 9932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업권별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이 증가세를 주도함
- 다중채무자의 은행 대출 잔액이 8.4조원 늘어날 동안, 비은행권(보험 · 상호금융 · 저축은행 · 여신전문회사)의 대출 잔액은 두 배에 가까운 15.8조원 증가했음.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잔액이 각각 8.2조원, 4.4조원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함

[다중채무자(3개 금융기관 이상 대출보유자) 현황] (자료 : NICE평가정보)

(단위 : 조원, 만명)

연 도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말	2014년 말	2015.3월
금 액	310.0	308.7	312.8	333.2	338.7
차주수	336	333	326	337	341

●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층은 가계부채가 대부분 생활자금으로 쓰여 자산 감소 → 부채 증가 → 신용도 하락의 악순환에 처함. 과중채무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제도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채권 금융기관에 유리한 구조

● 개인소득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와 이자 지급 증가, 복지비 지출의 정체 또는 축소, 높은 실업률 등 앞으로 과중채무자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과도한 부채 덫에서 채무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약속

●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단체 설립
  -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 · 중지)
  - 압류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 및 수준 재정비
  -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절차 진행
  -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
  - 신용불량 등록기간의 축소 및 절차 간소화

●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지위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책 및 서민금융제도 개선
  - 채무조정대상 범위 확대 및 차입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자금 확대
  - 휴면예금을 활용한 신용회복기금 조성을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법 제정

● 지자체별 금융복지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신용회복 및 자립 지원
  - 불법 사금융피해 구제 및 과다채무 조정을 위한 재무상담 및 지원
  - 금융지원, 복지정책과의 연계로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터널형 지원체계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5개월간 321명의 파산 면책을 도왔으며, 면책된 부채의 총 규모는 580억 원임. 면책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83%가 무직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평균 소득은 46만 원인 반면, 평균 부채 액수는 연체 이자까지 불어나 1억 원이 넘는 상태였음. 이들이 센터에 신청 한 후 파산 면책을 받을 때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파산 면책을 하는 기간이 1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과 비교해 매우 신속한 절차임.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빚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임대 주택 입주 혹은 생계비 보조, 일자리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음

❸ 최고이자율 일치 및 20%로 인하

진단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국내 사금융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금융업체는 번성함. 금융기관에서 배제당한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의 피해를 당함
- 고금리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금리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최고 금리가 너무 높고 적용 대상은 너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짐. 게다가 대부업과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은 대부업법의 법정이자율 연 27.9%가 적용되는 반면, 개인 간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제한법 연 25%가 적용되는 차이가 발생함

[외국의 이자 규제 사례]

- 일본은 최고 금리를 15~20% 수준에서 규제
- 미국의 경우 뉴욕 주가 연 16%, 캘리포니아 주가 연 10%로 규제
-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이자 상한으로 규제

약속

-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을 20%로 일괄 인하
  - 무등록 대부행위의 이자율은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규정
-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일원화

❹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진단

- 그동안 금융감독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하였으나, KIKO 사태 및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

요성이 커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및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

-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영업행위 감독)을 동시에 규율함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로 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을 우선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커짐
- 금융감독원은 민원위주의 단편적인 소비자보호 접근방식과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분쟁조정제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으로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약속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기능별 규제체계로 업권별 규제체계에서 발생하는 규제공백, 규제차익 문제 해소

2 지역금융 활성화로 금융격차 해소

❶ (가칭) 지역금융 활성화법 제정

진단

- 197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역간 불균형이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확대. 이처럼 지역간 격차가 커진 이유의 하나는 자금의 수도권 집중.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의 대형은행들은 대형화 정책으로 몸집이 더 커진 반면 지역은행들의 역할은 크게 축소

●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등은 “돈 가뭄” 현상. 반면, 이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초과 수익을 누리고 있음. 자금의 수도권 집중이야말로 지역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자금의 균형배분은 지역 균형발전의 전제조건

약속

● (가칭) 지역금융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농협, 우체국, 금융공기업 등에 우선 시행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산용평등기회법, 일본의 금융평가법을 참조하여 제정

●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서민과 지역주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일정하게 낮추는 의무를 부과
  - 지방정부에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킬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
  - 대형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

❷ 광역시도별 도민은행 설립

진단

●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형은행에 지역 금융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지역에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함. 지역은행을 만들어 지역자금이 이를 축으로 선순환 하도록 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믿을만한 버팀목 역할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전북에만 지역은행이 있으며, 제주, 강원,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경북, 울산, 경기, 인천에는 없음

약속

● 현재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부터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 추진
  - 지방의회, 시민단체, 상공인단체, 노조, 전문가로 도민은행 설립 위원회 구성, 추진
  - 지역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을 되살리는 방안 검토
  - 중소상공인, 시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로 이사회(공동운영위원회) 구성

● 광역시도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지역은행의 최저자본금 250억 원. 지역은행이 없는 12곳에 최소 규모의 지역은행을 설립할 경우 3,000억 원 필요. 정부와 지방정부가 30%를 출자하면 900억 원 필요

3 공익적인 금융생태계 조성

❶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억제

진단

● 지난해 11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4.8조원에 달하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유형은 변동금리로 전체 대출 잔액의 66.2%(261.3조 원)을 차지함

● 지난해 9월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70%에 근접해 OECD평균(130.5%)보다 40%p 높은 수준임. 박근혜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3년 말 160% 수준에서 5%p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결과는 2년 만에 10%p 증가

● 특히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2013.12~2015.6)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취급액이 200조원 증가해 2014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10.4%. 30대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43.6조원)의 30%를 차지(잔액기준), 미래세대까지 과도한 빚을 끌어 쓰고 있음

● 가계부채가 급증함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있음. 이는 결국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에 절실한 내수 활성화의 발목 잡고,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로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이중 금리인상 위험에 노출된 대출이 전체의 95.7%(378.1조원)를 차지함. 만약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하면 빚을 낸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대출규모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자를 중심으로 부실화 될 가능성

*변동금리 261.3조원(66.2%), 혼합금리 116.8조원(29.6%)

약속

- 부동산규제(LTV) 완화 반대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법제화
  - 부동산 경기부양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LTV 완화 반대
  - 주택담보대출의 약탈적 대출을 청산하기 위해 DTI규제를 시행령이 아닌 법제화
-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채권을 매입 후 채무자에게 장기모기지로 전환

❷ 우리은행 및 국책금융기관 매각 중단

진단

- IMF 구제금융 제공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융기관 사유화. 현 정부는 금융산업을 통한 성장정책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금융기관 사유화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보증기관 등의 사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제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공공금융기관을 매각할 경우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외국 사모펀드, 국내 재벌 등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 매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 금융기관 사유화와 병행해서 추진되는 금산분리 완화로 외국자본과 재벌에 의한 금융지배가 더욱 심해질 것임
- 재벌들이 금융산업을 사유화하면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예금 형태로 제공한 신용을 무기로 무한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에 패퇴한 재벌들의 구제비용은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끼치게 될 것임

약속

- 우리금융지주 매각중단 및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철회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등의 지분매각, 통폐합 계획 철회
- 정부기관, 연기금의 은행 지분 소유 및 공적 개입 확대, 우리은행 우리사주 주식 확대

❸ 사모펀드 · 헤지펀드 규제 강화

진단

-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서 거액의 자금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사회기반시설(SOC), 무기회사 등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자유롭게 투자. 우리나라는 2004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제도의 도입을 유도한 이래, 2011년에는 이른바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 도입을 허용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진개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시스템 위험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 따라 여러 나라들은 이들 펀드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려 함
-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 또는 불법자금의 이동이나 운용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사모펀드는 단기경영을 조장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 인력을 실업자 대열로 몰아냄. 또한, 론스타 사태에서 보듯 사모펀드는 투자 주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기도 어려움

약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 폐지
  - 차입한도, 파생상품 거래 한도 등
- 역외 소재 사모펀드, 헤지펀드에 대한 허가제 도입

❹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진단

- 현대 금융제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국민들의 자산, 부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중앙은행이 펴는 금융정책이 부의 분배와 흐름에 주는 영향의 강도가 커짐. 한국은행의 의결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금리를 결정함으로써 특정한 계층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펼 수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덕목임
  -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의 위원(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 1인, 금융위원장 추천 1인,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전 1인,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 1인)으로 구성되고 노동자와 국민을 대변할 대표는 없는 상황
  -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현행의 금통위 구조를 바꿔야 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권한과 감독 실패에 따른 사후처리 권한까지 가짐.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결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이에 따라 정책과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임

약속

- 금융통화위원회에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 이상 포함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기구로 전환
-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 직무유기, 배임행위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4 균형 있는 전략적 산업육성

❶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좋은 일자리 창출

진단

- 한국경제는 변화와 혁신을 말하면서도 그동안 불균등 발전전략에 기반 한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즉 과거의 관행이 고착되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과소투자 등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경제 활력이 사라져가고 있음
- 그간 한국 경제의 현실은 양질 모든 측면에서 성장과 고용, 투자가 정체되고 있으며,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청년실업의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 기업, 정부 모두에게서 부채가 증대하는 현상이 일반화
- 또한 한국경제의 경제적 지배를 하는 재벌의 3대 세습이 진행되면서, 슘페터적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의 약화되는 상황은 한국경제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커다란 걸림돌

약속

-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과 장기투자 로드맵 마련
- 전기자동차, 바이오산업, ICT, 녹색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의 전략적 지원체제 구축
  - 시장실패, 과소 투자되고 있는 미래산업 인프라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
  - 교통환경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등 투자
  - 미래성장산업 분야 R&D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확대, 공적 엔젤 투자
  -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보증, 산용보증 체계를 지역별 또는 경쟁적 체계로 재편

❷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공급체계 혁신

진단

-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에서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등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양 산업으로 또는 첨단산업과 대별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
- 전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전후방연쇄효과가 크고, 취업유발 효과가 커 내수기반 경제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 (뿌리산업의 취업유발효과 : 10억원 당 7.03명)

뿌리산업과 타산업의 전후방효과 비교

구 분	뿌리산업	화학제품	전기전자	일반기계	정밀기기
감응도계수	2.55	2.28	1.27	0.76	0.49
영향력계수	1.38	1.24	1.26	1.23	1.15
상대적 전후방 유발효과	후방 대비 전방파급효과 大 ⟷ 전방 대비 후방파급효과 大				

- 세계 각국은 제조업 근간을 다지기 위해 제조업 발전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체적 지원체제 마련
  - **미국)** 첨단 제조업 구상(AMI), **일본)** 일본산업재흥 플랜, **독일)** Industry 4.0, **중국)** 중국제조 2015
- 정부는 2020년까지 1만개 스마트 공장 건립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사업전반에 걸친 디자인과 추진주체, 자본투입체제 구축 없이 단순히 공장의 진화로만 이해되는 측면

약속

- 「한국 제조업 혁신전략」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스마트산업 인프라체제 구축
  - IT · SW 융복합과 생산공정혁신을 선도하는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15,000개 설립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혁신네트워크 등 기술혁신 지역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화
- 각 지역별 특화산업에 맞게 제조업 첨단연구소 설립 및 클러스터 구축 · 운영
  -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및 지역기업, 거점 고등교육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마이스터교 확대, 전문대 교육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숙련인력 육성
  - 뿌리산업 분야의 전문특성화 마이스터 고교의 확대
  - 직업계교 졸업 후 중견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4년간 월 30만원 취업장려금 지급
  - 특성화된 전문대학 교육의 질 향상 및 등록금 경감 조치

❸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로 주민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진단

-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내수진작에 영향을 미쳐 불균형한 한국경제를 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산업이며, 국민의 복지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현재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으로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연평균 5.7% 이상 인력수요가 늘고, 특히 돌봄과 보건복지 분야의 성장 폭이 클 것으로 전망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00만명이나 월 평균 임금은 202만원 수준이며, 저임금 비중이 39.2%. 돌봄 · 재활 · 상담 분야는 113만원, 저임금 비중 70% (2013년, 전국사업체 조사)

약속

- 사회서비스 활성화 OECD 평균 수준으로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 확대
-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민관협력으로 통합적, 공익적 공급체계 구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생산과 복지가 결합해 지속 가능성 제고
  - 사회적 경제조직과 사회서비스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굴을 위한 지원 및 정부의 공공조달 등을 통한 간접지원 확대
- 신규 사회서비스 확충, 서비스 향상을 위한 R&D 투자로 일자리 창출
  - 영유아발달, 노인치매 등 조기개입을 통해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 노후설계, 문화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❹ GDP 10% 목표로 풀뿌리 사회적경제 육성

진단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양극화 해소와 함께 공동체 복원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약속

- 풀뿌리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하고 목표 달성을 관장
  - 주요정책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심의·조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지원
- 정부 부처간 통합적,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 해외사례 연구 및 국내연구 지원, 학교교육 및 시민교육, 유관 종사자 교육·훈련
- 광역시도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 강구
  - 금융 수급 및 전달체계 구축, 재화·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 촉진과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

7

균형발전 공약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입니다

정의당은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을 추구합니다.
지역에서 교육과 복지를 맘껏 누리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튼튼한 풀뿌리 산업기반 확충과 함께 교육과 복지 투자로
일자리-교육-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1. 튼튼한 지역 산업기반 확충
2. 지역에 뿌리를 둔 균형발전 토대 구축
3.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 해소

일자리-교육-복지의 선순환 균형발전

1. 튼튼한 지역 산업기반 확충

❶ 중앙-지방 협력으로 지역특화 미래산업 육성
❷ 지역 뿌리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❸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 및 공공 R&D 균형투자

2. 지역에 뿌리를 둔 균형발전 토대 구축

❶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로 주민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❷ GDP 10% 목표로 풀뿌리 사회적경제 육성
❸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❹ 시도별 도민은행 설립 및 지역금융 활성화
❺ 정부책임형 대학개혁으로 지방대학 육성

3.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 해소

❶ '시도 공공의료벨트' 구성으로 서울-지방 의료 격차 해소
❷ 사망률 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대책으로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

1 튼튼한 지역 산업기반 확충

❶ 중앙-지방 협력으로 지역특화 미래산업 육성

진단

- 그동안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역발전정책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지방정부가 유사한 특구를 경쟁적으로 남발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실패.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며 수도권으로 청년층 등 인구집중 현상 지속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을 육성하거나 풀뿌리 사회적경제와 지역밀착 복지경제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다,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 같은 메가 이벤트나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토건사업 등 단기 일자리에 치중
- 2015년 창조경제 예산은 총 8.3조 원에 달하나, 창조경제센터 등의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전혀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중복지원 등의 문제 발생
  - 창조경제 성과를 단기간에 내고자 사업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기업을 우선 끌어들여 정부주도로 추진. 대기업들은 정부요청에 소극적 · 제한적 수준에서 투자와 참여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중소 · 벤처기업 또한 명확한 유인구조가 미비한 상황

기업 기술혁신 인식 조사 결과 (한국일보&한국산업기술진흥협의회, 2015.8.23.)

정부 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 주도 · 단기성과 위주 정책 추진이 79%의 압도적 응답을 보였고, 그 외 유사정책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처별 협력 부족 등을 꼽았음. 특히, 정부지원 제도 경험 기업은 41.4%에 불과했으며, 지원제도를 활용치 못한 기업들은 정보 및 전문인력 ·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했음.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기술혁신 효과에 대해 65%가 부정적 응답을 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음.

※ 기술혁신 부설연구소 운영 중 인 631개 기업 대상(중소기업 약 91%) 조사

약속

- 미래산업에 대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과 장기투자 로드맵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협의를 통해 지역별 선택과 집중 전략 추구
  -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 친환경스마트카, 재생에너지 등 지역별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 시장실패, 과소투자되고 있는 미래산업 인프라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
  - 교통환경에너지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등 투자
  - 미래장산업 분야 R&D투자 등에 대한 조세, 투자 인센티브 체제 구축
  - 미래산업에 대한 기술보증, 산용보증 체계를 지역별 또는 경쟁적 체계로 재편
- 광역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 통합 운영
  - 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중소기업 ·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대기업과 노동자-지역주민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체 구성
-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설립으로 기술혁신 지원
  - 정책홍보 및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원스톱센터 설치 · 운용
  - 제출서류 및 행절절차를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이루어 온 성과 및 업적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축적 역량 검증 중심으로 간소화
  - 지역 중소 · 벤처기업 유인 다양한 인센티브 혹은 구체적 전략 도출

❷ 지역 뿌리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진단

-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에서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등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양산업으로 또는 첨단산업과 대별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
- 전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전후방연쇄효과가 크고, 취업유발 효과가 커 내수기반 경제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 (뿌리산업의 취업유발효과 : 10억원 당 7.03명)

뿌리산업과 타산업의 전후방효과 비교

구 분	뿌리산업	화학제품	전기전자	일반기계	정밀기기
감응도계수	2.55	2.28	1.27	0.76	0.49
영향력계수	1.38	1.24	1.26	1.23	1.15
상대적 전후방 유발효과	후방 대비 전방파급효과 大 ⟷ 전방 대비 후방파급효과 大				

● 세계 각국은 제조업 근간을 다지기 위해 제조업 발전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체적 지원체제 마련

- **미국)** 첨단 제조업 구상(AMI), **일본)** 일본산업재흥 플랜, **독일)** Industry 4.0, **중국)** 중국제조 2015

● 정부는 2020년까지 1만개 스마트 공장 건립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사업전반에 걸친 디자인과 추진주체, 자본투입체제 구축 없이 단순히 공장의 진화로만 이해되는 측면

약속

● 「한국 제조업 혁신전략」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스마트산업 인프라체제 구축

- IT · SW 융복합과 생산공정혁신을 선도하는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15,000개 설립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혁신네트워크 등 기술혁신 지역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화

● 각 지역별 특화산업에 맞게 제조업 첨단연구소 설립 및 클러스터 구축 · 운영

-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및 지역기업, 거점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마이스터교 확대, 전문대 교육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숙련인력 육성

- 뿌리산업 분야의 전문특성화 마이스터 고교의 확대
- 직업계교 졸업 후 중견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4년간 월 30만원 취업장려금 지급
- 특성화된 전문대학 교육의 질 향상 및 등록금 경감 조치

❸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 및 공공 R&D 균형투자

진단

●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이 여전히 낮으며, 상향식의 고위험 · 창의적 연구 보다

미래부가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에 개입하여 추격형 · 단기성과형 연구지원

- OECD '과학기술전망'(2014)은 한국의 공공 R&D는 실용연구과 기술개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2015)은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R&D 생산성이 2012년 기준 1조원 투입시 132억원 기술료 수입 발생에 그친다고 분석

● OECD 국가들은 지역성과 측정 및 지역의 경쟁력 및 복지 증가를 위해 지역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음. OECD 국가들의 전체 공공 투자 중 절반 정도를 지방정부가 투자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방정부 공공투자 비중은 4.0%로 최상위권

● 지역별 과학기술역량 진단(KISTEP) 결과, 수도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은 민간 부문 R&D 강점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충청권은 공공 부문 R&D 강점 지역이었고, 강원권과 제주권은 공공 R&D 약점지역으로 평가. 지방자치단체별 강점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전략 수립 필요

● 상위 10% 지역 PCT 출원 비중은 전체 50.3%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지역별 격차

● 우리나라의 외국 지역간 특허협력 비중은 5.2%, 공동 특허 비중은 1.9%로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 수도권 연구원 수는 전체의 63.3%, 서울지역 이공계 고급인력 배출 비중은 46.4% 차지

● 2009~20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광역시도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편중 현상

- 2014년 국가 R&D 예산은 총 4,147억원으로 대전(29.5%), 서울(22.6%), 경기(15.1%) 등 수도권과 대전을 합하면 전체 예산의 69.7%를 차지

[2008~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도권	서울	25,751	25.7	26,467	23.1	29,606	22.7	35,714	25.2	37,481	24.7	38,577	23.8	38,053	22.6
	인천	2,980	3.0	3,561	3.1	3,722	2.9	3,587	2.5	3,548	2.3	4,014	2.5	4,162	2.5
	경기	16,004	16.0	17,342	15.1	19,284	14.8	21,941	15.5	23,605	15.5	26,003	16.1	25,530	15.1
	소계	44,735	44.7	47,369	41.4	52,612	40.4	61,242	43.2	64,635	42.5	68,594	42.4	67,744	40.2
대 전		27,511	27.5	35,388	30.9	39,483	30.3	41,037	28.9	44,052	29.0	47,122	29.1	49,823	29.5
소 계		**72,246**	**72.2**	**82,758**	**72.2**	**92,095**	**70.7**	**102,279**	**72.1**	**108,686**	**71.5**	**115,716**	**71.5**	**117,568**	**69.7**
영남	부산	3,435	3.4	3,583	3.1	4,685	3.6	4,677	3.3	5,158	3.4	5,172	3.2	5,706	3.4
	대구	2,640	2.6	2,728	2.4	3,277	2.5	3,692	2.6	3,913	2.6	4,709	2.9	5,225	3.1

	울산	849	0.8	1,026	0.9	1,386	1.1	1,384	1.0	1,641	1.1	1,862	1.2	2,328	1.4
	경북	2,666	2.7	3,116	2.7	3,960	3.0	5,223	3.7	6,229	4.1	6,448	4.0	7,028	4.2
	경남	4,687	4.7	6,672	5.8	7,058	5.4	7,189	5.1	7,388	4.9	7,820	4.8	7,156	4.2
호남	광주	2,581	2.6	3,172	2.8	3,146	2.4	3,331	2.3	3,618	2.4	3,725	2.3	4,147	2.5
호남	전남	1,704	1.7	1,550	1.4	1,994	1.5	1,906	1.3	1,585	1.0	1,863	1.2	2,248	1.3
호남	전북	2,211	2.2	2,424	2.1	2,464	1.9	2,538	1.8	2,970	2.0	3,117	1.9	3,436	2.0
강원		1,619	1.6	2,173	1.9	3,145	2.4	1,886	1.3	1,910	1.3	2,052	1.3	2,357	1.4
충청	충북	1,738	1.7	2,003	1.7	2,647	2.0	3,195	2.3	3,386	2.2	3,818	2.4	4,166	2.5
충청	충남	3,191	3.2	2,744	2.4	3,690	2.8	3,774	2.7	4,669	3.1	4,665	2.9	4,007	2.4
제 주		592	0.6	580	0.5	659	0.5	718	0.5	827	0.5	833	0.5	1,098	0.7
세 종		-	-	-	-	-	-	-	-	-	-	93	0.1	2,182	1.3
소 계		27,913	27.8	31,771	27.7	38,111	29.1	39,513	27.9	43,294	28.6	46,177	28.7	51,084	30.4
합 계		100,159	100	114,529	100	130,206	100	141,792	100	151,980	100	161,893	100	168,652	100

※ 출처 :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장병완 의원실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주) 지역별 투자현황 분석은 지역 구분이 수도권, 대전, 지방으로 분류가 가능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이며 2014년도에는 16조 8,649억원이 대상금액(지역 구분이 해외 또는 기타인 경우는 제외)

- 기타는 과제의 분산수행(한 과제를 여러 지역에서 수행)으로 지역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 2013년 지역 구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추가
- 2008년까지 분석대상에서 기금이 제외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기금을 포함하여 분석

약속

- 2018년까지 기초 · 원천기술 R&D 투자 비중 45%로 확대
  - 도전적 ·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 강화' 중심의 R&D 환경을 구축
  -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 기초연구에서 상용화까지 가치사슬 단계별 전방위적 지원 강화
  - 기존 중장기 R&D 투자전략 재평가
  -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선정 및 자립화
- 중앙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편중 해소와 투자 확대
  - 매년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진단 · 평가하고 지역별 맞춤형 과학기술 지원사업 추진
-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지방협의회와 협력 강화

- 중앙은 거시적 계획 수립과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담당, 지방은 지방의 특성을 살린 세부적인 기획과 관리를 실행하는 연계체제 구축

● 지역기업 과학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별 특화대학 선별, 지원 확대

- 지역대학(이공계), 연구기관, 지역기업,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해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
- 지역의 이공계 석박사 인력은 지역기업체에 우선 채용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유출 방지
- 지역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패턴에 따라 전략산업과 연계 · 발전이 가능한 차별화 전략

● 타지역 및 와국지역과 실질적 협력 및 공동연구에 과학기술 역량증진 인센티브 제공

- 연구개발 투자가 미미하거나 기반이 취약한 산업은 지역 간 벤치마킹 등 상호 보완

2 지역에 뿌리를 둔 균형발전 토대 구축

❶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로 주민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진단

●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내수 진작에 영향을 미쳐 불균형한 한국경제를 조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산업이며, 국민의 복지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현재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으로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연평균 5.7% 이상 인력수요가 늘고, 특히 돌봄과 보건복지 분야의 성장 폭이 클 것으로 전망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00만명이나 월 평균 임금은 202만원 수준이며, 저임금 비중이 39.2%. 돌봄 · 재활 · 상담 분야는 113만원, 저임금 비중 70% (2013년, 전국사업체 조사)

약속

- 사회서비스 활성화 OECD 평균 수준으로 사회서비스의 고용비중 확대
-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민관협력으로 통합적, 공익적 공급체계 구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생산과 복지가 결합해 지속 가능성 제고
  - 사회적 경제조직과 사회서비스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굴을 위한 지원 및 정부의 공공조달 등을 통한 간접지원 확대
- 신규 사회서비스 확충, 서비스 향상을 위한 R&D 투자로 일자리 창출
  - 영유아발달, 노인치매 등 조기개입을 통해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
  - 노후설계, 문화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 구축

❷ GDP 10% 목표로 풀뿌리 사회적경제 육성

진단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양극화 해소와 함께 공동체 복원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약속

- 풀뿌리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하고 목표 달성을 관장
  - 주요정책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심의·조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지원

● 정부 부처간 통합적,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 해외사례 연구 및 국내연구 지원, 학교교육 및 시민교육, 유관 종사자 교육 · 훈련

● 광역시도는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운영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 강구

  - 금융 수급 및 전달체계 구축, 재화 ·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 촉진과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

❸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진단

● 현행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도입 당시 취지가 퇴색되면서 균형발전 가치를 거의 상실

● 국가 전액보조가 아닌, 지방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으로 재정능력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는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 또한 사업 집행률에 따라 다음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에 이러한 상황은 악순환 반복

●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원규모는 이명박 정부 이후 9~10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존 국고보조금적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어 포괄보조금의 역할 미비

●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적 부지매입비 확보는 큰 부담

약속

● 특별회계 명칭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치 회복

  - 생활기반계정은 지역개발계정으로, 경제발전계정은 균형발전계정으로 변경

  - 변경된 계정에 맞게 사업의 명칭과 방향 변경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확대 및 포괄보조금 성격 강화

  - 총 재원규모를 정부지출 대비 2.7%(10조원)에서 4%(15조원) 수준으로 확대

  - 진정한 포괄보조금 제도로 전환 : 지역별 포괄보조금 총액 제시, 실질 집행률 제고를

위해 포괄보조사업별 국고보조율 상향, 탄력적 적용 여지 확대

● 재정여건 열악지역 보조율 상향 및 부지매입비 지원

-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감안해 차등보조율 설정
- 성장촉진지역 및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시 자치구에 부지매입비 일부 지원

❹ 시도별 도민은행 설립 및 지역금융 활성화

진단

● 197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역간 불균형이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확대. 이처럼 지역간 격차가 커진 이유의 하나는 자금의 수도권 집중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의 대형은행들은 대형화 정책으로 몸집이 더 커진 반면 지역은행들의 역할은 크게 축소. 현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총 수신)의 30% 가량은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

●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등은 "돈 가뭄" 현상. 반면, 수도권으로 유입된 자금의 많은 부분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가격상승 초래. 자금의 수도권 집중이야말로 지역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자금의 균형배분은 지역 균형발전의 전제조건

●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형은행에 지역 금융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지역에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 지역자금이 지역은행을 축으로 선순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믿을만한 버팀목 역할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전북에만 지역은행이 있으며, 제주, 강원,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경북, 울산, 경기, 인천에는 없음

약속

● 지역 · 서민금융활성화법 제정하고 농협, 우체국, 금융공기업 등에서 먼저 시행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신용평등기회법, 일본의 금융평가법 참조
- 대형금융기관들에게 서민과 지역주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일정하게 낮추는 의무를 부과

- 지방정부에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킬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
- 대형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현재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부터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 추진

- 지방의회, 지역시민단체, 지역상공인단체, 노동조합,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민은행 설립 위원회"를 꾸려 지역은행 설립 추진. 지역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을 되살리는 방안 검토
- 지역은행의 지배구조를 광역시도지사 산하가 아닌 중소상공인, 시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로 이사회(공동운영위원회) 구성
- 광역시도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산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지역은행의 최저자본금 250억 원. 지역은행이 없는 12곳에 최소 규모의 지역은행을 설립할 경우 3,000억 원 필요. 정부와 지방정부가 30%를 출자하면 900억 원 필요

❺ 정부책임형 대학개혁으로 지방대학 육성

진단

● 우리나라는 대학서열화 국가. 가정배경과 대학서열이 연결되어 패자부활전 없는 불평등한 신분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프라임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면서 기초학문이나 지방대를 줄이는 방식

●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계 인력수요와 미스매치를 이유로 대학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추진. 이에 따라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

●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서울과 지방간 격차를 완화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함. 정부는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의 타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

● 정부는 2014년부터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대학별 구조개혁 계획 및 실적을 반영해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2017년 3만 5천여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했음. 그러나 전체 감축정원의 78.2%가 지방대학에 집중된 반면 서울은 고작 2.6% 감축

-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사립대학 자발적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자진 폐교하는 사립대학의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먹튀를 방조하는 법안을 재정할 것을 주장
- 또한 교육의 질 제고라고 주장하면서 대학을 A등급부터 E등급으로 나누어 정부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하위등급 대학들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 제고의 구체적 내용은 없는 사실상 서열화를 통한 하위등급 퇴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

약속

-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법인세와 내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2016년 9.2조원 보다 확대
  - 대학등록금 반값,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학균형발전 및 지방대 육성 등 활용
- 대학균형발전법 제정으로 재정지원 편중 해소 및 대학서열화 해소
  - 여러 대학연합의 통합전형, 공동교육과정, 전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부실 사립대는 국·공립대로 흡수·통합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준국공립대)로 전환
- 대학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기초학문과 지방대를 육성하면서 합리적인 대학 개편
  - 교육여건의 법정기준(교원, 교지, 교사, 도서관 좌석 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 수익용 기본재산, 학교운영경비 부담, 학비감면 관련 등 총 10개 지표) 강화
  -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사립대학(입학정원 3천명 이상) 정원조정 병행
    법정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추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규정 마련

3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 해소

❶ '시도 공공의료벨트' 구성으로 서울-지방 의료 격차 해소

진단

-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1차의료기관(동네의원)-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3차의료기관(대형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이뤄지는 환자의뢰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의료기관간 역할정립도 이뤄지지 않아 환자를 두고 의원과 병원이 서로 경쟁함. 특히, 20~30%의 지방 환자들이 지방의 3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병원이 경쟁는 양상임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도 채 되지 않아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보건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은 최소 보건의료인력 조차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약속

- 읍면동 단위에 다양한 공공적 건강관리조직의 확충
  - 도시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 당 3개소 이상 설치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및 다양한 지역사회 공공적 민간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
- 시도 단위로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시립요양병원 등을 묶는 공공의료벨트 구성
  - 인력 양성 및 배치, 예산 편성 등을 포함하여 국립대학병원에게 공공병원 헤드쿼터로서 역할과 의무 강화
  - 모든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인프라 확충
  - 지방의료원 및 공공요양병원의 진료권별 최소 설치 기준 도입 및 시설 확충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불균형의 해소

- 지역균형선발 및 전액국가장학금 등에 기초하여 모든 의과대학 정원의 10%를 공공의과대학학생으로 추가 선발, 공공보건의료인력으로 양성
- 간호 인력 등의 부족 지역에 정원 추가 배치 및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의사, 간호사 등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 양성으로 지역불균형 해소

● 취약 계층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광역 및 지역 공공재활병원 확충
- 암, 희귀질환자 등을 위한 광역환자정보지원센터 설치
- 돌봄종사자 및 취약노동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확충
-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하여 희귀질환연구 등 보건의료 R&D 기능 강화

● 대형병원 쏠림 중심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개편

-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억제
- 지역수가가산제도 도입, 지역보건의료계열 학생 장학제도 도입 등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 해소
- 건강담당의사제도에 기반해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❷ 사망률 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대책으로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

진단

● 현행 건강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 특히, 지역 간 건강행태 및 사망률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

●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서울시 등 7대 광역시의 현재 흡연율을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21.4%로 가장 낮고, 인천시가 2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는 등 서울에 비해 지방의 건강행태가 좋지 않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2014년 연령표준화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인구 10만 명 당 314.3명으로 가장 낮고,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시가 인구 10만 명 당

387.7명으로 가장 높으며, 도 지역의 경우는 강원도가 가장 높아 인구 10만 명 당 391.0명임. 2014년 기준으로 울산시는 서울시의 건강 수준보다 낮아 한 해 동안 울산시민 중 856명이 죽지 않아도 된 죽음을 맞이하였고, 강원도는 건강불평등으로 1,185명이 한 해 동안 추가로 사망한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지역 간 건강행태 및 사망률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보건의료 인프라의 차이를 포함한 건강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기인함. 이러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건강 취약 지역에 대한 건강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약속

-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 및 건강인프라 확충
  - 사망률 격차 해소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
  -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인프라 집중 확충
  - 지방교부세 교부시 건강취약지역에 건강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강불평등지수 반영
- 건강불평등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위원회 구성
  - 국회, 시민사회 참여를 전제로 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의 건강불평등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위원회 구성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건강불평등 현황을 담은 연차별 대국민 연례보고서 작성 의무화
- 시도 및 시군구별 건강위원회 설치
  - 지방의회, 지역사회 참여를 전제로 시장 직속의 건강위원회 구성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산하에 생애과정 및 생활터별 건강증진소위원회 구성, 운영
-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한 환경 조성
  - 평생교육체계와 연계한 건강마을 리더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활동비용 지원
  - 건강마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환자, 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 민간의료기관 공공자금 지원과 연계한 의료법인 이사회 참여 구조 확보
- 환자 및 시민사회 주도의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건강관리체계구축

- 출산 전부터 생후 12개월까지 모든 산모와 아이에게 보편적인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모든 초중고에 건강증진학교 확대 운영
-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 감소를 위한 규제 강화
- 허약 노인 대상의 보편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8

주거공약

주거불안·불로소득·무분별한 개발을 없애겠습니다

우리는 주거불안, 부동산 투기, 무분별한 개발에 맞설 것입니다.
정의당은 주거정책의 기본 목표를 바꿀 것입니다. 부동산부자와 재벌을 위한
특혜에 치중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은 끝낼 것입니다.
대신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을
늘릴 것입니다. 가격 거품이 빠진 주택은 이제 자산증식 수단이 아닌
함께 살아갈 거주 공간이 될 것입니다.

1. 서민 주거 안정
2. 땅값·집값 거품 제거
3. 주택 수명 연장

정의로운 주거

1. 서민 주거 안정

❶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❷ 소득하위 20% 이하 주거비 지원확대
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❹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 땅값·집값 거품 제거

❶ 시세(실거래가) 기준 과표 산정
❷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확대

3. 주택 수명 연장

❶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이행
❷ 감리비 예치제 도입
❸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 강화
❹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강화
❺ 공정임금제 도입
❻ 공공사업 직접시공제 의무화

1 서민 주거 안정

❶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진단

● **열악한 주거환경, 높은 월세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2014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98만 가구,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는 50만 가구(국토부, 2015)이고, 쪽방, 고시원 등 거주자도 서울만 14만 가구(서울시, 2013)임. 여기에 높은 집값에 의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높아졌음. 수도권 2~3평 내외의 고시원비가 월20~30만원대 이고, 2012년 수도권 저소득층(중위소득의 43% 이하)의 임대료는 월35만원(한국감정원, 2015)인 것으로 나타남

●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5%에 불과**

주택공급현황을 보면 매년 4~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됐고, 이중 약10~20만호는 공공주택임. 하지만 공공주택 대부분이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 자금까지 남아있는 장기 공공주택은 100만호, 전체의 5%로 선진외국의 10~40%에 비해 많이 부족함

LH, SH 등은 2004년부터 주택소유자 신청 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통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재정부담으로 재고량은 7만 가구

● **재정부담 핑계로 서민주택정책 없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서초에 평당900만원대 아파트(주변시세 2~3,000만원),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아파트, 분납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들이 거품 없는 가격으로 공급되었고, 이 때문에 거품 낀 주택 거래가 실종되면서 주택가격도 잠시 하락했음. 하지만 박근혜 정

부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지난 12월에는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까지 폐지했음

소비자가 건물 값만 부담하고 거주할 수 있는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아파트는 특별법까지 제정되었지만 760가구(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만 공급된 채 폐지되었음(2015. 12.28). 정부와 국회는 공기업의 재정부담, 택지부족 등으로 사업타당성이 부재하다며 폐지이유를 밝혔지만 건설사에게는 공공택지를 헐값매각하며 재정손실을 키워온 정부가 사업성 부재를 이유로 서민주거안정책을 포기한 것은 공공의 주거안정 역할을 포기한 것과 같음

● **토건특혜에 불과한 뉴스테이와 공공임대리츠**

박근혜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 행복주택 사업이며 특히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충을 강조하고 있음.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계획이나 입주자 모집물량은 2015년 847호 , 2016년 1.1만호에 불과함(국토부, 2016)

하지만 높은 임대료 책정으로 공공성이 결여된 민간주택사업에 택지, 재정, 세제 등의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은 건설사들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신당동 뉴스테이의 경우 23평 기준 보증금 1억원에 임대료는 월100만원 수준으로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높음

공공임대리츠는 당초 공기업이 주도해왔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기업과 민간건설사가 리츠를 설립,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임.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설사에게 넘기는 것은 공공주택 사업마저 민간건설사의 특혜와 수익사업으로 전락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음. 언론에서는 공공임대리츠를 '기준금리 1% 시대에 5~6%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알짜상품'으로 보도하고 있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LH 등 공기업이 강남서초 보금자리에서 평당7~900대의 가격에 주택을 분양, 임대, 토지임대, 분납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여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집값도 조금이나마 하락하였음. 지금은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

사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거품 없는 다양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함

〈표〉 뉴스테이 지원정책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규제 개혁	- 분양전환 · 임차인 자격 · 초기 임대료 제한 ·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등의 의무 폐지	
택지 지원	- 조성원가의 100~110% -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 수용권 허용 / 승인절차 간소화 / 절차상 특례 도시계획 심의 특례 / 용적률 완화 / 복합개발 허용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재정 지원	-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85㎡ 초과도 1.2억원 지원) - 기업형 임대리츠 지원 확대(주택기금 출자 확대) - 장기저리의 종합금융보증, 전세금반환보증 - 임대기간 종료 후 LH 등의 매입확약, 지분매각 지원	8년 임대 - 60㎡ 이하 8천만원 - 60~85㎡ 1억원 - 85 초과 1.2억원 지원
세제 지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 - 취득세 감면 완화(25%→50%) -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완화 (대상 축소, 인하율 확대) - 개인소유 토지 매각시 양도세 감면	
인프라 구축	- 민간 주택임대사업 특별법 제정 -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 명확화 -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분양주택 통매각 허용 - 주택공급관리 규칙 적용 전면 배제 - 표준건축비 현실화 - 국토부 내 '기업형 임대 지원센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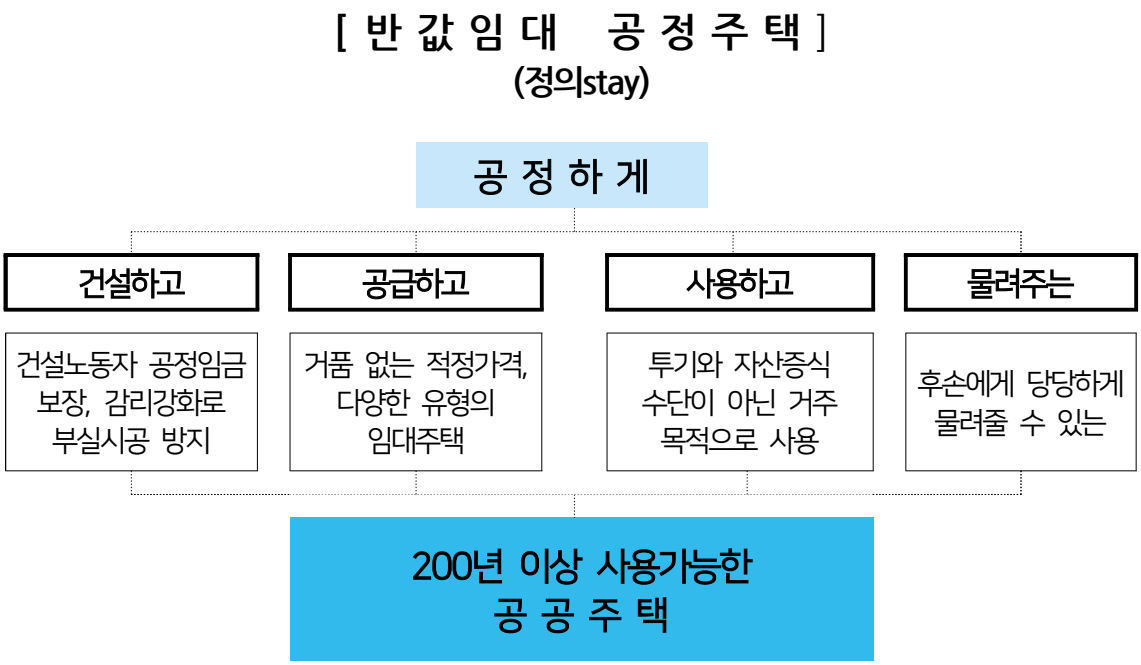
자료 : 국토부 홈페이지 뉴스테이 정책 참조

● **"평당 600만원 심상정식 100년 아파트 공급"(2010년 지방선거 공약)**

2010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에 거품을 없애고 평당600만원(30평 기준 1.8억, 2% 금리적용 시 월 30만원) 이내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평당 600만원 심상정식 100년 아파트 공급"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지금도 가능함. 노태우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200만 신도시 건설, 강남서초 900만원대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도 가능케 했음

약속

● OECD 평균 공공주택 12% 확충을 위한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표〉 반값 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구 분	분양 (환매조건부)		임대 (50년 임대)		
	분양	분납	토지임대 건물분양	월세	전세
10평	7,000만원	2,100만원 (월세 12만원)	4,500만원 (월세 6만원)	월18만원	5,250만원
18평	12,600만원	3,780만원 (월세 22만원)	8,100만원 (월세 11만원)	월32만원	9,450만원
25평	17,500만원	5,250만원 (월세 31만원)	11,250만원 (월세 16만원)	월44만원	13,130만원

주 1) 토지비는 서울 수서공영주차장 부지, 혁신파크 부지의 평균치(평당1,200만원)에 용적률 (500%)을 적용한 값으로 평당250만원임

2) 건축비는 실제도급가액과 공정임금 지급을 전제로 하며 평당450만원임

3) 분납(임대)는 입주시 주택가격의 30%, 입주 후 4년 또는 8년차에 40%를 납부하고, 10년 차에 30%만 분양전환 시 감정가격 기준으로 납부함

4) 금리는 3% 기준(기준금리 1.5%)

5) 전세가는 월세 기준 전환률 4% 임

실현방안

● **거품 없는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

반값임대 공정주택(거품 없는 가격의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공공분양, 장기임대, 장기전세, 분납임대 등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사업 국민연기금 참여 확대 등의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

주택시장 안정 및 무주택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OECD 평균 수준인 12% 이상의 공공주택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후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모두 장기임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뉴스테이 용지도 모두 민간매각하지 말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함

2016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공공 11.5만호, 뉴스테이는 2.5만호, 총14만호로 향후 연간15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연간15만호 이상의 '공정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되, 주택가격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에는 신축보다 매입중심의 공공주택 확충정책을 추진해야 함. 매년 6~10만호의 주택이 경매되고 있고,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70% 정도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만큼 경매를 통한 주택 매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함

● **공공택지 공급대상을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주택법 개정)**

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 및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한 임대주택임. 그러나 공기업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할 뿐 아니 공급주체를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대상을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주택법 개정)

● **주택청 신설, 공기업의 토지금고 역할 강화**

주택청을 신설하여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을 전담해야 함. LH, SH 등 공기업은 택지수용, 택지개발, 택지매각, 주택공급 등의 막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포기한 만큼 공기업의 주택사업자 역할을 박탈하고 택지개발, 토지비축 등 토자금고의 역할을 강화하되 일정기간 이후에는 주택청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지비축 방식으로 선매권제 도입도 검토해야 함.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도로나 학교시설 등 공공목적으로 이용될 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수매권을 발동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비축과 부동산 투기억제의 효과를 가져왔음

● **국민연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2~3%의 금리로 호당 7,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호당 건립비용(18평 기준 건축비 8,100만원+토지매입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재원확대가 필요함.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지원(최대 1.1억원)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확대 함

국민연기금 활용도 적극 검토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연기금의 복지사업 투자 시 수익률을 국고채권 수익률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6년 기준 국고채 수익률(3년)은 1.48%이며,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소득(3%)을 고려하면 국민연기금 활용도 충분히 가능함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사례 예시

1 과천 주암지구

구 분	내 용	비 고
소유	민간	
위치	과천시 주암동	
면적	929,000㎡(평)	
용도	그린벨트	보전용지
공시지가	319만원/평	2015.1.1. 기준 (주암동 표준지 평균)
사업비	449만원/평	조성공사 및 간접비 평당130만원 (강남보금자리 참조)
조성원가	816만원/평	유상면적 55% 기준

■ 과천 주암지구를 택지개발 후 아파트용지에 용적률 200%의 공정주택 공급을 제안함

구 분		뉴스테이	공정주택 (정의stay)	비교
공급호수		5,200호	5,200호	동일
용적률		200%	200%	
용도변경		그린벨트 ⇒ 주거지역	그린벨트 ⇒ 주거지역	
월임대료[1]	10평	60만원	21만원	0.4배
	15평	90만원	32만원	
	20평	120만원	43만원	

주 1) 정부 발표 뉴스테이 공급가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용적률 200%, 임대료는 주암동 주변인 우면동 전월세 시세의 80%에 전월세전환률 6%를 전제로 추정

❷ 소득 하위 20% 이하 주거비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진단

- 2014년 현재 주택보유율은 58%로 756만 가구가 전월세 세입자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2014년 현재 100만호)을 감안하면 600만 가구 이상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RIR)은 2014년 현재 20.3%로 2006년(16.1%)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29%로 고소득층(21.6%)이나 중간층(17%)에 비해 매우 높음
-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책은 크게 장기공공임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에 집중하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고량이 전체 가구의 5%에 불과하지만 호당 1.5억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면서 공급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 등이 LH, SH 등 공기업 부채를 이유로 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 등에 주력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표〉 주거비 지원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의 43%		67	114	148	182	215	249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28%)		44	74	96	118	140	162
기준 임대료	서울	19	22	26	30	31	36
	광역시	14	15	18	22	23	26

주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생계급여)×30%} 지원
2)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별 지역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지방)로 산정

-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법 개정, 주거급여법 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음. 지원대상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2만원 이하(중위소득의 43%) 가구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면 적용대상이 많지 않음. 2015년 7월 이후 85만 가구에게 월평균 10.8만원(총 0.8조원)이 지급됐고, 2016년에는 81만 가구에게 월11.3만원(총1.2조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가구 수는 축소되었음
- 지급기준은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지역별, 가구원별로 차등지원 되며 소득이

생계급여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30%를 기준임대료에서 공제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월평균 11만원 수준에 불과함

-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땅값 거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신축이나 기존 주택 매입을 대량으로 할 수 없는 만큼 주거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등을 통해 주거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약속

- 소득 하위 20%이하 계층 주거비 지급(단기)
- 소득 하위 40%이하 계층 주거비 지급(중장기)

〈표〉 주거비 지원_정당별 비교

구분	현행	정의당	
		단기	중장기
지급대상	중위소득의 43%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하위 20% 이하	소득하위 40% 이하
지급기준	생계급여 기준임대료	무주택자[1)]	무주택자
평균지급액	월11만원	월20만원	월20만원

주1) 저소득층(소득 하위 40% 이하)의 자가점유율은 47.5%(국토부, 주거실태조사, 2015)

실현방안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생계급여 연계방식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
- 주거급여 인상
  - 지원액이 월평균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소득별 가구원별 지역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함(주거급여법 개정)

재원추정

구 분		수혜 가구	주거급여		추가소요
			월평균	연간	
현행(2016)		81만	11만원	1.2조원	-
정의당 제안	단기	167만	20만원	4.0조원	2.8조원
	중장기	334만	20만원	8.0조원	6.8조원

자료 : 2016년 국토부 업무보고 참조

● 재원확보는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수증가분 활용

❸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공정임대료 도입

진단

● 2015년 전세값은 전국 평균 4.8%가 상승하였고, 2015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2년 전보다 1억원이나 상승하였음(2013년 평균 2.7억원→2015년 평균 3.7억원)

● 전세값 상승은 저금리 시대 장기화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공급물량은 줄어 든 반면 세입자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집값임

●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재건축 연한 축소,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용적률 완화 및 층고 제한 완화 등의 특혜정책이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소형평형 위주의 서민 공간이 사라지고 주변 집값까지 상승,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음

● 따라서 집값거품을 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함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세입자 안전장치가 도입되어야 함

●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그동안 정부 여당이 반대해 온 근거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임.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규모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며, 이미 관련법에서도

임대료 인상을 5%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임대료 규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음. 각 나라별 차이는 있지만 △임대료 인상 상한선 설정 △임대료 비교표 산정 및 공표 △임대료 규제를 어길 경우 형벌 내지 행정벌칙 부과 등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주요 국가의 임대료 상한제도 현황〉

국가	주 요 내 용
한국	임대차 갱신 시 인상률 상한이 없고 2년의 법정기간 중의 인상시에만 5%의 인상률 상한제한
독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년 간격으로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에 따른 표준임대료표를 작성 임대료의 상한은 3년동안 20%를 초과할 수 없음 주택의 개보수비용과 관리비용에 따른 규정이 존재함 정기임대차의 경우 계단식, 지수식 인상가능
일본	경제사정, 물가인상등으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할 상당한 이유를 임대인이 입증해야 인상됨 재판실무상 대략 연1/6을 넘지 않고 있음
영국	임대료의 인상률을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과 연계하여 제한
프랑스	매분기별로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의해 발행된 임차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한 편차(12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변동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음
뉴욕	차임결정위원회가 매년 최대 차임상승분을 제시

〈주요 국가의 임대차 계약갱신 제도〉

국가	주 요 내 용
독일	① 임차인의 갱신청구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갱신됨. 임대인이 정당한 갱신거절(해지사유)를 입증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② 기한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한을 정한 정당한 이유(갱신거절의 이유)를 입증해야 임대차가 종료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갱신 됨
일본	한국처럼 묵시의 갱신규정만 있으나 갱신거절에 대한 정당성 심사제도가 있음
영국	① 임대기간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임차인의 갱신청구의 의사표시 없어도 임대차가 계속됨(법정임대차) ② 임대인이 임대차법상의 갱신거절사유가 있다고 입증하여 법원이 점유회복명령 · 판결을 내려야 임대차가 종료됨.
프랑스	임대차기간만료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갱신청구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해지가능
뉴욕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여부를 물어야 하고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됨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5.4.)

-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은 법 개정 전에 임대인들이 미리 전세값을 인상해 폭등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그 사례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이듬해 1990년 전셋값이 16.8% 폭등했다는 점을 들고 있음. 하지만 1989년 이전부터 전세값은 가파르게 상승해왔으며, 오히려 법 개정 이후인 1991년부터는 1.9%, 1992년 7.5%로 안정되었음. 주요 선진국들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같이 도입되어야 함. 계약갱신이 보장되어도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전월세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올려 제시했을 경우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
- 현행법상 신규계약시의 임대료 산정 관련 제한이 없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이 필요함. 선진외국에서는 공정임대료, 표준임대료 등의 이름으로 지방정부에서 지역 내 건물노후도, 특성, 위치, 상태 등을 고려한 임대료를 산정 발표하여 민간임대시장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해왔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주택공시가격, 종전 임대료 및 보증금,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공정임대료를 산정공시 하도록 해야 함

약속

- 전월세 상한제 실시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공정임대료 도입

실현방안

-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5%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상승률을 3.3%로 제한하도록 함. 또한 세입자가 요구하면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가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산정고시 하도록 함(공정임대료법 제정)

❹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진단

- 전세값 상승으로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아파트는 72.4%까지 상승하였음. 집값의 3~40%가 거품임을 고려할 경우 집값하락시 깡통전세가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우려됨
- 하지만 정부는 집값하락에 따른 세입자 피해방지책을 고민하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 확대, 주택금융규제 완화 등에 치중하며 집값거품을 떠받치고 소비자 바가지 분양을 부추기는데 우선하고 있음
- 전세보증보험은 '깡통전세'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인 만큼 의무화가 필요함. 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수수료 부담, 까다로운 가입조건 등 때문에 가입률이 전세가구의 0.3%에 불과함. 현재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수료율은 연 0.15%로 전세계약이 1억원인 경우 연 15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함. 돌려받지 못할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따라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세입자의 경우 국가가 일정 비율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약속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실현방안

-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 안정성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취약층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완화, 취급 은행 확대 등 세입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2 땅값 · 집값 거품 제거

❶ 1% 부동산 부자 특혜주는 '조작 과표' 정상화

진단

● **가구 자산의 77%가 부동산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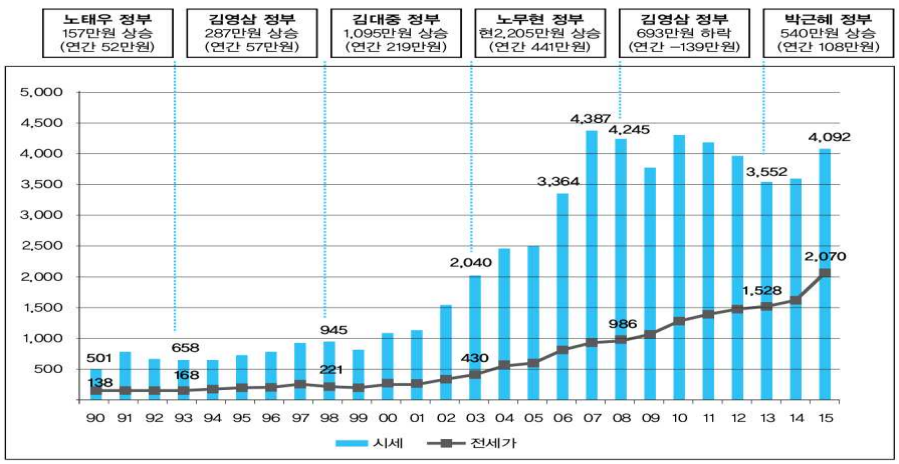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은 1.1경(2013년말 기준)임. 이중 가계순자산은 6,365조원(가구당 3.3억원)이며, 77%가 부동산 자산으로 부동산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통계청, 2015.5). 국민순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자산이 약 8,0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배로 매우 높음

● **부동산 자산격차의 심화(상위1% 1인당 부동산가액은 하위의 640배)**

2013년 공시가격(공시지가) 기준 한국의 상위1%가 보유한 부동산이 전체의 16%, 상위10%는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등 부동산이 10% 부동산부자들에게 편중되어 있고, 상위1%가 소유한 1인당 부동산가액이 32억원으로 하위 10% 계층(0.05억원)의 640배나 되는 등 자산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박원석 의원실, 2014.10)

● **분양가자율화 이후 강남권 가구당 9억(30평 기준) 상승**

〈그림〉 서울 강남권 14개 아파트 시세 및 전세 변화



〈단위: 만원/3.3㎡〉

자료 : 경실련 '부동산뱅크 시세(매년 1월, 2015년 11월 기준)' 조사

서울 강남권 아파트(14개 단지)의 경우 90년보다 30평 기준 10.8억원(평당3,591만원)이나 상승하였으며, 특히 분양가자율화 이후 9억원이 상승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처분소득이 월 98만원임을 감안하면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와 집없는 월급쟁이와의 자산격차가 무려 75년이나 벌어진 것임

● 과표조작으로 1% 부동산부자 · 재벌에게 수조원 세금특혜

〈표〉 엉터리 과표 사례

구분	단독주택 1위		아파트 1위		토지거래가 1위	
	이태원 이건희 주택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총액	평당	총액	평당	총액	평당
공시가격(공시지가)	156억원	2,411만원	61억원	4,878만원	2.0조원	8,448만원
시세 (실거래가)	388억원	6,000만원	80억원	6,377만원	10.5조원	4.4억원
시세반영률	40%		77%		19.3%	

주1) 평당가는 토지면적 기준이며, 트라움하우스5는 아파트면적 기준임
자료 : 국토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2015.1 기준)

시가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13년 보유세 12조원, 부동산 자산 8,000조원)로 선진외국의 1~2%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상속증여세(2013년 5.5조원), 취등록세(2013년 4.8조원) 등도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낮은 세율과 조작된 과표로 인해 1%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수십조원의 세금특혜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도 시세반영률이 31%(경실련, 2012)에 불과하여 지금 과표체계에서는 대통령조차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세금특혜를 누릴 수밖에 없음

● **과표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지가는 엉터리**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산정은 국토부가 19만 표준주택과 50만 표준지를 선정, 가격을 조사결정 공시하면 이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가 개별주택, 개별토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구조임. 따라서 표준주택, 표준지 공시지가가 매우 중요하나 조사결과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 있어 엉터리 과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삼성동 한전부지도 표준지이지만 실거래가 반영률은 19.3%에 불과함

약속

● 시세(실거래가) 기준 과표 산정

〈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율 80% 적용시 보유세 변화 추정

구 분	단독주택 1위		아파트 1위		토지거래가 1위	
	이건희 회장 자택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		삼성동 한국전력부지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공시가	156억원	301억원	61억원	64억원	2.0조원	8.4조원
재산세	3,681만원	7,161만원	1,401만원	1,473만원	559,880만원	2,351,880만원
종부세	13,470만원	33,860만원	2,894만원	3,076만원	663,312만원	2,813,712만원
농특세	2,694만원	6,777만원	579만원	615만원	132,662만원	562,742만원
합 계	19,845만원	47,798만원	4,874만원	5,164만원	1,355,854만원	5,728,334만원
차 액	2억 7,953만원		290만원		437억 2,480만원	

주) 국세청의 종부세 간편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추정
(재산세 표준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선 미적용 등)
이건희 회장 자택과 트라움하우스는 1가구다주택 적용. 한국전력부지는 별도합산과세 적용
부동산 보유세 세율 인상 등은 적용하지 않고 현행 체계 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만 적용

● 과표 산정 자료 상시공개

실현방안

● **표준지와 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를 위해 표준지와 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현 국토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함(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재산세 뿐 아니라 취등록세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인 만큼 조작된 과표개선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은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토지 및 주택환경, 시세 및 실거래가 조사도 지방정부가 더 정확히 할 수 있음. 또한 251개 지자체장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과표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음

● **2016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의 전면재검토**

국토부가 1월 말에 공시한 2016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의 전면재검토를 통해 과표정

상화를 요구해야 함

● **과표 산정 자료의 상시 공개**

표준지 및 표준주택 조사평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수백억원대의 용역비를 받고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자료 등은 공개되지 않고 표준가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심각함.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동산 감정평가자 선정방법 및 감정평가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공신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표준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 자료를 상시공개하여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격의 신뢰성을 높여야 함

재원효과

●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행 65%인 공시가격(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조정할 경우 재산세 1.9조원, 종부세 2.1조원 등 약 4.5조원의 보유세 증가가 예상됨

구분 (실거래가 반영비율)	2013년 기준 현행(65%)	정의당 제안 (80%)	증가
재산세	8조 1410억원	10조 982억원	1조 9,572억원
종부세	1조 2,243억원	3조 3,228억원	2조 985억원
부동산 보유세 합계	9조 3,653억원	4조 4,210억원	4조 557억원
관련세수 증가분(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5,014억원
부동산 보유세 관련 세수 전체 증가분			4조 5,571억원

주1) 국토연구원 조사결과 아파트, 단독주택, 개별토지의 공시가격(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은 각각 72%, 59%, 61%, 평균 65%임.

자료 : 국토연구원,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12
행정자치부, 2014 지방세 통계연감

❷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로 임대료 착취 근절

진단

● 임대소득세 완화로 임대료 착취 심화

강남권 14개 단지 조사결과 전세가는 1990년 138만원(3.3㎡)에서 2015년 11월 현재 2,070만원으로 1990년 대비 14배가 상승하였음.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락시영, 개포주공 등 저층 아파트 뿐 아니라 양호한 15층 아파트들도 재건축 되면서 전세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하지만 임대소득 과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동산부자들의 임대료 착취가 심화되고 있음. 소득세법상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3주택자 이상에 한해 간주임대료를 계산,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85㎡, 3억원 이하는 2016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월세소득도 주택보유와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16년까지는 비과세임. 무엇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대상이 아니라서 임대사업자 등록(등록 민간임대주택 68만가구, 전체의 8%)이 매우 저조하여 정확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소득 관련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약속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실현방안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현행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되는 전세소득 과세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종합소득과세 함(소득세법 개정)

-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8%에 불과한 임대차등록률을 높여 임대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대차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임대주택법 개정)

❸ 분양원가 공개 · 분양가 상한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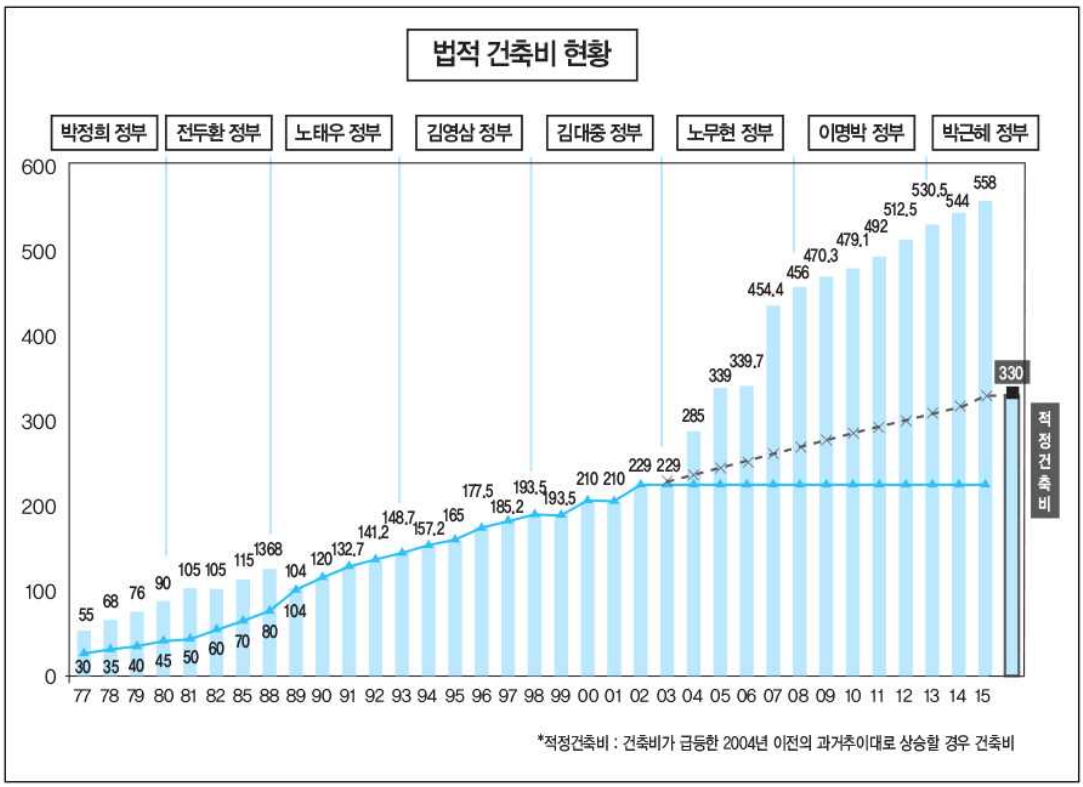
진단

● **분양가 상한제 시행 7년 만에 폐지**

'공기업도 장사, 10배 이윤' 등을 내세우며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던 참여정부가 집값인하를 유도하겠다며 2007년 말 도입한 분양가상한제. 하지만 분양원가인 기본형건축비를 근거도 없이 부풀려 책정하여 고분양가를 유도하고 민간건설사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었음. 따라서 철저한 분양가 검증과 기본형 건축비 인하를 통한 분양가 상한제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야합하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 7년 만에 폐지하였음

● **공공아파트조차 근거없이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로 인해 고분양가 책정**

〈그림〉 정부 발표 법정건축비 현황



〈단위 : 만원/평〉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이전까지는 정부가 분양가를 철저히 규제하여 분양가 거품이 거의

생길 수 없었음. 1982년 분양된 은마아파트도 분양가는 평당68만원이었고, 1990년대 공공택지 개발로 공급된 분당 등 1기 신도시도 분양가는 평당100~200만원대였음. 하지만 참여정부가 도입한 분양가상한제의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는 평당339만원으로 김대중 정부의 1.5배이고 과거에는 없었던 가산비용까지 허용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화성동탄 아파트도 건축비가 평당500만원까지 책정되었음. 강력한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졌던 과거 추세대로 건축비가 산정됐다면 지금 건축비는 평당300~400만원대가 적정함

● **도급가액 기준 건축비는 평당300만원, 소비자 부담 건축비는 평당7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때 SH 공사가 공개한 상암, 장지, 발산 등 15개 지구의 평균건축비는 평당 300만원으로 S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도급가액 기준임. 하지만 2015년 기본형 건축비는 560만원이며 가산비용까지 허용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축비는 평당700만원대까지 상승(마곡8단지 건축비 평당711만원, 2015.8)

● **모양(설계도면)과 질(시방서)을 알 수 없는 기본형 건축비**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의 세부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2005년 분양가상한제 도입이후 10년째 기본형 건축비가 고시되고 있지만 건축비 산정근거인 기본형 주택의 모양(설계도면)과 질(시방서)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공기업조차 분양원가 공개거부**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택지비, 토목 · 건축공사비, 설계 · 감리비 등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공사비의 근거자료인 설계내역, 원하도급 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의 세부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특히 LH, SH 등 공기업은 입주자 및 시민단체의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공개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건축비 거품을 방조하고 있음. 서울시도 오세훈 전임시장 시절 63개 항목 공개에서 지금은 12개로 축소공개 되는 등 박원순 시장 이후 분양원가 공개정책이 대폭 후퇴되었음

약속

-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 유형별 표준주택 및 표준건축비 제시로 건축비 거품 제거
- 분양원가 상시 공개로 투명성 강화

실현방안

-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까지 확대 시행하여, 민간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을 방지해야 함.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정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주택법 개정)

- **유형별 표준주택 · 표준건축비 마련**

  기본형 건축비라면 응당 기본형 건축비 산정이 되는 주택의 모양과 질이 공개되어야 함. 하지만 정부는 모양과 질이 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어 건축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유형별 표준주택을 마련, 소비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표준주택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제시해야 함. 표준이 설정되면 부실공사가 줄고, 대량생산 체제 구축으로 건축비도 낮출 수 있음

-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상세공개**

  사업주(공기업)가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작성한 설계내역, 건설사와 계약한 원도급내역, 건설사(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계약한 하도급내역, 도급내역과 하도급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원하도급 대비표 등을 인터넷에 상시공개 하도록 함. 또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알기 쉽게 가공분석 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3 주택 수명 연장

❶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의무화

진단

- **상한제 폐지 이후 선분양제 유지는 건설사 특혜**

  선분양제는 과거 7~90년대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 규제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음. 실제로 90년 이전까지 분양가는 평당 100만원 이하로 소비자는 적정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받는 대신 선분양제라는 건설사 지원책에 동의할 수 있었음. 하지만 2000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평당 천만원대까지 상승했고,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평당 3~4000만원대로 고분양되고 있음. 이처럼 주택가격을 원가와 상관없이 책정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면 응당 상품인 주택도 다짓고 공급하는게 시장원리에 맞고 소비자와 건설사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음. 건설업계도 1997년 분양가 자율화 요구시 분양가 규제만 폐지되면 후분양제 이행을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비호하에 자금까지 이행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음

- **부실시공에 의한 소비자 피해 증가**

  선분양 특혜는 건설사들이 품질제고를 위한 경쟁보다는 원가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 경쟁에 매달리도록 조장함. 실제 건설현장은 몽땅 하청,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자재 바꿔치기, 불량 자재 사용 등의 방법으로 부실시공이 만연하며, 하자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

- **이명박 정부, 박원순 시장의 후분양 정책 후퇴**

  참여정부는 '후분양제 로드맵'(주택후분양 활성화 방안, 2004)을 제시하며 2007년부터 단계별로 공정률을 높여 나가 2011년에는 공공부문은 80% 완공 후 분양하고, 민간부문은 국민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우선지원 등으로 후분양제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

음. 또한 재건축 규제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을 의무화했음.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후분양제 로드맵 폐지,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폐지 등으로 후분양제 계획은 전무한 상황임. 서울시도 오세훈 전임시장이 도입한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제가 박원순 시장이후 60% 완공 후 분양제로 축소되었음

- **명분 없는 건설업계의 후분양제 반대**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이행에 따른 건설사의 공급 축소, 금융비용의 소비자 전가, 중소건설사 부실화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음. 하지만 분양 이후 2~3년 후에 공급되는 선분양제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오히려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설사의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수반되면서 수요에 맞는 적절한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음. 또한 선분양제에서는 재벌건설사의 브랜드가 주택가격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되지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품질에 대한 소비자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사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약속

-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골조분양) 이행

실현방안

- **공공아파트 골조 분양 의무화**

  상한제가 적용받는 공공아파트도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혈세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최소한 골조공사까지 진행된 후 분양하고 마감재 사용 등 내부인테리어 관련 사업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함(주택법 개정)

❷ 감리비 예치제 도입

진단

● **눈 뜬 장님, 하수아비 감리제도**

94년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 건축물 붕괴 사고 이후 주택감리제, 책임감리제 등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음. 하지만 부실시공에 의한 노동자 사망, 하자발생 등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감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주택감리는 분양대금을 지불한 소비자를 대신해서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공공의 업무이며, 지자체장이 직접 감리사업자를 모집,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장은 지정만 할 뿐 정작 중요한 감리비용은 사업자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실제로 감리는 소비자와 공공이 아닌 사업자(건설사)의 눈치를 보면서 부실시공을 눈감고 있음

약속

● 감리비 예치제 도입으로 감리의 독립성 보장

실현방안

● **감리비 예치제 도입**

현재 사업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감리대가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지방정부)에게 예치하도록 하여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함. 또한 감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도록 함. 성남시의 경우 지난 12월 주택감리비 예치제도 신설을 위한 주택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❸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 강화

진단

●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인데 아파트 수명은 27년**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은 27년으로 영국(128년), 독일(121년), 프랑스(80년), 미국(72년), 일본(54년) 등 선진국의 1/3 수준에도 못 미침(국토부, 2013.3). 콘크리트 수명이 최소 60~100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명이 짧은 이유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환수 미비 등의 특혜제공으로 사업추진이 건물수명과 무관하게 남발되기 때문임

●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2014년 정부는 9.2대책을 발표,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시켰음(주택시장 활력화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2014.9). 당초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은 최장40년까지 설정,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음(도정법 시행령 제2조3항).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 재건축 연한을 20년~3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40년을 허용해왔던 서울시 등 지방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10년이나 단축해야 했음

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권 재건축사업 남발로도 이어지고 있음. 연한단축이 강남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1987~1991년 준공 아파트의 강남권 비중은 14.9%(서울 24.8만, 강남 3구 3.7만)에 불과하다며 특혜가 아니라 항변했음. 하지만 재건축 연한을 넘겨도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않은 아파트와 달리 사업성이 높은 강남3구의 경우 재건축 완화 효과가 집중될 수 밖에 없음. 규제완화 이후 강남권은 개포, 가락시영 등 저층 아파트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층아파트까지 대규모로 철거되고 있고(잠원동, 반포, 서초동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확산되고 있음(잠실, 압구정동, 대치동, 일원동, 고덕동, 방이동 등)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모든 재건축 단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크게 구조안전성(40%), 건축마감 · 설비노후도(30%), 주거환경(15%), 비용분석(15%)이었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하지만 9.2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과 비용분석 비중이 각각 20%, 10%로 축소되고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대폭 상승되었음. 2006년 구조안전성(50%), 주거환경(10%)과 비교해 볼 때 두 항목의 가중치가 서로 뒤바뀌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한다는 사업목적도 퇴색되었음

- **사업추진 동의요건 완화**

  2015년 국토부는 업무계획을 발표, 재건축 조합설립시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겠다 발표했음. 이후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개정,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은 삭제되었음. 하지만 49%가 반대해도 조합설립을 허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이고 투기세력 주도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과 같음

약속

-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 강화
- 조합설립 동의요건 강화

실현방안

- **재건축 허용연한 50년 이상 설정**

  현행 준공된 지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50년 이상에서 지방정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도정법 시행령 개정), 철근콘크리트 수명이 100년을 내다보는 만큼 최소 50년 이상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을 허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1~200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 등이 강화되어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방지해야 함

-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 50% 상향**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노후한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구조안전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현행 20%에서 5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비용분석 자료도 현행 10%에서 20%로 강화해야 함. 또한 철거가 아닌 유지관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건축마감·설비노후도와 주거환경 평가비중은 현행보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 **조합 설립 동의요건 4/5로 강화**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삼겠다는 집장사·땅장사 논리와 다를 바 없음. 현행 규정대로라면 가구수의 25%(동별 기준 최고 49%)가 반대해도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따라서 정부는 개인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법 제정당시 수준인 동별 기준 소유자의 2/3이상 동의, 전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의 4/5 이상 동의,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로 강화되어야 함(도정법 개정). 장기적으로는 다수결이 아닌 주택소유자 전원이 합의할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함

❹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개발이익 환수 강화

진단

-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남발**

  집값이 폭등했던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후분양제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 등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후퇴되거나 폐지되었음.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2008), 재개발 용적률 완화(201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2년 유예(2012년) 등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폐지, 재건축 연한 단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 부담금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가구 허용,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추진했음

  다만 이명박 정부 때는 평당900만원대의 보금자리주택이 강남서초에 공급되면서 고분양가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미분양 되는 등 규제완화의 효과가 미미했음.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한 이후 강남에 평당4000만원대 아파트가 분양되고 이명박 정부 때 침체되었던 왕십리 뉴타운도 분양과열 되었음. 여기에 서울시까지 나서 가락시영 아파트를 시작으로 종상향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층고 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제공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양호한 중층아파트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유명무실한 개발이익 환수장치**

정부의 규제완화로 개발이익도 늘어났음. 현재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임. 또한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확보, 소형주택 의무비율 적용 등 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제 특혜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있음. 하지만 실질적인 개발이익환수는 아주 미비함. 여기에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세대수와 연면적 기준→연면적 기준 삭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축소 등 특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조차 축소되었음(2014. 9).

참여정부 때 도입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4개 단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012년부터 유예되고 있음. 개발이익도 사업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지난해 11월 분양한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송파 헬리오시티)의 경우 분양할 때 제시된 토지비는 평당4,500만원으로 재건축이 논의되던 2003년(평당1,900만원)보다 조합원 평균 4억원 이상(평당 2,600만원, 평균16평 기준)이 상승했음. 하지만 재건축 부담금 유예로 개발이익 환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불투명한 사업 추진**

조합의 불투명한 사업추진도 개발이익 환수를 어렵게 하고 있음.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1 개발이 아닌 용적률 특혜를 얻어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사업 진행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하지만 사업비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조합원과 허가권자인 일부 공무원과 전문가(심의위원)만 정보를 독점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리를 키우고 있음.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공개라며 '클린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초 현황을 제외한 사업비 관련 대

부분의 자료들은 조합원에게만 공개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개발이익이 얼마이고 얼마큼이 환수되었는지 알 수 없음

약속

- 재개발재건축 사업 개발이익 50% 환수
-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

실현방안

- **개발부담금 적용대상 확대 및 부과율 50%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되어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실효성 없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뿐 아니라 용도변경, 용적률 변화 등의 모든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확대해야 함. 부과율도 현재 개발이익의 20~25%에서 50%로 확대하되 현물환수를 원칙으로 하여 다양한 평형의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함.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환수할 경우에는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야 하며 환수된 이익은 주거비 지급 등 주거복지 재원으로 우선 활용해야 함(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 **사업비 관련 모든 자료의 인터넷 상시 공개**

  현재 조합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사업비 관련 자료들도 인터넷에 상시 공개 되어야 함

❺ 공정임금제 도입

진단

- **법정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

  정부(발주처)의 공사비(예정가격) 책정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는 2015년 현재 평균 158,590원(8시간 근로 기준)임.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는 10시간 기준 일당

8만원으로 법정임금의 절반수준도 안됨. 정부가 법정임금을 공사비 책정 기준으로만 활용할 뿐 적용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불법다단계 하청을 거쳐 노임까지 줄어들면서 건설노동자의 노동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건설노동자 없는 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 조사결정 권한**

  대한건설협회는 2000개 건설사들의 노임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직종별로 9만원~18만원임. 하지만 건설노동자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고 몽땅하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재벌건설사(원도급자)에게 노임실태를 확인한다는 것이 맞지 않으며, 건설노동자들의 직접 신고를 통해 실태파악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정확함

- **선진와국의 땀흘리는 건설노동자를 위한 임금 보호 제도 운용**

  땀 흘리는 건설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적정임금제(Privailing wage), 유럽에서는 공정임금제(Fair wage)가 운용되고 있음. 적정임금제는 미국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이며, 건설노동자 임금을 사무직 노동자 임금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고, 공공사업장의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에서도 적정임금 보장 뿐 아니라 동절기에 근로가 없는 건설노동자들에게도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일정수준의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제를 운용하고 있음

약속

-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노동착취 근절

실현방안

- **법정 임금 지급 의무화(단기)**

  공공사업장의 경우 건설노동자 법정임금과 8시간 노동 보장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함(국가계약에 관한 법 개정)

- **유럽식 공정임금제 도입(중장기)**

1년 열두 달 일할 수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사무직 노동자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임금을 상향조정하고, 동절기 등을 고려하여 건설노동자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훈련 수당 등을 지급하여 건설노동자들이 숙련공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❻ 공공사업 직접시공제 의무화

진단

- **몽땅하청에 의한 착취구조**

  원청(재벌건설사)이 발주처(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시공은 불법다단계 하청을 거쳐 영세건설사·불법알선업자와 계약을 맺은 건설노동자들이 하고 있음. 불법다단계 하청을 거치면서 당초 시장단가보다 부풀려 계약됐던 공사비는 줄어들며 건설노동자들은 장시간 고용, 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음. 반면 원청(재벌건설사)은 시장단가보다 부풀려진 공사비로 막대한 차익을 가져가고, 이를 감추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인력과 중장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있음. 실제 4대강 사업조사 결과 현장에 투입된 건설인력과 중장비는 발주처에 원청이 보고한 수치의 각각 31%,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 1.8조원의 이득을 원청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됨 (강기갑 의원실, 2011.2)

- **50억 소규모 사업에게만 제한 적용되는 직접시공제**

  몽땅하청 관행을 없애기 위한 직접시공제 도입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정부는 50억 미만 공사에 한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실효성없는 직접시공제를 시행하고 있음. 직접 시공하지 않는 건설사는 건설사가 아닌 브로커로 품질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건설노동자 보호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방지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영리추구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음

약속

- 직접사공제 확대로 일자리 질 개선

실현방안

- **공공사업 직접사공제 의무화**

  현행 소규모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직접사공제를 공공 공사로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최소 75% 직접사공을 의무화해야 함.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직접사공률이 높은 업체에게 수주 등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개정)

9

탈핵에너지 공약

한국 탈핵 2040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2040년까지 탈핵 대한민국을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할 것입니다. 노후원전의 문을 닫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입니다.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전기소비량을 줄이고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식탁에 방사능 식품이 올라오는 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OECD · 독일 수준의 수요관리 목표와
LNG와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전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1. 노후원전 문을 닫고 신규원전 짓지 않겠습니다.

2. 전력소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3.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 핵 재처리를 금지하겠습니다.

5.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지키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7.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꾸겠습니다.

8. 국민들이 따뜻한 나라,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9. 기후적응법을 제정하겠습니다.

❶ 노후원전 문을 닫고 신규원전 짓지 않겠습니다

진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4년 핵발전소 밀집도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이며,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2위, 10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임

[참고] 2014 핵발전소밀집도 국제비교 자료

국가	핵발전소 보유 현황		발전용량(MW)	국토면적(㎢)	핵발전소밀집도 (MW/㎢)
미국	1위	100기	99,081	9,826,675	0.01
프랑스	2위	58기	63,130	643,801	0.098
일본	3위	48기	42,388	377,915	0.1121
러시아	4위	33기	23,643	17,098,242	0.0013
한국	5위	23기	20,721	99,720	0.2077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제출자료, (2014)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 모든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핵발전소의 직접비용 및 외부비용 문제로 핵발전소 증설이 감소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핵발전소의 점진적 폐쇄를 선언하였으며, 미국은 2015년 104기인 가동원전이 2040년 60기 미만으로 감소전망

[참고] 핵발전소의 숨은 비용 (단위 원/kwh)

연구기관	원가	+ 숨은 비용(α)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년)	48.8원	2.4원	정부보조금
		0.2원 ~ 16.1원	중대사고피해 (위험중립)
		0.3원 ~ 203.1원	중대사고피해 (위험회피)
		3.8원 ~ 6.3원	일반적 위험회피
		52.1원 ~ 94.9원	주변지역 위험회피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43.02원~48.8원	0.08원 ~ 59.8원	총사고비 58조~343조원
		3.9원	정책비용
		기타 숨은 비용 (+ α)	안전규제비용, 입지갈등비용, 미래세대비용: 고준위방폐장의 국토손실비용 등

(출처) 이창훈 외,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원의 환경•경제성 평가 I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108쪽. / 허가형, 「원자력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 102쪽.

- 우리나라에서도 핵발전소의 위험을 자각하여 신규 핵발전소 예정지역인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강원 삼척에서는 투표자의 85%가 경북 영덕에서는 투표자의 92%의 주민이 반대
- BNEF의 「뉴 에너지 아웃룩 2015」에 따르면, 전 세계 핵발전소 설비비중은 2012년 현재 6%에서 2040년 4%로 감소하며, 화석연료는 65%에서 36%로 감소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28%에서 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력수요증가세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과다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한국22%, 미국·유럽 등 주요국 목표설비예비율 15%) 적용을 통해 2029년까지 핵발전소 13기, 석탄화력발전소 20기 확대 예정

약속

- 2040년까지 핵발전소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도약기	전환기	완성기
2016~2020년	2021~2030년	2031~2040년
핵발전소 2기 폐쇄	핵발전소 10기 폐쇄	핵발전소 13기 폐쇄

※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완성기에는 모든 핵발전소 폐쇄

- 202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폐쇄, 건설 중인 신고리4호기, 신한울1호기, 신한울2호기 중단, 계획 중인 신고리5 · 6호기, 천지1 · 2호기, 천지3 · 4호기 또는 대진1 · 2호기 취소.

실현방안

- 법률 제·개정
  - 「탈핵특별법」 제정
  - 에너지법제에 핵발전소의 점진적 축소원칙 반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 정부계획 수정
  -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요구 및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❷ 전력소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습니다

진단

-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확대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환수단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는 많고 에너지효율이 낮은 에너지 다소비 · 비효율 국가이며, 재생에너지공급 비중이 미미함
-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중 전체 전력소비량은 5위였으며, 1인당 전력소비량은 8위, 전력원단위는 32위로 OECD 34개국 중 세 번째로 비효율적인 전력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OECD 34개국과 비교한 한국의 에너지소비지표

에너지소비량	전력소비량	1인당 에너지소비량	1인당 전력소비량
4위	5위	8위	8위
에너지원단위	전력원단위	참고: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2012년 26위	
30위	32위		

(출처) 국가에너지종합정보시스템 분석가공

- 한국전력통계 84호를 분석결과 2013년 전력소비량 중 제조업 부문 전력소비량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51%를 차지하며, 석유 · 화학, 1차 금속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41%를 차지하여 전력다소비의 원인은 다소비산업에 집중
- 특히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전력비효율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력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3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68% 수준이며, 영국보다 1.18배, 일본보다 1.35배, 독일보다 1.42배 저렴.

약속

● OECD ·독일수준의 전력수요관리

전력소비량 및 최대전력 전망 비교

구분	7차 전기본	OECD 2℃ BMBC	독일 BMBC
전력소비량 목표안 GWh	656,883	585,078	563,140
최대전력 목표안 MW	111,929	96,239	92,630

BMBC=BenchMarking BackCasting, 벤치마킹에 의한 후방예측

(출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
• 김제남 의원실 환경부 요구자료『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 제3분과(전력) 中 시나리오별 전력수요 및 최대전력 전망결과』, 2015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속히 인상하며, 전력수요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요금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상정위원회 설립.

-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원칙

① OECD·독일 수준의 전력수요목표 달성

② OECD 수준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전력수요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단계적 인상

③ 전력사용량 규모별 차등 요금제 도입: 소규모 사용자(중소기업, 영세농가, 영세사업자 등)에겐 낮은 요금 적용, 대규모 사업자(대기업, 대규모 시설 농가, 및 대규모 사업자 등)에겐 높은 요금 적용

④ 동·하계 피크전력 관리를 위해 피크요금제를 적용해 전력예비율 확보

● 발전용 연료에 대한 불공정 과세 조정

– 현재 우라늄은 면세, 유연탄은 관세, 개별소비세가 부과, 그러나 환경성과 수용성이 높은 LNG는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까지 부과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정의세 도입 필요.

독일 환경부(2012)의 발전원별 외부 비용 추정

	무연탄	갈탄	천연가스	풍력	수력	태양광	원자력
유로센트/kWh	8.9	10.7	4.9	0.3	0.2	1.2	34

(출처) 최승철 외,「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제1분과 (에너지세)」, 환경부, 2015, 196쪽.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와 탑-러너제도 도입

- 주요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과하여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와 현재 일본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에너지 효율목표를 상품화하고 있는 제품 가운데 에너지 절약이 가장 우수한 제품의 성능 이상으로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하는 탑-러너제도를 도입

실현방안

● 법률 제 · 개정

- 「기후정의세법 제정」

  ※ 제19대 국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참고 (의안번호:1905760)

- 「전기사업법」 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❸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진단

● 「2015년 세계 핵 산업 보고서」(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력망에 연결된 핵발전소는 20기가와트에 불과했지만, 태양광은 195기가와트, 풍력은 335기가와트였음. 특히 민간기구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는 2040년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용량은 전체 설비용량의 5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OECD 최하위인 34위이며, OECD 34개국의 재생에너지공급비중은 평균 17.4%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함.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역시 OECD 34개국 중 33위로 OECD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은 평균 32.8%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7%임. (출처)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4

●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비약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2년 이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를 도입하였음. 그러

나 일반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성장기에, 의무할당제는 보급 안정기에 도입하는 제도이며, 의무할당제는 대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

※ 일본과 영국에선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의무할당제를 병행하고 있음

약속

- 대형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화제도로 소형 재생에너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다차원적 발전 확대
  - 100kW이하 태양광에 한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비태양광 1MW이하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참고) 이창훈 외 4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성 제고 방안」,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133쪽.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의 점진적 확대 및 에너지다소비 산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 의무소비제도 도입
-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
  -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입비용 지원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시 발전량 기준 적용
-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핵에너지와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을 없애 재생에너지지원금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소비의무화 제도 도입
- 기타 :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총량제 도입

실현방안

- 법률 제·개정
  - 「전기사업법」 개정 ※ 제19대 국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034) 일부 참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
    ※ 제19대 국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035) 일부 참고

❹ 핵 재처리를 금지하겠습니다

진단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통해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처분시설 부지 또는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건설에 착수해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음
- 그러나 지하연구소에 처분 전 보관시설이 건설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처분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과 5년 만에 영구처분장을 선정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정은 제2의 부안사태마저 일으킬 수 있음
- 특히 사용후핵연료는 최소 10만년 이상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치명적인 고준위 핵폐기물이며,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이 결정되어야 고준위방폐장의 규모가 결정되는데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에도 추출가능한 발전용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각각 1%에 불과하며, 2%에 불과한 연료를 추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일임

사용전핵연료와 사용후핵연료의 비교

	사용전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235	약 3%	약 1%
우라늄 238	약 97%	약 94%
핵분열 생성물		약 4%
플로토늄		약 1%

(출처) 김익중, 「한국탈핵」, 한티재, 2014, 208쪽.

약속

-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하지 않고 직접처분을 원칙하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실현방안

- 법률 제 · 개정
  - 「원자력안전법」 개정
- 예산조정
  - 핵재처리 연구 예산 삭감

❺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지키겠습니다

진단

-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인해 고농도 방사능 누출이 대기와 해양을 통해 확산되었고, 사고 발생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양으로 방사성 물질이 해양으로 하루 300~400톤씩 누출되고 있어 일본산 식품에 대한 내부피폭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출하금지조치를 실시해 왔는데, 한국정부는 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상황이었으나, 국민의 요구에 의해 2013년 9월 6일 당 · 정 협의의 형태로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음
- 그런데 한국 정부가 2014년 9월 수입금지조치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언급하고, 2015년 5월 일본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음
- 다른 인접국가인 중국의 경우 후쿠시마 등 10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만의 경우 5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8

개현 수산품과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한국보다 강한 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의 수산물 수입 관련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4.10.17.

- 또한 일본산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석탄재가 국내 시멘트로 사용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방사능 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약속

- 후쿠시마 등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수산물 외에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실시
- 방사능 피폭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을 제정해 방사능 기준치를 국민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

실현방안

- 법률 제·개정
  - 「방사능안전공공급식법」 제정
- 결의안 발의
  - 「후쿠시마 등 방사능 오염지역에 대한 수산물 외에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실시」를 위한 국회결의안 발의

❻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진단

- 핵발전과 석탄화력, 그리고 송전탑 등 에너지시설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주민피해로 인해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설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해외 선진국들은 공람공청회를 운용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절차로 활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주민전체가 참여하는 국가개발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가 있음
-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방사능과 전자파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많은 시설의 건설 및 폐지를 결정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기본계획 등은 정책수립과정에 환경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이로 인해 정책수립과정에서 환경성이 반영되지 못함

약속

-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 단일 시나리오만을 수립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신규원전 증설 및 노후원전 연장 시 국민공론화 의무화, 신규원전 건설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 대상 주민투표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실현방안

- 법률 제·개정
  - 「국가공공토론회법」(갈등관리기본법) 제정
  -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 「행정절차법」, 「주민투표법」, 「전기사업법」 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꾸겠습니다

진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10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장관급 기관으로 출범하였음. 이후 2013년 3월,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개편되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이 차관급으로 격하됨에 따라 장관급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업무를 실질적으로 조율해 나가기 어려우며,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속된 국무총리 역시 「원자력진흥법」 제5조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규제기관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임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 정부조직 국제 비교

국가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원자력안전위원회 CNSC	원자력안전청 ASN	원자력규제청 NRA
위상	국무총리 소속 -독립위원회 -차관급	-대통령 소속 -독립위원회 -장관급	-수상 소속 -독립위원회 -장관급	-수상 소속 -독립위원회 -장관급	-환경성 외부 독립조직 -장관급

(출처) 김제남 의원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 2015.2.

-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9인 중 상임위원이 위원장과 사무처장 2인에 그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례회의도 월1회에서 월2회 내외를 오가고 있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같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2013년 1월 8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5인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

-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들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원자력 관련 자료를 검토 · 숙지하는데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있음
- 특히 원전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기밀자료라 열람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자료제공에도 많은 한계가 있음
- 원전에 대한 복잡한 기술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한 사무처 또는 전문위원회 지원이 부족함.
- 원전문제는 안전문제 이외에 경제성, 환경성, 윤리성,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기술기준에 대한 판단만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위원은 안건을 제의할 수 있으나, 안건상정 권한은 위원장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있어, 위원들의 안건상정기능이 제한적임

●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제 및 원자력안전행정 체계는 중앙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핵발전소나 핵연료시설 등 관련시설이 소재하거나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전무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유와 참여경로도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약속

●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격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 구성을 현행 대통령 지명2인에서, 대통령 지명 2인 · 국회추천 3인으로 확대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력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수용성도 심의 · 의결 고려사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경제성 평가와 수용성 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핵발전소와 핵연료시설 등 핵관련 시설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거버넌스 형태의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관리 및 감독하되 지방자치단체,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다중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실현방안

● 법률 제 · 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 제19대 국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참고 (의안번호:1912123)

❽ 국민들이 따뜻한 나라,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진단

● 에너지빈곤층은 적정수준의 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이 소득의 10%를 초과하거나, 저소득 가구 가운데 실제 에너지 지출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적정수준의 난방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말함

(참고) John Hills는 「에너지빈곤층의 측정에 대한 정책보고서」에서 ① 연료비를 제외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며, ②균등화된 연료비 지출이 적정소비수준의 중위값을 넘어서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으로 정의함. (출처) John Hills, Getting the measure of fuel poverty, 20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3년 고소득가구의 연료비 지출과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저소득가구의 연료비 지출과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은 증가하였고, 저소득가구 중에 에너지 과부담 가구가 증가하였음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경상소득 비율

구분	2010	2011	2012	2013
전 체	5.4%	5.3%	5.4%	5.3%
1분위	19.6%	20.6%	21.1%	21.0%
2분위	8.1%	8.2%	8.3%	8.5%
10분위	1.8%	1.8%	1.7%	1.7%
중위50%	13.9%	14.1%	14.2%	14.0%

● 가구의 소득대비 에너지비용부담을 살펴보면,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구보다 6.7배 정도가 많으며, 월소득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서는 3배 정도가 많음. (출처) 김현경, 「에너지 빈곤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8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65세 이하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에 한해 동절기 3개월간 약9.3만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층을 포함한 계층과 소득하위 2분위 즉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빈곤층에 사각지대 발생

약속

● 「에너지복지법 제정」으로 에너지접근권의 법제화

● 현재 중위소득 40% 이하의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를 50% 이하인 가구까지 단계적 확대

● 국민임대아파트와 복지시설에만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에너지인프라가 허약한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새마을 운동

실현방안

● 법률 제•개정

- 「에너지복지법」 제정
  ※ 제18대 국회 조승수 의원(현 정의당) 대표발의 참고 (의안번호:1810068)

● 국가예산반영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바우처

■ 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현행〉 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73만 가구) x 9.3만원(3개월분) = 67,896백만원

임산부 신규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구(2,850가구)
X 9.3만원(3개월분) = 265백만원

〈공약〉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연료비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

(158만가구)X9.7만원(3개월분) = 153,260백만원

※ 가구수는 2013년 기준.

출처) 김현경, 「에너지 빈곤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8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❾ 기후적응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진단

-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취약산업과 나아가 취약동식물의 적응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조문이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움
- 특히 IPCC(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는 2007년 발표한 4차 보고서와 2014년 발표한 5차 보고서를 통해 다차원적인 불평등으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한 차별적 위험이 형성되며, 특히 사회 · 경제 · 문화 · 정치 · 제도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에 취약함이 있다고 발표함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3년 「기후변화 적응관련 취약계층 지원대책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를 통해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물리적 요인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 지역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필요성 언급

〈기후변화 취약계층 구분〉

생물학적	65세 이상 노인, 14세 이하 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경제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장, 농어업종사자, 축산업종사자
물리적	지하 및 옥탑 거주자, 재해위험지구, 상습수해지역, 저지대 지역 등

(출처) 신지영, 『기후변화 적응관련 취약계층 지원대책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약속

-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기후변화영향조사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 기후변화 국가 및 광역 단위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 시행
- 기후변화 취약산업, 취약계층, 취약지역, 취약환경 및 취약동식물 등에 대한 적응 지원 및 보호 강화

● 기후변화 적응 산업 및 인력 육성 등

실현방안

● 「기후변화적응법」 제정

10

국토환경 공약

훼손된 국토환경을 치유하고 복원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더 좋은 국토환경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4대강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해 생명의 강으로 바꿀 것입니다.
케이블카 등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며 전국을 새로운 '녹색벨트'로
연결할 것입니다. 산업현장과 생활환경에서 우리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철저히 관리될 것입니다.

1.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시스템
2. 환경은 깨끗하게, 몸은 건강하게

4대강 복원, 발암물질 걱정없는 대한민국

1.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시스템

❶ 치유와 회복을 위한「4대강복원특별법」제정
❷ 하천난개발법·수공특별법「친수구역활용특별법」폐지
❸「물기본법」제정으로 통합적·체계적 물관리체계 구축
❹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물 순환 사회로의 전환
❺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난개발사업 방지 (시민단체 제안)
❻ 노후하고 기능을 잃은 방치된 댐의 철거 (환경운동연합 제안)

2. 환경은 깨끗하게, 몸은 건강하게

❶「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제정
❷ 방사능과 전자파의 환경유해인자 지정과 사전예방관리
❸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및 사후구제조치 강화
❹「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특별법」제정으로 주변주민 건강보호
❺ 미세먼지 환경기준 상향 및 위해성 관리 강화 (환경운동연합 제안)
❻ 스프레이 제품의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 (환경보건시민센터 제안)

1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시스템

❶ 치유와 회복을 위한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

진단

●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수해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목적으로 총 22조 2천억원을 투자한 초대형 국책사업임. 그러나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인한 대형 보의 안전성 문제, 정체수역으로 인한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주민피해 및 생태계 파괴, 졸속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건설공사의 비리담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

① 사계절 녹조라떼 등 수질악화) 낙동강에서 지난 12월에도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독성 남조류가 번무해, 1년 내내 녹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낙동강 칠곡보 하류에서는 한겨울인 2월에 강준치 47마리가 집단폐사한 채로 발견됨.

한편, 일본 국립신슈대 박호동 교수 연구팀의 분석 결과, 낙동강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가 최대 400ppb(ppb는 미량의 물질 농도 단위로 10억분의 1)에 달함. 마이크로시스틴은 정수를 통해 독성물질의 99%가 제거되나, 농도가 400pbb면 이론적으로 잔량이 4pbb가 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1pbb)를 초과할 가능성

② 환경훼손으로 인한 주민 피해) 환경단체들의 현장 모니터링·답사 결과, 경남 창녕에서는 오이 수확량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고, 합천에서는 안개로 인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마늘·양파 등의 병충해가 급증함. 의령에서는 보 건설로 인해 지하수위가 높아지면서 뿌리가 썩는 탓에 수박농사가 불가능해진 곳도 있음. 밀양에서는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의 어획량이 기존엔 하룻밤에 100kg에 달했는데 공사 후 10kg으로 급감

③ 세굴현상 등 보의 안전성) 달성보 하류 80~300m 강바닥에 깊이 10m, 폭 200m 내외의 세굴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됨. 함안보에도 깊이 21m, 길이 400m, 폭 200m 이상 패인 흔적이 관측됨. 방치하면 1996년과 1999년 연천댐처럼 붕괴 가능성

●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목표로 홍수 예방과 가뭄 해소를 내세웠으나, 2011년에 예측한 2016년 물부족 지역 16곳 중 4대강 보가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함. 지난해 정부는 4대강 주변 상습 가뭄 농경지에 용수공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송수관로 건설을 비롯한 추가대책을 위해서는 예산을 이중으로 들여야 함

● 결국, 주요 시설물의 보수 및 보완, 하천의 재준설,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수질대책 등의 비용은 물론이고 4대강과 연계된 지류·지천사업 및 추가적인 보와 대형댐 건설, 친수구역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환경파괴와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약속

●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

-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효과를 검토하여, 인공구조물의 해체, 4대강 및 하천습지 복원 여부를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4대강 복원 위원회'를 설치
- 위원화는 △ 인공구조물 중 건설 중인 댐, 기존 댐 연결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검증, 4대강 사업 이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유지여부 및 유지관리방안 등을 검토,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및 문화재 복원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 지하수 관정 및 농업용 저수지 등 소규모 시설 위주 물부족 대책 추진

- 지난해 물 부족을 겪은 강원 산간의 경우 지하수 관정 등 소규모 시설로 해결할 수 있고,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작은 농업용 저수지 등을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

● 권역별 '생명의 강을 위한 거점 대학' 육성을 통해 하천복원 및 생태복원을 위한 기술기반과 인재육성

❷ '하천난개발법' '수공특별법'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

진단

- 4대강 사업은 여전히 친수구역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에 있음. 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등 국가 하천 2㎞ 이내에 주거 · 상업 · 문화 · 관광 ·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공특별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각종 특례조항과 의제조항 등을 통해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어 하천 주변 환경이 급속히 파괴될 우려가 높음
-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 강서구 일대의 대규모 신도시로 총 5조 4천억원을 투입해 주거 · 물류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임. 하지만 해당부지가 낙동강 삼각주 일대의 연약지반(Soft Soil)인 'E등급' 지반으로 지진 등에 취약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도 높음. 경기도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도 사업타당성 논란과 함께, 비점 오염원 증가로 인해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세번째 친수구역 조성사업인 대전시 갑천지구는 하천부지 933,970㎡(약 28만평)에 호수공원 435,000㎡(46.7%)과 주거용지 351,000㎡ (37.5%) 등을 건설하며 총 5,38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감. 대전시 지역주민과 종교계, 시민사회 등은 호수공원을 빙자한 신규택지 개발사업으로 보고, 재정파탄, 환경파괴 등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부여 규암지구(112,759㎡), 나주 노안지구(105,494㎡)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약속

- 하천 주변 난개발을 초래하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환경부가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 갑천 친수구역사업의 생태복원사업으로 전환 등 타당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 변경, 폐지

> 갑천 친수구역 사업의 경우 정의당 대전시당과 예비내각 국토환경부는 이미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백지화보다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기농업단지, 도시텃밭, 커뮤니티 가든, 숲조성, 피크닉장 등을 제안한 바 있음.

❸ 물기본법 제정으로 통합적 · 체계적 물관리체계 구축

진단

- 1990년대 이전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은 하천법, 수도법, 하수도법, 풍수해대책법 등 4개 법에 근거한 치수와 이수 중심의 시스템이었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가 강조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등 보다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법률이 증가하고, 통합적 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츰 높아지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의 물 관리정책은 현재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서가 20개 법률과 23개의 법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각 부처 간 소통이나 조율을 위해 1997년 이후 6차례나 「물기본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함. 이에 부처별로 각각 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음
- 많은 물 관리정책 연구자와 전문가들은 물기본법이 제정되었다면 사업중복, 과잉투자, 부서간 갈등 증폭, 규제중첩, 물로 인한 지역갈등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봄. 관련 예산도 물기본법이 있었다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유역단위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행정구역별 경계를 기초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유역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임. 이에 따라 물 관리체계를 유역별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역위원회는 유역관리기구의 도입을 통한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약속

-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수와 치수,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유역관리기구 도입을 통해 물관리 협치 시스템 구축

❹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 물 순환 사회로의 전환

진단

- 물 순환은 물이 해양과 지표로부터 증발되고 증발된 수증기가 기단의 형태로 상승·이동·응결되어 강수로 지표에 이르러 하천수와 지하수로 이동하여 다시 바다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을 말함.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자연적인 물순환이 단절되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시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청계천처럼 유지 유량을 인공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도시형 하천(수로)이 만들어지게 됨
- 이 때문에 물 순환 정책에 기반한 하천 유지유량 복원 방안이 생태하천복원의 환경적 접근이라고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생태하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 설치, (역)펌핑 등 인공적 방법보다는 물 순환에 입각한 생태적 방안이 필요함
- 현재 국내에서는 도시홍수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으나, 각종 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가 달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움. 물 행정 역시 물 순환이라는 환경관리 측면의 접근이 미비해 물에 대한 이수·치수뿐만 아니라 물 순환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필요함

약속

- 빗물 이용, 빗물 관리, 빗물 침투 및 저류, 그리고 물의 재이용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 순환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물 순환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물순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❺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난개발사업 방지를 통한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시민사회 제안 정책)

진단

● 환경부의 제3차 자연환경보전계획(2016-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각종 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서식지 파편화 및 생물 다양성 감소가 심화될 전망임. 해당계획에 따르면, UN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시한 보호지역 최소비율은 17%이고, OECD 평균은 16.4%이나, 우리나라는 육상 보호지역의 경우 12.6%에 불과함

●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보호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해양관관진흥지구 도입,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절차를 시작하였음. 통상 산악관광특별법, 해안관광특별법으로 불리는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정, 「자연공원법 개정」 등 다양한 법률 제·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 현재 개발이 제한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지역, 요존국유림(보전국유림), 산림보호구역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 산악관광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과 개발사업으로 산사태 피해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 특례조항의 과다도입으로 기존의 산림보전을 위한 법체계 성과를 무력화하며, 대규모 민간투자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 우려됨

  -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해양관광지구의 경우 공원구역이 포함되어 공원구역에서의 환경 훼손이 우려되며, 과도한 개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해상 국립공원을 추가로 해양관광지구로 지정하여 투자실적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개발이익이 환경피해보다 큰 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한편, 2014년 10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발언 한 이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사업신청부터 사업승인까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2012년 비용편익분석에서 100원을 투자해 약 92원의 수익을 내는 적자사업이, 탑승요금을 비상식적으로 높이고 할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최대 135원까지 흑자를 내는 사업으로 둔갑하였음.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상부훼손 수목과 면적 축소, 법종보호종 동물종수의 누락 등이 지적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일 현재 부실한 경제성·환경성 평가를 거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약속

- 산악관광특별법·해안관광특별법 등 관련법률 제·개정 저지를 통한 보호지역에 대한 속가능성 확보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원점 재검토 방안 요구,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신청 반려, 양양군의 경제성, 환경성 부실 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객관적 조사 실시
-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특정도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문화재,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이 있음. 현재 보호구역의 경우 보호의 가치와 개발의 가치가 상충하는 바, 20대 국회에 포럼 구성해 지속가능한 보호지역의 이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입법 거버넌스 구성

❻ 노후하고 기능을 잃은 방치된 댐의 철거 (환경운동연합 제안 정책)

진단

- 우리나라는 18,700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총 58,000km의 하천 3.5km마다 댐이 있다는 뜻임.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만 1,300여 개에 달해, 국토면적 대비 대형댐 밀도

는 세계 1위 수준임. 제방도 약 4만km에 달해, 전체 하천의 3/4 이상이 제방 안에 갇힌 상태임. 수도관망은 16만km, 하수관거는 12만km, 정수시설은 3,800만톤/일로 모든 국민에게 실제 사용량의 2배가 넘는 0.7톤/일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임

- 전국에 설치된 약 18,000개의 댐은 하천생태통로 차단, 수질악화, 수변 생물서식처 악화, 하천경관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들 중 50-150개가 매년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방식 변화, 대형저수지 축조나 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토사퇴적 등의 이유로 폐지되고 있음
-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540개 중 58.7%에 해당하는 317개의 댐이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35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댐은 총 11개(31%)이며, 특히 용수전용댐(14개)은 30년 이상 경과된 댐이 50%(7개)나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함. 미국에서는 댐이 하천생태계와 인간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2013년 한 해 동안 51개, 총 1150개의 댐을 철거함. 국내에서도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태화강, 곡릉천, 안양천 등에서 보(洑)를 철거한 사례가 있음
- 1970년대 전후의 댐 건설 시대가 40년을 지나면서, 노후화로 위험해지거나 용도가 없어진 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농업용 보를 비롯해 4대강 보, 하구언 등 하천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물의 철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함. 그러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등은 댐의 해체 등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해 관련한 규정과 절차 등을 만들어 가야함

약속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을 개정해 댐의 철거 관련 규정을 신설. 절차, 감독기관, 복원 목표, 비용 부담 등을 규정해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강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
- 향후 댐 건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용기한 및 철거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댐(보)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과 이를 심사하는 기구의 구성 등도 포함해야 함. 나아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고 있는 보(洑)를 목록화하고 연차별 철거방안을 마련

2 환경은 깨끗하게, 몸은 건강하게

❶ 발암물질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시민사회 제안)

진단

- 통계청의 「201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0.9명으로 사망원인 1순위이며, 2004년 132.6명에 비해 18.3명이 증가함.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3」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OECD 국가에서 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슬로베니아만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였음
- 암 발생 원인은 흡연, 식생활과 같은 개인생활습관에 관련된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 및 환경 위험 요인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러나 발암물질을 포함한 발암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고 여러 행정부처가 관여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을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등급]

Group1	• 확인된 인체발암물질
Group2 2A	• 인체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제한되어 있거나 불충분하고 동물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충분한 경우
Group2 2A	• 인체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제한되어 있고 동물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한 경우
	• 인체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고 동물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제한된 경우
Group	• 비발암성 물질

약속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을 제정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암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암예방연구센터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암예방위원회를 설치
- 암 예방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암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위원회는 발암물질 취급업체의 발암물질 유통량·배출량 등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

❷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관리 강화

진단

- 핵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률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음. 핵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낮은 수준의 방사능이나 전자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역학조사 결과 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음

전자파) 2013년 8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154/345kV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암 유병 양상 생태학적 역학 조사 연구』를 재분석한 결과, 고압 송전선로 노출지역의 암 발병 상대위험도는 남자 1.26배, 여자 1.18배로 추산되었음.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168호, 2013년-10호』, 2013.

방사능) 2015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에 따르면, 방사선 관련 암 전체와 갑상선암을 제외한 방사선 관련 암에 있어 남녀 모두 주변지역 주민들이 대조지역 주민들에 비해 암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 (출처) 백도명 외 14인,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2015.

방사능)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2014년 10월 17일 핵발전소 5㎞ 내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30㎞ 이상 떨어진 지역의 2.5배가 높게 나타난 정보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에 따라 핵발전소와 발암유발 가능성을 최초로 인정한 바 있음.
(출처) 안윤옥 외 15인,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백도명 외 14인의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는 안윤옥 외 15인의 연구보고서를 재분석

● 낮은 수준의 전자파 또는 방사능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한 인체 영향은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상황임. 이는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만, 동물실험 등 과학적 증거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자는 선진국일수록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전자파) 장기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임산부·영유아·어린이·고령층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에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 일반기준보다 강한 기준치 적용

방사능)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2006년 「저수준 전리방사능에 노출됐을 때의 건강 위험」에 대해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하며, 역치는 없다."고 발표

●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공중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해를 예방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환경보건법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제4조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 ·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약속

● 환경보건법 개정을 통해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 환경보건지표에 포함하고, △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 평가 대상,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킴

❸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및 사후구제조치 강화

진단

- 생활 속 화학물질 사용으로 전대미문의 사망 및 건강 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구제는 주로 소송에 의지하게 됨. 이 과정에서 고의·과실, 피해사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으며,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시작되어 민·형사상 소송으로 인한 사후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가해 기업과의 오랜 소송으로 인해 정서적, 육체적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로 고통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 때문에 환경법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억제를 위하여 현재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석면피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경우에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부의 '선구제 후구상' 방안도 제기되는 상황임

약속

- 「환경오염 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2015)을 통해 환경성질환 판명시 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치료 및 요양지원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였음. 그러나 현행 법 제23조의 구제급여 제공범위가 제한적이라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움. 이에 환경오염과 질환발생간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요양비를 지원하고 피해기업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개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또는 「제조물 책임법」 등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❹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에 대한 노출규제 및 건강보호 강화

진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산단지역 환경오염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추진사항 보고」(2015.9.15)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환경오염망 측정결과 국가산단지역인 울산 · 안산 · 시흥 · 포항 · 광양 · 여수 · 청주 · 서산 지역의 VOCs,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부분 물질의 농도가 국내 주요도시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 유해대기오염물질 위해도 분석결과 포항·여수·울산 지역에서 대기 중 포름알데히드 발암위해도가 다소 높았으며, 설문조사 결가 산단인접지역 주민의 기관지천식, 폐쇄성 폐질환, 알레르기성 눈병 경험률이 비교지역에 비해 다소 높았음
  - 또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사망 및 상병자료 분석결과 총사망 및 만성하기도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산단소재 도시에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지 · 폐암(남자),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남,여)으로 인한 병원방문 건수가 전국보다 산단지역이 다소 높은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이 2003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오염저감대책이나 피해예방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에 비해 환경오염 배출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약속

-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 국가산업단지 인근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환경지표 목표관리와 환경친화적인 계발계획의 수립 · 시행을 촉구하며,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강화

❺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고, 위해성 관리 강화 (환경운동연합 제안 정책)

진단

- 수도권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오염도는 개선 중에 있지만 여전히 OECD 대비 2배 수준이며, 2013년부터 다시 미세먼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14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미세먼지 국내 기준(50㎍/㎥)을 초과한 지역은 4개 지역임. 세계보건기구 기준(20㎍/㎥)을 적용할 경우 16개 지자체 모두 2~2.5배 이상 초과함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중국으로부터의 장거리이동오염물질의 국내유입 증가를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국내 대기오염발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책마련을 미루고 있음. 또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환경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
  -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의 영향이 60~80%에 이르지만, 국내의 영향도 20~40% 사이에 이르며,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경우 사업장에서 40%, 자동차에서 10%,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에서 17%, 사업장이 6%를 차지하며, 초미세먼지(PM2.5)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50%, 자동차 22%, 수도권은 자동차 421%, 사업장 11%로 추정
  - 또한 그린피스가 하버드대학과 공동조사한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2015)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최대 1600명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계획대로 2012년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하면 최대 2800명까지 조기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발생원인별 구체적인 감축방안 마련이 시급함. 자동차 수요를 줄이고 친환경교통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추가건설을 중단하는 등 국내 배출원 저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현재의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해 한계가 있으며,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 등이 부족함

약속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

구분		세계보건기구 (WHO)	한국
PM10	24시간 평균	50㎍/㎥ 이하	100㎍/㎥ 이하
	연 평균	20㎍/㎥ 이하	50㎍/㎥ 이하
PM2.5	24시간 평균	25㎍/㎥ 이하	50㎍/㎥ 이하
	연 평균	10㎍/㎥ 이하	25㎍/㎥ 이하

●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 배출억제정책 시행

- 관공서 및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차량부제와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를 통한 교통수요관리
- 무동력 또는 친환경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및 이용시설 확대
-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 축소와 석탄소비 총량 감축을 위한 정책 시행

● 미세먼지 비상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위해성 관리 강화

- 미세먼지 농도로 인한 건강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별·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상세 예보시스템 도입
- 경보 시 차량운행제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경유차 도심진입금지 등 비상행동계획 법제화

❻ 스프레이 제품의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화 제도 시행 (환경보건시민센터 제안 정책)

진단

● 민간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14년 11월 발표한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184호 [스프레이제품이 위험하다]」에 따르면, 시판 스프레이제품 100개 제품위험성평가 결과, 스프레이 살충제는 100% 위험도 최상으로 평가되었고, 스프레이 화장품도 95%가 위험도 높은 A,B그룹으로 평가되었음

- 조사대상 100개 제품 중 위험도 최상인 A그룹은 31개, 위험도 상인 B그룹은 24개, 위험도 중인 C그룹은 33개, 위험도 하인 D그룹은 12개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에어컨탈취제 피해사례, 섬유발수코팅제 피해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스프레이제품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시중에서 구입이 원활하며 일상에서 이용되는 일이 많고, 흡입으로 인해 인체유입이 쉬워 독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출연기관인 흡입독성연구센터 인터뷰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흡익독성안전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생활용품 중에서 흡입독성평가를 거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남

약속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시행
- 정밀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 강화

11

동물복지 공약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동물의 친구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입니다.
다른 동물 관련 법률도 개정해 실험동물과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생명존중의
윤리가 동물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것이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존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1.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2. 동물복지법 법제화 및 관련 법률에 동물보호 및 복지적 가치 강화
3. 동물복지행정 일원화 및 동물구조핫라인 설치
4.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5. 공공기관 ‘육류 없는 채식의 날’ 실천으로 채식식단 선택권 부여
6. 감금사육(공장식축산)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

❶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진단

-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상 동물은 생명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물건(동산). 또한 형법상 동물은 재물에 해당되어 타인 소유의 동물에게 해를 가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함태성.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015)

[민법상 동물의 정의]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그러나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적 정의는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된 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최근 우리사회도 1983년 10월 27~28일 동물행동학자 K.로렌츠의 기념심포지엄에서 제안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되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도 반려(伴侶: 사람과 짝이 되는 동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 특히 1988년 오스트리아와 1990년 독일, 2002년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여, 종래의 권리의 주체와 객체로만 분류하던 2분법적 체계에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권리의 객체인 단순한 물건,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물로 분류하는 3분법적 체계로 전환하였음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2011)

약속

- 동물의 법적 지위 조정
  - 민법에 동물의 법적지위 조항 신설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❷ 동물복지법 법제화 및 관련 법률에 동물보호 및 복지적 가치 강화

진단

- EU를 포함한 해외 선진국들은 동물을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동물도 적극적인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농림수산검역본부의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동의하는 국민은 98.1%,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찬성하는 국민은 94.1%로 나타나는 등 생명윤리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의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의 제공, 영양분의 제공, 질병 예방 및 치료, 학대금지 등 동물의 복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적절히 제공되는 것을 의미함

> 영국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 동물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자유
> 1.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 신선한 물과 음식의 공급
> 2.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 피난처와 안락한 주거 환경의 제공
> 3. 통증,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그리고 동물간의 어울림
> 4.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 충분한 공간, 적절한 시설 그리고 동물간의 어울림
> 5.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조성

- 우리나라는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생명보호, 안전보장 나아가 복지증진을 꾀하고 나아가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동물보호법의 법적 위상과 역할이 약하며 실효성도 떨어져 규율공백 발생의 문제점이 있음

>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
> 1. 동물학대 유형의 세분화 및 체계적 정리가 필요함.
> 2. 동물보호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3. 농장동물의 경우 출생-사육-운송-도살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동물 보호와 복지 보장에는 미흡.
>   ex)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해 제29조, 제30조, 제31조 그리고 적정한 사육과 관리 제7조, 동물의 운송 제9조 미흡.
> 4.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2015년 1월 기준으로 동물등록률은 약 54.8%에 불과
> 5. 제23조에서 동물실험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반영필요.

*함태성,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2015.

약속

- 동물 관련 법률에 동물 보호 및 복지적 가치 강화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부개정, 동물정책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강화
  - 동물살상금지 명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타 동물관련 법률에 동물 보호 및 복지적 가치 반영
- 동물학대유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
- 동물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 동물 구조 및 보호 대상에서 최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길고양이 포함
  - 낙후된 시설과 폐쇄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보호 마련
  - 개체조절, 유해동물 등의 이유로 잔인하게 사살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복지시각 마련
  - 투견의 원천적 차단
- 동물복지주간 신설로 국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 생명존중과 동물윤리 교육
- 유가동물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인식장치의 의무화와 외장형 식별장치 폐지
- 동물 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운송업·훈련업도 등록대상으로 확대하고, 생산업은 허가제로 동물의 통신 및 전화 권유 판매 금지 등 동물영업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

❸ 동물복지행정 일원화 및 동물구조핫라인 설치

진단

-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임. 동물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는 축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여건상 축산동물의 개량과 증식, 이용, 방역 그리고 축산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 등이 주된 업무임
- 그러나 축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의 주무부처이지만 동물보호와 동물이용이 상충되는 경우 동물보호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농림수산식품부는 1차관보 2실 4국 8관 45과로 되어 있는데, 동물보호법 관 업무는 방역총괄과에서 소수

인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실무행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담당

- 2011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이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방서가 아닌 일선 지자체가 출동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지자체별로 부서가 다르고 홍보가 부족해 시민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공무원이 동물보호 외의 업무도 담당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
- 2013년 기준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361개소로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6.9%인 25개소에 불과하여 안정적 운영체계 확보 곤란

〈동물보호센터 현황〉

연도	총계	지자체 직영	민간 지정
2009	384(100%)	17(4.4%)	367(95.6%)
2010	400(100%)	25(6.3%)	375(93.7%)
2011	339(100%)	23(6.8%)	316(93.2%)
2012	349(100%)	25(7.2%)	324(92.8%)
2013	361(100%)	25(6.9%)	336(93.1%)

* 농림축산식품부

약속

-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국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복지전담부서 설치
- 동물구조 핫라인 설치 등 일원화된 출동체계 구축
- 정부직영 중앙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시도 1개 이상 동물보호센터 직접 설치

❹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진단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5 동물보호에 관한 의식 수준과 반려 동물 사육·관리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의 21.8%로,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의 「2014 주거실태 조사 결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단독주택거주비

율은 2006년 44.5%에서 2014년 37.5%로 점차 감소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선호 차가 커 반려동물의 야외활동이 가능한 제3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사례]

* 미국의 경우 플로리다의 'Dog Wood Park'와 캘리포니아 'Point Isabel Regional Shoreline' 등 대규모 여가문화공간 조성해 목줄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출처) 이정임·이수진·동그라미,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이슈 & 진단 No.188』, 경기개발연구원, 2015.

** 서울시 보라매공원 남단 향기원 옆에 반려견과 주인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1500㎡ 규모의 놀이터를 조성계획

약속

-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일정규모 이상 공원에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검토 (환경성·수용성·경제성 평가 필요)

❺ 공공기관 '육류 없는 채식의 날' 실천으로 채식식단 선택권 부여

진단

- 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인당 육류소비량(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은 1990년 19.9kg에서 2013년 42.7kg으로 약 2배 증가. 우유도 1990년 42.8kg에서 71.6kg으로 약 1.7배 증가
- 2006년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가축의 긴 그림자-환경문제와 대응책』에서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라젠드라 파차우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기구(IPCC)' 전 의장도 기후변화에 대안으로 육류 소비를 줄일 것을 제시

약속

- 관공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일주일 중 하루는 육류 없는 채식 식단 제공, 학교

급식에 우유와 두유 선택권 부여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등 반영검토

❻ 감금사육(공장식 축산)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

진단

- 공장식 축산이란 현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위해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제작하듯 밀집된 공간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과도한 밀집사육, 인공시술, 화학약품 투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EU는 산란계 일반케이지(철장) 사육금지(2012년) 및 임신 중 돼지 스톨(감금틀) 사육금지(2013년) 등 동물복지 법적기준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6.6%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의식 변화.

약속

- 가축사육자 등은 동물 복지를 위해 ① 돼지를 틀에 가두어 방향을 바꿀 수 없도록 사육하는 방식, ② 닭이 날개를 펼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밀집된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방식, ③ 가축사육장의 조명을 일정 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밝게 하여 사육하는 방식, ④ 암탉을 인위적으로 털갈이 시키거나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을 주입하여 사육하는 방식 등을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함(심상정 의원 기 대표발의한 「동물복지법」 조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의 사육방식을 지양 ·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10개년 전환계획(축산농가 지원대책 중심) 수립 및 시행 의무화

12

과학기술 공약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관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바꿀 것입니다.
정의당은 연구자들이 적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는 가운데,
관료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혁신적인 공공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1. R&D 예산 기획 및 운영 전반 혁신
2. 과학기술출연(연) 자율성 제고와 처우 개선
3. 과학기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1. R&D 예산 기획 및 운영 전반 혁신

❶ R&D 예산 투자의 전면적 혁신
❷ R&D 예산 관료 개입 축소, 부처별 과다 경쟁 차단
❸ R&D 예산 부실 방지 및 평가의 전문성 강화
❹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기업은 절반, 중소기업은 두배로
❺ 연구개발 부정비리 방지 및 중단 연구비 환수 강화

2. 과학기술출연(연) 자율성 제고와 처우 개선

❶ 과학기술 출연(연)의 자율성·독창성 제고
❷ 과학기술 출연(연)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❸ 여성과 은퇴 과학기술인 활용 및 처우개선 확대
❹ 과학기술 출연(연) 임크피크제 재고 및 정년 환원

3. 과학기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과 함께!

❶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네트워크 구축
❷ 과학기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역량 강화
❸ 우리동네 작은 과학센터 설치 및 운영

1 R&D 예산의 기획 및 운영 전반 혁신

❶ R&D 예산 투자의 전면적 혁신

진단

-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대상 '한국 과학기술 진단' 설문조사 결과, '불공정한 연구비 배분', '정부 지나친 간섭과 일방적 정책추진', '과기계 현장 소통 부재'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함
- '15년 '주요 R&D 예산배분 조정안'을 보면, 기초연구 투자(4.2% 증가)는 성장동력창출 · 중소기업지원 등 단기 일차리창출 목적의 투자(7.5% 증가)에 비해 예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은 '15년(안) 38%, '17년 4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연구 비중이 부족함. 또한 고위험 · 창의적 연구 보다 미래부가 기초연구 투자 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수립에 개입하여 추격형 · 단기 성과창출 중심의 연구지원을 하고 있음

약속

- 도전적 ·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 강화' 중심의 R&D 환경 구축
- 기초연구에서 상용화까지 가치사슬 단계별 전방위적 지원
  - 2020년까지 기초 · 원천기술 R&D 투자 비중 45%로 확대
-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 상향식 연구비 비중을 2015년 21.7% 수준에서 2020년까지 40%로 증대

❷ R&D 예산 관료 개입 축소, 부처별 과다 경쟁은 차단

진단

-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R&D사업 평가 및 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관계부처 장관) 14명 및 민간위원 9명 이내로 구성되어, 과학기술 학계, 출연연, 기업, 연구원, 노조, 시민사회의의 참여가 제한돼, 정부 일방의 정책 결정단위로 기능하고 있음
- 과학기술 출연(연)의 자체수입 또한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과제 수주로 충당함. 부처별 R&D 예산 배분·조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점 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수립, 지출한도·중기계획 설정, 예산심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음. R&D 예산배분 기준 및 중점 투자방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초· 원천기술 연구보다 정부부처 이해에 맞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낼만한 연구에 먼저 재원이 할당됨
- 그러다보니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들은 기초·원천 기술 발전이나 원하는 연구보다 정부부처 입맛에 맞는 연구를 제안해야 연구비를 따낼 수 있으니 연구자의 자율성 및 독창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약속

-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과학기술위원회 구성
  - 현행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계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가능한 방식의 범정부 과학기술위원회로 전면 재구성하도록 함
  - 과학기술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참여 규모는 거시적 정책결정 및 구체적 정책결정, 그리고 예산배분결정에 실질적 의견 반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함. 특히 과학기술계 교수, 과학기술 출연연 원장, 과학기술 활용 중소기업 및 대기업 사장단, 과학기술계 대학원생 및 대학 연구원 대표, 과학기술 출연연 소속 연구자 및 기관별 노조 대표, 민간기업 R&D 연구원 대표, 과학기술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함

● 부처별 연구개발 묶음예산(씰링)을 연구대주제 및 산업별 묶음예산(씰링)으로 전환

- 부처별 연구개발 묶음예산(씰링) 배분방식을 연구 대주제 및 산업별 묶음예산으로 대 전환
- 공공 출연기관, 민간 대학교수 등 현장 과학기술연구인이 중심이 되어 매년 국가R&D 예산전략을 신규 수립함. 매년 국가R&D 예산의 전체 묶음예산을 제공하되, 최종 부처별 R&D담당 재정 관료들의 영향력을 제한시킴

❸ R&D 예산 부실 방지 및 평가의 전문성 강화

진단

● 정부는 2016년 1월 향후 3~5년간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해 발표함. 이는 9개 분야 58개 중분류별(①ICT · SW ②생명 · 보건의료 ③에너지 · 자원 ④소재 · 나노 ⑤기계 · 제조 ⑥농림수산 · 식품 ⑦우주 · 항공 · 해양 ⑧건설 · 교통 ⑨환경 · 기상) 투자 우선선위 및 투자전략을 제출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R&D는 현재, 사실상 실패 상태 이며, 정밀 진단이 우선되어야 중장기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존 28개 추진과제별 선후(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과 추진과제별 반영 방안을 총체적으로 고민해하는 데 현재 부족한 상태임. 기술 로드맵이 부실할 경우 중장기 R&D 투자전략은 치명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

● 정량화된 평가기준이 성과(outcome)보다 결과(output)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측정하기 어려운 연구결과를 놓칠 수 있음. 또한 사업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도전적 · 혁신적 · 창의적 연구개발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있음. 과학기술 출연연 상위평가 제도는 종합적 메타평가로써 기능이 미비한 상황임

약속

● 부실 R&D 단계별 평가 로드맵 작성, 기존 중장기 R&D 투자전략 재평가

- 부실 R&D 단계별 평가 로드맵을 작성해, 단계별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틀에 따라 기존 R&D 추진과제들의 선후관계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분석함.
- 부실 R&D 단계별 평가 로드맵의 단계별 주요 특징은 1차 - 백화점식, 정량적 지표 불명확/비현실적, 2차 - 시장니즈/제품개발 연계성 부족(예, 국방연계 부족), 3차 - 공공수요 창출에 관한 확고한 계획의 부재, 4차 - 예산 불확실성(희망목록 수준) → 기술개발 착수지연 등임.
- 부실 R&D 단계별 평가 로드맵에 따른 기존 추진과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우선 대상, 경쟁기획 및 범부처가 연계 추진할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을 선정함. 국산화율 대신 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의 자립화를 R&D 관리 정책수단으로 삼음. 분야별 고경력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로드맵 작성 위원을 임명하고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를 조직·운영함.

● 상위평가 제도의 종합적 메타평가로써 기능 강화, 연구개발사업 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 과학기술 R&D의 혁신적 발전을 가져올 평가지표 개선에 노력

- 상위평가 제도 개선, 종합적 메타평가로써 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의 신뢰성, 효율성 측면의 지표 보완, 고경력 은퇴과학기술인 구축·활용 및 종합적 가치사슬 분석·평가 지표 추가 필요
- 양적·질적(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되 양질의 연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 사전평가 측면에서, 더 높은 기술적 위험과 시장성공가능성을 반영하도록 과제선정과정 조정, 평가 후 피평가자인 연구자들의 평가에 대한 민원 수렴

- 매년, R&D사업 평가에 대한 피평가자(연구자)들의 문제점 및 의견, 제안 등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고 이에 대한 수용결과 및 피드백 사항을 공개·공유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❹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기업은 절반, 중소기업은 두배로

진단

- ‘14년 전체 R&D 세액공제 조세지출액은 전체 국세수입의 약 1.7%에 해당되는 3.4조원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인 1.73조원이 매출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받은 공제혜택임. 5천억원 초과 대기업 실효세율은 17.1%인 반면, 1천억~5천억원 중견기업은 17.7%로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0.6%p 더 내고 있는 상황임. 즉, R&D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주로 수혜 받고 있으며, 실효세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음
- 정부는 법인세 직접 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대기업의 실효세율 높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연구개발세액공제 축소는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음. 다만 실효세율 인상효과가 크지 않은 생산성향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수준에 그침. 반면, 생산성향상 설비투자 및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축소과정에서 중소기업 또한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위축하고 있음
  - 삼성전자의 최근 3년 R&D세액공제액은 약 2.8조원, 현대자동차의 최근 3년 R&D 세액공제액은 3,564억원이었음

약속

-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대폭적인 축소 및 정비를 통해,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추가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또한 기존 40%에서 20%로 축소.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중견기업 5%, 대기업 3%에서 각각 3%, 1%로 축소
- 중소기업 연구개발세액공제율은 2배로 증대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60%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❺ 연구개발 부정비리 방지 및 중단 연구비 환수 강화

진단

- 지난 2014년 8월, 산하 연구기관에서 비리가 속출하자 미래창조과학부는 R&D 부정비리 척결 대책으로, 미창부 감사관실 내 특별감찰TF를 꾸리고 R&D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감찰하기 시작했음. 특히, R&D관리 전문기관(연구비 배분·평가 권한 집중)에 대해 과제 책임자와 소속 직원 간 특혜성 계약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현재 신고센터의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이며 링크 안내도 없어 접근성이 대단히 낮은 상황임. 신고접수 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탭, 'R&D 부정비리신고' 클릭 후, 신고하면 되는데, 사전에 정보가 없을 경우 이러한 절차를 찾기가 쉽지 않음

  실제 R&D 부정비리신고센터에서 거의 홍보를 하고 있지 않기에, 센터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제 진행하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출연기관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
-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가 의무사항이고, 신고자와 피신고자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적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음. 개인정보 모두 공개 시, 지난 비리사건에서도 미창부 관료와 산하기관 종사자 간 관계에서 보듯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여전하기에 신고부담이 대단히 큰 상황임

  증거서류를 필수적으로 요하고 있는데, 목격했지만, 명확한 증거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울 경우 증빙물을 제출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신고대상을 특정 개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인뿐 아니라, 부서단위, 기관장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벌어질 수 있음
- '14년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47건의 연구개발과제가 중도해약되었고, 협약액 2,552억원 중, 13%만 회수되어 2,204억원이 그대로 손실을 보았음. 중도해약 사유는 ①연구개발목표가 기존 연구에서 성취된 경우 ②중대한 협약위반 ③과제수행포기 ④수행 지연 ⑤연구 부정행위 등이었음. 5가지 사유 모두 명백한 연구자 과실에 따른 것임

  연구 중도포기에 다른 처벌은 남은 연구비 환수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에 몇 가지 강화된 처벌조치가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약속

- 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및 접근성 강화
  - 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및 신고접수 절차를 홈페이지 배너로 연결하여 원스톱처리가 가능하게 함. 각 대학 산학협력단과 과학기술 출연기관 홈페이지에도 부정비리 신고 배너를 달아야 함
- 대학 산학협력단 및 출연기관 등 연구자들에게 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 대학별 산학협력단 및 출연기관에 적극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동시에 대학 및 출연기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과제 착수 시, 산학협력단의 경우 대학 내 교수·대학원생 연구진들에게, 출연기관의 자체감사실 및 연구책임자의 경우 기본·용역과제 연구진들에게 의무적으로 센터홍보를 실시하게 해야 함
- 신고접수 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개편
  - 익명의 신고도 접수를 가능하게 함. 증빙물 제출이 어려울 경우, 비리사건에 대한 목격내용 및 정황을 자세히 적는 것으로 증거서류를 대신하는 체계 마련, 신고대상을 관련 부서 및 기관(장)까지 확장하여 신고할 수 있게 신고서 양식 수정 등 관련 접수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실시함
-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연구과제 중도해약 연구비 환수조치 및 처벌규정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연구과제 중도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처벌' 조항 신설. 신설조항 아래, 연구자 과실에 따른 중도해약 사유 5가지와 기타 연구자 과실로 인한 연구과제 중단 등 6가지를 삽입. 이에 해당된 중도해약 과제는 해당 시점의 연구비 집행정도와 관계없이 연구비 총액을 환수조치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중도해약 연구자 처벌 조항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모든 연구개발사업 지원제한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처벌규정 강화.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적 사유가 발견될 시, 추가적 제재부담금 징수(부정사용 금액의 5배 범위)의 성역 없는 집행 및 형사처벌 규정 추가
- 대학 및 정부 · 민간 연구기관 연구비 관리 자체 감사 및 자정적 관리체계 확립
  - 연구과제 중도해약 연구자가 소속 연구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등)에도 연구비 관리 경

고조치, 연구기관의 자체적 감사 및 내부 징계절차 마련 등 자정적 연구관리체제 정립

-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연구자 과실 중도해약이 발생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조치로 각종 대형 국책사업 및 정부과제 용역에서 벌점(페널티) 부과 등 추가 조치
-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중도해약 연구기관(연구자)들의 명단, 징계 및 처벌 내용 및 근거,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에 보고토록 해야 함

2 과학기술 출연(연) 자율성 제고와 처우 개선

❶ 과학기술 출연(연)의 자율성 · 독창성 제고

진단

- 과학기술 출연(연) 예산은 정부출연금 43%, 자체수입 57%로 구성됨. 현행 정부출연금 예산편성은 기재부가 편성지침을 우선 내놓고, 출연(연)이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는 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미래창조과학부)가 개입하여 최종 확정하는 형태임. 정부가 편성지침 제시 및 최종 확정까지 권한을 갖고 있어 출연(연)과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자율성은 여전히 저해되고 있음
- 과학기술 출연(연)의 자체수입 또한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과제 수주로 충당함. 부처별 R&D 예산 배분·조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점 투자방향 및 투자우선순위 수립, 지출한도·중기계획 설정, 예산심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음. R&D 예산배분 기준 및 중점 투자방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초· 원천기술 연구보다 정부부처 이해에 맞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낼만한 연구에 먼저 재원이 할당됨
- 그러다보니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들은 기초·원천 기술 발전이나 원하는 연구보다 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를 제안해야 연구비를 따낼 수 있으니 연구자의 자율성 및 독창성이 지

속적으로 저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14년 OECD 과학기술전망’은 한국의 공공R&D는 실용연구과 기술개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15)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 R&D 생산성이 ’12년 기준 1조원 투입시 132억원 기술료 수입발생에 그친다고 분석한 바 있음
- 결국, 정부출연금과 자체수입 모든 면에서 과학기술 출연(연)과 과학기술인들의 돈줄과 연구방향을 정부가 여전히 쥐고 있는 상황임

약속

- 과학기술 출연(연) 출연금을 묶음예산(포괄보조금)으로 전환
  - 과학기술 출연(연) 출연금을 포괄재정지원(블록펀딩: Block Funding)으로 전환. 포괄지원은 연구기관이 스스로 고유목적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연구촉진을 위해 정부는 총액만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예산집행, 연구방향 설정 등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예산지원 방식임. 일본과 다수 EU 회원국들이 활용하는 방식임. 출연금 비율은 기관유형에 따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의 표와 같이 제안함

〈표〉 출연연 유형별 출연금 비율 차별화 방안

유형	출연금 비율	비고
기초기술연구 기관	최대 90%까지 확충	지속 안정적 장기 · 대형 · 원천기술 연구
공공기술연구 기관	최대 70%까지 확충	일부 부처수요 R&D 능동 수행 필요
산업기술연구 기관	최대 50%까지 확충	산업계 기술지원 임무수행 감안

  - 다만,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포괄재정지원 비중을 차등화하고, 정교한 사후평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특히 사후평가에서 R&D 투자가 전체 가치사슬(기술개발 → 사업화 → 마케팅 → 매출증대·고용창출 → R&D재투자) 차원에서 선순환 구조 형성 및 성과창출 여부 평가 제도 도입
-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 인건비 100% 보장
  -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직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포괄보조로 지원되는 출연금에서 단계적으로 ‘17년 90%, ’20년, 100% 보장하는 체제로 강화. 현행 정부 과제수주(PBS) 양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연구직 종사자들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저해함. 일단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100% 보장함으로써, 정부부처별로 공모하는 연구과제를 따내는 데 혈안이 되는 현행 저급의 다수 연구보다, 1~2개 차세대 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을 꾀함

- 기업요구 R&D 사업 수행 및 지원 시 인건비 없이 직접비만 요구하여 기업자체 R&D 추진 대비 10~30% 비용으로 연구개발 수행
  - 이는 출연연의 정부과제 의존율을 낮추고, 동시에 기업과제 수주를 높이게 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 재정립 및 새로운 협의체 구성
  - 과학기술 출연(연) 및 전직(은퇴. 고경력) · 현직 · 원로 과학기술인 ·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 보장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민간출신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개입은 최소화하여 현장 과학기술계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기적· 실질적 협의기구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중재적 역할 재정립 혹은 새로운 협의체 구성

❷ 과학기술 출연(연)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진단

- '15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료(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15년 6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 현원은 총 1만 1,446명인데, 이 중 비정규직이 4,273명으로 27.2%를 차지하며, 파견과 도급 등 간접고용까지 포함시 비정규직 수는 6,602명에 달함. 특히 '15년 비정규직은 251명 증가한 데 반해, 정규직은 124명 증가에 그침. 특히 연구인력 정규직 전환율은 '14년 3.9%, '15년 2.5%에 불과함
- 더욱 큰 문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문병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기관의 '13년, 정규직 평균연봉은 6,407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평균연봉은 3,429만원으로 정규직의 5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출연(연) 남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22.8%인데 반해 여성연구원 중 56.9%가 현재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비정규직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

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여성 연구원 중 82%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연구원, 재료연구원, 식품연구원, 전기연구원 등은 여성 연구원 중 70%가 비정규직이었음

약속

- 과학기술 출연(연) 20~30대 청년 연구원 등 정규직 전환율 획기적 증대
  - 2020년까지 과학기술 출연(연) 정규직 연구원 비율 85%로 단계적 증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을 56.9%에서 25% 수준까지 낮추고 출산·육아 휴가·휴직 지원 강화
-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대폭 축소
  - 2020년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최소화하고, 시간당 임금에서는 비정규직이 더 높은 구조로 만듦

❸ 여성과 은퇴 과학기술인 활용 및 처우개선 확대

진단

- '09~'13년 전문과학기술인력 미충원 비율은 50%에 가까워 수급부족이 절실한 상황임
-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 과학기술인력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60세 이상 퇴직연령 과학기술인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61세 이상 연구책임자 수는 '13년 기준 4.3% 비중 차지함

약속

- 여성과학기술인 육아 관련 재택근무제 시행
  - 정부·민간 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육아휴직 후 5년 이내, 전공분야 실험연구 외 정책연구 혹은 연구환경개선 연구 등에 한정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함
-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 및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지원 확대, 미취업·경력단절·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대중강연 실시

-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고경력 · 은퇴과학기술 DB 구축 및 관리, 교육 ·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 및 알선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R&D역량 강화사업

- 퇴직과학기술인 중소기업 R&D역량 강화사업, 퇴직과학기술인이 중소기업 R&D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인력으로 초빙(채용)되어 근무하며, 인건비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❹ 과학기술 출연(연) 임크피크제 재고 및 정년 환원

진단

● 과학기술 출연(연)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이 불만이 만성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인센티브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저하가 더욱 크게 나타남. 현재 과학기술 출연(연) 중 상당수 기관에서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수용을 거부하고 있음. 특히, 공공연구노조는 공공연구기관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청년실업 해소는커녕 연구현장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출연(연) 원장들에게 임금피크제 미수용 시 기본운영비인 경상비 삭감, 임금상승률 25%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음

약속

●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인력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 취소 및 중단

● IMF 사태 이후 정년이 단축된 과학기술 연구직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킴

3 과학기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민과 함께!

❶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네트워크 구축

진단

- 2015년 창조경제 예산은 총 8.3조원(전년 대비 17.1% 증가)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실질적으로 기존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전혀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중복지원 및 정책전달체계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됨
- 창조경제 성과를 단기간에 내고자 사업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기업을 우선 끌어들여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음. 대기업들은 정부요청에 소극적 · 제한적 수준에서 투자와 참여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중소 · 벤처기업 또한 명확한 유인구조가 미비한 상황임
- 한국일보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동으로 기술혁신 부설 연구소 운영 중 인 631개 기업 대상(중소기업 약 91%) '기업 기술혁신 인식 조사' 결과(2015.8.23.), 정부 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 주도 · 단기성과 위주 정책 추진이 79%의 압도적 응답을 보였고, 그 외 유사정책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처별 협력 부족 등을 꼽았음. 특히, 정부지원제도 경험 기업은 41.4%에 불과했으며, 지원제도를 활용치 못한 기업들은 정보 및 전문인력 · 자금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했음.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기술혁신 효과에 대해 65%가 부정적 응답을 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음

약속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해 지역별 혁신경제 네트워크 구축
  -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폐지 및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
  - 각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단위(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 · 지원 원스톱센터 설치 · 운용. 지역 중소 · 벤처기업 유인 다양한 인센티브 혹은 구체적

전략 도출

- 광역별 중기지원센터 내 '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중소기업(중소상공인)과 근로자(노조)-대기업과 근로자(노조)-지역주민' 지역경제 활성화 네트워크(협의체) 구성

● 사업타당성 높은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중소기업의 지적소유권이나 아이디어를 융합·연계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지원 담당 원스톱센터 설치 및 운용

- 정책 홍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지원센터 내에 정책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홍보·지원 담당 원스톱센터 설치·운용. 관련 제출 서류 및 행정절차를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이루어 온 성과 및 업적보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축적 역량 검증 중심으로 간소화함

❷ 과학기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역량 강화

진단

● OECD 국가들은 지역성과 측정 및 지역의 경쟁력 및 복지 증가를 위해 지역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음. OECD 국가들의 전체 공공 투자 중 절반 정도를 지방정부가 투자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방정부 공공투자 비중은 4.0%로 최상위권임

● 우리나라의 지역별 과학기술역량 진단(KISTEP) 결과, 수도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은 민간 부문 R&D 강점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충청권은 공공 부문 R&D 강점 지역이었고, 강원권과 제주권은 공공 R&D 약점지역으로 평가됨. 지방자치단체별 강점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상위 10% 지역 PCT 출원 비중은 전체 50.3%로, 지역별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함

● 우리나라의 외국 지역 간 특허협력 비중은 5.2%, 공동 특허 비중은 1.9%로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수도권 지역 연구원 수는 전체 63.3%를 차지하고, 서울 지역 이공계 고급인력 배출 비중은 46.4%를 차지해, 수도권 인재 쏠림 현상이 심함

약속

-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매년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진단 및 평가하고, 그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과학기술 지원을 담당함. 동시에 지역별 대학 이공계 학과 및 연구기관, 지역기업,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지역기업 과학기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작동함. 강원권과 제주권에 대한 공공 R&D 투자를 확대해 나감
-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 지역별 특화대학을 선별 및 지원을 확대함. 지역의 이공계 석박사 인력은 지역기업체에 우선 채용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유출방지 함. 지역별 기업 연구개발 투자 패턴에 따라 상대적 강점 산업 분야가 전략 산업과 연계 및 발전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전략 추진
- 와국 지역과의 실질적인 협력 및 공동 연구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별로 타 지역 혹은 와국 지역과 실질적 협력 및 공동연구 활동을 할 경우, 지역별 '과학기술 역량증진 인센티브'를 제공함. 연구개발 투자가 미미하거나 기반이 취약한 산업은 지역 간 벤치마킹 등을 상호 보완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력 강화
  - 지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화를 설립하고 중앙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지방협의회와 협력을 강화함. 중앙은 거시적 계획 수립과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담당, 지방은 지방의 특성을 살린 세부적인 기획과 관리를 실행하는 연계체제 구축

❸ 우리동네 작은 과학센터 설치 및 운영

진단

-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동 '과학기술 국민의식 통계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1.4%가 광복 이후 아는 과학자가 없다고 답함.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수준이

현저히 낮음

-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어린이, 초중고 학생들이 과학을 놀이로 즐길 만한 공간이 없어, 학생들이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도, 그들의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떠오르는 과학기술 R&D 수요를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음

약속

- 시군구별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 작은과학센터' 설치
  - 시군구 단위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 과학센터' 전국에 설치
  - 과학센터 상근교사로 퇴직·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 직업연계형 R&D수요 수렴 팀 구성
  - 유아의 과학흥미 유발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에, 초중고 학생 대상 현장학습에 '우리동네 과학놀이터' 방문 프로그램을 추가함
  - 지역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직업연계 R&D수요 수렴 팀을 구성함.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가정·학교 활용 R&D, 농어민들은 농어업 R&D, 사무·서비스직, 노동자직군은 사무실 · 작업장 등에서 필요한 R&D 등을 제안함

13

조세·재정 공약

부의 대물림은 막고 서민 지갑은 채우겠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정의롭게 바꿀 것입니다.
정의당은 세금에 솔직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에게 사회복지세를 부과하고 필요한 만큼 복지재정을 확충해 증세 없는 복지논란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기업의 법인세 감세는 철회되고 소득세의 누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1. 튼튼재정으로 복지 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2. 경제민주화 지원, 부의 대물림 억제
3. 청년 기살리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감면
4.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탈세 · 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

정의롭지 못한 세금을 정의롭게

1. 튼튼재정으로 복지 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❶ 사회복지세 도입, 복지재정 확충, 누리과정 재원 논란 종식
❷ 법인세 최고세율 MB감세 이전인 25%로 환원
❸ 기형적인 소득세 세율 체계 전면개편, 누진세율 강화
❹ 부동산보유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및 과세강화
❺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적용 폐지

2. 경제민주화 지원, 부의 대물림 억제

❶ 대 · 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도입 및 공유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❷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도입
❸ 거액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재계산제도 확대 강화
❹ 상속공제 5억으로 축소, 고액상속 과세 강화

3. 청년 기살리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감면

❶ 생애 최초 소득자에 대한 "파이팅" 세액공제
❷ 중소형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폐지
❸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 신설
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4.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탈세 · 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

❶ 전국민 참여예산제 실시
❷ 탈세 및 부정당입찰에 대한 처벌 강화
❸ 예산실명제 도입, 쪽지예산 카톡예산 근절

1 튼튼재정으로 복지 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❶ 사회복지세 도입, 복지재정 확충, 누리과정 재원 논란 종식

진단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매우 낮은데, 2015년 국민부담률 GDP대비 24.7%에 불과해 OECD 평균 34.1%(2014년)에 비해 무려 9.4%나 부족. 2015년 GDP 1,546조원 적용하면 OECD 기준 약 145조원이 부족분임, 이는 2015년 중앙정부 복지지출(보건 · 복지 · 고용) 120조원 보다 더 많은 재원임
- 세계 최대의 노인빈곤율 등 부끄러운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조사대상 28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OECD 회원국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민소득이나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에서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 확대를 주장하나,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 완전 국가책임제,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잇따라 파기해 왔음. 특히 누리사업 예산에 대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으로의 책임전가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고, 재원 부족으로 기초연금 확대 공약도 반쪽에 그침
-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중앙정부의 밀어내기식 국고보조 복지사업으로 인해 나날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약속

-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 실현방안 : 사회복지세법 제정. 이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액의 10~20% 해당하는 사회복지세법 제정안 19대 국회 이미 발의 중

- 정의당이 도입하려는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임
- 이미 우리나라는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19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를 도입한 바 있음

■ 재원 : 매년 20조원 내외의 복지재원 마련

■ 효과 : 복지재원 확충, 누리과정 및 기초연금 재원 논란 종식 (16년 기준 기초연금 예산 총액이 10조원, 누리과정 예산총액이 4조원 수준)

❷ 법인세 최고세율 MB감세 이전인 25%로 환원

진단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로 OECD 평균에 비해 7%p 낮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거의 매년 40조원의 재정적자 발생되는 데에는 MB정부의 법인세율 3% 인하가 가장 큰 원인

● 법인세율 인하 이후 기업의 내부유보금은 09년 438조원에서 13년 886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충분한 세금 부담능력 보유

●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담배세 인상, 연말정산 개편을 통해 개인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이는 반면 기업에 대한 세금은 제자리걸음이어서 개인과 기업 간 과세 불형평성이 나타나고 있음

약속

● 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회복

■ 실현방안 : 법인세법 개정

■ 재원 : 연간 8조원 재원 확충

■ 효과 : 세입기반 확대로 재정적자 축소, 개인과 기업 간 조세형평성 개선 및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❸ 기형적인 소득세 세율 체계 전면개편, 누진세율 강화

진단

● 현행 소득세 세율 6-15-24-35-38%는 세율 구간간 격차가 불규칙하고 복잡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세 세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최고세율 38%는 그 아래 구간 세율인 35%와 3%p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최고세율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음

● OECD 국가 중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흡

● 미국 대선에서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최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방안이 주요 후보 간 주요 공약으로 제시

약속

● 소득세 세율을 5-15-25-35-45%로 개편

■ 실현방안 : 소득세법 개정

■ 재원 : 연간 3.5조원 재원 확충

■ 효과 : 세입기반 확대로 재정적자 축소, 누진세율 강화로 소득재분배 강화, 세율 단순화와 체계화로 세금에 대한 국민이해 및 신뢰 증진

❹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및 과세강화

진단

● 우리나라의 가계단위 자산지니계수 0.6014, 가처분소득지니계수 0.4259, 상위 1%의 순자

산점유율은 하위 40%보다 2배 높을 정도로 자산격차가 심각한 상황

- 우리나라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재산과세는 거래세 위주이고 부동산 공시가격 대비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농특세) 비중은 0.23% 정도로 1%를 상회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
- 2013년도 공시가격(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한국감정원 공시가격 및 국토교통부)은 아파트(공동주택)는 71.5%, 단독주택은 59.2%, 개별토지는 61.2%로 부동산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65%임
- MB감세 이후 종부세 부과대상 고가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69%에서 0.53%로 0.16%p나 줄어들어 자산격차 해소에 역행
- 부동산 보유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보유부동산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대신 부동산 물건별로 각각 구분해서 과세하고, 상가 및 오피스 빌딩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현행 보유세 과세체계에 많은 허점이 노정되어 있음

약속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로 상향
  - 재원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80%로 상향조정할 경우 재산세 1.9조원, 종부세 2.1조원 등 총 4.5조원의 부동산 보유세 증가가 예상됨
  - 효과 : 1)부동산 실효세율을 증가시켜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 2)재산세 확충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됨. 확충된 지방재정은 지방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도록 함

구분 (실거래가 반영비율)	2013년 기준 현행(65%)	정의당 제안 (80%)	증가
재산세	8조 1410억원	10조 982억원	1조 9,572억원
종부세	1조 2,243억원	3조 3,228억원	2조 985억원
부동산 보유세 합계	9조 3,653억원	13조 4,210억원	4조 557억원
관련세수 증가분(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5,014억원
부동산 보유세 관련 세수 전체 증가분			4조 5,571억원

주1) 국토연구원 조사결과 아파트, 단독주택, 개별토지의 공시가격(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은 각각 72%, 59%, 61%, 평균 65%임. / 자료 : 국토연구원,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12 행정자치부, 2014 지방세 통계연감

●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 전면개편과 최고세율 인상 등 누진률 강화

■ 세부개편방안 :

1)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져 있는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단순화 일원화

2) 토지, 건물, 주택으로 구분하여 보유부동산 전체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
(현행 종부세 과세 방식)

3) 과세표준 아래구간에 대한 세율은 유지, 위 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재의 MB감세 이전 종부세 세율 수준으로 인상

4) 건축물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5)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격비율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은 점진적으로 현실화

[세율체계 예시]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토지		건축물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과표	세율
~1억	0.1%	~5천만원	0.2%	~2억	0.2%	~1억	0.1%
~3억	0.2%	~1억	0.3%	~5억	0.3%	~3억	0.25%
~6억	0.5%	~3억	0.5%	~10억	0.5%	~10억	0.5%
~15억	0.75%	~10억	0.75%	~50억	0.75%	~50억	0.75%
~30억	1%	~30억	1%	~100억	1%	~100억	1%
~50억	2%	~50억	2%	~200억	2%	~500억	1.25%
50억 초과	3%	50억 초과	3%	200억 초과	3%	500억 초과	1.5%

■ 실현방안 :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지방세법 개정

■ 재원 : 연간 4조원의 신규재원 확보

■ 효과 : 1)부담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 원칙을 구현, 자산불평등을 완화
2) 보유세를 지방세로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❺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적용 폐지

진단

- 현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0% 단일세율, 2015년 초 정몽구 부자 현대글로비스 주식 팔아 1조 1,500억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연봉 7~8천만원의 월급쟁이보다 낮은 세금 부담
- 상장주식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25억원 초과 주식보유자여서 전체 개인 투자자의 0.2%에 불과
- 이자배당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으로 현재의 낮은 금리를 감안할 때 부부가 20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누진세율 적용받지 않을 수 있고, 전체 금융소득자의 0.3%인 13만명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상황

약속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보유주식 10억원으로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
  - 실현방안 : 소득세법 개정
  - 재원 : 연간 2조원의 신규재원 확보
  - 효과 : 세입기반 확대로 재정적자 축소,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와 금융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 제고

2 경제민주화 지원, 부의 대물림 억제

❶ 대· 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도입 및 공유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진단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많은 이익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에 기반,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임금 등의 지급 여력에 제약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인 상황
- 대기업의 성과는 수많은 협력기업의 공동노력의 결실 인만큼 그 성과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고 기업 간 협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관건이라 할 것임

약속

- 초과이익 공유제에 30% 세액공제 적용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해서 달성한 이익은 협력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공유한 이익의 30%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실현방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9대 국회 발의
  - 재원 : 정확한 세입감소 규모 추정 곤란(초과이익 규모와 세액공제율에 따라 세입감소가 달라질 수 있음. 만약 공유한 초과이익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공유이익의 1조원일 경우 3천억, 5조원일 경우 1.5조원의 법인세 감면발생 예정)
  - 효과 : 이익공유에 따른 중소기업 자급여력 확대 → 임금인상 확대 → 내수확대 및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마련

❷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도입

진단

- 법인세 감세 이후 기업의 사내유보금 급증했지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투자 자산 증가로 이어져
- 비업무용 자산에 따른 이자 및 배당수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사내유보금과 투자자산,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영업외수익은 대기업에서 집중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여당이 도입한 "기업환류세제"(투자, 배당, 임금인상분이 이익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10% 추가과세)의 경우 3년 한시제도이고, 무엇보다 앞으로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미 천문학적 규모로 쌓여 있는 유보금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

[주요 투자자산 계정과목 금액 변동 현황]

(단위:조원, %)

구분	08년	13년	증가	증가율
투자자산	464.5	869.3	407.5	87.7
단기금융상품	120.8	215.7	94.9	78.6
이자수익	19.9	17.4	-2.5	-12.6
배당수익	1.6	11.6	10.0	625

약속

- 사내유보금 중 이자 배당 수익 등에 10% 할증 과세

  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 등 사내유보금 중 업무무관 자산의 운용수익에 대한 10% 할증과세 도입해서 사내유보금이 생산적 투자나 임금 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환류되도록 함. 현행 법인세법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10% 할증과세를 통해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억제하는 방안을 시행중에 있음

  - 실현방안 : 관련한 법인세법 개정이 19대 국회에 이미 발의
  - 재원 : 매년 3조원의 추가 세입 예상
  - 효과 :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과 투기성 자산 보유 억제, 생산적 투자와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 기대

❸ 거액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재계산제도 확대 강화

진단

- 한미약품의 사주가 지난 2012년 미취학 아동인 손주 7명에게 각각 증여한 25억원 상당의 주식 가액이 최근 신약개발에 따라 주가가 폭등한 1천억대로 급증, 금수저 논란 가중시킴
- 사주 등 회사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거나 회사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신약개발과 같은 회사기업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공개 정보를 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 2013년 기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예금계좌는 1천320개로 예금액이 2,012억원에 달하고, 심지어 5억원 이상 예금계좌도 92개로 예금액이 1,696억원
-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 2014년 기준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이고,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

약속

- 증여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 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제도 시행 강화

  회사 대주주나 임원 등이 해당 주식을 증여한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주식가격이 폭등할 경우 그 시점에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증여세 재계산 제도”를 도입
- 세대 생략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할아버지/할머니가 미성년자 등 손자/손녀에게 바로 상속 및 증여를 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 실현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재원 : 추가 세입규모 추정 불가(한미약품 사례만 약 5,000억 추가 세수)
  - 효과 ;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여세 회피 방지, 부유층의 편법증여 억제

[상속 · 증여세 강화방안 적용 시 한미약품 손주의 증여세 부담액 추정]

구 분	현 행	정의당안	
	세대생략 할증 30%	재계산만 적용	재계산 + 할증 50%
주식가액	25억원	1천억원	1천억원
과세표준액	24억 80백만원	999억 80백만원	999억 80백만원
총납부세액(합계)	10억 81백만원	693억 42백만원	742억 95백만원
산출세액	8억 32백만원	495억 30백만원	495억 30백만원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2억 50백만원	198억 12백만원	247억 65백만원

주) 손주 7명에 대한 총 증여액을 기준으로 추정. 증여시점인 2012년 기준 할증과세 30% 적용

❹ 상속공제 5억으로 축소, 고액 상속 과세 강화

진단

- 2013년 전체 피상속인수 282,232명 중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은 6,275명, 2.2%에 불과
- 과도한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재산이 수십억이 넘는 경우에도 상속세 한푼도 안 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최근 가업상속공제 확대로 500억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안 낼 수도 있어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상속공제가 지나치게 복잡

약속

- 상속공제 한도 5억원으로 축소, 고액 상속 과세 강화

  상속공제를 단순화하고 한도를 5억원(15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3.4억원 감안)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액상속에 대한 과세강화

  - 실현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재원 : 1.6조원의 추가 세입 예상
  - 효과 : 상속세 과세기반 확대, 고액상속에 대한 과세 강화, 상속공제 단순화로 국민이해 및 신뢰 증진

▶ 상속공제 변동에 따른 상속세 추계액-2013년 기준 (단위 : 억원)

총상속재산규모	현행		상속공제 최대 5억		추가 세수
	인원	산출세액	인원	산출세액	
~10억	3,098	680	5,799	1,716	1,036
~20억	1,843	1,599	2,542	5,262	3,663
~30억	680	1,897	708	4,432	2,535
~50억	360	2,416	373	4,716	2,300
~100억	201	3,153	210	6,849	3,696
~500억	87	5,451	87	7,916	2,465
500억 초과	6	2,376	6	2,653	277
합계	6,275	17,572	9,725	33,544	15,972

3 청년 기살리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감면

❶ 생애 최초 소득자에 대한 "파이팅" 세액공제

진단

- 2016년 1월 청년실업률 9.5%로 2000년 이후 최고, 취업한 청년의 64%가 비정규직
- 자녀 1명당 대학졸업 때까지 평균 양육비 3억 894만원(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취업준비를 위한 휴학을 하고도 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1개월 소요
- 취업 이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는 미혼 가구에 대한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

약속

- 생애최초 소득자에 1인당 1백만원의 "파이팅"세액공제 도입
  - 실현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재원 : 추계 곤란
  - 효과 : 청년층 등의 경제활동(취업 및 창업)을 지원, 청년실업율 완화, 가계소득 증가 및 내수활성화

❷ 중소형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폐지

진단

- 2014년 기준 승용차 등록대수 1,575만대, 사실상 전가구 승용차 보유시대 도래
- 2014년 국내 자동차 산업 매출은 240조원으로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14%를 차지하고 다른 산업과의 긴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상황
- 사실상의 생활필수품인 승용차, 특히 사치품이라 할 수 없는 중소형 승용차에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 내수를 살린다면서 정부여당은 이른바 명품시계나 가방 등의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민주당은 보석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국회의장은 고가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
- 현재 진행중에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개별소비세 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도 한시적 대책이며, 이로 인해 고가 수입승용차와 대형승용차의 판매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 발생

약속

- 배기량 2천CC 미만의 중소형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 실현방안 : 개별소비세법 개정
  - 재원 : 2014년 현재 2천CC 이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로 인한 세금감면액은 5,306억원으로 예상

[승용차 개별소비세 현황-2014년 기준]

구분	출고량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합계
2천CC 이하	673,842	4,088	1,218	5,306
2천CC 이상	223,930	5,950	1,781	7,731

  - 효과 : 중산 서민층 세부담 완화,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

❸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 신설

진단

- 2009년 이후 7년 만에 전세가격이 2배로 인상, 전국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전국평균 70%를 상회,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음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사실상 포기, 주택임대시장을 시장에만 내맡겨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월세 폭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어
- 올 초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전월세 지원을 꼽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
- 현재 전월세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은 월세 지출액에 대한 10% 세액공제가 전부이다시피한 상황

약속

- 월세 세입자 주거비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다른 공제와 동일한 15%로 확대
  -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도 월세와 동일한 세액공제 확대 적용
  - 전월세가구의 이사비용(이사비 및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추가 적용
- ■ 실현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 재원 : 추정곤란
- ■ 효과 : 1)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2) 임대사업자 및 부동산중개업 및 이사업체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

❹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진단

- 2014년 기준 정부 기준 비정규직 608만명, 전체 노동자의 32.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1인당 임금격차 115만원
- 비정규직은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표상이며 양극화의핵심원인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고,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 1인당 세액공제액이 일부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에 대한 유인효과는 제한적

약속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행 1인당 2백만원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와 동일한 수준인 5백만원으로 확대

  - 실현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재원 : 추정곤란
  - 효과 : 정규직 전환 확대,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에 따른 불평등 개선, 내수 활성화

4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탈세·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

❶ 전국민 참여예산제 실시

진단

- 4대강 사업, KRX 사업 등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재정현안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예산낭비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나 일회적인 공청회 등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 작년 5월18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예산규모 31억 스위스 프랑(3조 6천억원 규모)인 22대의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도입사업을 53.4%의 반대로 부결시키는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대규모 쟁점사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

약속

- 대규모 예산 사업, 분야별 지출 순위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민 참여예산제 도입, 대규모 예산사업 착수여부, 증세 등 주요 재정 현안과 분야별 지출 우선순위 등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 실현방안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대상자 1600만명) 및 종합소득신고(대상자 500만명) 서식에 재정예산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내용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재원 : 불필요(추가적인 예산부담 없이 국민투표에 준하는 효과 발휘)
  - 효과 : 예산낭비 개선, 참여민주주의 강화,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❷ 탈세 및 부정당 입찰에 대한 처벌 강화

진단

- 탈세와 부정당 입찰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여전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고액·상습 체납자(5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는 2,22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1인당 평균 17억원)에 달함. 또한 2014년도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27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인당 평균 9억 7천만원(소득적출률 32.9%)의 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전문직을 포함 87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 누락은 11억 5천만원(소득적출률 43.1%)에 달함. 한편 국세청은 2015년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하여 1조2,861억 원을 추징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OECD 평균 18.4%에 비해 7.9%p나 높은 26.3%로 분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무조사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아(법인 세무조사 비율:한국 0.94%, 미국 1.33%, 일본 3.28%, 개인 세무조사 비율:한국 0.09%, 미국 0.24%, 일본 0.21%)
- 담합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2% 남짓에 불과하고, 정부가 공언했던 3진 아웃제(3년 이내 3번 과징금 부과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으며, 부정당입찰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면남발로 있으나마나한 제도
- 결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솜방망이 처벌이 탈세와 입찰담합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

약속

- 세무조사 확대 강화 탈루와 부정당 입찰 징벌적 조치 강화

  세무조사 비율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확대 강화, 탈세 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배제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확대, 부정한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최소 과징금 도입 및 최대 과징금 확대) 도입 및 삼진아웃제 강화, 입찰보증금 할증과 마이너스 인센티브 도입 등 입찰시 불이익 확대. 부당 내부 거래 적발 시, 차감 없이 거래비율 전체 증여세

적용과 특가법상 배임 · 횡령죄 특례조항(5년 이상 유기징역) 적용

- 실현방안 :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계약법 등) 개정
- 재원 : 탈세와 입찰담합 축소로 인한 세입규모 추정 곤란
- 효과 : 세입확대 및 예산낭비 개선, 조세 및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❸ 예산실명제 도입, 쪽지 예산 카톡 예산 근절

진단

● 예산심의 때마다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논란이 되풀이 되면서 국회 예산심의가 밀실에서 몇몇 힘있는 실세 의원들과 정부 간의 줄다리기로 결정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음.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예산마저 끼어들어가고 있어 쪽지예산은 예산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함

약속

● 증액 예산 요청한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 예산 근절

의원명, 증액 필요성 등이 명기된 서면을 통해서만 증액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실시하고 법적 근거 및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예산은 원천적으로 증액 불가

- 실현방안 : 관련법(국회법, 국가재정법) 개정
- 재원 ; 예산낭비 축소 규모에 대한 추정 곤란
- 효과 : 국회예산심의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예산낭비 방지, 국민불신 완화

14

아동·청소년 공약

아동과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폭력 없는 세상에서 인권을 존중받을 것입니다.
가정과 동네와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면서, 문화예술을 비롯해
더 다양한 체험과 향유의 기회를 누릴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생애 첫노동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1. 폭력 없는 세상, 존중받는 인권
2. 건강한 생활, 안전한 학교
3.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개편, 체험활동 강화
4.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알바 권리 보호

아동·청소년 인권선진국

1. 폭력없는 세상, 존중받는 인권

❶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❷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실현
❸ 아동 · 청소년 인권 보장 법제화

2. 건강한 생활, 안전한 학교

❶ 어린이 건강담당의사 제도 도입
❷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제
❸ 방사능 없는 학교 급식 실현
❹ 쾌적한 친환경 건물에서 공부하는 선진학교
❺ 재난위험시설 완전 해소, 유해물질 없는 운동장

3.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개편, 체험활동 강화

❶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문화예술교육 개편
❷ 아동청소년 국공립 박물관 · 과학관 무료입장
❸ 공공 청소년기관, 시설 확충

4.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알바 권리 보호

❶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❷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❸ 고졸 취업장려금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1 폭력 없는 세상, 존중받는 인권

❶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진단

- 2014년 아동학대종합대책 방안이 제시되고, 2015년 아동학대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것으로 훈육을 용인하는 사회문화적 풍토, 가정체벌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개선되어야 함
- 아동학대 신고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선생님과 공무원이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지 및 안전을 파악하는데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한계가 뚜렷함. 학교전담 경찰관은 16년 현재 1천 138명. 한 명당 10여개 학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업무는 부여되지 않음.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시 주소지 이전 및 전학지원 조치에 있어 행정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친권자 동의와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 필요
- 보육시설을 포함해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아동학대 계속 발생.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영유아보육법만 규정되어 있어 보육교직원만 해당.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내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한 신고자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시설폐쇄 등 위험으로 인해 내부에서 학대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음
- 1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총 319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방임사례가 212건으로 과반수 이상(66.5%)에 해당.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아동학대 발생 시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는 필수임. 그러나 정보공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일선 현장에서는 협력에 필요한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도 미흡함. 2015년 아동학대예방포럼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2015년 현재 503명에 불과해 상담원 1인당 약 1.8만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음.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상담원 1인당 아동 1,339명을 담당.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개소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아동은 1,036명임. 반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

대로 판단되어 분리보호된 아동은 2,912명으로 분리보호된 아동 중 약 36%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임

- 학대행위자가 주생계자인 경우 퇴거 또는 접근금지 조치 이후에도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시조치 기간 중에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해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 또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2014)에 따르면, 피해아동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재학대 받는 사례가 10명 중 1명(10.2%)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87.2%에 달하고 있음.

약속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아동에게도 아동학대 눈높이 예방교육·홍보 실시로 자기보호 능력 강화
-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확대 적용
  - 유 · 초 · 중 · 고, 아동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신고 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 피해아동 · 가족지원 대책 강화, 가해자 교육 · 상담 · 치료 의무화
  - 학대행위자 분리 시 원가정에 남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긴급생계비 지원
  - 피해아동과 피해가족에게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법률 지원 확대
  - 가해자 치료 · 상담 · 교육 의무화, 사례관리 강화
-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56개소)이 없는 약 190개 시군구는 시군구청 내 아동학대 조사 전담 부서 설치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종사자 확대, 처우 개선 강화
  - 영아 또는 장애아동 대상 입소시설 확대
-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기결석 ·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기 점검
  - 유관기관이 함께 피해아동 보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인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전학 가능
  - 학교 신고 시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업무 부여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
  -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에 대한 유관기관 간 정보제공 내용 명시 법제화
- 아동유기 근절 방안 마련
  - 아동출생신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출생한 아동에 대한 공적보호 체계 조기 작동

❷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실현

진단

- 점차 감소하던 학교폭력이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증가. 학생 1천명당 심의건수 13.4%, 가해학생수 1.8%, 피해학생수 4.6% 늘어.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증가. 중학교는 학교폭력 가장 빈번.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 폭력 증가
- 공감과 배려로 학교폭력 예방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은 2015년 536교.
- 전문상담교사는 6교 중 한 곳(15.5%, 1천 781명). 초등학교 0.7%, 중학교 34.5%, 고등학교 27.0%. 이외에 계약직 상담사 2천 924명 있음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셉테드) 시범학교는 125교. 올해 100교 예정.
- 위기학생 통합지원 서비스 Wee 프로젝트의 3차 기관인 Wee 스쿨은 8곳.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 시도는 없음

약속

- 올바른 사이버활용 교육과 친구 맺기 교육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학교폭력 빈번한 신학기초에 집중)
- 초·중학교 중심으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 전문상담교사·학교사회복지사 확충 및 회복적 생활지도
- 범죄예방환경설계 CEPTED 적용 학교의 확대 (학교당 1~2천만원)
- 모든 시도에 Wee 스쿨 설치
  ※ 초중고 : 전국 1만 1천 526교, 초 5천 978교, 중 3천 204교, 고 2천 344교

❸ 아동 · 청소년 인권 보장 법제화

진단

- 학생인권조례가 일부 지역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긴 하나,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학교 현장 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임.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방안은 중앙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 인권교육 역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은 '협의', '권고'에 불과함. 따라서 교육 및 채용시험, 승진 및 각종 훈련 과정에 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 국가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협의를 하여야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러한 법적 권한의 한계로 인하여 학교교육과정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규모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 실효성 등에서도 한계가 있음

약속

- 청소년기본법에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방안에 대한 지자체 계획 마련' 명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인권교육 과정 확대

2 건강한 생활, 안전한 학교

❶ 어린이 건강담당의사 제도 도입

진단

- 한국의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취약해 지역주민의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욕구를 해소할 1차보건의료서비스는 취약한 반면, 수익성이 좋은 대형병원서비스만 과잉공급 되어 있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은 상황임
- 이로 인해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의료시스템이 부재함. 아플 때만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해 주며 교육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필요함

약속

- 우선 0~12세 어린이 건강담당의사 제도 도입
  - 0~12세 등록 아동에게 해당 지역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 등이 1년에 2회 주기적인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❷ 어린이 · 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제

진단

- 2014년 만 15세 미만(중3 미만)의 입원병원비는 총 1.7조원임. 이중 건강보험공단 1.2조원, 환자가 5,125억원을 부담하고 있음

〈2014년 입원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현황, 자료:통계청〉

	총 입원병원비	건강보험급여비	환자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
0~15세	1조 7,053억	1조 1,901억	1,306억	3,846억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자료.

● 「2014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0세 미만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9%, 10~19세의 경우 80%에 달함. 이는 전체 민간의료보험 가입율 74.3%를 훨씬 상회함. 민간의료보험료로는 가입가구원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경우 월평균 57,056원, 10~19세의 경우 49,060원을 지출하고 있음

약속

● 어린이 · 청소년 병원비 국가보장제 도입

– 어린이·청소년 입원비 전액 국가 책임

● 보험료 인상 없이 국민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의 3% 재원 사용

– 어린이 · 청소년 입원비 본인부담금 5,125억원, 국민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의 3% 수준

❸ 방사능 없는 학교 급식 실현

진단

●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음

● 워킹맘연구소의 학부모 1천명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꺼려지는 식재료(1, 2순위 합계)는 방사선조사식품(71%), GMO(64%), 화학첨가물(38%), 감미료(17%), MSG 등 조미료(11%) 순인 것으로 나타남. 설문문항이 모호했음을 감안해도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음

● 시 · 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별로 방사능 관련 급식조례가 일부 제정되긴 했으나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에 방사능 먹거리 안전 관련 조항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기준도 상이함.

약속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 시설 확보 근거 마련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 식재료 방사능안전검사 강화 및 실효성 확보

❹ 쾌적한 친환경 건물에서 공부하는 선진학교

진단

-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교환경은 과거보다 좋아진 것으로 보이나, 착시 현상
- 실제로는 노후한 학교시설이 많음. 30년 이상 건물은 7곳 중 2곳(28.8%)이며, 40년 이상 건물은 7곳 중 1곳(14.5%)임. 2009년부터 환경친화적인 그린스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중단됨. 5년 동안 168교만 개선하였고 학교당 최대 40억원 소요
- 발암물질 석면이 있는 학교는 10곳 중 7곳(70.7%). 위해성 높은 곳은 없고 대체로 낮은 편이나, 석면 제거는 필요함. 다만, 제거 비용 3.5조원이 없어 경기도의 경우 2016년 확보액은 3%에 불과함. 만약 이 추세라면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데 30년이 걸림
- 학생 화장실은 재래식이 일부 있고, 수세식 중에서 화변기가 40.4%임. 교체 비용은 2조원이나 재정 부족. 찜통교실과 냉동교실은 오래된 문제며 학교에 전기료 지원이 부족

약속

- 노후학교를 친환경학교로 바꾸는 그린스쿨사업 재개 (한 해 300교일 경우 최대 1.2조원)
- 재정지원을 늘려 학생 화장실 교체 (올해 1천억원 예정), 석면 제거
- 전기료 지원을 늘려 찜통교실과 냉동교실 해소 (올해 냉난방기 교체 0.15조원 예정)
- 환경개선과 누리과정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하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 교부율 5% 상향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고지원
  - 2000년 폐지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부활(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❺ 재난위험시설 완전 해소, 유해물질 없는 운동장

진단

- 초중고 재난위험시설은 2015년 30개동, 해소 소요액은 642억원. 교육부는 2017년까지 모두 해결할 계획 (2014년 104개동이었는데 적극적인 노력)
- 재난위험시설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매년 이루어지는 안전대진단의 결과 추가지정되는 방식이므로, 신속한 예산 지원과 개보수가 필요
-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와 개보수는 있었으나, 교육당국 차원에서 우레탄 트랙 등 탄성포장재를 검사한 사례는 없음. 탄성포장재 깔린 학교는 네 학교 중 한 곳(27.6%, 4천 469교). 이 중의 절반은 KS 기준조차 없던 시기에 조성(2천 239교, KS 품질기준은 2011년)
- 제주도 보건당국이 자체검사한 결과, 검사한 29교 전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검출. 현재 환경부는 전국 초등학교 30교 대상으로 운동장 유해성 검사 진행(종료 직전)

약속

- 2017년까지 초중고 재난위험시설 30개동을 차질없이 모두 해소
  - 추가 지정되는 재난위험시설에 신속한 개보수 예산 지원
- 유해성 검사 및 개보수로 유해물질 없는 학교운동장
  - 우레탄 트랙 등 탄성포장재 대상으로 유해성 전수검사 및 개보수
  - 운동장과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 2000년 폐지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부활(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3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개편, 체험활동 강화

❶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문화예술교육 개편

진단

- 문화예술교육은 기존 교과목 중심의 기능적으로 분화된 지식전달 중심의 공교육을 감수성, 창의력,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됨
- 하지만 애초 '문화, 예술, 교육'의 연계와 통섭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가치보다 정량적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따라서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 방과후학교, 토요문화학교 등 공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한편,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스포츠클럽은 더욱 늘어났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도 많아짐. 교육부의 '2015년 학교체육 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지도자, 프로그램,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입시교육으로 인해 고등학생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은 저조한 편임
- 문화예술분야를 지망하는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예체능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입시를 준비하기 어려워, 학원교습, 개인레슨 등 개인적으로 상당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함. 또한, 대학 진학 이후에도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 비싼 등록금에 실습비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약속

- 공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통합적 교과목, 교육과정 개발
-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교사 및 지도자 확충

- 초등학교 혁신학교 확대 및 일반 중·고교 진로과목 개설 등으로 예체능교육 활성화
- 국가표준등록금으로 예체능계열 대학생의 등록금 등 학비 부담 완화
- 과도한 예체능 사교육 유발시키는 예체능 계열의 입시제도 개선

❷ 아동청소년 국공립 박물관 · 과학관 무료입장

진단

-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박물관 등 입장료를 받지 않음
- 우리나라도 천만명이 넘는 아동 청소년 학부모들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의 교육문화 혜택 부여 필요

약속

- 아동 청소년 국공립 박물관 · 과학관 무료 입장 법제화

❸ 공공 청소년기관 · 시설 확충

진단

- 전국청소년정책연대(2016)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공 청소년시설 설치률은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 79.7%(227개 지자체 중 158개 설치), 청소년문화의집 6.3%(3,487개 읍면동 중 219개 설치)에 불과함. 2016년 자유학기제의 추진으로 진로탐색·체험활동 등이 활성화될 예정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시설과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등이 크게 부족한 상황. 이러한 공공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가 성행하는 실정임.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저급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청소년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주요국가의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살펴 보면, 한국은 시설당 청소년인구가 1.4만명에 달하는 반면, 독일 440명, 프랑스 504명, 영국 3,564명으로 최대 4배에서 31배까지 격차가 나고 있음

[주요국가 공공·민간 청소년수련시설당 청소년인구수('13)]

구분	청소년(만명)	시설수(개소)	시설당청소년수(명)	차이(배)
한국	1,026	753	13,626	1
독일	1,369	31,185	440	31
프랑스	1,494	31,600	504	27
영국	1,171	3,287	3,564	4

*자료: 「전국청소년정책연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른 청소년정책과제 제안서. 2016.3 / 일부 수정

약속

- 공공 청소년기관·시설 확대
- 공공 청소년기관·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의무 배치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4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알바 권리 보호

❶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진단

- 한국전쟁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조차 불온시하는 시각이 많음. 일상에서도 경찰서에 붙은 수배전단에 범죄 용의자의 용모를 '노동자 풍'이라고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남
-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1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모의 노사교섭을 진행하도록 편성한 교과서가 있으며,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1/4 정도의 분량을 노동문제로 채우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시민사회 과목에서 1년 동안 1/3정도의 비중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임

약속

- 현재 학교 위주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노동인권교육 확대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연간 10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❷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진단

-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2016)에 따르면,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고교생 가운데, 부모한테 용돈을 받지 못해 교통비·통신비·급식비·간식비 등을 스스로 벌어 쓰는 경우가 29.0%에 달함. 2013년 기준 근로 청소년은 대략 22만여명 정도로 15~18살 중고생의 3분의 1 이상이 알바를 경험함. 단순 경험이나 추가적인 소비를 위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상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근로 청소년도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연구, 2014)에 따르면, 업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25.%에 그쳤으며,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비율은 31.9%로 나타남. 반면,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은 경험은 중학교 15.8%, 고등학교 16.8%(일반고 14.8%, 특목고·자율고 13.4%, 특성화고 27.3%)에 그쳤음. 또한, 201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등에 총 241개소의 안심알바신고센터가 설치되었으나, 상당수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됨

약속

- 안심알바신고센터의 확대 및 운영 개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화
- 권리구제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지원체계 구축
- 사업주 대상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 또래상담 등 청소년 역량 강화

❸ 고졸 취업장려금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진단

- 우리나라의 학력간 임금격차는 고졸 100 : 대졸 153.9 (고용노동부, 2014년)
- 학력간 임금격차는 학력주의 병폐, 초중고 학교교육 왜곡, 가정의 사교육비 및 대학교육비 부담, 과잉학력 등의 문제를 낳음
- 정부는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근속장려금 제도를 실시. 뿌리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고졸취업자에게 3년 동안 한 해 100만원을 지원하나, 2016년 예산은 7.8억원(15년 수혜자 418명)에 그치고 있음
-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학력 간 임금격차 해소가 필요함

약속

- 현재 근속장려금을 고졸취업장려금 지원제도로 개편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중견·중소기업 취업하면, 취업 초기 최대 4년 동안 월 30만원(연 360만원)까지 고졸취업장려금 지원(경력 보전)
  - 대상자가 3만명일 경우 연간 1,080억원 소요
- 차별금지기본법 제정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학력에 따른 차별 해소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과정 등 직업계고 확대

15

청년 공약

“청춘, 걱정하지 말아요”

청년들은 걱정없이 미래를 꿈꿀 것입니다.
우리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에게 고용책임을 부과할 것입니다.
개편된 고용보험으로 청년들은 나쁜 일자리를 스스로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미취업 청년들은 청년급여를 통해 일자리 탐색의 기회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열정페이가 사라진 첫 일자리에서 청년들은
자존감과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1. 괜찮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2.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존감 있는 채용
3.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단단한 실업안전망
4.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삶
5. 생애 첫 일자리 개혁, 존중받는 젊은 노동
6.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탈출, 인간다운 주거
7. 진짜 반값등록금, 정부책임 대학개혁

청년의 삶을 바꾸는 20대 국회

1. 괜찮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❶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❷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❹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❺ 협동조합 청년 CEO 육성

2.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존감 있는 채용

❶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❷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❸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❹ 취준생 보호법으로 채용 갑질 해소

3.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단단한 실업안전망

❶ 고용보험 전면개혁
❷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폭 해소
❸ 실업급여2(실업부조),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4.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삶

❶ 5시 퇴근법 도입
❷ 모든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❸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5. 생애 첫 일자리 개혁, 존중받는 젊은 노동

❶ 열정페이 OUT! 인턴제 폐지, 실습을 실습답게
❷ 노동부 근로감독관 2배 증원, 나쁜 일자리 검색제 도입
❸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각종 차별 금지

6.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탈출, 인간다운 주거

❶ 월세 공정임대료 실현
❷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
❸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원룸 공정관리비 실현

7. 진짜 반값등록금, 정부책임 대학개혁

❶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❷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❸ 대학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1 괜찮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❶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진단

● 2015년 9월 현재 전체 실업률은 3.2%, 청년층(15세~29세) 실업률은 8.5%.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2012년(7.5%) 이후 지속 상승하여 2015년 2월에는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 중. 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실업자)을 고려한 청년 실질실업률은 2015년 상반기 22.4%를 기록 중

〈실업률 현황〉(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상반기)
전체	3.1	3.2	3.5	4.0
청년 (15~29세)	7.5	8.5	9.0	10.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5년 상반기 실질실업률 현황〉(단위 : %, 천명)

구 분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구직단념자 포함)	실질실업자	실질실업률
전체	1,065	500	33	1,721	3,320	11.7
청년 (15~29세)	439	64	14	591	1,107	22.4

*자료 : 김유선 「청년고용실태와 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 정부는 청년인턴과 직업훈련기회 확대로 인턴과 교육 등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업과 공공부문에게 고용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일자리 정책은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게 될 것임

약속

- 청년고용할당제로 매년 24만 5천개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청년미취업자 비중을 기존 정원 대비 3%에서 5%로 상향조정. 2014년 공공부문 정원기준 300,559명에서 5% 증가할 경우 1만 5천개 일자리 창출 가능
-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 역시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경우 매년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

❷ 상시 · 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진단

- 2015년 3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1,879.9만명 중 기간제 등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용역, 파견, 사내하청 등)을 합친 비정규직 숫자는 838.8만명이며, 비율로는 44.6%

〈전체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12년 3월	13년 3월	14년 3월	15년 3월	12년 3월	13년 3월	14년 3월	15년 3월
임금노동자	17,421	17,744	18,396	18,799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9,051	9,562	10,167	10,411	52.0	53.9	55.3	55.4
비정규직	8,370	8,182	8,229	8,388	48.0	46.1	44.7	44.6

*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부문 대기업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움. 하지만 2014년 현재 공공무문 비정규직 규모는 18.1%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공공무문 비정규직 규모〉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수 (명)	2011년	1,691	1,350	341	241	100
	2012년	1,754	1,394	360	250	111
	2013년	1,762	1,409	353	240	112
	2014년	1,831	1,500	331	218	114
비율 (%)	2011년	100.0	79.9	20.1	14.3	5.9
	2012년	100.0	79.5	20.5	14.2	6.3
	2013년	100.0	80.0	20.0	13.6	6.4
	2014년	100.0	81.9	18.1	11.9	6.2

*자료 : 김유선「청년고용실태와 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약속

-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도 고용창출이며, 일자리 늘리기에 해당
- 상시지속 업무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주요 대기업 사내하청 즉각 정규직 전환
- 인건비 총액관리제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 조정 및 합리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평가 시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반영, 무기계약 전환자에 적합한 직급체계와 임금체계 신설, 합리적 근거 없는 민간위탁사업은 공공부문이 직접 시행
- 재벌 계열사의 제조업 부문 사내하청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서 드러났듯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며 불법파견. 사내하청 정규직화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정규직 고용 원칙을 준수하는 것. '좋은 일자리 최대 40만개 창출' 가능

〈10대 재벌 비정규직 규모〉

	계열사 (개)	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노동자	정규직	비 정규직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고용
10대 재벌	216	1,301	811	490	90	400	37.7	7.0	30.7
20대 재벌	94	387	202	186	46	140	47.9	11.9	36.1
고용형태 공시제대상	3,233	4,593	2,778	1,815	898	918	39.5	19.5	20.0

*자료: 김유선「청년고용실태와 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진단

● 한국의 공공부문은 고용규모가 매우 낮음. 공공부문 고용정책은 실업의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물론 복지서비스의 공급 등 역할을 함께 갖고 있지만 일반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취업자 수 비중은 7.6%에 불과. 이는 OECD 평균 21.3%에 비해 13.7%나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3년 기준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

〈OECD 회원국 공공부문 취업자 비중〉(단위 : %)

국가	덴마크	스웨덴	영국	OECD	프랑스	터키	멕시코	한국
공공부문 취업자 비중	34.9	28.1	24.9	21.3	19.8	12.9	11.8	11.9

*자료: OECD『Governmaent at a Glance』 2015

약속

● 안전,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증원

● 철도 지하철 2인 승무제 실시, 전동차 정비 외주인력 직영화, 스크린도어 안전인력 등 교통 · 에너지 분야 안전 인력 확충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급여 서비스 강화와 심사평가 등 인력 충원

● 보호자 없는 병원, 포괄 간호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간호사 신규채용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는 OECD 29개국 중에서 26번째, 중학교는 26개국 중에서 26번째(OECD 교육지표 2014년)로 최하위 수준. 2015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28.9명, 고등학교 30.0명. 학급당 학생수를 한반 25명으로 감축하면서 교사 충원

❹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진단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4년 2,1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
- 2014년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는 304만명(16.3%),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인 노동자는 1,214만명(64.7%), 법정 초과근로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해서 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357만명(19.0%)

약속

- 장시간 근로 퇴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지켜 62만개 일자리 창출
-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특례 등 각종 예외조항 삭제
- 2014년 현재 노동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357만명이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모두 합치면 3,237만 시간. 이를 주52시간으로 나누면 새로운 일자리 62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❺ 협동조합 청년 CEO 육성

진단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로 6천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됨
- 청년실업의 대안으로 무분별한 창업 정책이 남발함으로서 청년들을 창업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문제임. 새로운 고용모델로서 소규모 협동조합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형성 필요

약속

- 협동조합 청년경영자 양성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인재풀 형성
  - 청년 협동조합 경영자 양성 교육 (전문경영인 육성)
  - 권역별로 〈협동조합 청년 경영인 양성센터〉설치, 취업연계형교육(3~6개월) 진행
- 협동조합 경영교육을 이수한 청년인재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연계하여 소상공인 살리기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 소상공인협동조합 청년인턴 지원: 〈협동조합 청년 경영인 양성센터〉 교육을 이수한 청년인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 3개월 인턴십 운영 후, 성과달성 시 3개월 추가 지원 (조합에서의 계속고용 조건)
  -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화 성과 연계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에 대한 협업화 지원(기존 정책사업)의 성과 목표 – 조합원인 각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 에 조합 자체의 고용창출 성과 목표를 제시하여 우수 협동조합 표창 및 후속 지원

2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존감 있는 채용

❶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진단

● 2014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121개사 인사담당들을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중 '지방 사립대'를 27% 채용했다고 밝힘. 수도권 소재 대학'(25.9%), '서울 소재 대학'(18.6%), '지방 거점 국립대학'(14.8%), 'SKY 등 주요 명문대'(7.7%), '해외 대학'(6.1%)이었음. 하지만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14년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2,130,046명이고 이중 지방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923,615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43%에 이름. 지방 소재 국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전체 학생의 19.3% 수준임. 여전히 기업들이 서울소재 명문대학을 출신 취업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음

약속

●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 민간기업이 5% 청년고용할당을 실시할 경우 청년할당 채용자 중 여성 30%, 고졸이하 학력10%, 전문대와 지방대 30% 등 청년 할당 내 할당을 실현해 다양한 청년들의 균형 있는 채용을 보장함

❷ 금수저 취업청탁 근절,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진단

● 김무성, 신기남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자녀, 친인척 취업 인사청탁 의혹이, 최경환 의원

과 김진표 전의원 등 6명은 인턴 및 지인 지역구 인사 자녀에 대한 취업 청탁 비리 역시 각종 의혹이 제기된바 있음.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권모 전 운영실장은 합격자 10~15%는 고위공직자들의 취업 청탁이 있었다고 고백한바 있음. 또한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이력서에 부모의 직업과 재산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친인척 중 고위 공직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전남 등 5개 지역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의 친인척 192명이 해당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사학의 친인척 취업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음

약속

- 고위 공직자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강화로 취업청탁 방지
- 고위 공직자 취업 청탁에 의한 부당 채용을 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 처벌 강화

❸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진단

-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 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015년 구직자 905명을 대상으로 '면접 질문에서 불쾌감을 느낀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까운 지원자 77.6%가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역량을 의심, 비하하는 질문'(45.2%), '결혼계획, 애인 유무 등 사생활을 묻는 질문'(37.9%), '가정환경 관련 질문'(30.9%), '성별, 나이 등에서 차별적 질문'(30.1%), '키, 체형 등 외모 관련 질문'(20.4%) 등으로 조사
- 대한상공회의소가 2015년 6월 건설 · 제조 · 금융 · 보험 등 7개 대표업종 500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은 여전히 입사 지원서에 직무와 무관한 키 · 몸무게 · 혈액형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은 특기 ·

취미(21.8%), 키 · 몸무게(21.6%), 혈액형(18.2%), 본적(15.0%) 등. 기업의 80%는 가족관계를 물었으며 동거유무(14.6%)뿐 아니라 가족 직업(13.6%), 가족학력(10.4%)은 물론 가족수입(1.2%)까지 조사

약속

- 수저색깔 없는 표준이력서 · 차별 없는 채용과정 법제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고용노동부가 2007년부터 사용하도록 권장한 표준이력서 도입을 의무화 함. 나이, 성별, 외모, 출신지역, 학벌,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면접에서도 구직자에게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함. 채용의 전 과정에서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정보를 기업이 지원자에게 요구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함

❹ 취준생보호법으로 채용 갑질 해소

진단

- 2015년 '사람인'이 면접 경험이 있는 신입 구직자 873명을 대상으로 면접비를 조사한 결과 구직자는 면접 1회당 평균 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자 923명을 대상으로 면접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무조건 지급돼야 한다 43%, 가급적 지급돼야 한다 38%)가 면접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답함. 하지만 2014년 모 취업포털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81.2%가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들의 면접남발은 청년들에게는 희망고문이자, 생활비 증대로 나타나고 있음
- '취준생(취업준비생)'에 대한 '채용 갑질' 해소 필요. 채용과정에서 평가를 빌미로 직원들이 해야 할 영업 업무 떠맡기기, 자기소개서로 회사의 전략을 요구. 구직자는 채용이 확정될 때까지 합격 시 자신의 초봉이 얼마인지 알지 못함. 불합격자들은 자신의 채용 여부도 확인하지 못한 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함

약속

- 〈취준생 보호법〉(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정
  - 채용 모집 과정에서 연봉(초봉) 공개 의무화
  - 채용을 빙자한 노동력 착취 제한
  - 불합격 통보 공지 의무화, 필기전형 점수 공개
  - 면접 응시자에 대한 최저교통비 제공 의무화

3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단단한 실업안전망

❶ 고용보험 전면개혁

진단

-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보장성 취약.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40세 근로자가 단절없이 근로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기간은 7개월로 비교 국가 가운데 가장 짧은 나라 중의 하나
- 현재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원천금지 하고 있음. 2012년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180일)한 피보험상실자(실업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214.8만명으로 실업급여 신규수급자 94.8만명에 비해 2.2배나 많아 고용보험은 실효적인 실업안전망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을 합친 36개 국 중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원천적으로 불인정하는 나라는 13개국 뿐. 우리 현실에서 이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저임금 일자리에 일하는 청년들이 쉽게 사표를 쓰지 못하고, 사표를 써도 다시 나쁜 일자리로 묻지마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됨을 의미

약속

-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제공하고 사표 쓸 자유 부여
- 실업급여 기여기준을 고용보험 18개월간 180일 가입에서 최근 3년간 180일로 완화
- 실업급여 평균 수급기간을 103.3일에서 180일까지 연장
- 고용보험료를 현재 노-사 각 0.65%에서 각 1%로 인상함. 2014년 기준 피보험자는 1,193만명이며 피보험자가 2010~2014년 연평균 증가율인 4.2%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보수총액 또한 2014년 기준 3.686만원이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 3,829만원에서 2018년에는 4,475만원으로 증가
-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2%로 인상할 경우 현행 6조 3천억원인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수입은 2016년 10조 5천억원, 2017는 11조 4천원, 2017년 12조 3천억원, 2019년 13조 3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❷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폭해소

진단

- 2014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 중 46.3%이며 근로자의 63.8%가 가입됨. 고용보험의 법적 사각지대(교사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적용제외 대상자)는 임금근로자의 15.3%이며 고용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못한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임금근로자는 21.0%.(이병희 「고용보험 20년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
- 고용형태별로 보자면 임시 · 일용직의 이직률(18.0%)은 상용직(2.1%) 약 9배에 이르는 반면, 비자발적 이직자수는 상용직의 6.5배로 실업의 위험이 높음. 하지만 임시 ·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에 불과(이지연 「실업급여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4)
-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통계청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9%, 건강보험 43.8%, 고용보험은 42.5%에 불과

약속

-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무가입 대상 확대 및 보험료 50% 지원
  - 보험설계사 · 학습지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의무화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재학생 포함) 전면가입
-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을 최저임금과 연계해 월 18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

❸ 실업급여2(실업부조),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진단

- 기획재정부 추산 2015년 청년 취업애로계층(공식실업자, 잠재구직자, 구직단념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등)은 116만명. 하지만 2013년도 기준으로 청년층(15-34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는 29만 3천명에 불과
- OECD 주요 국가들은 고용보험 이외에도 실업부조를 운영하여, 고용보험 밖의 실업자들에게 최소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구직훈련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OECD 24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없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부조의 성격의 제도를 실업보험 내에 포함하고 있음. OECD 국가 가운데 실업부조 제도가 전무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는 미국, 멕시코 등 소수
- 현재 고용보험 제도 안에 실업부조와 그 취지가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4년 청년층 참가자는 6만 7천명에 불과한 수준. 따라서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실질적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는 26만명. 이는 단지 취업애로계층 중 31%만이 실업안전망에 포괄되어 있음을 의미함. 70%에 가까운 81만명의 청년들은 실업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

약속

- 실업급여 Ⅱ (실업부조) 도입
  -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미만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자, 실업급여 소진자, 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최저임금의 80% 지급
-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미만인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자, 실업급여 소진자 중 가구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1년간 540만원, 월 50만원의 청년디딤돌급여I를 제공
  - 청년급여 수급자는 고용안정기관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소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하지만, 최초수급 3개월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직업안정기관에 증명하지 않으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완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독립적인 일자리 탐색 기회를 폭넓게 보장받음
- 실업급여II와 청년디딤돌급여 참가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에 취업한 자를 포함함. 이미 정부가 추계하는 취업애로계층(실질적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가 포함됨. 합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 취업자라고 보기보다 구직중인 실직자라고 보아야 함
- 추가적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노동시장 지출액을 현재 0.6%에서 1%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300인 이상 기업 중 비정규직(직접고용, 간접고용 모두 포괄)의 임금 1.0%에 해당하는 추가적 고용보험료를 신설하고 노-사 공동의 고용보험료 인상과 함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함

4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인간다운 삶

❶ 5시 퇴근법 도입

진단

-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사회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음. ILO, OECD, EU 등 국제기구에서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지표로 노동시간이 제기되고 있고, 2007년 국제노동기구는 괜찮은 노동시간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기도 함.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결과(2014)를 보면 우리 나라 노동인구의 40% 가량이 '시간빈곤'상태이며 이는 약 930만명에 이름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시간특례업종 폐지, 연장 휴일 근로 제한이 우선될 것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주 40시간제 적용 및 현실적으로 휴식시간이나 이미 휴식시간의 기능을 상실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노동시간에 산입시키는 방향을 고려해야 함. 이와 관련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종진은 2013년 병원 간호사 의료기술직의 점심시간이 22.9분, 백화점 면세점 등 판매직의 점심시간이 37.7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음

약속

- 5시 퇴근법 제정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점심시간(현행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해 실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하도록 하고 9시 출근 5시 퇴근을 하도록 함
  - 이미 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은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교수는 8시 출근 4시 퇴근, 일부 교육청 공무원은 9시 출근 5시 퇴근을 실시하고 있음. 다수 외국계 기업 또는 외국의 경우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이른바 〈9-5〉근무가 일반화 되어 있음

❷ 모든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진단

- 2015년 기준 우리 나라 임금노동자의 유급휴가 적용은 10명 6명 정도(60.6%)에 불과하고 그나마 거의 대부분 정규직(89.2)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비정규직은 10명 가운데 2.5명 정도(24.8%)에 불과한 실정.(「직장인의 시간 불평등과 갈등해결 모색」 김종진 2014)
- 단체협약 등이 적용된 사업장의 경우 3.1절 등 국경일과 한글날 등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부진한 비정규직의 경우 사실상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국경일과 공휴일 등 소위 빨간 날을 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약속

- 국경일과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전환함. 연차휴가 외에도 연간 최소 17일의 추가적 휴일을 만들어, 단체협약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 다수 종사하는 청년에게도 휴일과 휴식을 보장

❸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휴가를

진단

- 현행 유급휴가제 관행 상 비정규직과 단순노무직, 서비스 판매직, 사무관리직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제조업 생산직과 달리 유급휴가 적용이 표준적이지 않고 제대로 활용 / 이용하지도 못하는 형편.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장이동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움. 근로형태, 단체협약 유무, 입사 시기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약속

- 여름휴가법(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5일의 휴가를 보장함. 취업시기, 단체협약 유무와 상관없이 여름만이 아니라 어느 계절에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만들어 유급휴가 관행을 보완하고, 휴식을 보장함

5 생애 첫 일자리 개혁, 존중받는 젊은 노동

❶ 열정페이 OUT! 인턴제 폐지, 실습을 실습답게

진단

- 고용노동부는 2015년 호텔 · 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를 선정하고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 총 151개 사업장 중 103개소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 최저임금법 위반 45개소, 주휴 · 연장수당 관련 위반50개소,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위반 32개소, 서면근로계약서를 미작성 19개소
- 현재 각종 산업에서 인턴십은 대학-기업체 간 협력, 재학생 현장실습 등 교육과 실습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성수기 등에 정규 노동자를 대체하여 연장 ·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질된 경우가 다수. 이로 인해 인턴십의 열정페이가 이미 사회문제화
-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권장하여 열정페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실시 중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 정원의 20%까지 인턴채용 지원금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게 인턴사용을 부추기고 있음

약속

- 공공기관 행정인턴,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제를 비롯해 각급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인

턴제도를 폐지함. 현재 인턴은 사실상 근로계약이 기간이 정해진 노동자로 간주하고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기간제 노동자로 일원화

-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이 산업체 현장실습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그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과 근로 비중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함. 또한 「고등교육법」 대통령령으로 현장실습에서 적절한 비율의 OJT(on The Job Training) 정하고 교육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함. 이를 위반할 시 모두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는 학기 및 방학 중 실시되는 각종 실습교육에 대해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실시.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인턴다수 사업장이나 대규모 위탁교육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실시

❷ 노동부 근로감독 2배 증원, 나쁜 일자리 검색제 도입

진단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이 조사한 결과 근로감독관 실무인력 1인이 관할해야 할 사업장의 평균적인 개수가 2014년 6월 기준으로 1,736개. 1인 당 사업장의 수가 무려 2,000개를 넘어서는 지청도 10곳(서울북부 · 성남 · 태백 · 부산동부 · 진주 · 대구서부 · 영주 · 안동 · 충주 · 보령). 2012년 8월 말 기준 신고사건의 접수건수는 215,285건으로 근로감독관 현원과 비교해봤을 때 1인이 평균적으로 200건 이상의 사업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최저임금 위반 등 청년들이 고통받는 기초적 고용질서 위반행위를 제대로 감시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을 뜻함
- 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공개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체불 명단공개만으로 해당기업이 블랙기업인지 알기 어려움

※ 블랙기업 : 일본인 곤노 하루키가 저서에서 사용한 말로 '법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노동을 젊은 직원한테 의도적 · 자의적으로 강요하는 기업, 곧 노동 착취가 일상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을 말함

약속

- 근로감독관 정원 2배 증원
  - 2014년 현재 1,250명인 근로감독관 정원(현원은 1,095명)을 2배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하는 사업장 개수를 1천개 이하로 감축함. 또한 근로감독관의 연수 및 교유 제도를 보완하여 공정한 근로감독을 위한 능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명예근로감독관 위촉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노동자 혹은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단체가 추천하는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하고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성차별, 산업재해 등 노동기본질서 위반사업장 인터넷 검색제도 도입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기본질서를 다수 위반하는 악성 사업장의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함.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성차별, 산업재해 등에 대한 정보를 취업준비생 등이 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강화함. 이를 위해 해당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❸ 청년 일자리에 대한 각종 차별 금지

진단

-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똑같은 기여를 했음에도 30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1개월 덜 지급하는 차별을 두고 있음. 청년들에게 빠른 취업만을 요구할 뿐, 안정적

일자리 찾기를 보장하고 있지 못함. 청년에게 자급기간을 불리하게 실업급여를 설계한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

- 「최저임금법」 중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에게 3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 이미 채용되어 있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할 근거는 없으며,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소기준이 되어야 함

약속

- 「고용보험법」 별표 1을 개정하여 30세 미만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30일 삭감을 삭제하고 개정함
- 「최저임금법」 개정함. 수습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함

6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탈출, 인간다운 주거

❶ 월세 공정임대료 실현

진단

- 기존 주거 관련 제도와 정책은 주로 4인 가구를 '정상 가구'로 간주하고 이를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삼았음. 하지만 1인 가구가 사회의 주요한 가구 형태가 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함
- 전체 1인 가구에서 35세 이하 연령의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9.9%이며, 65세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7%임. 그러나 지역별로는 연령별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남. 서울에서는 1인 가구 중 34세 이하 연령 가구주 비율이 40.9%이며, 수도권에서는 35.6%로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음

- 주거문제는 서울 · 경기 지역은 청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적으로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연령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34세 이하의 청년과 6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주거빈곤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34세 이하의 청년, 특히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따라서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주거문제는 청년 주거문제라고도 할 수 있음(최은영, 2014)
- 일반 가구의 소비 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은 평균 30.3만원으로 총 지출의 13.0% 수준이나, 1인 가구의 경우 평균 21.4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총 가계지출의 21.2%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대부분 월 4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보증금 수준은 1천만 원 규모임. 평균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1인 가구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임대시장의 월세 수준은 1인 가구가 지불하기에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초과

약속

- 규칙 없는 민간임대시장에 정부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로 '사회적 임대시장'을 만들어 냄
- 정부 공인 '안심중개포털'을 만들어 영세임대업자와 영세중계업자의 매물등록은 물론 임차인에게 적절한 주거정보를 제공함
- 공정임대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은 매물을 우선 등록하며, 세제 지원과 리모델링 지원 등을 받되, 정부가 정한 '공정임대료'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함

표 〈각국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비교〉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한국	임대차 갱신 시 인상률 상한이 없고 2년의 법정기간 중의 인상시에만 5%의 인상률 상한제한
독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년 간격으로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에 따른 표준임대료표를 작성하며 임대료의 상한은 3년동안 20%를 초과할 수 없음. 주택의 개보수비용과 관리비용에 따른 규정이 존재함. 정기임대차의 경우 계단식, 지수식 인상가능.
일본	경제사정, 물가인상 등으로 임대료를 인상해야 할 상당한 이유를 임대인이 입증해야 인상됨. 재판실무상 대략 연1/6을 넘지 않고 있음.

영국	임대료의 인상률을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과 연계하여 제한
프랑스	매분기별로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의해 발행된 임차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기초로 한 편차(12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변동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음.
뉴욕	차임결정위원회가 매년 최대 차임상승분을 제시.

*자료 : 민달팽이유니온 「1인 가구 월세 대책- 사회적 임대시장을 통한 상생 발전」 2016

❷ 월세 보증금 안심대출

진단

-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월세 보증금은 1억원, 월 임대료는 81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1인 가구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시장경제의 독립된 주체로 나서는 시기에 주거비는 가장 많은 소득의 유실이자 은행 또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워 세대 내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임

약속

- 주택도시보증공사(前 대한주택보증)가 보증하여 최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증금 대출하는 '보증금 안심대출'제도를 신설
-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70% 미만인 자에게 연 금리 2%, 최장 10년이 가능한 대출 실시

❸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원룸 공정관리비 실현

진단

- 임대차 분쟁 중 가장 빈번한 문제는 수선문제와 이에 따른 관리비 문제임. 그러나 현행법상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난방식인 150세대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이 의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 또는 소규모 주택에 관한 관리는 사실상 공백 상태

- 현재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결정권한이 있던 임대료와 관리비는 그 기준을 명확히 만들 수 있어야 함. 최근 서울시는 표준 원룸 관리비 기준표를 만들어 발표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임.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계약 당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약속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중개업자는 공정 공인중개사로 인증을 받는다면 정부가 설치, 운영하는 안심중개포털에 매물을 우선 등록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만 함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공정 관리비를 비롯해 수선 문제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7 진짜 반값등록금, 정부책임 대학개혁

❶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진단

- 2015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 418만원, 사립대 734만원, 국립 전문대 272만원, 사립 전문대 597만원
-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였으나, 액수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방식. 국가장학금 4조원과 교내외 장학금 3.1조원으로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을 부담해 공약을 완성했다고 밝히나, 학생과 학부모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원은 0.8%로, OECD 평균 1.2%보다 적음. 대학 이상 고등교육의 수혜자는 정부와 기업. 이들 수혜자들이 대학 재정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약속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 가정의 한 달 가처분소득을 표준등록금으로. 2014년의 경우 350만원

●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법인세와 내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2016년 9.2조원 보다 확대
  - 대학등록금 반값,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학 균형발전 및 특성화 등에 활용

●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및 과도한 이월금 조정
  -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의 10% 넘지 않도록 정비
  - 과도한 이월금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조치

❷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진단

● 우리나라는 학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상위권 대학 진학하는 수저계급론 사회. 학교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사회 역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평등한 신분사회

● 현재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의 11%로 제한

[고른 기회 대입전형]
(정원 내)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및 주부, 농어촌학생, 지역고교,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약속

●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모집인원의 11%에서 20%로 두 배 확대

❸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진단

- 우리나라는 대학서열화 국가. 가정배경과 대학서열이 연결되어 패자부활전 없는 불평등한 신분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프라임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면서 기초학문이나 지방대를 줄이는 방식에 많은 우려가 존재함

약속

- 대학 균형발전, 대학 연합의 통합전형 및 공동 교육과정
  - 대학 균형발전법 제정. 대학에 골고루 재정 지원
  - 여러 대학 연합 통합전형, 공동 교육과정, 전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부실 사립대의 국공립대화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
- 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하면서 합리적인 대학 개편
  - 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하고 학문 특성과 구성원 의사 존중하면서 대학 개편
  - 교육여건의 법정기준 강화하여 고등교육의 기초체력 향상

16

노인 공약

어르신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노인빈곤율 OECD 국가 1위, 노인 자살율 역시 OECD 국가 1위인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누구나 불안한 노후를 모두가 여유로운 노후로 만들겠습니다.
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안정된 노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부담이 큰 주거비, 요양비, 의료비를 해결하고 다양한 일자리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이상 차별과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생애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벗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1. 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2. 주거·요양·의료 3대 가계비 해소
3. 지역사회와 함께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권리 보장
4. 노인 인권과 존엄한 죽음 보장

불안한 노후에서 여유로운 노후로

1. OECD 평균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❶ 국민연금 급여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❷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차등없이 20만원 지급
❸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노인가구 기초생활 지원
❹ 노인 참여형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2. 주거·요양·의료 3대 가계비 해소

❶ 공공실버주택 도입, 주거비 지원 확대, 장기요양 주거개선급여 신설
❷ 좋은 돌봄, 질높은 요양서비스체계 구축
❸ 노인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및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3. 지역사회와 함께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권리 보장

❶ 살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 구축
❷ 학계, 의료, 민간이 함께하는 사회참여지원 네트워크 구축

4. 노인 인권과 존엄한 죽음 보장

❶ 연령 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❷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
❸「착한 장례식장」운영과「표준장례비용」도입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1 OECD 평균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❶ 국민연금 급여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진단

-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률은 2013년 49.6%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33개국 평균 12.1%의 4배에 달함(OECD, 2014)
- 2007년 44.6%, 2011년 48.6%, 2013년 49.6%로 노인 빈곤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임. OECD 33개국 가운데 20개 국가의 노인빈곤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제도가 확충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임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임

[한국의 노인빈곤률 추이(상대빈곤률 기준)]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빈곤율 (%)	43.9	44.6	45.5	47	47.2	48.6	48.5	49.6

* 자료 :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 이재훈, "노후빈곤 관련 쟁점", 2015에서 재인용.
* 재인용: 주은선. 한국의 노인빈곤과 국민연금 저연금 문제. 국회 공적연금특위 공청회 자료집. 2015.

- 우리나라 노인이 빈곤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이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이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의 부양기능 축소 국면에서 사적이전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5년 현재 24.2%임. 그러나 국민연금이 성숙한 2060년에도 실질소득대체율은 22%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 계속 떨어져 2028년 40%(40년 가입 기준)까지 인하되기 때문임
- 대규모 노인빈곤이 발생하는 또다른 이유는 공적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때문임. 현재 전업주부, 학생 등 1,012만명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공적연금 대상자가 아니며,

공적연금 대상자 중에서도 납부예외자 457만명, 장기체납자 113만명 등 570만명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1,527만명,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가입자 144만명 등 공적연금 실질가입자는 18~59세 인구 중 절반인 50.7%에 그치고 있음. 결국 이들은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낮은 연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음

[주요국과의 실질소득대체율 비교]

국가 / 연도	2010		2060	
	실질소득대체율	(평균가입기간)	실질소득대체율	(평균가입기간)
독일	41	(36.3)	35	(40.1)
그리스	59	(29.3)	50	(38.1)
EU 27개국	48	(36.0)	38	(38.6)
한국주)	19	(10.6)	22	(21.3)

주) 한국은 2014년 기준임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출처: 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 EU(2012), Aging Report.

* 재인용: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대책. 국회연금특위 공청회 자료집. 2015. 10.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군복무크레딧(6개월 인정)과 출산크레딧(둘째 자녀 이상 12개월 인정) 도입. 2012년부터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작. 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 및 납부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또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기금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며, 2015년 말 기금 적립금 규모도 512.3조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운용 대책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임

약속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신설
  - 월소득 14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에게 현행 '두루누리'와 동일하게 국민연금료 지원

- 군대 및 실업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양육(육아)크레딧 확대 전환 등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다양한 크레딧 제도 단계적 도입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

❷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차등 없이 20만원 지급

진단

-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70%(소득하위)에게만 지급되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20만원이 차등 지급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급여가 삭감되는 구조임 (10년인 경우 20만원 -> 20년인 경우 10만원)
- 2013년 재설계된 기초연금은 급여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시킴으로써 국민연금을 보완하기보다는 무연금자와 저연금 수급자에 대한 보장기능을 하도록 설계됨. 게다가 기초연금 급여액은 A값의 10%가 아닌 20만원 절대액으로 정해지고, 기초연금 급여 연동기준 역시 전체가입자평균소득(A값)이 아니라 물가연동으로 하는 등 실질액의 인하 효과를 가짐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방식은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후세대로 갈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대상자가 증가하게 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미래 노인의 대부분이 삭감된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임.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현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불리하게 설계됨

약속

- 중장기 과제로 노후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100만원 시대 실현
  - 1단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차등 없이 20만원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 방식 폐지, a값 연계, 캐나다 클로백제도 도입
  - 2단계: 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차등없이 30만원 지급(국민연금 급여 인상 고려)

❸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노인가구 기초생활 지원

진단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됨

구분	현 행	개편 후
부양능력 판단기준(소득)	• 저소득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까지 인정 • 일반가구 130%까지만 인정	• '모든 가구'에 대하여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 인정 ※ 부양의무자(4인가구) : 298만원(취약 423만원) → 485만원 변경
부양비 부과 기준선(부양능력 미약 구간)	•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130%	• 중위소득

* 출처: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2010년에만 117만명이 절대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하더라도 2016년 지원대상인 135만명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2010년의 155만명보다 더 축소된 상황임

〈저소득층 규모〉

구 분	인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기초수급자	155만명	(3.2)	88만가구	(5.0)
차상위계층	185만명	(3.8)	102만가구	(5.8)
- 비수급빈곤층	117만명	(2.4)	66만가구	(3.8)
- 소득인정액 120% 이하	68만명	(1.4)	36만가구	(2.1)
경상소득 120%~150% 이하	294만명	(6.1)	121만가구	(6.9)
합 계	634만명	(13.1)	311만가구	(17.7)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빈곤실태조사」. 2011. 12/ *비중은 전체인구·가구 대비 비중임.

● 빈곤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

약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❹ 노인 참여형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진단

● 65세 이상 노인의 28.9%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주 7일간 근무하는 노인은 25.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주 5일 근무한다는 노인은 24.0%, 주 3일 18.6%, 주 6일 18.3% 등으로 나타남.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20%로 가장 높으며, 40~49시간 19.2%, 9시간 이하 16.6%, 10~19시간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일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7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돈마련이 8.6%로 주로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하고 있음. 반면, 시간 보내기 3.6%, 능력발휘 3.0%, 건강유지 3.1%, 경력활용 1.8% 등 경제 외적인 이유로 일을 하는 경우도 10% 수준으로 나타남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생활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친교 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경력 활용	기타	계(명)
79.3%	8.6%	3.1%	0.4%	3.6%	3.0%	1.8%	0.2%	100% (2,970)

● 우리나라 평균기대 수명은 82.4세('14년. 통계청)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반면, 노동자의 평균 정년연령은 57.74세('13년. 통계청)로 정년 이후에도 25년 가까이의 생활을 유지해야 함. 게다가 공적연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에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가중될 전망임

●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현황은 OECD 국가들과 다르게 나타나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고용률은 30.1%로 최고 수준임.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유효은퇴연령*은 남성이 71.1세, 여성이 69.8세로 공식은퇴연령이 60세인 것을 감안하면 퇴직한 이후에도 평균 10년 정도 노동시장에 더 머무르고 있음. 반면, OECD 국가의 남성과 여성노인의 평균 유효은퇴식와 공식은퇴시기간의 차이는 0.5년, 0.4년으로 정년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과 OECD 중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단위: 세, %)

	한국				OECD 평균			
	2001	2005	2011	2012	2001	2005	2011	2012
고용률								
50-54세	70.3	72.1	74.7	75.4	71.8	73.7	76.1	74.1
55-59세	62.5	63.1	67.4	68.1	55.9	59.9	64.8	65.8
60-64세	53.8	53.4	55.1	57.8	32.5	35.6	40.0	44.4
65세 이상	29.9	29.8	28.9	30.1	10.8	11.1	12.3	12.8
일의 질								
〈파트 타임〉								
50-54세	6.8	8.0	11.8	8.0	11.7	12.5	13.6	13.7
55-59세	9.6	11.2	13.5	10.5	13.9	14.9	15.5	15.5
60-64세	13.8	14.7	17.2	15.1	19.2	21.8	22.5	22.5
65세 이상	22.6	26.3	31.8	33.2	34.6	37.5	39.2	40.0
〈임시직〉								
50-64세	40.6	41.8	39.4	36.9	8.6	9.0	9.1	9.1
65세 이상	-	52.3	61.9	60.6	17.3	16.8	19.5	19.9
유효은퇴연령								
남성	67.5	70.2	71.4	71.1	63.1	63.3	63.9	64.2
여성	66.7	67.7	69.9	69.8	61.1	62.0	62.8	63.1

자료: 1) OECD(2013b).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2013
2) OECD(2013c). Employment Outlook 2013

*재인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2014.

**유효은퇴연령 : OECD는 고령근로인구가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평균연령을 '유효은퇴연령'이라 하며, 정년퇴직연령에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나이를 '공식은퇴연령'으로 정의.

● 생산가능인구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게다가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한 노인 인구가 높아지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일자리 참여 욕구도 높아질 것임. 따라서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와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임

약속

- 은퇴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노인 맞춤형 사회적경제영역 지원 확대
- 고령친화적 사업장 연구 지원
-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고령노동자지원팀 설치
- 노동역량 감소를 고려해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근무조건 다양화
-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법제화

2 주거 · 요양 · 의료 3대 보장으로 노후 기본생활 보장

❶ 공공실버주택 도입, 주거비 지원 확대, 장기요양 주거개선급여 신설

진단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35.4%가 주거관련비의 지출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월세 5.1%를 더하면 40.5%가 주거와 관련된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실태조사 조사원 응답에 따르면, 주거 생활편리도에서 고령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5.4%로 현재 주거구조는 고령친화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상태임. 노인들은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공간을 계단(15.3%), 화장실 및 욕실(12.5%), 문턱(9.1%) 등으로 응답. 또한 노인의 다수(78.8%)가 낙상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실제 4명 중 1명은 낙상의 경험이 있어서 고령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구축이 필요함
- 보건사회연구원(2014)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노인을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 고령친화도시, 노인친화 지역사회 체계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보호 형태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와 함께 노인가구주가구, 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가구 특성별로 주택 선호 유형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반면, 현재의 주거정책은 노인부양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

는 독거 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의 욕구에는 부합되지 못하는 상황임

약속

- 노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도입 및 확대
  - 의료인, 사회복지사를 두어 종합적인 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고령친화적 편의시설 설치로 편리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구축
- 독거노인을 위한 홈쉐어링 및 원룸형 공동주택 도입 및 확대
  - 개인공간은 보장함과 동시에 공동생활공간을 갖추고 이동편의와 안전대책이 확보된 주거 공급
- 저소득층 주거비 대상 2배 확대 및 월 11 → 20만원으로 인상
  - 주거비 지원 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월평균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노인가구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역밀착형 주거 지원대책 확대
-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장기요양제도 내 주거지원 급여 신설

❷ 좋은 돌봄, 질높은 요양서비스체계 구축

진단

- 현재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2014년 노인인구의 6.6%를 차지

[장기요양서비스 인정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2	2013	2014	증감률(전년대비)
노인인구(65세이상)	5,921,977	6,192,762	6,462,740	4.4
신청자	643,409	685,852	736,879	7.4
판정자(등급내+등급외)	495,445	535,328	585,386	9.4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8%	6.1%	6.6%	

주)연도말기준 [사망자:('10)136,993명, ('11)266,819명, ('12)364,801명, ('13)467,668명, ('14)572,739명 제외]

* 자료: 복지부,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5.7

-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2012년 9.185에서 2030년 10.03%, 2050년 15.06%로 증가할 전망임.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2013년 11조 7천억원에서 2050년 43조 2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김상우, 이채정 2014).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인지기능저하노인 또한 지난 10년 사이(1998~2011년) 5.4%에서 31.1%로 증가(보건사회연구원. 2014)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노인 중에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만 제한이 있는 노인은 전체의 11.3%이고,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모두 제한을 보인 노인은 6.9%임. 한 개 이상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로 한다면 전체노인의 7%정도가 이에 해당하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까지 대상자로 한다면, 전체노인의 약 18.2%가 이에 해당
-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은 요양보호사로 2014년 26만 7천명을 차지함. 반면,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의 경우 인건비는 시급 7,440원을 차지하고, 노인돌보미의 경우 7,425원 수준임. 이와 함께 노노케어가 증가하면서 노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사회서비스 단가 및 인건비〉

구 분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사업내용	노인의 일상(가사활동, 주간보호)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간병+가사 지원)도모	일상(신체+가사활동)생활 지원
시간당 단가	9,800원	9,500원	43,500원 (4시간)
인건비(시급)	7,425원	7,125원	7,440원

*자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15.

약속

- 노인장기요양대상자 확대
  - 매년 1%의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 1.4% 비중에 불과한 공립 장기요양시설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 방문재활급여 신설
  - 정부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도입시 방문재활급여를 포함하였으나 실시하고 있지 못함. 일본과 독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문재활(방문물리치료서비스) 신설
- 집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 노인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요양시설 특화서비스 신설
  - 호주 등과 같이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요양서비스를 특화서비스로 급여내 신설
- 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설치
  - 돌봄 욕구와 서비스 관련 고충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체계마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 연계를 위한 지원체계
  - 돌봄 관련 다양한 욕구를 정형화된 급여 체계를 넘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장기요양보호사의 임금 인상(단가 개선, 이동시간·점심시간·일지작성시간 보장, 야간 및 주말 할증 현실화 등), 근무환경 개선(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재가서비스 대책 마련, 근골격계질환 대책 마련 등)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❸ 노인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및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진단

- 2015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21조 9,210억원으로 전체의 37.8% 차지하는 상황. 고령화 진행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입내원 일수 (만일)	전 체	95,179	96,879	98,796	98,999
	65세 미만	68,089	68,209	68,386	67,617
	65세 이상 비율(%)	27,090 (28.5)	28,670 (29.6)	30,411 (30.8)	31,382 (31.7)
진료비 (억원)	전 체	478,392	509,552	543,170	579,593
	65세 미만	313,898	328,984	344,569	360,382
	65세 이상 비율(%)	164,494 (34.4)	180,568 (35.4)	198,601 (36.6)	219,210 (37.8)
입내원 1일당 진료비(원)	전 체	50,262	52,597	54,979	58,545
	65세 미만	46,101	48,232	50,386	53,298
	65세 이상	60,721	62,981	65,306	69,853

주1) 지급기준 / 2) 입내원일수는 약국의 처방조제 일수 제외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처방약을 현재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노인의 82.0%이며,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보건(자·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노인의 78.2%이고, 평균 방문횟수는 2.4회였으며, 4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21.0%에 달함.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18.4%임
- 또한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 유병률은 90.4%이고,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가 72.2%임.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건강관리 능력의 향상과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체계적 질환관리의 강화가 필요함. 연령증가에 따라 건강상태가 급격히 저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확대 등 예방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약속

- 건강보험 보장률 62%→80% 확대(입원진료비 90% 보장,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허약 노인 대상의 보편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3 지역사회와 함께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권리 보장

❶ 살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 구축

진단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에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를 제시하고 있음. 전세계적 협력조직인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GNAFC)에는 201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210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특별시가 2013년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고, 2015년 현재 부산, 수원, 정읍 등에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조례'를 제정하였음
-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들이 존중받으며, 역동적으로 생활하고,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가 지원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감에 있어 노인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주체적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방법론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나이듦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삶을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 2010년 미국 은퇴자협회(AARP)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45세 이상 연령층의 75%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함(Keenan, 2010). 2009년 부산지역 65세 이상 2,09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78.7%이며, 1.6%만이 '거주하고 싶지않다'로 나타났음(부산복지개발원, 2009). 이와 같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 즉 Aging in Place는 현재 노인 관련 정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Davey et al., 2004). 따라서 나이 들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관 거버넌수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예;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 지역사회 노인을 돌보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은 부양과 희생의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임을 함께 인식하고 서로가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돌봄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 노인의 인식개선과 의미있는 사회참여를 위하여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지자체 후원과 민간의 자원(공동모금회 등)을 연결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모든 욕구에 역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촘촘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

약속

- 노년기 어려움에 대해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 마련
  - 소득기준, 가족기준, 건강기준의 장벽없이 욕구에 맞는 도움 제공
  - 정부정책기준과 보건, 복지, 의료 등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민관협력을 통해 기금 마련
- 세대간 연대와 연대의 경험을 순환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봉사바우처 도입'
- 어르신이 대접받는 지역사회, 경륜을 활용한 지역사회 어르신 역할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자 일자리' 신설
  - 어르신 당사자가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통해 의미있는 노년보내기

● 노인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가운전자지원 혜택 마련,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순환버스 확대

❷ 학계, 의료, 민간이 함께하는 사회참여지원 네트워크 구축

진단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보편화되어있는 시설(2013년 63,251개소)로 노인의 25.9%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음. 노인복지관은 2013년 기준 319개로 경로당에 비하여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임. 그 결과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8.9%에 불과하나 만족도는 84.4%로 매우 높은 상황. 노인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친목도모로 85.5%이며,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여가프로그램 이용이 53.2%로 가장 높음

● 주된 여가활동에서 휴식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90.2%로 가장 높음. 휴식활동 중에서도 노인의 대부분이 TV(82.4%)를 보고 있으며 여행경험률은 29.7%에 불과함. 또한 학습활동 참가율도 13.7% 수준에 머물고 있음. 단체활동참가율의 경우 친목단체가 43.3%로 참여율이 가장 높고, 동호회는 4.9%, 정치사회단체는 0.5%에 불과함. 지난 1개월간 기부를 한 비율은 3.5%, 타인을 돕는 행위를 한 노인은 9.5%임.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현재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4.5%,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경험이 있는 노인이 14.5%임

●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건강수명(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는 2002년 67.8세에서 2011년 71.0세로 증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75세로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년기 사회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보건사회연구원, 2014)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2년에 사회참여를 강조한 '활동적 노화'라는 고령사회정책 패러다임을 채택했으며, EU에서는 2010년 '유럽의 활동적 노화 및 세대간 연대의 해'를 결정하고 경제활동 중심의 생산적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통합적 관점의 정책을 시도하는 중

● 반면,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는 낮은 상황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평생교

육 참여율은 7%로 OECD 국가 평균인 40.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황남희. 2014), OECD 23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평가한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독해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문제해결력 수준에 있어 청년층과 노년층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임. 16~24세 청년은 OECD 평균보다 높으나 55~65세는 최하위 수준임.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1년 17.85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박여란 2013 / 재인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약속

- 학계, 의료, 민간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 대학과 연동한 평생교육원 확대 및 대학 인센티브 부여
- 단순노력봉사 형태에서 벗어나 준전문 또는 전문봉사프로그램 개발

4 노인 인권과 존엄한 죽음 보장

❶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진단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7.1%가 연령차별경험이 있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37.7%, 판매시설 이용 시 17.7%, 의료시설 이용 시 14.4% 순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접수 건수는 10,569건으로 전년도보다 4.0% 증가. 매년 신고접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과 국민적 관심 저조로 인하여 노인학대의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고 적은 인력이 담당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2014년 전체 학대사례 3,532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2,983건(84.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생활시설이 증설되면서 최근 5년간 생활시설 학대 비율은 증가추이에 있음.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내부에서 발생되는 만큼 은폐의 가능성이 높고, 장기화 될 경우 그 심각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생활시설 학대 추이 : '10년(4.1%) '11년(5.7%) '12년(6.3%) '13년(7.1%) '14년(7.0%)

- 노인학대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매일 및 1주일에 한번이상 학대를 받는 경우가 59.5%로 학대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4시간 365일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체계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개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상담원 1인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학대 예방교육, 홍보활동, 지역사회자원개발을 위한 업무가 병행되어 업무부담이 매우 과중한 상태. 업무과중은 이직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증설, 상담원의 처우 개선, 인력증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인력의 증원과 함께 노인학대상담원 교육, 자기계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개발되어야 함

● 노(老)노(老)학대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의 부부 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및 며느리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거나 못하는 자기방임 유형의 학대” 등을 의미. 노(老)노(老)학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40.3% 수준을 보이고 있음. 노부부간 배우자 학대의 경우 학대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례개입 후에도 재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음

약속

-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대우법(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상담원 확대 및 처우개선, 보수교육 전문화
-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방지 대책 강화
  - 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 시설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 마련
-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 의무화로 재학대 방지
- 노(老)노(老) 학대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 취약노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
  - 노인 단독 및 노인부부 가구 지원체계 강화

❷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마련

진단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식불명이거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하여 3.9%만이 찬성을 하고 있고, 절대 다수인 88.9%가 반대하고 있음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합계 (명)	매우찬성	찬성하는편	그저그렇다	반대하는편	매우반대
100%(10,271)	0.5%	3.4%	7.3%	36.7%	52.2%

* 2014 노인실태조사

- 올해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제정됨.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엄격한 조건 하에서 존엄사가 가능해짐. 반면, 현재 죽음준비교육(0.6%)이나 유성작성(0.5%) 등은 소수만이 하고 있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와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죽음 준비 실태]

합계(명)	수의	묘지	상조회가입	유서작성	죽음준비교육 수강
100%(10,279)	11.2%	29.1%	6.7%	0.5%	0.6%

* 2014 노인실태조사

●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함

약속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마련

- 병원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❸ 「착한 장례식장」 운영과 「표준장례비용」 도입으로 반값 장례비 실현

진단

● 2015년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평균 장사비용은 1,380.8만원임. 응답자(790명)의 68.7%는 국가경제, 효율성 차원에서도 '작고 검소한 장례문화'로 가야한다'고 대답

- 장묘업체의 33.7%가 홈페이지 없음. 국가가 운영하는 장사(장례, 장묘)정보 인터넷 포털인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 등에 등록된 공설 및 사설 등 장묘업체 267개 중 33.7%(90개)는 홈페이지 없이 운영
- 장묘 상품의 가격 표시에 있어 사설 수목장 업체 14.6% 가격 미표시. 장묘상품의 거래조건을 홈페이지에 전혀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78.5%로 매우 미흡
- 정부는 'e하늘장사정보'(www.ehaneul.go.kr)를 통해 전국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장묘시설 등 장례·장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장례(장묘)를 경험한 소비자 790명을 대상으로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모른다'라는 응답 75.6%, '접속해 본 경험자' 6.4%에 불과. 우리나라 공설 및 사설 업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관련정보 등록 및 제공 등이 미

흡한 실정

- 과도한 장례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5년 5월 서울의료원이 '착한 장례서비스' 운영 시작. 조문객 200명을 기준으로 안치, 발인, 운구, 화장, 봉안까지 장례 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600만원 선으로 낮춤. 이밖에도 전북 순창군, 수원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부대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반값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약속

- '착한 장례식장' 운영으로 반값장례비 실현
  - 공공병원 장례식장마다 '착한 장례서비스' 운영
- 매년 장례서비스 표준비용을 발표해 소비자의 과도한 비용 부담 방지

17

여성 공약

여성이 마음껏 일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여성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여성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과 휴가제도를 만들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과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고 여성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지킬 것입니다.

1. 차별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2. 일 · 가정 양립정착과 여성경력단절 해결
3. 다양한 가족 지원
4.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5. 여성대표성 강화

성차별 사회에서 성평등 사회로

1. 차별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❶ 질 좋은 일자리 보장
❷ 성별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없는 고용

2. 일 · 가정 양립정착과 여성경력단절 해결

❶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실시
❷ 3대(임신, 육아, 돌봄) 휴가제 확대로 일 · 가정 양립 실현
❸ 경력단절여성의 예방과 지원강화

3. 다양한 가족 지원

❶ 한부모 가족 지원
❷ 이주여성 지원
❸ 장애여성 지원
❹ 성소수자 지원
❺ 여성농민 지원
❻ 여성북한이탈주민 지원

4.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❶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
❷ 과도한 미용 성형 및 외모중심주의 개선
❸ 몸,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및 건강권 증진 프로그램 구축
❹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5. 여성대표성 강화

❶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❷ 여성의 관리직 진출 확대

1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❶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진단

● 돌봄노동의 열악한 처우[1)]

- 가정 내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가사 및 산후관리, 아이 · 노인 돌봄 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본인이 원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사노동자는 전체 여성 노동자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18.2%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업무 직군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임금수준은 간병인이 시간당 7368원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가사도우미 1만1359원, 육아도우미 1만2216원 순, 반면 주당 근무시간은 간병인이 54.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육아도우미(34.1시간), 가사도우미(22.5시간) 순이었음

● 감정노동자의 건강 위험 요인

- 직장 내 건강 위험요인은 전통적인 요인에서 사회심리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으나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돌봄노동,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은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중요한 건강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감정노동자는 74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경우는 한 해 50여건에 불과함
- '감정 노동자 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의료 · 금융 · 도소매업종 노동자 2천244명을 대상으로 감정 노동자의 의식 · 실태를 조사(2015.06)결과 상대하기 어려운 고객을 응대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부하와 갈등의 정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바율이 여성은 45.1%, 남성은 15.9%에 달함. 고객 응대에서 발생한 심리적 손상 정도는 여성

1)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의 60.6%가 위험 수준, 남성 역시 25.4%임. 감정노동으로 생긴 문제가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심한 스트레스(좌절이나 분노, 적대감, 감정적 소진)를 보이게 되며, 심한 경우 정신질환 및 자살까지 갈 수도 있음

약속

- 돌봄 노동 종사자의 임금인상
  -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수준을 준공무원 수준으로 임금 인상
  - 교통비, 야간·휴일 서비스 할증 단가 적용 및 수당제 현실화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및 인격적 노동문화 형성과 노동자 보호 의무 법제화
  - 과도한 친절교육 금지 제도화
  - 서비스업종에서의 복장규제에 대해 인권적 접근 필요, 성별적 유니폼 금지
  - 고객에 의한 성희롱, 폭언, 폭행 발생 시 작업장 이탈권 부여
  -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사업주 예방 및 노동자 보호 의무 법제화
  - 피해를 본 직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지원

❷ 성별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고용

진단

- 30대 초반 33만명→ 40대 초반 51만명→ 50대 초반 59만명까지 비정규직 여성 증가
  - 남자는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으나 여자는 20대 후반과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음. 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65만명)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33만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에는 51만명, 50대 초반에는 59만명으로 증가함.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임.[2)]

2) 김유선(201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줄어들지 않는 남녀 임금격차

- ILO(유엔 국제노동기구)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7%로, 20년 전보다 불과 3% 포인트 오른 수준에 불과하고, 이는 2086년까지 지속될 전망임
-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OECD 회원국의 남녀 간 평균 임금 격차는 15.5%이며, 한국은 조사대상 11개국 중에 1위인 동시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1위를 차지함. 2013년 한국의 임금격차는 36.6%로 남성근로자가 100만원 받을 경우 여성은 63만원을 받음을 의미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점검 시 55.06%가 고용기준에 미달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약칭 'AA')를 고용노동부가 `15년도 총 2,009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을 시 대상사업장의 여성근로자비율 평균은 37.41%,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은 19.37%로 나타남. 대상 사업장 중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1,077개사로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414개사(51.43%), 500 ~ 999인 이하 사업장 중 663개사(55.06%)가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약속

●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도 추가

●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패널티 강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공공부문부터 직무평가 · 직무분석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기준 마련

2 일 · 가정 양립정착과 여성경력단절 해결

❶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실시

진단

● 고령산모의 출산 증가와 산전관리의 중요성 증가

- 고령산모의 출산이 증가하고, 인공수정의 증가에 따른 다태아 임신 증가로 산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출생아수의 감소에 따라 태아기부터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져 산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2012,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3년 서울시는 3개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음. 이는 호주시드니에서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기틀이라는 점에서 간호사가 지속적인 가정 문을 통해 산모 및 아이의 건강관리, 산모의 양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임

● 보육시설 부족과 보육교사 처우의 문제

- 현재, 보육시설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다수가 공공보육시설 이용을 원하고 있으나 공급이 충족하지 못해 많은 1000~2000명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를 양산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아수에 상관없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지원됨. 이에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에 따라 부모선호도가 매우 높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률이 매우 낮음
- 보육교사 처우도 심각한 문제임.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 임금은 155만원에 불과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임금은 월평균 188만원인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4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38만원을 받고 있음

약속

-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 도입 (1단계: 전국 건강취약지역 시작, 2단계: 전국 확대)
-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출산시 양육에 필요한 종합물품을 국가가 직접 지급)
- 국공립 보육 확대 및 민간보육 질 강화

❷ 3대(임신, 육아, 돌봄) 휴가제 확대로 일 · 가정 양립 실현

진단

- 임신기 경력단절
  -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중단에 관한 연구」(이진경 · 옥선화, 「조사연구」, 2009)에 따르면 기혼취업여성은 출산 2~3개월 전인 시기에 급격하게 취업 중단 위험률이 증가하여 첫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절반 정도가 취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혼취업여성에 대해서 임신 시기부터 첫 자녀 출산 시점까지 또는 첫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시기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취업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최근 30세 여성 첫 아이의 조산율이 3%에 이르는 등 조산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어 산전에 휴가가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후 45일 배정 규정 때문에 산전에 충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육아휴직사용자의 남성 비중 4.5%
  - 2014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7만 3,412명,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4년 3,421명으로 10년전 181명 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4.5%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 가족돌봄휴직제도
  - 2013년도 조사에 의한 이미 법으로 보장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알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등 휴직제도의 사용이 저조함

약속

●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확대

-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 휴가기간 확대로 임신기 휴가 지원
- 근로기준법에서는 ①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산부가 만40세가 넘은 노산인 경우, ③ 유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제출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누어 쓰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이 외에도 초기 임산부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

※ 산전휴가 지원 및 임신휴가제 유사제도 실시 사례

- 임신휴가제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여성근로자에게 특정기간 휴가를 주는 제도로 일부 대기업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음.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0년 이미 실시 임신휴직제 도입, 최장 23개월간 쉴 수 있고, 임신 2개월 이후부터 최대 8개월까지 휴직이 가능, 임신휴직 기간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아시아나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산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까지 최대 2년 동안 휴직이 가능하며 연간 300명 내외의 승무원이 산전휴가를 사용함)

● 아빠 육아휴직제 3개월 의무할당제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상·하한선 현실에 맞게 인상
- 아빠 육아휴직제 기간만큼 육아휴직 기간 확대

※ 해외사례

(스웨덴) 부부가 총 1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그 중 2개월씩 반드시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나머지 12개월은 엄마 아빠든 어느 쪽이든 가능하며 이 기간에 소득의 80% 정도를 정부가 수당을 주고 세금도 감면해 줌.

(노르웨이) 육아휴직 47주를 사용하면 임금의 100%를, 57주를 사용하면 임금의 80%를 지급, 47주 중에는 출산 전 휴가 3주를 제외하고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12주가 할당되며, 20주는 공동으로 사용가능함

(독일&일본) 육아휴직 14개월 중 2개월 이상이 남성에게 의무 할당됨.

●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
- 가족돌봄휴직제에서 근로자가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수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

[가족돌봄 휴직제도 개정]
- 가족돌봄 휴직 연 90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됨.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모성관련 법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사법처리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여성 고용 친화적인 정책과 결혼과 출산에 접합한 환경 제시 필요

– 기업 인센티브 가산점 가중부여 등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유연근무제도,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❸ 경력단절여성의 예방과 지원강화

진단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저조

–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2개 국가 중 30위로 하위권이며, 지난 10년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임

〈 OECD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한국	57.0%	55.6%	55.2%	54.9%	54.5%	53.9%

일본	66.0%	65.0%	63.4%	63.0%	63.2%	62.9%
미국	67.1%	67.2%	67.6%	67.8%	68.4%	69.0%
OECD 평균	62.8%	62.6%	62.3%	61.8%	61.8%	61.5%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 여성의 경력단절

- 여성 취업자 1000만 명 시대, 20대 후반까지는 70% 내외의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30대 초반에 51.8%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하게 하락함.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30대 초반에 경력 단절이 이뤄짐

약속

● 적극적 고용제도 패널티 강화와 여성 고용친화적 제도와의 연계

-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의 경우 패널티 강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의 기업 내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의 실시,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 실시 등 다방면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맞춤형 새로일하기센터 지원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정책지원 규모는 전체 경력단절 여성의 수에 비하면 약 12.5% 수준. 센터를 유형별로 특화하여 각 지역별로 확산하고 특성에 맞게 운영주체를 현행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심에서 단체·협회 등으로 다변화
- 새로운 분야로의 재취업을 원하는 대상으로 전문 직종 직업훈련을 강화
- 학습형 동아리 지원으로 차후 창업, 협동조합 설립까지 연결시키도록 적극 지원강화

3 다양한 가족 지원

❶ 한부모 가족 지원

진단

● 한부모 가족의 급증과 심각한 빈곤율

-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18세 미만의 아이를 한쪽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가족으로 이혼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로 한부모 가족이 급증하여 양육, 생계, 취업 및 정서적 문제에 지원 필요성이 커짐. 특히 여성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
- 한부모 가구의 44%가 하루 10~12시간 일하고 있음에도 가구 빈곤율이 37.8%로 전체 가구 빈곤율 16.5%와 비교해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빈곤율이 심각함(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2) 또한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자립지원정책은 교육에 그쳐 참여 후 실제적인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양육비 지원 실효성 문제

-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거나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 낼 권한이 없고, 미 이행시 강제조항이 미비하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약속

● 한부모 자립/빈곤 탈출 지원 강화

- 포괄적인 자립지원책 마련(구직 육아 직업훈련과 취업시 부가급여, 취업지원업무 등 포함한 포괄적 상담 지원) 및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한부모 우선 고용
- 대중매체를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개선

- 한부모가족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의무화, 자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사업 확대

● 양육비 대자급 제도 개선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미이행시 여권발급 거부, 운전면허 금지 등의 조치 필요)

❷ 이주여성 지원

진단

● 이주여성의 체류 불안정성과 극심한 차별과 억압

- 2015년도 상반기 외국인 주민은 총 174만 1,919명(안전행정부)이며, 이들 중 3분의 1에 달하는 이주여성들은 체류가 불안정한 상태임. *외국인여성 이주유형별 미등록 상태: 결혼이민 12만 8193명 중 3,132명(3%), 예술흥행비자 4,024명 중 1,514명(37.6%), E-9비자(비전문인력) 2만 4,748명 중 7,489명(30%), 방문취업 12만 3,489명 중 2,161명(1.8%) (법무부, 2014.12월 자료)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화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영주권, 국적 취득 등의 권리가 한국인 가족에게 종속되지 않고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주여성의 배우자로부터 폭력과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음
- 결혼이주자들은 국제결혼 과정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중개업체를 통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서 오는 피해, 언어와 의사소통의 장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고립, 자녀양육의 어려움, 빈곤과 사회보장의 배제,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과 차별 경험 등의 전반적 문제들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위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결혼이주여성 100명 중 8명 불법체류 신세임
- 결혼이주여성 외에 취업이주여성 또한 극심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음. 한국의 경우는 제조업을 위주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음. 그러나 2002년 말부터 취업관리제로 와국국적 이주여성의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나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법이 허점이 많음

약속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 자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가 목적이어서 이주여성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에는 취약함.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자를 포괄하는 범주로 넓혀야 하며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족중심 지원이 아닌 이주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과 이주여성노동자 고용사업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성희롱 피해 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를 위한 지원책 강화
  -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를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함. 즉 체류 연장 시,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시 신원보증 등의 완화가 필요
  -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고 결혼중개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고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이주여성노동자 고용사업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 등을 위해 안정적인 체류와 지원책 마련
- 취업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강화
  - 이주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 강화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해야 함

❸ 장애여성 지원

진단

● 여성장애인의 고용 불안정성

-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19.8%로 전체 여성의 고용률인 49.5%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장애 남성의 고용률 49.4%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상태에 놓인 여성장애인 규모가 큰 것이 현실임. 취업한 여성장애인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17.3%로 전체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 4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취업한 여성장애인 중 임시직근로자는 30.3%로 전체 여성의 임시직근로자 비율 27.5%에 비해 높은 고용불안정이 높음, 의무고용제도로 고용된 장애인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80.5%인 반면 여성은 19.5%에 불과하며, 여성장애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돼 왔음을 보여줌.(여성장애인 취업현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인 장애여성은 67.3%로 장애남성의 37.0%와 비교하면 약 2배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장애여성은 25.48%로 장애남성의 52.48%와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소득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장애여성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함

● 결혼, 임신에 대한 정보와 지원 부족

- 18세 이상~만 48세 이하 성인장애인 평균 결혼률은 52.8%이고, 이 중 유자녀 비율은 90.1%임. 이들은 결혼, 임신, 출산 과정 중 정보 부족과 지원의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음

약속

● 생애주기별, 유형별 지원 강화 맥락에서 성인지적 장애인 생활자립기반 마련

● 관련부처 내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및 의료체계 확립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관리체계의 확립 및 의료기관 확충(전담 산부인과 지정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 산전, 산후, 양육 및 학습 도우미 제도 마련, 피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❹ 성소수자 지원

진단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현실
  - 성소수자는 현황을 파악하기도 힘이 들었으며, 최근에서야 인권위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짐. 그동안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이유는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며 공개적, 간접적 차별보다 비공개적인, 간접적 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집단으로 최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 등 교육 등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의 지원이 필요함
  - 성소수자 청소년 응답자 중 19.4%가 자살 시도 경험, 16.1%가 자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영역에서는 응답자의 44.8%가 정체성 때문에 차별이나 따돌림,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성소수자들이 사회전반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이 매우 심각함.(성적지향 ·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약속

-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 조성
- 청소년 성소수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지원 확대
- 차별금지법 제정
- 파트너십법 제정으로 가족구성권을 보장
- 공무원, 일정 규모의 민간기업의 경우 성평등 교육 이수 및 성소수자 교육 이수 의무화

❺ 여성농민 지원

진단

● 여성농민의 현실

- 여성농민은 농가 인구 중 51.6%, 농업주종자사 인구 중 53.3%로 농업생산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여성농민의 10.6%만이 자신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1.1%의 여성농민이 농산물 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고 있음. 10명 가운데 1명만이 농업주체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
- 농업노동은 물론 가사와 육아,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다양한 돌봄노동을 전담하며 지역공동체유지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농지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은 물론 교육과 기술,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어있을 뿐 아니라 농가중심(남성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생산자로서 여성농민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에 대한 정당한 법적,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못함

약속

●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 그에 맞는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강화

- 모든 농업 · 농촌 · 농민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실시
-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농민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보장
- 여성농민전문인력화 방안 마련 : 전문교육기구 설치, 여성농민 농기계 개발 보급 지원

❻ 여성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진단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높은 비율과 정착 부적응 현상

- ’15.8월말 기준 총 28,297명(잠정) 입국, ’06년 연간 2,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연 2,500~3,000명 규모를 유지했으나, ’12년 이후에는 북·중 국경통제 강화 등으로 1,500명 안팎으로 입국 감소, ’14년도는 1,397명 입국하는 중 여성은 ’15.8월 말 기준으로 70%로 남성보다 비율이 높음
- 적극적인 정착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적응 현상 존재(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사회안전망 의존도,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등), 열악한 건강상태(근로의욕 저하), 학력과 경력의 단절, 남북한의 직장문화 차이, 사회의 편견 등이 주요 원인임, 특히 70%가 여성, 16%가 탈북 청소년인 점인 것도 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함. * 탈북 여성은 구직 시 육체적 어려움(52.4%), 육아문제(22.2%) 등을 호소

약속

●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치유, 임파워먼트 센터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 (생애사적 배경과 가족들의 이탈의 계속성을 이해하는 상담지원이 필요하고,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에 대한 적극적 의료지원이 이뤄져야 함,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강화도 필요함)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생활을 위한 임신, 출산, 양육 등 지원

4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❶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진단

● 낮은 성매매 처벌 수위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왔으나 단순처벌이 대부분임
-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범죄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지만 법적 집행력은 이를 추적하지 못하므로 단속과 수사, 처벌의 강화가 필요함

● 가정폭력 현황

- 2013년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폭력 발생률을 여성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 43.9%,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 45.1%,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43.5%, 만 65세 이상 31.4%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부부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만 19세 이상 여성응답자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28.6%였고, 신체적 폭력(경한+중한)은 4.9%, 방임은 17.8%, 통제는 36.5%, 경제적 폭력은 3.5%였음

● 성희롱 및 성폭력 현황

- 직장인들에 대한 성희롱 경험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5%가 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음. 성별로는 여성이 72.6%로 남성(27.4%)보다 많음. 또한 응답자의 전체의 17.8%만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관 및 담당자가 있다고 함 (취업포털 커리어는 2012년 1월 28일 30일까지 직장인 40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문조사)

- 2014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2009년 발생건수 17,242건에서 2014년에는 29,517건으로 증가하였고 구속조치보다는 불구속 조치가 많음

● 데이트폭력 현황

- 지난 2011년~2013년 사이 붙잡힌 데이트 폭력 범죄자는 총 2만449명, 연도별로는 2011년 6775명, 2012년 7076명, 2013년 6598명이며, 일년에 6800명, 하루 평균 18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셈임. 특히 이 같은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1년 47명, 2012년 47명, 2013년 49명 등 모두 143명에 이름(경찰청, 2013 국감자료)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성폭력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전과자는 76.6%(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스토킹 현황

- 스토킹을 조금 과격한 애정표현이나 개인 간의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명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되는 사건을 보면 거의 모두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나 전화 등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한 전력이 있으므로 예방 및 강력한 제재가 필요. 15대 국회인 지난 1999년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7건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제대로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2013년 4월부터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 수위가 미약하여 다른 경범죄와 비슷하게 가볍게 인식될 가능성이 큼

● 온라인 폭력 현황

-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온라인에서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무시해 협박을 받기도 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함. 15~50세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전체 응답자의 69.9%가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약속

● 성 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 범죄 통제체계 강화

- 국제사회 권고 수준의 '인신매매의 범죄' 구성요건 법제화
- 성 착취 · 인신매매 단속 · 처벌을 위한 전담반 강화 및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 유흥서비스, 성산업 축소와 관리 방안 마련

●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응급대응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 형법상 성폭력 개념 · 범위 확대 등 성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 개정: 형법 상 성폭력특별법 처벌조항 포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성폭력 개념 규정, 아내강간죄와 바동의간음죄 포함, 동성간 성폭력 처벌,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 보호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아동유기 · 폭행 등 아동학대 전반의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시스템과 체계 마련, 관련 프로그램 · 시설 및 예산 확대
- 성폭력 범죄자 처벌과 교육 강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 성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를 통한 분류심사제도 도입, 수감자 교정 · 교육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프로그램 실효성 강화

● 공교육 과정에 반성폭력 교육안의 구체화, 성차별, 성폭력, 성별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공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교육 관련 교육법을 개정

●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직장 내 성희롱 · 폭언 · 폭행 예방 조치 강화

-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성희롱 · 폭언 · 폭행 피해를 제기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 사업주는 성희롱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 피해노동자를 위한 유급 휴가 · 휴직제도 도입.
- 직장 내 성희롱 정의의 포괄적 명시, 적용범위 확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 전반과 폭언 · 폭행 포함, 업무상 동일 사업장 외 제3자의 성희롱 · 폭언 · 폭행에 대한 사용자 예방책임 강화

●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과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

- 데이트 폭력을 막으려면 교제 상대방에 대한 선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검토

  *'클레어법':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영국의 법

- 경찰명령을 통해 신체공격, 스토킹, 폭력위협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72시간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게 함

● 스토킹 처벌강화, 온라인 인권침해 개선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하여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규정
- 온라인 성희롱 개념 확장(※ 양성평등기본법(제 3조 2호), 국가인권위법(제 2조 3호) 현재 지위, 업무, 요구와 관련된 굴욕적 행위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만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을 포함시켜 성희롱의 개념의 확장 혹은 포함이 가능함)
-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업무에 온라인 성폭력 범주를 포함.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온라인 인권침해에 대응한 온라인 인권 교육 본부 설립과 총체적인 인권 교육의 설립)
- 양성평등한 온라인 문화조성(양성평등의식 제고,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웹사이트, SNS 운영 및 콘텐츠 배포)

※ 호주사례 : 청소년들의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The Line' 온라인 미디어 활용프로젝트
- 호주 가족주택지역사회서비스원주민부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 청소년층의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사업(12~20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페이지를 제작하여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 블로그, FAQ, 설문조사, 웹비소드(Webisodes),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❷ 과도한 미용 성형 및 외모중심주의 개선

진단

● 다이어트와 성형 열풍

- 최근 몸매와 외모를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으로 삼도록 만드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됨. 이에 따라 다이어트와 성형 열풍이 불고 관련 시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산업의 이윤 추구 전략은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

협하고 있음

- 성형외과 광고 2011년 602건에서 2014년 2616건으로 3년 사이 6배 급증(보건복지부,2015), 20~30대 여성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미용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여성의 비율이 78%(두잇서베이,2015)로 나타남. 공급과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메이크오버프로그램 등이 이러한 현상을 조장을 하고 있으며 공장식 성형수술, 불법브로커, 불법 성형대출 등의 문제를 양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약속

●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관행 개선

-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미용·성형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 외모를 중시하는 기업 채용 관행 개선. 고용시 용모차별에 대한 규제 : 입사지원서에서 직무관련 능력 외에 용모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삭제
-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와 방송 규제 강화: 심의규정 강화, 관련자 교육 의무화
- 과장광고, 소셜커머스를 통한 반값할인 제한, 온라인 광고 금지
- 마른체형 선호 광고 및 미디어상의 성형수술 간접광고·홍보 제한, 마른 몸매를 찬양하면서 극단적인 살빼기를 조장하는 웹사이트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과도한 광고 규제

※ 네덜란드: 마른 몸매를 찬양하며 거식증을 유발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유발하는 웹사이트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2015.05)
※ 프랑스: '말라깽이' 모델을 쓰거나 모델들에게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강요하는 패션업계의 관행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

● 의료진 설명의무 준수, 의료산업에 대한 제한 및 실태조사

- 성형수술시 의료법상 의사의 설명의무(부작용 등) 준수를 위한 구체적 틀 마련 및 다양한 의료분과의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제한
- 지자체 및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미용성형의료관광산업육성 중단
- 성형의료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시행

❸ 몸, 임신 ·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및 건강권 증진 프로그램 구축

진단

-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모성 건강관련 이슈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임신 · 출산 등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여전히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강화 목표 속에서 여성의 임신 · 출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 2011년 9월에 실시된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낙태한 여성의 60%가 피임을 하지 않았고, 피임 한 경우도 82%가 월경 조절술 등 실패율이 매우 높은 피임법에 의존하고 있음. 청소년, 여성들의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지의 사유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

약속

- 여성의 생애, 몸의 특성에 따른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
-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권,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적 체계 구축

실현방안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낙태) 허용
  - 낙태에 관한 여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모자보건법 개정)
  - 안전한 낙태 의료체계 마련, 낙태이후 케어 및 피임 지원
-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마련 및 공공의료기관(지역보건소와 공공병원) 역할 강화
  - 여성건강 관련 법률, 정책 추진체계 정비: 가칭 '여성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여성건강실태에 관한 통계 · 지표 확립, 건강관련 법과 다양한 국가건강계획에 성 인지적 관점 반영

- 여성건강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여성 전문병원 확대, 지역 보건소와 공공병원의 여성·아동건강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임신과 출산 및 산후조리, 출산 이후의 지원까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구축, 피임, 임신 결정, 임신 전 관리, 출산까지의 관리, 출산 이후 우울증 및 신체건강 지원, 모유수유 및 신생아에 대한 기초교육, 출산 후 피임정보 제공 등 임신, 출산에 관련된 전반적 서비스 체계관리 및 정보제공. 출산 후 방문서비스지원, 고연령 임신층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지원)

● 성인지적 건강정책 인프라 구축

- 여성건강 및 건강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마련하고 건강정책의 우선순위 및 예산배분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
- 국민건강증진계획 등의 건강정책에 성평등 목표를 부과,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시스템 및 이행점검 방안 마련
- 건강지표 및 통계에 성 및 다른 사회적 요인(연령, 소득, 지역 등)을 포함한 포괄적 통계 생산, 여성건강에 관한 정보제공(리플렛, 잡지 등), 건강관련 연구 전체 중 젠더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파악하여 예산의 비중 확대
- 건강연구 심사과정에서 제안서의 젠더차이를 명기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유럽 시행중)
- 시민사회차원에서 건강의 젠더차이를 연구하거나 활동하는 모임에 대한 지원 등 네트워크 형성지원

● 지자체 별 여성건강센터 설치

❹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

진단

● 국민연금 사각지대 놓인 여성 220만 명

- “2014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 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 전업주부(비취업여성)는 20만 명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무소득자가 상당함. 유족연금은 2013년 12월 기준 25만원으로 1인 기준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 3403원)의

42%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 이혼시 분할로 지원하는 분할연금 또한 월평균 12만원 정도로 무소득자는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움

약속

● 국민연금법 개정

-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경력단절 여성 및 전업주부에 대한 노후보장 수준 향상 임의가입 장려하여 국민연금 받지 못하는 인원을 줄이고, 국민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에게 일시금 추납 등을 통해 수급권 확보 필요

5 여성대표성 강화

❶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진단

● 최하위 수준의 성격차지수와 성평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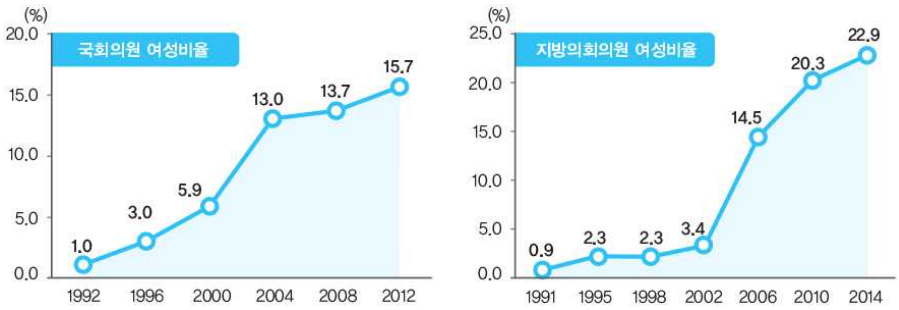
-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 에 따른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보면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로 하위권에 있음('성격차지수'란 남녀격차를 표시하는 지수임)
- 2013년 여성가족부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에 의하면 의사결정부문의 성평등지수가 가장 낮음. 의사결정부문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으로 개별지표를 보더라도 정치영역의 경우에도 여성대표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수준임. 우리나라 의사 결정직의 성평등 수준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낮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수

- 2014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은 22.9% 차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수 300명 중 여성 의원이 47명으로 15.7%를 차지, 2014년 제6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의원수 3,687명 중 845명으로 22.9%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나 1991년 제1회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 바율이 0.9%에서 2014년 22.9%로, 1992년 제14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 바율이 1.0%에서 2012년 15.7%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 비율〉



약속

●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선거법을 개정하여 선출직 여성공천 할당제 의무화 실현)

●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출직 여성공천 할당제 의무화 실현 및 여성 대표성 강화

- 현재 권고 30%에서 단계적 의무화, 미준수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
-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비례대표 의석비율 단계적 확대 ; 현 18%에서 일본(40%), 독일(5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여성의원 추천 보조금 제도 개선: 여성후보자 수, 바율에 비례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로 개선 필요

❷ 여성의 관리직 진출 확대

진단

● 20%를 밑도는 낮은 고위직 여성 비율과 낮은 고용률

- 중앙과 지방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깝지만 고위직 여성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심각한 성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은 49.0%,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11%, 고위공무원단 비율은 4.5%이며, 지방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34.3%, 5급이상 여성 관리자는 10.3%에 불과함(안전혁신처, 2014)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 20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 고용 현황을 발표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은 37.4%이며 여성 관리자 비율은 19.4%에 그침. 지난해 여성 노동자(37.1%), 관리자(18.4%)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지만. 아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여성 관리자는 전체의 20%를 밑돌고 있는 것이 현실임. 고용부가 제시한 기준(업종 평균 여성 고용률의 70%)에 미달한 사업장은 점검대상 기업의 절반보다 많은 1077개에 달하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51.4%, 500~999인 사업장의 55.1%가 기준에 미달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여성고용에 소극적이었음
- 미디어 정책을 표현하고 관라 감독하는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여성위원은 전무하며 미디어 내 여성 관련 의제가 잘 다뤄지지 않으며, 또한 여성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 이후 처벌이 경미함. 공영방송에서 여성 이사진 비율 또한 여성이 현저하게 낮음

〈미디어 규제 기구 여성위원 현황〉

미디어 규제 기구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방송통신위원회	5명	5명	0명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	9명	0명	0%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2014)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약속

- 민간 기업에 대한 성차별 금지조치 관리 감독 강화 및 기업문화 개선과 성별분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확대
  -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 각 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 30% 의무화.
    예) 장관직을 포함한 행정직 30% 할당제 의무화,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원 고위직에 여성이 30% 이상 할당제 의무화.
    * 현재 공공기관별 연도별 여성관리자 확대계획 이행점검 관련 목표는 257개 기관 목표 ('13년 12.7% → '17년 18.6%인 상황임), 여성가족부(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공공기관여성관리자 육성 방안 수립
  - 2014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목표인 10.9%를 달성한 기관이 정부 업무평가 대상 45개 기관 중 17개 기관(38%)에 불과. 나머지 28개 기관(62%)은 임용목표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개방형 직위 임용을 비롯해 부처 간 인사교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 기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 노르웨이는 '기업의 여성 임원 할당제' 법제화를 추진(2003). 여성 임원 비율을 40%로 하고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0년 여성임원 비율 40.3%.

18

장애인 공약

장애인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력히 지원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을 누리도록 장애정책의 기본목표를
바꿀 것입니다. 활동보조를 비롯해 장애인은 주거 · 이동 · 교육 · 참정권을
보장받으며 시민적 기본권을 차별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1.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2.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
3.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4. 장애인 소득 보장
5. 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 보장

장애인 복지를 OECD 평균 수준으로

1.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❶ 장애인 등급제 폐지
❷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 지역사회거주 종합정책 수립
❹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평균 국가 수준으로

2.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

❶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❷ 공공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개조사업 확대로 장애인 주거권 보장
❸ 저상버스 100%,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자가운전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❹ 특수교사 확대, 평생교육 강화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
❺ 장애인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
❻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중단 및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

3.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❶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생활 지원
❷ 장애인 건강권 보장
❸ 장애인가족지원 정책 강화

4. 장애인 소득 보장

❶ 부양의무제 폐지로 장애인 빈곤사각지대 해소
❷ 최저임금법 개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❸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 인상 등 의무고용제 개편
❹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마련

5. 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 보장

❶ 성인지적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마련 및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
❷ 장애여성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❸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인권교육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1 장애인 정책의 기본 패러다임 전환

❶ 장애인 등급제 폐지

진단

- 현재 장애인 관련 지원 정책은 대부분 장애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현재 장애유형은 15개이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6등급(보건복지부 등록 기준)으로 나눠져 있음. 중증장애인은 1~2급 장애인, 뇌병변 · 시각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심장 · 호흡기 ·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 포함(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장애인등급제는 행정편의적 정책의 대표적 예로 장애인을 천편일률적으로 등급화하여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맞춤형 복지 시대로 나아가는 현 시대상에도 맞지 않음

약속

- 현재 1~6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장애인등급제 폐지

❷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진단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와 관련된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개념이 의학적 기준 중심으로 반영되어 있고,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규정과 함께 여러 영역에 걸쳐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복잡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황임
- 장애인복지법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이라고 한다면 장애인기본법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장애인기본법이라고 한다면 법 명칭부터 개정되어야 하는 상황임

●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기본법적 역할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변화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장애인 자립생활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체계 정비가 필요함

약속

●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

❸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 지역사회거주 종합정책 수립

진단

● 2000년대 들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관련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여전함.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의 정책은 그 자체로도 인권침해적이며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임.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한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루려면 시설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역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약속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내 특위 또는 포럼 구성
  - 장애인 당사자, 정당, 정부가 함께 종합대책 마련
  - 관련 정책개선 사항을 반영해 입법활동, 정책실행 점검,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이행 로드맵 마련

● 탈시설을 위한 초기 지원 체계 마련
  -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 및 인상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마련

❹ 장애인 복지예산을 OECD 평균 국가 수준으로

진단

- 「2015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지출이 2000년 0.38%에서 2005년 0.54%로 증가한 후 2009년 0.6%까지 점차 증가했으나, 2011년 오히려 0.49%로 하락한 상황임. 2011년 OECD 국가 평균은 2.19%이며,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 4.71%, 스웨덴 4.28%, 핀란드3.95% 순으로 나타남
- 예산은 정책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 할 수 있음. OECD 평균 복지 지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 필요

약속

- 장애인복지 지출을 2011년 0.49%에서 OECD 평균인 2.19% 확대
  - 장애인 정책 개선에 따른 예산 추계 및 재원대책 수립
  - 사회복지세(연20조원) 도입 등 OECD 수준으로 복지증세

2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

❶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진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대폭 확충 등 관련 사회서비스의 집중적 확대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교육 보장, 의료 보장, 직업생활 보장 등에 관한 정책이 필요함
-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11년 1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해 10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함. 그러나 충분치 못한 활동보조서비스로 인해 2012년 10월 집안 화재를 피하지 못해 장애여성 활동가 사망, 2012년 10월 파주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남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 발생
- 활동보조인 처우 역시 열악한 상황. 2016년 보건복지부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2015)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 단가는 8,810원이며 활동보조인 시급은 6,61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임. 게다가 안정적 월급이 아니라 호출노동의 특성을 지닌 시급제이므로 활동보조인의 안정적 생계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이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됨

약속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기간 확대
-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현실화, 활동보조인 임금 현실화
  - 활동보조인 이동시간 및 야간·주말할증단가 현실화
  - 활동보조인 시급제뿐 아니라 월급제를 보장해 안정적 인력 수급

❷ 공공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개조사업 확대로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진단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살고싶은 주거유형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95.5%가 일반주택이라고 응답. 거주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0.5%에 불과해, 2011년의 1.6%에 비해서 1/3로 줄었음.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원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는 '가족과 살고 싶다'는 장애인이 79.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혼자 살고 싶다'는 장애인도 15.2%로 상당 부분 차지
- 장애인이 주거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은 공공(국민)임대주택으로, 응답자의 5.1%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공공(국민)임대주택을 이용한 장애인 중 '매우 만족'이 44.1%, '약간 만족'이 44.7%로 88.8%가 만족한다고 대답
- 주택개조사업의 경우에도 '매우 만족' 34.7%, '만족' 51.8%로, 이용자의 86.5%가 만족하고 있음. 집구조의 생활편리정도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27.3%가 불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주택개조 의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은 4.3%, 가급적 개조를 원하는 장애인은 16.6%로, 20.9%가 개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유형 중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중 36.0%가 개조를 원해 가장 비율이 높음
- 반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5%에 불과하며, 정부와 지자체 등은 LH, SH 등 공기업 부채를 이유로 공공주택을 뉴스테이, 공공임대리츠 등의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신당동 뉴스테이 임대료는 월150만원(23평 기준 보증금 1억, 임대료 100만원)으로 서민층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약속

-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당 공공임대아파트 이름) 확대 (OECD 평균 12%까지 확대)
- 주거비(주거급여) 현행 2배로 확대 (대상자 확대, 급여수준 월평균 11만원→20만원)
-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확대

❸ 저상버스100%,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자가운전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진단

-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제도화됨.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과제(2014) 토론회」 발표에 따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가운데 유일하게 시내버스에만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으며, 시내버스마저 16.4%(2013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에 불과한 상황임
-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갈아타야 하는 상황으로, 장애인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지 못함. 또한 국토교통부(2013 기준)에 따르면,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 대수에 미치지 못하며 지역별 편차도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약속

- 시내버스 저상버스 100% 운영,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 이밖에도 전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공항버스 등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
- 자가 운전자를 위한 운전장치와 차량 개발 및 보급 대중화

❹ 특수교사 확대, 평생교육 강화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

진단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28.8%), '고등학교'(28.1%), '중학교'(16.2%), '대학이상'(15.3%), '무학'(11.6%)으로 장애인 중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율은 43.4%에 불과함.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정도 비율인 71.1%보다 27.7%p 낮은 상황임

● 반면, 「2016총선장애인연대 장애계 8대 요구안」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현재 국·공립 특수교원 법정정원은 17,779명이나, 배정정원은 11,170명으로서 정원확보율은 62.8%에 불과함. 게다가 특수교원의 4분의 1 가량을 근무 조건이 열악한 기간제 교사로 운용하고 있음. 2015년 6월 현재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2,856명으로서 배정정원의 25.6%에 이름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97.4%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강화가 매우 필요함. 특히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영역은 '문화·체육·예술 교육'(13.0%), '직업능력 향상교육'(8.4%), '학력보완교육'(3.6%),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2.4%) 등의 순서로 나타나 이들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

약속

● 특수교육 교원 확대

- 특수교육 법정 정원 확보 및 정규직 교사 채용

● 장애인 욕구에 맞는 질높은 평생교육 체계 구축

❺ 장애인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

진단

● 참정권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나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매 선거시기마다 침해 사례가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선거방송 및 토론회 시 수화통역사 배치, 투표장 1층 설치 등 일부 개선들이 이뤄지고 있음. 2015년 7월 24일,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함

● 장애유형에 따른 보다 다양한 지원방식 마련이 필요하며,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소투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약속

- 장애유형에 따른 복합적 방식으로 선거 정보 제공
-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거소투표제 제한적 운영

❻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중단 및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

진단

- 2015년 8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체 사회보장 사업 중에서 1,496개의 복지사업이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힘
- 이로 인해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정비방안이라는 이름 하에 축소되고 있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사업 통폐합의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존권은 국가에 의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려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도 불수용 통보를 하는 등 이 제도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여건과 특색에 맞춰 자체 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음
-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와 정부의 지방분권화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음

약속

- 사회보장기본법 26조 개정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 장려, 지역 복지 예산 확충(사회복지세 연 20조 도입)

3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 보장

❶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생활 지원

진단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에게 맞는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여가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문화이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완화 목적의 사업, 둘째, 장애인이동과 접근성 등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 현장의 환경 개선, 셋째, 장애인의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감수성 개발 과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의 확대, 즉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등 장애인 개개인이 직접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차별정도는 응답자의 1.9%로 차별정도가 미미하지만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의 차별경험 비율이 7.8%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호흡기장애(4.7%), 장루 · 요루장애(3.7%), 시각장애(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약속

-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 보완대체의사소통 맞춤형지원 제도화 등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강화
- 다양한 문화공간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확대로 장애인 문화생활향유권 보장

❷ 장애인 건강권 보장

진단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는 장애유형에 따라 건강과 질환상태, 입원과 외래진료, 건강관리 등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특히 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이들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전문병원과 방문진료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문병원이나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의료비의 공적급여 비중도 80.2%로서 오히려 2011년 보다 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적급여간 역할을 분담하여 장애인보조기구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평균 16만 4,200원으로 나타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2~8만원의 2~4배에 이르고 있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추가비용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2%,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 11.5%, 보호 · 간병비의 비중이 8.3%임. 따라서 이 세 가지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할 수 있음

약속

- 건강보험 보장성 62%에서 80% 이상으로 확대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의료비 지원 강화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 없이 보조기구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 공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읍면동 단위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❸ 장애인가족지원 정책 강화

진단

- 「2016총선장애인연대 장애계 8대 요구안」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와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지원 정책의 법적근거로는 미미한 수준임. 또한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민간 주도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제정을 통해 전국 50여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민간 요구에 의해 시작된 장애인가족지원 전달체계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은 천차만별임

> [해외사례 (2016총선장애인연대 장애계 8대 요구안)]
> 미국의 경우 1994년 장애아동가족지원법 제정, 영국의 경우 1995년 케어러법 제정, 호주의 경우 1991년 장애정책개혁종합안 발표 등을 통하여 장애인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목표로 법·제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생애주기별 장애인가족지원을 전반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약속

- 장애인가족 지원 법제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적 정비

4 장애인 소득 보장

❶ 부양의무제 폐지로 장애인 빈곤사각지대 해소

진단

- 빈곤층 지원 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117만명(2010년 기준)이 절대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약속

- 부양의무제 폐지로 장애인 빈곤사각지대 해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 이밖에도 장애인 정책 내의 불합리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❷ 최저임금법 개정,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진단

-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금소득의 부재는 장애인을 빈곤의 나락에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임. 따라서 고용을 보장해 주고, 고용되었을 시 적정임금까지 보장해 주는 정책은 매우 중요함
-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임.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특례대상으로 두는 국가들이 있긴 하나 원천적으로 적용제외 시키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전부임. 최저임금제가 서구에서 주로 여성 및 아동 등 취약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했음을 상기해 본다면, 생산성을 근거로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음

약속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현재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남아 있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❸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 인상 등 의무고용제 개편

진단

●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무고용제의 실효성 문제임. 특히, 대기업일수록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기에 사회적책임을 자우기 위한 보다 강제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공공기관도 여전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법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조차 법을 어기는 상황임

●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현재 기간과 장애유형, 성별에 따라 월 15만원~60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음. 반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매기고 있는데, 부담기초액은 757,000원으로 대기업일수록 고용부담금을 내고 장애인의무고용을 회피하는 실정임

[독일 사례 (2015장애통계연보)]

»» 독일의 고용의무제

- 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에 의하면 연평균 매달 20인 이상 규모의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사업주는 최소한 근로자 일자리의 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사회법전 제 9권 제 71-73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고용은 직업훈련생 및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장애인(GdB 30-40)도 포함되며, 중증장애 여성은 더욱 특별히 고려됨
-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은 민간부문과 같이 근로자의 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의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음

»» 더블카운트 제도, 트리플카운트 제도

- 직업 훈련생이나 견습생이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훈련받고 있다면 의무고용의 두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더블카운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심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다면 의무

고용에서 최대 세 자리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독일의 연평균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로자 수의 5%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연방최고기관 및 일부지방자치단체는 6%)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이후로 중증장애인 고용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전체 고용률은 법적 의무고용률인 5%에 약간 못 미치는 4.7%로 나타났음
  - 그러나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은 4.1%로 법적 의무고용률에 도달하지 못한 것과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중중장애인 고용률은 6.6%로 나타나, 중증장애인 고용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음

약속

-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편
  -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5% 상향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제와 연동

❹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마련

진단

- 직업훈련 · 취업알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함. 현재 장애인 고용 전달체계는 노동, 복지, 교육으로 삼원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모델을 발굴하고,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직업재활 과정의 전문화 및 통합화, 체계화가 필요
-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 발굴 필요. 스웨덴 삼할그룹과 같은 공공부문이나 장애인 공기업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새로운 고용모델로 발굴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약속

- 시도별 장애 친화 공기업 설립 등 새로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발굴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개발 및 접근성 강화
- 작업장 편의시설 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작업환경 재구축 지원

5 장애여성과 장애유형에 따른 인권 보장

❶ 성인지적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마련 및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

진단

- 장애여성 고용률은 19.8%로 전체 여성의 고용률인 49.5%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장애 남성의 고용률 49.4%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취업한 장애여성 중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17.3%로 전체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 4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장애여성 중 임시직근로자는 30.3%로 전체 여성 중 임시직근로자 비율 27.5%에 비해 고용불안정이 높음, 의무고용제도로 고용된 장애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80.5%인 반면 여성은 19.5%에 불과함(여성장애인 취업현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으로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28.8%), 자녀양육의 어려움(13.2%), 친구 등 동료교제의 어려움(11.3%),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11.3%), 사회화 기회의 부족(10.5%), 전문프로그램 부족 등 여가생활 활용의 어려움(6.2%), 교육기회 부족(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약속

- 성인지적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마련 및 생애주기별 정책 수립
  -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 적용
  - 관련부처 내 장애여성 전담인력 배치

❷ 장애여성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진단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28.5%)이 가장 힘들었다고 응답했고,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13.8%),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11.9%), 집안 일하기가 힘들어서(10.1%),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6.6%),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5.9%), 본인의 건강악화(3.5%), 임산출산 관련 정보의 부족(1.3%), 가족들의 출산 반대로(0.8%), 병원의 시설설비 미흡(0.5%), 병원 내 의사의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0.3%) 순으로 나타나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공임신 혹은 인공중절인 경우 54.4%가 본인의사이나, 45.6%는 주의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의 경우에는 응답자 100%가 주의의 권유에 의해 임신중절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남
- 만 49세 이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장애여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에 대한 응답에서도 가사도우미(12.8%), 자녀양육지원(11.7%), 출산비용(11.7%), 활동보조인(9.9%), 임신·출산 관련 정보(9.3%), 건강관리프로그램(7.6%), 상담서비스(심리, 정서)(7.2%), 산후조리 서비스(6.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6.4%), 자녀교육도우미(5.5%), 임신·출산육아 관련 핫 라인 서비스(4.2%),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 지원(4.0%), 자조집단(멘토)(2.9%), 육아용품대여(0.1%) 의 순으로 나타남

약속

- 장애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 장애여성에 대한 의료관리체계의 확립 및 의료기관 확충(전담 산부인과 지정)
- 산전, 산후, 양육 및 학습 도우미 제도 마련. 피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❸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 인권교육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진단

- 「2016총선장애인연대. 장애계 8대 공약집」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은 입원과 치료 등 의료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권리와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상황임. 한국의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 바율은 2013년 기준 73.5%로 10명 중 7명이 강제입원 상황에 처하고 있음. 반면, 유럽의 경우는 3~30%에 불과함. 퇴원 후 재입원율도 OECD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상황임(2014 서울정신보건지표).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가족의 동의와 해당기관 정신과 전문의 허락'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임. 비자의 입원 시 강제투약, 과도한 약물치료, 격리 · 강박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시스템 확충이 필요함(2016총선장애인연대. 장애계 8대 공약집)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의하면 많은 장애인 차별과 학대가'이웃 및 지인과의 관계' 및'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이용시'에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시민의 경우는 인권교육을 접하기도 힘든 상황임(2016총선장애인연대. 장애계 8대 공약집)
  - 장애인 인권 보장에 있어 대표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수단의 강제성이 미흡해 실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2008년 제정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정신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분야에 대한 개정도 요구되고 있음

약속

- 정신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의무화
  -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을 설치,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행(각종 교육 프로그램, 인권강사 양성 포함) 담보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 발달장애인 등 현실에 맞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19

인권·소수자 공약

모든 차별에 맞서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맞설 것입니다.
국정원 권한 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소수자 혐오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게 무제한의 시민 사찰 권리를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철폐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방지하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족을 구성해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1. 국민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2. 인권선진국 제도적 기반 마련
3. 다문화가정, 이주민 인권 신장
4. 소수자 인권 보호

인권 존중, 정의로운 대한민국

1. 국민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❶「테러방지법」폐지,「사이버테러방지법」반대, 국정원 개혁
❷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찰과 도·감청 방지
❸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2. 인권선진국 제도적 기반 마련

❶교육기관·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❷「평등대우법(차별금지기본법)」제정
❸프랑스 동거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은「동반자등록법」제정
❹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범죄 가중처벌
❺표준이력서 도입으로 구직활동 차별 예방
❻국가인권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입 및 시민 참여 확대

3. 다문화가족, 이주민 인권 신장

❶고용허가제 점진적 폐지, 노동비자제도 도입
❷이주여성 지원 확대

4. 소수자 인권보호

❶예방정책 마련, 교육홍보 강화, 치료의약품 공급 등 감염인 인권·건강권 보장
❷현행 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복지지원 확대
❸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1 국민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❶ 「테러방지법」 폐지,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국정원 개혁

진단

- 2016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야당 의원들의 법안 통과 반대 및 이를 위한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정치개입, 공작정치를 자행해온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통하여 전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 테러는 법률을 제정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 위험이 매우 높다는 주장과 달리, 테러 위험도를 평가하는 외국 전문기관들은 대한민국을 '테러 청정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정의 및 조항들의 적용 범위나 정의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기관에 의한 권한 남용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미 다른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행위를 테러행위로 규율하고 있어 실효성도 매우 낮음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한 '민간책임기관'들이 앞으로 국가정보원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더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에 '해킹', '바이러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를 이유로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정보원의 상시적인 사이버사찰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한편, 국가정보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는 물론 국내정보에 대한 수집 권한과 함께 수사권까지 갖고 있으며,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권한을 가지고 있음.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과 달리 이례적으로 수사권까지 가진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 개입 등 끊임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논란에 쌓여왔음. 지난해 7월에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해킹사찰 의혹이 불거짐

약속

-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폐지
  - 제20대 국회 개원 직후 '테러방지법 폐지 법률(안)' 발의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등 권한 폐지 및 국회 통제 강화
  - 국내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없애고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조직으로 재편
  -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획 · 조정권한을 없애고 국가안정보장회의(NSC)로 이관
  - 국정원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국회 통제와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신설
- 테러예방대책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 관련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마련

❷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찰과 도 · 감청 방지

진단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도 · 감청, 개인 이메일 및 SNS 등에 대한 무차별적 감시와 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수사상 필요'라는 요구만 있으면,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통신자료,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제공해 왔음
- 2015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 동안 총 3,042만 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 1년에 약 1천만건에 해당하는 국민 대다수의 통신정보를 수사기관이 입수, 열람하였음에도 정작 국민들은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UN 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2월 우리나라 정부에 통신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사후통지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음. 현재 국회에 수사기관의 사실상의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나, 곧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될 상황임

약속

-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
  - 가입자정보 수집 관련 영장주의 도입 등 허가요건 강화, 통지 의무화 및 대상 확대 등
  - 통신제한조치(감청) 관련 피내사자 등 감청대상 제한, 영장주의 도입 및 긴급통신제한 조치 사후영장 의무화, 기간 연장 횟수 제한, 통지의무 강화 등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 도입 등

❸ 집회 ·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진단

-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나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집회 장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고 판결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원 앞 특정장소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금지하고,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2013년 50위, 2014년 57위에 이어 지난해 60위로 하락함. 최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 ·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 등 여론형성을 방해하는데 악용되고 있음

약속

- 집시법의 절대적인 집회 금지구역 폐지, 주도도시 주도요로 지정 축소
  - 일정한 조건하에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거나 관련 절차를 마련
- 공공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형사처벌로 국민을 위축시키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의 모욕죄 관련 처벌 조항 폐지

2 인권 선진국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❶ 교육기관 ·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진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은 '협의', '권고'에 불과함. 따라서 교육 및 채용시험, 승진 및 각종 훈련 과정에 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 국가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장과 협의를 하여야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러한 법적 권한의 한계로 인하여 학교교육과정 및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 규모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 실효성 등에서도 한계가 있음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담당 부서는 2개과, 15명에 불과하여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임

약속

-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의무화
-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기관평가에 반영
-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을 전담하는 '인권교육원'을 설치해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행(각종 교육 프로그램, 인권강사 양성 포함) 담보

❷ 「평등대우법(차별금지기본법)」 제정

진단

- UN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 관련 법률 제정을 권고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음. 그러나 아직 차별금지법은 국회 논의 중이고, 정부안은 제출되지 않음. 한편 차별금지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3개 발의되었으나, 보수 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2개 법안이 철회되어 사실상 제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제정 불가능한 상황임
-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모두 나열하는 포괄적 방식이며, UN 인권위원회 역시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을 권고하고 있음

[외국 사례]

○ 영국 :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 제정. "연령, 장애, 성전환, 결혼과 시민 파트너쉽, 인종, 종교 혹은 신앙, 성별, 성적 지향" 8개의 법률 보호 사유를 설정하였으며, 금지 행위(차별금지)로는 "차별(discrimination), 괴롭힘(harassment), 보복(victimisation)"을 정함. 적용 영역은 "공공서비스, 부동산(premises), 고용, 교육, 결사(association)" 5개이며, 그 외에 장애인 관련 이동권, 공공서비스 차량, 철도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음

○ 미국 : 동일가치노동과 동일가치임금을 규율하는 "동일임금법", 40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법", 인종 · 국적 · 종교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증오범죄법" 등 개별 입법 방식의 차별금지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

○ 캐나다 : 포괄적 형태의 법률로 출산국가, 종교, 여성 등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과 함께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와 평등 실현을 위한 "고용평등법"등 개별 입법 방식의 차별금지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음

○ 독일 : 2006년 성적 정체성,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평등대우법"제정

○ 호주 :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법", "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북부준주차별금지법", "뉴사우스웨일즈 차별금지법 "제정

○ 아일랜드 : 1998년 "고용평등법", 2000년 "평등지위법" 제정

○ 홍콩 : 1995년 성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1997년 가족상황차별금지법 제정

약속

- 평등대우법(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 제정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고려하고, 개별 법률로 시행되고 있는 차별금지 내지 평등법 내 차별을 예방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벌칙을 고려하여 평등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 제정

❸ 프랑스 동거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제정

진단

- 노인의 재혼 내지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음
-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성간의 결혼과 가족을 인정하고 있음. 민법에서는 가족을 개인 간의 권리의무관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호적법에는 '당사자'라는 표현만 있음. 반면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4항(가정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 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민법상 가족의 개념에 종속되지 않고 실제 수행하는 기능공동체의 성격을 긍정하는 차원에서 좀 더 유연하게 이해되고 있음
- 한편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혼인의사가 있어야 함. 제 3자가 혼인 의사가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혼인신고 할 의사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혼의 기준이 매우 높음. 즉 사실혼이 아닌 비혼 동거 커플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만 사회적으로 이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동성커플의 경우와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

약속

- 프랑스의 동거 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 제정
  - 이성 간의 혼인에 의한 '가족 구성'뿐만 아니라 동거노인, 미혼모, 공동체, 동성커플, 비혼커플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권 보장

❹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범죄 가중처벌

진단

- 일부 종교단체는 신문광고와 만화 등을 통해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음
- 2014년 한 해 동안 중앙일간지에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최소 11건의 광고가 16회 이상 게재되었음. 이들 광고는 성소수자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고 편견과 차별로부터 보호하려는 모든 형태의 정책적 시도나 보도를 저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이러한 광고들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폐지 노력, 서울시민인권헌장, 광주시인권헌장, 인권조례 등을 문제 삼았으며, 동성애자를 성범죄자로 묘사함으로써 동성애자에 대한 대중의 불안과 혐오감을 조성하였음. 또한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라며 동성애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설파하였음. 이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논리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부추기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부정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함. 위와 같은 신문광고를 통한 차별선동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 범위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와 사회적 해악이 큼. 그럼에도 이러한 광고를 통한 차별선동과 혐오조장 등을 규율하는 법제가 없는 실정임
-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반(反)성소수자단체 등은 단상에 올라가 사회자의 멱살을 잡고 마이크를 빼앗으며 행사를 방해하였음. 또한 성소수자 당사자와 인권옹호자들에 대하여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물리적 충돌도 집단적으로 행하였으나, 행사를 주관한 서울시에서는 경찰에 개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동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이와 같은 혐오범죄에 대해 많은

나라에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음

약속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론의 차별 조장 광고 규제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발생시 가중처벌

❺ 표준이력서 도입으로 구직활동 차별 방지

진단

- 정부는 2007년 성별, 가족관계, 용모, 신체 등 직무와 관련 없는 특성을 근거로 벌어지는 구직과 채용상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직무관련 내용만 기입하도록 하는 표준이력서와 표준면접 가이드를 제작하여, 국가표준(KS X 1521)으로도 지정하였으나 민간에는 권고수준에 지나지 않아 실제 활용은 정부기관 일부에 그치고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가 2015년 국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80%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이력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족과 동거유무, 가족수입, 취미, 혈액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음.
- 또한 한 구직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기업 중 60%가 고용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한 성별, 연령, 종교, 혼인, 임신 등의 차별금지항목으로 구직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답했음
- 상기 차별금지 항목의 상당수는 소수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특성으로 고려될 수 있는데, 특히 성별정정이 완료되지 않은 성전환 성소수자는 가장 빈번하게 직무와 관계없는 특성으로 인해 구직상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임

약속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직원 채용 시 업무관련 정보만을 요구하도록 하는 이력서 및 면접제도 도입
- 정부 투융자 심사, 사업보조금 지원 대상, 발주사업 심사 등에 표준이력서 도입여부를 평가하여 반영

❻ 국가인원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입 및 시민 참여 확대

진단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인권위원은 대통령, 국회, 사법부에서만 지명,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3인) 및 비상임위원(8인)은 국회의 인사청문대상이 아니어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 검증을 할 수 없으며, 인권위원 임명 때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한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에 대하여 2014년 3월에 이어 3번째로 등급보류판정을 내림. 이유는 '인권위원 및 직원 인사의 투명성, 적절성, 다양성 등의 미흡,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진 등'이었으며, ICC는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인권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하였음. 이러한 등급판정보류와 권고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인권상황의 악화와 함께 현병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과정의 부적절성, 그리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축소 과정에서의 부당한 인사 등이 원인을 제공함
- ICC 권고 이후 국회의원과 정부가 인권위원 선출 및 자격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되지 못하였고, 제19대 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임. 따라서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권력 감시 등을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위해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내지 동의를 받도록 하며, 대통령과 사법부 추천 몫을 축소하여 시민사회가 추천하도록 함

약속

-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과 위상 확립을 위해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과 시민사회의 의견 반영 제도화
- 대통령, 사법부 추천 몫을 줄이고, 시민사회 추천 확대

3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의 인권신장

❶ 고용허가제 점진적 폐지, 노동비자제도 도입

진단

- 중소기업, 농어촌 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중임.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을 최대 4년 10개월간(최초 3년 + 사업주 동의하에 1년 10개월 연장)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사업장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동안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발적 사업장 이동 불가능,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 하용에 따른 산재보험 미혜택, 기준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및 식사, 알선장 없는 구직 활동, 사업장 변경기간 제한(3개월 이내 재취업 및 1개월 이내 변경 신청)으로 인한 미등록이주노동자화 문제, 출국 후 수령하게 되는 출국만기보험제도' 등 수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로 불리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재입국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임. 첫째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 둘째 '농축산업 · 어업 또는 30인 이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 등을 요건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 비변경 조건은 사실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게 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이 요건은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재입국을 위해 이주노동자가 악화되는 노동조건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임
- 더구나 지난 10월 18일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숙련기술 없는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숙련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상당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남게 될 것임

약속

- 숙련도와 상관없이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노동비자 도입
- 노동비자 제도 도입 전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 사업장 변경 및 고용계약 단기화(1년) 허용,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폐지, 사업장변경 기한 연장 및 구제제도 마련, 이직 활동 지원, 숙식 기준 마련,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만 이주노동자 취업 허용, 출국 전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

❷ 이주여성 지원 확대

진단

- 2015년도 상반기 외국인 주민은 총 174만 1,919명(행정자치부)이며. 이들 중 3분의 1에 달하는 이주여성들은 체류가 불안정한 상태임. *외국인여성 이주유형별 미등록 상태: 결혼이민 12만8,193명 중 3,132명(3%), 예술흥행비자 4,024명 중 1,514명(37.6%), E-9비자(비전문인력) 2만 4,748명 중 7,489명(30%), 방문취업 12만 3,489명 중 2,161명(1.8%) (법무부, 2014.12월 자료)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영주권, 국적 취득 등의 권리가 한국인 가족에게 종속되지 않고 법적인 거주 자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주여성의 배우자로부터 폭력과 인신매매 및 성매매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음
- 결혼이주자들은 국제결혼 과정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중개업체를 통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서 오는 피해, 언어와 의사소통의 장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고립, 자녀양육의 어려움, 빈곤과 사회보장의 배제,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과 차별 경험 등의 전반적 문제들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위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결혼이주여성 100명 중 8명 불법체류 신세임
- 결혼이주여성 외에 취업이주여성 또한 극심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음. 한국의 경우는 제조업을 위주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음. 그러나 2002년 말부터 취업관리제로 외국국적 이주여성의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나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법이 허점이 많음

약속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자로 확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족중심 지원이 아닌 이주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를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의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보장. 체류 연장 시,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시 신원보증 등 완화
-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해 규제, 결혼중개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이주여성노동자 고용사업체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다문화 교육 강화
-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 지원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4 소수자 인권보호

❶ 예방정책 마련, 교육홍보 강화, 치료의약품 공급 등 감염인 인권 · 건강권 보장

진단

- 2004년 아시아 태평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은 인권권고안을 통해 건강과 인권의 상호의존성,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아래 감염인과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의 시각에서 법률적 정비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 2014년 기준으로 국내 HIV/AISD 감염인 수는 9,615명으로, 1987년에 제정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인권에 기초한 법이 아니라 HIV/AISD 감염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안임. 실명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에이즈강제검사, 격리수용뿐만 아니라 출입국시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퇴거를 당하고 있음. 법무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폐지한다고 밝혔으나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만을 변경했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음

약속

-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정책 마련,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교육홍보강화, 국가의 치료의약품 공급의무 규정 신설 등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
- 강제검진, 전파매개금지 조항과 같은 인권침해 금지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부분 보장
- 관련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간병, 재가복지, 상담서비스 등 재정비

❷ 현행 성전환자 성별변경 조건 완화 및 의료 · 복지지원 확대

진단

-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로 성전환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주민등록상의 성별표기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생식능력을 제거해야 함. 이는 성별변경을 위해서 재생산권과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불임수술을 강요받는 것임. 또한 성별정정 시 성장환경진술서, 인우보증서, 정신과진단서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성별정정을 원하는 성전환자들에게 높은 장벽이 되고 있음
-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계와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트랜스젠더들은 주민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비정규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약속

- 성별변경 조건 완화,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
- 성전환자에게 필요한 호르몬 치료, 수술, 사후관리 등의 의료항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며, 전문의료기관 국가지정 운영
- 성전환자 취업상담과 취업교육 실시,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
- 성전환수술, 호르몬 치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료지원센터 설치

❸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진단

- 군대 내 이성 간 성행위는 징계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동성 간 성행위는 징역형으로 범죄화해 처벌하고 있음
- 군형법에 의해 이성간의 성폭력뿐 아니라 동성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

약속

- 이성간 성행위와 달리 동성간 성행위만을 징역으로 처벌하는 차별조항 폐지
- 징병 신체검사, 군 인사, 병영 관리 시 동성애 차별 금지

20

보육공약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입니다

우리는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 속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26만명에 이르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를 해소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기도록 할 것입니다.
육아를 위한 휴가는 보장되고 늘어나며, 어린이 병원비는 가장 먼저 무상의료가 실시될 것입니다.

1.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아이안전 부모안심" 공공보육 실현
2. 자녀양육 사회책임제
   "무한돌봄 공공돌봄" 사회양육 실현

아이가 행복한 2대 국가책임제

1.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아이안전 부모안심" 공공보육 실현

❶ 보육균형발전지표 도입으로 국공립대기자수 26만명 해소
❷ 보육거점센터 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 역량 지원
❸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우선 향상
❹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우수보육 실현
❺ 우수교사 양성 및 지원 시스템 강화
❻ 보육119 도입, 보육전담공무원, 개방형어린이집 실시로 안심어린이집 실현
❼ 누리과정 국고 지원으로 부모불안 해소
❽ 보육료 지원 현실화, 바우처방식에서 시설운영비 직접지원으로 전환

2. [자녀양육 사회책임제] "무한돌봄 공공돌봄" 사회양육 실현

❶ 임산부 ·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
❷ 3대 육아 휴직제 보장
- 출산전후휴가제 확대, 파파쿼터제 도입,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❸ 자녀 담당의사 제도 도입
❹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1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아이안전 부모안심" 공공보육 실현

❶ 보육균형발전지표 도입으로 국공립대기자수 26만명 해소

진단

● 국공립어린이집 10.6% 불과

–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50만명임.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6만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10.6%에 불과(현원, '14년 12월 말).

[어린이집 현황]

2014.12. 31. 현재 / 단위: 명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어린이집 수	개소	43,742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비중)	100.0	5.7	3.2	1.9	33.9	53.3	0.3	1.6
아동수	현원(명)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비중)	100.0	10.6	7.0	3.3	51.8	24.4	0.3	2.6

*자료: 복지부. 2014 보육통계.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 26만 명

–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26만 명에 달해 국공립 이용아동의 2배에 가까운 상황. 서울시의 경우 입소에 1년,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되고 있음

*서울 국공립 대기자수 9만9천명 (2014년 9월,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 제외 16개 시도 국공립 대기자수 15만8천명 (2015년 2월, 박원석의원실 제출 자료)

–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도 입소 전 대기경험률은 22.6%, 대기기간은 평균 6.4개월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9.7개월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대기자수 26만명 국공립 전환 시 국공립 비중 28%, 법인 · 부모협동 · 직장어린이집 등 포함 시 41.2%로 증가

● 국공립어린이집 분포 지역 격차 심각

–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 서울시의 경우 공급률 13.8%, 이용률 12.3%에 달하는 반면, 대전시의 경우 공급률 1.9%, 이용율 1.7%에 불과한 상황

〈`14년도 사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이용률 및 정원충족률〉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수	전체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현원	공급률	이용률	정원 충족율	정원	현원	공급률	이용률	정원 충족율
전국	2,741,835	1,800,659	1,496,671	65.7	54.6	83.1	179,939	159,241	6.6	5.8	88.5
서울	480,047	275,464	243,432	57.4	50.7	88.4	66,109	59,036	13.8	12.3	89.3
부산	159,816	89,078	75,407	55.7	47.2	84.7	11,965	10,695	7.5	6.7	89.4
대구	122,409	79,274	62,824	64.8	51.3	79.2	2,426	2,058	2.0	1.7	84.8
인천	162,895	94,812	83,731	58.28	51.4	88.3	8,685	7,812	5.3	4.8	89.9
광주	84,480	62,676	50,672	74.2	60.0	80.8	2,678	2,202	3.2	2.6	82.2
대전	87,879	55,553	46,859	63.2	53.3	84.4	1,702	1,468	1.9	1.7	86.3
울산	70,124	40,754	35,383	58.1	50.5	86.8	2,196	2,055	3.1	2.9	93.6
세종	11,783	8,407	6,405	71.3	54.4	76.2	747	674	6.3	5.7	90.2
경기	737,803	403,965	340,818	54.8	46.2	84.4	41,044	37,445	5.6	5.1	91.2
강원	72,309	63,214	44,280	87.4	61.2	78.4	6,496	5,418	9.0	7.5	83.4
충북	85,340	63,214	51,491	74.1	60.3	81.5	4,238	3,552	5.0	4.2	83.8
충남	117,484	87,915	70,015	74.8	59.6	79.6	4,066	3,516	3.5	3.0	86.5
전북	94,369	75,275	58,328	79.8	61.8	77.5	3,577	3,057	3.8	3.2	85.5
전남	94,151	70,873	56,105	75.3	59.6	79.2	5,398	4,456	5.7	4.7	82.5
경북	134,949	95,612	73,271	70.9	54.3	76.6	7,075	5,705	5.2	4.2	80.6
경남	190,029	133,204	108,121	70.1	56.9	81.2	9,761	8,590	5.1	4.5	88.0
제주	35,968	33,009	27,402	91.8	76.2	83.0	1,776	1,502	4.9	4.2	84.6

* 자료 : 주민등록 인구 통계(행정자치부, `14.12 말 기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14.12 말 기준)
* 재인용: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15.11.

● 국공립 건축 시 지역부담 과중

– 지역별 편차 발생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소요되는 재정지원방식 때문임

-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비는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으로 이뤄지나, 토지매입비 및 건축설계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이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 확보 의지와 재원 부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2014년의 경우 전국에 1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됐으나, 서울 83개소, 경기 30개소가 확대된 반면, 대전은 1개소도 확충되지 않아 지역별 격차는 더 심해지는 상황임

● 어린이집 미설치 445개 지역

- 어린이집수가 4만 3,742개소에 달하나, 어린이집이 아예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도 445개에 달하고 있음

[어린이집 설치 및 미설치 지역]

2014.12. 31. 현재 / 단위: 명

구 분	설치지역						미설치지역		
	어린이집 수			설치지역 수			미설치지역 수		
	계	읍·면	동	계	읍·면	동	계	읍·면	동
계	43,742	7,095	36,647	3,058	1,003	2,055	445	417	28
서울특별시	6,787	0	6,787	422	0	422	1	0	1
부산광역시	1,957	174	1,783	206	5	201	4	0	4
대구광역시	1,588	141	1,447	140	10	130	1	1	0
인천광역시	2,308	32	2,276	143	16	127	5	4	1
광주광역시	1,260	0	1,260	92	0	92	3	0	3
대전광역시	1,698	0	1,698	76	0	76	2	0	2
울산광역시	946	161	785	52	9	43	4	3	1
세종특별자치시	160	98	62	12	10	2	0	0	0
경기도	13,259	2,100	11,159	539	132	407	15	9	6
강원도	1,257	381	876	169	95	74	26	26	0
충청북도	1,229	366	863	123	72	51	30	30	0
충청남도	2,053	887	1,166	173	127	46	34	34	0
전라북도	1,654	262	1,392	176	95	81	65	64	1
전라남도	1,242	586	656	221	156	65	79	76	3
경상북도	2,212	857	1,355	245	154	91	87	84	3
경상남도	3,533	944	2,589	227	110	117	88	86	2
제주도	599	106	493	42	12	30	1	0	1

*자료: 복지부. 2014 보육통계.

약속

- 보육균형발전지표 도입
  - 국공립비중 및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 국고 지원 확대
  -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445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에 있어서 사업수행방식 전환
  - 리모델링, 민간매입,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공원 활용, 공공기관 시설 활용 등으로 20~30억에 달하는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비용 절감
- 병설유치원 확대
  - 운동장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질 높은 병설유치원 확대

❷ 지역거점센터 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 역량 지원

진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90%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 중. 그나마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10.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개인이 운영하는 20명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4.4%(이용아동수 비중),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중이 51.8%(이용아동수 비중)을 차지함
-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강의공간 등이 부족한 상황임

약속

- 읍면동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중 '지역거점센터' 지정
  - 민간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놀이터 등을 개방해 민간보육 상생지원체계 마련

❸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우선 향상

진단

● 보육교사 월평균 임금 155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

-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월 평균임금은 155만원임. 보육교사 중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그나마 가장 나은 189만원을 받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188만원임.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4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38만원

〈보육교사 근로조건〉

구 분	평균	국공립	복지법인	법안단체	민간	가정	직장
평균 총 급여(만원, 월)	155.0	188.3	182.0	179.0	145.5	137.8	189.0
- 평균 급여	131.4	162.8	160.4	155.6	121.7	115.5	157.6
- 평균 수당	23.7	25.5	21.6	23.4	23.8	22.3	31.3
일 평균 근무시간	9.5	9.7	10	9.9	9.7	9.2	10

* 출처: 2012년 보육실태조사

● 월평균 희망급여 184.4만원

- 보육교사의 월평균 희망 급여를 살펴보면, 155만원보다 29.4만원 높은 184.4만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2)
- 2015년 현재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이라는 동일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육교사가 유치원교사보다 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 사립유치원교사와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민간어린이집교사가 사립유치원교사보다 월평균 69만원을 덜 받고 있는 상황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교사의 급여조건 비교〉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급여 (근무환경개선비 포함)	145만원/월	214만원/월
근무환경개선비	30만원(3~5세) 12만원(0~2세)[1)]	51만원

* 주1) `12년도 기준 자료이므로 `15년도와 다르게 나타남

** 자료 : '12.전국보육실태조사, '12.유아교육연차보고서(육아정책연구소)

** 재인용: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15.11.

약속

- 1단계: 보육교사 임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정부 지원)
- 2단계: 어린이집 임금을 유치원 수준으로 인상 (정부 지원)

❹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우수보육 실현

진단

- 탄력보육으로 이름만 바뀐 초과보육
  - 현재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만0세 3명당 보육교사 1명, 만1세 5명당 교사 1인, 만2세 7명당 교사 1인, 만3세 15명당 교사 1인, 만 4세 20명당 교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음
  - 올해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발표하면서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항목으로 1~4세반 아동을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초과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함. 이전에 실시되던 초과보육이 이름만 바뀐 꼴임

[연령별 보육교사 배치기준]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 자료: 복지부, 「2016 보육사업안내」

- 휴게시간 없는 경우 40.6%, 하루 평균 26.2분에 불과한 휴게시간
  - 보육교사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이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아예 없는 경우가 40.6%로 평균 휴게시간은 26.2분에 불과함.

[보육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	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없음	1~30분	31~60분	60분이상	평균
전체	9시간 28분	40.6%	23.6%	33.7%	2.2%	26.2분

*자료: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만 3세 이상의 유아의 경우 교사 1인이 15명에서 20명 이상을 전담하고 있는데 일과 시간의 보육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휴게시간도 없는 과도한 업무부담은 아동의 보육환경에도 그대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핀란드 3세 이하 4:1, 3세 이상 7:1 배치

- 핀란드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3세 이하는 4:1(교사 1인 이외에 보조교사로 간호사나 보육사 2인 추가 배치), 3세 이상은 7:1(교사 1인 이외에 보조교사로 간호사나 보육사 2인 추가 배치). 민간보육시설은 3.5% 이용률로 미미한 수준(2012. 한국법제연구원)

약속

●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 영아반 보조교사, 유아반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 확대

❺ 우수교사 양성 및 지원 시스템 강화

진단

● 교사 자질 향상과 보수교육 시스템 강화 필요

-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 보육교사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육교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양성과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됨
- 현재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있어 가장 문제점은 보육교사의 개방형 학점이수제와 온라인교육의 감독 미비이며, 2014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15.11)

<양성기관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2013)>

(단위 : 명)

구분	대학(교)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보육교사교육원
1급	17,766	79	6	2	-
2급	27,774	1,436	2,146	34,387	2,685
3급	-	-	-	-	9,566

*출처 : 한국보육진흥원(2013). 자격기준별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현황
*재인용: 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2015.11.

- 의사소통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무엇보다 인성을 겸비한 질높은 보육이어야 할 것임.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원장과 보육교사의 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
- 따라서 현재 온라인 교육으로 이뤄지는 양성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직교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대체교사 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높은 보수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약속

- 1년 양성과정의 경우 보조교사로 채용 후 일정 경력이 지나야 담임교사로 배치
- 원장, 교사 보수교육 강화 및 대체교사 인력 지원 확대

❻ 보육119, 보육전담공무원, 개방형어린이집 실시로 안심어린이집 실현

진단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음
- 영유아는 반나절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보내지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해킹 위험, 사생활 및 노동권 침해 등 많은 논란 끝에 보육시설 내 CCTV 설치가 법으로 통과되어 시행 중이나, 이 역시 학대 발생 시 사후처리에 그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함

● 보육교사와 보호자, 영유아 간의 신뢰 형성, 보육교사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약속

● 보육 119 도입
  - 보육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하면 곧바로 출동해 상황을 점검하는 '보육119'도입
  -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의 익명고발 시에도 119 출동처럼 신원 확인 없이 곧바로 출동
  -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현장조사 공무원 등이 팀을 이뤄 출동하고, 필요시 경찰수사 의뢰

●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 읍면동사무소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
  - 부모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보육시설을 일상적으로 지도 및 관리감독

● 개방형어린이집 실시
  - 부모가 교사들을 면대면할 수 있고 보육현장을 볼 수 있도록 직접 등하원 장려 및 급식 참여, 부모상담 · 교육, 운영위원회 참여 등 강화

❼ 누리과정 국고 지원으로 부모불안 해소

진단

● 누리과정은 우리 자녀들의 생애 초기 기회균등을 위한 조치임.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약속해 놓고 국고지원을 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2002~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할 당시 국고지원한 점과 대비됨

●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으로 보육대란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음. 교육청은 누리과정 때문에 지방교육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여건이 더 어려워짐.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재정을 투입하느라 초 · 중 · 고등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제 때에 하지 못하는 교육대란의 위기가 이어짐. 대구교육청은 누리예산 마련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매각한 바 있음

약속

- 20대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 보육대란과 교육대란 예방
- (원 플러스 원)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 + 특별교부금 1% 하향 ☞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2.1조원의 안정적 확보
- (올해 긴급 지원)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긴급 투입

❽ 보육료 지원 현실화, 바우처방식에서 시설운영비 직접지원으로 전환

진단

- 아동 수에 목매게 하는 바우처 방식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아동수에 상관없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들은 바우처방식의 현재 체제에서 아동수에 따라 운영비가 마련되기 때문에 아동 유치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림
  - 또한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육료 단가로 인해 보육아동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왜곡된 구조를 낳음. 때문에 적자 운영을 만회하기 위해 낮은 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악순환을 밟아 왔음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무상보육을 무색케하는 기타 필요경비
  - 현재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도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육료 및 기타 필요한 경비가 결정됨. 보육료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 7개 항목으로 분류됨.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함
  - 육아정책연구소(2015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이 76.7%에 달하고, 이용시 특별활동 수는 평균 3.1개임. 이중 50% 내외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별활동비용으로 매월 평균 56,900원을 내고 있는 상황임.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가 44.8%로 가장 많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도 15.2% 차지. 정부는 2014년부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혼자 방치됨을 걱정해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약속

- 바우처 방식이 아니라 시설 직접 지원으로 전환
- 보육시설 운영 비용 현실화: 표준보육비용 100% 지원, 기타필요경비 적정화 평가 후 지원 확대
-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특성화활동 대체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2 자녀양육 사회책임제
"무한돌봄 공공돌봄" 사회양육 실현

❶ 임산부 ·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

진단

- 고령산모의 출산이 증가하고, 인공수정의 증가에 따른 다태아 임신 증가로 산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출생아수의 감소에 따라 태아기부터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져 산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2012.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2013년 서울시는 3개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서울시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음. 이는 호주시드니에서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인식 하에 간호사가 지속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산모 및 아이의 건강관리, 산모의 양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건강관리사업임.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 확대가 필요함

약속

- 임산부 •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도 도입
  - 1단계: 전국 건강취약지역 / 2단계: 전국 확대
-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 핀란드는 모든 출산가정에게 10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 제공
  - 출산 시 양육에 필요한 종합물품을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❷ 3대 육아 휴직제 보장
- 출산전후휴가제 확대, 파파쿼터제 도입,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진단

● 충분치 못한 산전휴가

- 최근 30세 여성 첫 아이의 조산율이 3%에 이르는 등 조산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어 산전에 휴가가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후 45일 배정 규정 때문에 산전에 충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출산 후 취업중단

- 「첫 자녀 출산 여부와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유배우 기혼 여성의 취업중단에 관한 연구」(이진경·옥선화, 「조사연구」, 2009)에 따르면 기혼취업여성은 출산 2~3개월 전인 시기에 급격하게 취업 중단 위험률이 증가하여 첫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절반 정도가 취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혼취업여성에 대해서 임신 시기부터 첫 자녀 출산 시점까지 또는 첫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시기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취업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사용자의 남성 비중 4.5%

- 2014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여성이 7만 3,412명,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4년 3,421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4.5%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약속

● 출산전후 휴가 90일 → 120일로 확대

-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 휴가기간 확대로 임신기 휴가 지원

※ 산전휴가 지원 및 임신휴가제 유사제도 기업 실시 사례
- 임신휴가제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임신이 어려운 여성근로자에게 특정기간 휴가를 주는 제도로 일부 대기업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음.
-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0년 이미 실시 임신휴직제 도입, 최장 23개월간 쉴 수 있고, 임신 2개월 이후부터 최대 8개월까지 휴직이 가능, 임신휴직 기간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아시아나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산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육아휴직까지 최대 2년 동안 휴직이 가능하며 연간 300명 내외의 승무원이 산전휴가를 사용함

● 육아휴직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 인상

- 육아휴직기간 중 3개월은 아빠 의무할당제 실시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상·하한선 현실에 맞게 인상: 50~100만원 → 80~150만원
- 파파쿼터제 기간만큼 육아휴직 기간 확대: 12개월 → 15개월

※ 파파쿼터제 관련 해외사례

(스웨덴) 부부가 총 1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이 중 2개월씩 반드시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나머지 12개월은 엄마 아빠든 어느 쪽이든 가능하며 이 기간에 소득의 80% 정도를 정부가 수당을 주고 세금도 감면해 줌.

(노르웨이) 육아휴직 47주를 사용하면 임금의 100%를, 57주를 사용하면 임금의 80%를 지급. 47주 중에는 출산 전 휴가 3주를 제외하고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12주가 할당되며, 20주는 공동으로 사용가능함

(독일&일본) 육아휴직 14개월 중 2개월 이상이 남성에게 의무 할당됨.

● 가족돌봄 휴가제 신설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
- 현행 시행하는 가족돌봄휴직제에서 근로자가 신청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수정

❸ 아이 담당의사 제도 도입

진단

● 아이가 아플 때 부모들은 동네의원을 찾아가 약만 처방받고 끝인 경우가 대부분임. 부모들에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건강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임

● 한국의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취약해 지역주민의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욕구를 해소할 1차 보건의료서비스는 취약한 반면, 수익성이 좋은 대형병원서비스만 과잉공급되어 있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은 상황임

● 이로 인해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의료시스템이 부재함. 아플 때만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해 주며 교육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필요함

약속

- 우선 0~12세 어린이 담당의사 제도 도입
  - 0~12세 등록 아동에게 해당 지역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 등이 1년에 2회 주기적인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 아동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부모들이 자연스레 담당의사를 찾게 되므로 관내 소아과, 가정의학과도 이익이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주치의가 있어서 일상적인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음

❹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진단

- 2014년 15세 미만의 입원병원비는 총 1.7조원임. 이중 건강보험공단 1.2조원, 환자가 5,125억원을 부담하고 있음.

〈2014년 입원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현황, 자료:통계청〉

	총 입원병원비	건강보험급여비	환자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
0~15세	1조 7,053억	1조 1,901억	1,306억	3,846억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자료.

- 「2014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0세 미만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9%, 10~19세의 경우 80%에 달함. 이는 전체 민간의료보험 가입율 74.3%를 훨씬 상회함. 민간의료보험료로는 가입가구원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경우 월평균 57,056원, 10~19세의 경우 49,060원을 지출하고 있음

약속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도입
  - 어린이 입원비 전액 국가 책임
- 보험료 인상없이 국민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의 3% 재원 사용
  - 어린이입원비 본인부담금 5,125억원, 국민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의 3% 수준

21

교육 공약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저계급론이 먹히지 않을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며, 등록금은 진짜 반값이 될 것입니다.
창의력과 인성이 자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서열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존중받는 졸업장을 받으며,
부모들은 사교육비 걱정에 자책하지 않을 것입니다.

1.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2. 창의력과 인성이 자라는 학교
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4.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교육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

1.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❶ 국고지원으로 막힘없는 누리과정
❷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❸ 2020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❹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
❺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❻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❼ 일반고 강화로 고교 서열화 해소
❽ 고졸 취업장려금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2. 창의력과 인성이 자라는 학교

❶ 쾌적한 친환경 건물에서 공부하는 선진학교
❷ 중학교 2학년부터 한반 25명,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
❸ 선생님의 행정업무 경감, 창의·인성지도에 전념
❹ 초등학교 혁신학교 2배 확대로 미래교육 환산
❺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로 스스로 공부법 신장
❻ 수능수학 절대평가로 자녀의 생각하는 힘 키우기
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다양한 역사교과서
❽ 학교와 동등하게 학원 선행학습 금지

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❶ 재난위험시설 완전 해소, 유해물질 없는 운동장
❷ 아동학대근절 신고시스템 정비
❸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❹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배 확대

4.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교육

❶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 학부모 권리 보장
❷ 노동인권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❸ 총장 직선제는 대학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❹ 헌법과 국제표준에 따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❺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학교로 학생중심 교육

주요사안

[대입제도 개편방안]

- 수능수학 절대평가, 사회적 논의 거쳐 다른 교과 절대평가
- 고등학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의 대입 반영
- 고른 기회 대입전형 확대
- 여러 대학 연합의 통합전형에 대한 인센티브

[사교육비 경감방안]

- 중2부터 한반 25명 …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
- 일반고 1학년부터 한반 25명 … 고등학교 기초 튼튼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 … 스스로 공부법 신장
-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
- 대입 개편 : 수능수학 절대평가,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고른 기회 대입전형 확대, 여러 대학 통합전형
- 초중고 방과후학교 내실화

[인성교육방안]

- 민주시민 및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로 다양성 존중
-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으로 배려·소통하는 학교풍토 조성
- 어울림 프로그램과 회복적 생활지도로 인성 함양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1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❶ 국고지원으로 막힘없는 누리과정

진단

- 누리과정은 우리 자녀들의 생애 초기 기회균등을 위한 조치
-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나 대선공약으로 약속해놓고 국고지원을 하지 않음.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2002~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할 당시 국고지원한 점과 대비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으로 보육대란 위기
- 교육청은 누리과정 때문에 지방교육채(빚)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교육청 소관 아닌 어린이집에 재정을 투여하느라 학교에 적기 지원하지 못하는 교육대란의 위기 또한 존재. 대구교육청은 시내의 초등학교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마련

약속

- 20대 국회 최우선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보육대란과 교육대란 예방, 누리예산 먹튀 대통령 방지
  - (원 플러스 원)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상향 + 특별교부금 1% 하향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2.1조원의 안정적 확보
  - (올해 긴급 지원)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긴급 투입
  - (유보통합) 국무조정실의 유보통합이 교육부로 일원화할 경우,
    관련 재원 및 조직을 이관하고 교육부 2차관제를 도입

❷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진단

- 급식은 교육. 무상급식은 눈칫밥 설움을 없애고 자라나는 자녀의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대부분 이루어지나, 중학교는 부산 · 인천 · 대전 등에서 부진. 의무교육 무상의 헌법정신에 위배
- 경남은 무상급식 시초이나, 홍준표 도지사로 인해 중단. 정치가 학교교육 및 국민복지의 안정성 해치는 적폐의 재현. 최근 들어서야 재개
- 무상급식 국고지원 없음. 지자체와 교육청 부담. 박근혜 정부의 개선책 없음.

약속

- 20대 국회 최우선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 헌법정신 수호, 홍준표 방지
  - 무상급식비 50% 국고지원(연 2조원), 지자체가 정치적 결정으로 지원을 중단해도 국고 지원분만큼 무상급식 실시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중앙정부 · 지자체 · 교육청간 협력

❸ 2020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진단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인 반면에 고등학교는 학부모의 납입금 부담. 무상교육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기본 조치
-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음. 집권 4년차가 되도록 국고지원 0원으로 사실상 공약 파기
-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약속

- 20대 국회 최우선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정치
  - 4년간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확대
  - 농산어촌 → 도시 1학년 → 도시 1~2학년 → 도시 전 학년. 사립 특목고/자사고 제외
  - 완성되는 4년째 기준으로 국고 지원 2조 3천억원 소요
  - 도시 고등학생 1인당 연 170만원(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경감

❹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진단

- 2015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 418만원, 사립대 734만원, 국립 전문대 272만원, 사립 전문대 597만원
-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하였으나, 액수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방식. 국가장학금 4조원과 교내외 장학금 3.1조원으로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을 부담해 공약을 완성했다고 밝히나, 학생과 학부모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원은 0.8%로, OECD 평균 1.2%보다 적음. 대학 이상 고등교육의 수혜자는 정부와 기업. 이들 수혜자들이 대학 재정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약속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 가정의 한달 가처분소득을 표준등록금으로. 2014년의 경우 350만원
-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법인세와 내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2016년 9.2조원 보다 확대
  - 대학등록금 반값,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학 균형발전 및 특성화 등에 활용
-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및 과도한 이월금 조정
  - 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의 10% 넘지 않도록 정비
  - 과도한 이월금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조치

❺ 고른 기회 대입전형 2배 확대

진단

- 우리나라는 학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상위권 대학 진학하는 수저계급론 사회. 학교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사회 역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평등한 신분사회
- 현재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의 11%로 제한

> [고른 기회 대입전형]
> (정원 내)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및 주부, 농어촌학생, 지역고교,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정원 외) 농어촌학생,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5도 학생

약속

-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모집인원의 11%에서 20%로 두 배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❻ 대학 균형발전과 대학 서열화 해소

진단

- 우리나라는 대학서열화 국가. 가정배경과 대학서열이 연결되어 패자부활전 없는 불평등한 신분사회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프라임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면서 기초학문이나 지방대를 줄이는 방식에 많은 우려가 존재함

약속

- 대학 균형발전, 대학 연합의 통합전형 및 공동 교육과정
  - 대학 균형발전법 제정. 대학에 골고루 재정 지원
  - 여러 대학 연합 통합전형, 공동 교육과정, 전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부실 사립대의 국공립대화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
- 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하면서 합리적인 대학 개편
  - 기초학문과 지방대 육성하고 학문 특성과 구성원 의사 존중하면서 대학 개편
  - 교육여건의 법정기준 강화하여 고등교육의 기초체력 향상

❼ 일반고 강화로 고교 서열화 해소

진단

- 대학서열화에 이어 고교서열화도 심화. 외고 · 국제고 · 자사고로 인해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음. 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사회 역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
- 2015년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31.3명, 특목고는 24.4명

일반고는 1천 537교, 특목고는 148교(외고 31교, 국제고 7교), 자사고 49교

약속

- 일반고 1학년부터 한반 25명으로 특목고 수준 개선
  - 적용 학년 확대로 전체 학급당 학생수를 특목고 수준 개선
- 모든 일반고에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년 1억원 추가 지원 (총 1,500억원)
- 일반고 진로교육 강화 및 교육과정 다양화
  - 일반고 간 거점학교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로 교육과정 다양화
- 외고 · 국제고 · 자사고의 설립목적 준수
  - 설립목적과 사회상규에 반하는 외고 · 국제고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❽ 고졸 취업장려금으로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진단

- 우리나라의 학력간 임금격차는 고졸 100 : 대졸 153.9 (고용노동부, 2014년)
- 학력간 임금격차는 학력주의 병폐, 초중고 학교교육 왜곡, 가정의 사교육비 및 대학교육비 부담, 과잉학력 등의 문제를 낳음
  - 삼성경제연구소는 과잉학력은 GDP 1.01%의 상승 기회를 상실한다고 함. 이는 2014년 GDP 1천 485조원 기준으로 하면 15조원
- 정부는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근속장려금 제도를 실시. 뿌리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고졸취업자에게 3년 동안 한 해 100만원을 지원하나, 2016년 예산은 7.8억원(15년 수혜자 418명)에 그치고 있음
-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가 필요함

약속

- 현재 근속장려금을 고졸취업장려금 지원제도로 개편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중견·중소기업 취업하면, 취업 초기 최대 4년 동안 월 30만원(연 360만원)까지 고졸취업장려금 지원(경력 보전)
  - 대상자가 3만명일 경우 연간 1,080억원 소요
-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학력에 따른 차별 해소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과정 등 직업계고 확대

2 창의력과 인성이 자라는 학교

❶ 쾌적한 친환경 건물에서 공부하는 선진학교

진단

-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교환경은 과거보다 좋아진 것으로 보이나, 착시 현상
- 실제로는 노후한 학교시설이 많음. 30년 이상 건물은 7곳 중 2곳(28.8%)이며, 40년 이상 건물은 7곳 중 1곳(14.5%)임. 2009년부터 환경친화적인 그린스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중단됨. 5년 동안 168교만 개선하였고 학교당 최대 40억원 소요
- 발암물질 석면이 있는 학교는 10곳 중 7곳(70.7%). 위해성 높은 곳은 없고 대체로 낮은 편이나, 석면 제거는 필요함. 다만, 제거 비용 3.5조원이 없어 경기도의 경우 2016년 확보액은 3%에 불과함. 만약 이 추세라면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데 30년이 걸림
- 학생 화장실은 재래식이 일부 있고, 수세식 중에서 화변기가 40.4%임. 교체 비용은 2조원이나 재정 부족. 찜통교실과 냉동교실은 오래된 문제며 학교에 전기료 지원이 부족

약속

- 노후학교를 친환경학교로 바꾸는 그린스쿨사업 재개 (한 해 300교일 경우 최대 1.2조원)
- 재정지원을 늘려 학생 화장실 교체 (올해 1천억원 예정), 석면 제거
- 전기료 지원을 늘려 찜통교실과 냉동교실 해소방 (올해 냉난방기 교체 0.15조원 예정)
- 환경개선과 누리과정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하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 교부율 5% 상향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고지원
  - 2000년 폐지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부활(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❷ 중학교 2학년부터 한반 25명,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

진단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예전보다 개선되었지만, 착시 현상. OECD에서 최하위 수준 초등학교는 29개국 중에서 26번째, 중학교는 26개국 중에서 26번째(OECD 교육지표 2014년)
- 2015년 현재 초등학교 22.6명, 중학교 28.9명, 고등학교 30.0명
  - 중·고등학생이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고 있음. 2018년까지 중학생은 9.8%, 고등학생은 10.7% 감소(시도교육청 학생수용계획). 특히 대도시가 많이 줄어듬
- 박근혜 정부는 학생수 감소를 학교통폐합 많이 하는 방향으로 활용. 통폐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통폐합 기준도 개악함. 이 영향으로 대도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사라지고 교육재정 축소될 수 있음. 학생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약속

- 중학교 2학년과 일반고 1학년부터 한반 25명의 학생 개개인 맞춤지도 교실여건
  - 중2부터 한반 25명. 선생님의 맞춤 지도로 창의력과 인성 함양, 중2병 걱정 덜기
  - 일반고 1학년부터 한반 25명. 고등학교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일반고 차별 해소
  - 적용 학년을 확대하면서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작은 학교 살리기(특히, 대도시 구도심과 농산어촌), 인위적인 통폐합 제로.
  - 유휴교실 활용, 학급 증설, 학교 신설, 통학구역 조정 등의 방법으로 추진

❸ 선생님의 행정업무 경감, 창의·인성 지도에 전념

진단

- 날로 증가하는 행정업무로 선생님의 학생지도 전념이 어려운 상황.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학교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학교현장 목소리의 주요 배경

● 선생님의 행정업무가 줄어들 때,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가능하고 자녀의 창의력과 인성 함양

약속

● 선생님의 업무 조직을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으로 개편

● 직원 확충(2015년 현재 5만 7천 434명), 직무 분석 및 행정업무전담팀 구성

● 공문총량제 실시로 공문의 단계적 감축

● 수업과 평가를 바꾸기 위한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교원연수 프로그램 지원(집합연수 중심)

❹ 초등학교 혁신학교 2배 확대로 미래교육 확산

진단

● 2015년 3월 현재 혁신학교는 전국 810교. 초등학교 461교, 중학교 256교, 고등학교 86교, 유치원 3교, 특수학교 4교

● 2009년부터 시작한 혁신학교는 달달 외우는 암기식 수업에서 토론·활동형 수업으로, 줄 세우기 시험에서 성장 중심 평가로 혁신하여 자녀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증진 등의 성과가 있음. 학생과 선생님·학부모의 만족도 높음

  - 혁신학교는 한반 25명의 교실에서 선생님의 보다 적극적인 학생지도
  - 혁신학교는 인근 학교로 노하우 전파하여 모든 학교와 동반성장하는 정책. 외고·국제고·자사고처럼 인근 학교보다 우위에 서려는 형태와 다름

● 지역 차원 혁신교육지구는 전국 42곳(서울 10곳, 인천 1곳, 경기 20곳. 강원 2곳, 전남 9곳). 기초 지자체와 교육청의 새로운 협업 모델. 학급당 학생수 개선, 창의인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약속

● 초등 혁신학교 2배(461교→900교), 단계적으로 모든 초등학교(5,978교)를 혁신학교 지정

● 중고등 혁신학교는 학교구성원의 뜻 존중하면서 확대

● 혁신교육지구 확대하여 자녀의 창의력과 인성 증진

●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❺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확대로 스스로 공부법 신장

진단

●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2012년 시작 이후 꾸준히 확대. 2015년 126곳

● 12개 시도는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으나, 서울 경기 충북 전북 경북은 그렇지 않음(서울은 11개 지역교육청이나 센터는 1곳, 경기는 25개 지역교육청이나 8곳, 경북은 23개 지역교육청이나 5곳)

● 심리검사와 상담, 학습코칭, 방문서비스 등을 수행. 공부 그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측면부터 돕는, 학교밖 센터. 전문가 지원으로 공부의 기초체력이나 방법 증진

● 기초학력 부진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받는 자녀의 수가 적음. 2014년 한 해 동안 센터당 139명(전국 123곳, 1만 7천 89명)

● 한편,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꾸준히 감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2년 456억원, 13년 292억원, 14년 224억원, 15년 153억원

약속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전국 176개 지역교육청에 한 곳 이상 설치(2015년 현재 126곳)

- 지역교육청에 없으면 새로 설치, 센터는 있으나 관할 구역 넓으면 추가 설치
- 성적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자녀라면 종합적으로 지원

● 기초학력 보장 중앙정부 예산, 153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7배 확대

❻ 수능수학 절대평가로 자녀의 생각하는 힘 키우기

진단

- 수능 한국사는 올해 치르는 대입부터, 수능 영어는 내년 대입부터 절대평가. 줄세우는 시험이 아니라 목표 도달 여부를 가름하는 평가
- 중·고등학교의 내신은 절대평가(성취평가제)이나, 상급학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반쪽짜리. 현재는 고입과 대입 위해 줄세우는 상대평가를 병행. 내신 절대평가의 입시 반영 여부는 내년 결정
- 상대평가는 서열 위주 시험으로 무한경쟁, 교육과정 왜곡, 문제풀이식 암기수업, 과도한 공부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점 있음. 영어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보다 문제풀이에 치중하도록 만들어 영어교육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 수학은 즐거운 수학공부보다 수학 포기자로 이어지는 경우 많음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절대평가, 창의력 증진 위해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

약속

- 수능 영어와 한국사에 이어 수능수학 절대평가
  - 수능 다른 교과는 절대평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
- 중·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의 고입 및 대입 반영
-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서술·논술형 평가와 교사별 평가 확대, 일제식 평가 축소

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다양한 역사교과서

진단

-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 다양성 시대에 획일적인 교육, 세계시민교육에 상반되는 교육,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긋나는 친일독재 미화, 우리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퇴행, 정부의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에 반하는 후진적 조치

- 국민 대다수와 교육계 · 학계의 반대를 외면한 정책결정, 깜깜이 집필. 소통과 투명성 등 21세기 필수사항에서 낙제점

약속

- 중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철회
- 다양한 교과서와 학습자료, 토론 · 체험형 수업으로 올바른 역사교육
- 검인정제 확대로 선진형 교과서체제 실현

❽ 학교와 동등하게 학원 선행학습 금지

진단

- 선행학습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낳는다는 지적 있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으로 학교는 선행학습 금지. 한 학기 이상 앞서는 내용을 가르칠 수 없음. 하지만 학원은 가능함. 따라서 학교와 동등한 조건이 필요함

약속

- 공교육정상화법 또는 학원법 개정
  - 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초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의 한 종류)은 선행학습 금지

3 안전하고 건강한 배움터

❶ 재난위험시설 완전 해소, 유해물질 없는 운동장

진단

- 초중고 재난위험시설은 2015년 30개동, 해소 소요액은 642억원. 교육부는 2017년까지 모두 해결할 계획 (2014년 104개동이었는데 적극적인 노력)
- 재난위험시설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매년 이루어지는 안전대진단의 결과 추가 지정되는 방식이므로, 신속한 예산 지원과 개보수가 필요
-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와 개보수는 있었으나, 교육당국 차원에서 우레탄 트랙 등 탄성포장재를 검사한 사례는 없음. 탄성포장재 깔린 학교는 네 학교 중 한 곳(27.6%, 4천 469교). 이 중의 절반은 KS 기준조차 없던 시기에 조성(2천 239교, KS 품질기준은 2011년)
- 제주도 보건당국이 자체검사한 결과, 검사한 29교 전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검출. 현재 환경부는 전국 초등학교 30교 대상으로 운동장 유해성 검사 진행(종료 직전)

약속

- 2017년까지 초중고 재난위험시설 30개동을 차질없이 모두 해소
  - 추가지정되는 재난위험시설에 신속한 개보수 예산 지원
- 유해성 검사 및 개보수로 유해물질 없는 학교운동장
  - 우레탄 트랙 등 탄성포장재 대상으로 유해성 전수검사 및 개보수
  - 운동장과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 2000년 폐지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부활(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❷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동학대근절 신고시스템 정비

진단

-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주로 장기결석 상황에서 벌어짐.
- 2015년 3월 가정체벌 금지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것. 훈육을 용인하는 사회문화적 풍토, 가정체벌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개선되어야 함
- 신고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지금은 선생님과 공무원이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지 및 안전을 파악하는데,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한계가 뚜렷함.
- 학교전담 경찰관은 16년 현재 1천 138명. 한 명당 10여개 학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업무는 부여되지 않음
- 가정사정으로 전학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 안전을 위해 전학시킬 때에도 부모 동의가 필요함

약속

- 가정체벌 금지의 엄정한 적용
-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기결석 ·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기 점검
- 유관기관이 함께 피해 아동 보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인 경우 부모 동의없이 전학 가능
- 아동학대 및 장기결석에 대해 학교 신고시 학교전담 경찰관의 조치
  - 아동학대 의심되거나 오랫동안 무단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신고하면, 학교전담 경찰관이 소재지 및 안전 확인.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업무 부여

❸ 학교폭력 없는 배움터

진단

- 점차 감소하던 학교폭력이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증가. 학생 1천명당 심의건수 13.4%, 가해학생수 1.8%, 피해학생수 4.6% 늘어.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증가. 중학교는 학교폭력 가장 빈번.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 폭력 증가
- 공감과 배려로 학교폭력 예방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은 2015년 536교.
- 전문상담교사는 6교 중 한 곳(15.5%, 1천 781명). 초등학교 0.7%, 중학교 34.5%, 고등학교 27.0%. 이외에 계약직 상담사 2천 924명 있음
- 범죄예방환경설계(CEPTED, 쎕테드) 시범학교는 125교. 올해 100교 예정.
- 위기학생 통합지원 서비스 Wee 프로젝트의 3차 기관인 Wee 스쿨은 8곳.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 시도는 없음

약속

- 올바른 사이버활용 교육과 친구 맺기 교육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학교폭력 빈번한 신학기초에 집중)
- 초·중학교 중심으로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 전문상담교사·학교사회복지사 확충 및 회복적 생활지도
- 범죄예방환경설계 CEPTED 적용 학교의 확대 (학교당 1~2천만원)
- 모든 시도에 Wee 스쿨 설치
  ※ 초중고 : 전국 1만 1천 526교, 초 5천 978교, 중 3천 204교, 고 2천 344교

❹ '집과 학교가 함께 자녀를 챙긴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2배 확대

진단

- 소아 청소년기의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 자녀의 행복과

친구 관계 및 공부 등에 영향. 가정의 근심이기도 함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사업 추진중. 안심학교는 알레르기 질환 학생 관리, 천식응급키트 구비, 교실 실내환경 관리, 아토피 · 천식 예방 교육, 아토피 이겨내는 체험캠프, 지역의 보건소 및 아토피 · 천식 교육센터와 연계 등 활동
- 안심학교는 전국 1천 568곳. 유치원 및 어린이집 1천 33곳, 초등학교 512교, 중 · 고등학교 23교. 초등학교의 경우 8.6% 수준 (전국 5천 978교 중에서)

약속

-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2배
  - 학교의 관심과 참여로 가능
  - 보건소의 사업 설명 및 접수(3~4월)에 신청. 학교 입장에서 소요예산 없음

4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교육

❶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 학부모 권리 보장

진단

- 학생, 교원, 학부모의 권리 존중은 상생 관계. 학교를 배려와 소통 그리고 공감의 장으로 만드는 주요 방안
-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 4개 시도. 교권조례는 광주, 충남, 전북 등 3곳. 학부모회조례는 서울, 경기, 전북 등 3곳. 시도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가 재의요구하도록 하거나 대법원 제소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있음

약속

-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부모회 제정하여 배려와 소통의 학교풍토 조성
  -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학부모회 제정의 지원
-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 개정.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하는 경우,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하여 지방교육자치 존중

❷ 노동인권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진단

-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가 지목한 향후 미래교육의 핵심 과제. 다양성 존중, 인권 존중, 공감과 배려,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
- 박근혜 정부의 세계시민교육 예산은 올해 10억원. 작년까지 0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네 곳이 함께 세계시민 교과서와 평화시민교과서 2종을 개발하고 있음. 이미 만들어진 민주시민 교과서는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남 · 전북 등 여섯 곳에서 활용

  ※ 시민교육 교과서 : 민주시민, 세계시민, 평화시민
- 자녀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고 있음.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취업 후 노동자로 살아가지만, 학교에서 권리 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함.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배웠다는 중고생은 42.7%, 교육이 충분했다는 학생은 5.5% (2013년 조사)
-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

약속

-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로 다양성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인성 함양
- 충실한 노동인권교육
- 시민교육 교과서 개발 지원
- 학교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실시

- 교원 연수 및 강사단 구성
- 시도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하여 부당한 대우 예방 및 근절
- 세계시민교육과 상반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❸ 총장 직선제는 대학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진단

- 정부는 총장직선제를 없애려고 재정지원과 연계. 대학 민주주의의 꽃을 꺾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부산대 교수님의 안타까운 일 있었음
-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총장직선제를 허용. 학교구성원이 직선제와 간선제를 택일.
- 박근혜 정부는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공주대, 전주교대 등의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음. 학교구성원이 선출하여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임용하지 않음. 총장 공석은 전국 41개 국립대 중에서 10곳. 대학의 중장기 발전은 언감생심으로, 식물대학 우려되는 상황
- 대한민국 헌법에 대학의 자율성 명시되어 있지만, 정치권력이 대학을 좌우하려는 적폐가 재현되고 있음

약속

-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대학구성원의 자율적 결정으로 총장직선제 실시
  - 직선제 유무와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할 수 없고, 학교 추천 1순위 후보자를 법적 결격사유 없으면 일정 기간 내에 제청 및 임용. 제청이나 임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밝히도록 규정

❹ 헌법과 국제표준에 따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진단

-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일부 보장.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표준에 미흡
-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선생님들을 순직 인정하지 않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심사 기회도 주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
- 학교회계 직원은 임금 및 처우에서 차별. 학교회계 직원은 14만명. 학교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가장 많음. 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학교스포츠 강사 등 강사 직종은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고용 불안정 및 차별적인 처우
-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해소가 삶의 질과 교육의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

약속

-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교원노조법 개정, 교육감 선거의 교원 참여 보장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 공무원연금법의 합리적인 적용 또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 교육공무직법 제정(년 1.2조원)으로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❺ 깨끗하고 투명한 사립학교로 학생중심 교육

진단

- 교육자의 양심으로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사립학교와 달리, 일부 비리사학이 존재
- 족벌경영과 회계 부정 그리고 학교운영의 전횡 등이 주요 유형. 이로 인한 피해는 학교교육활동의 부실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감
- 박근혜 정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비리로 물러났던 예전 재단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 비리사학 부활의 통로가 되고 있음. 상지대가 대표적임

- 교육은 그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함. 교육청이나 국공립학교 대부분은 비리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고 있음

약속

- 개방형 이사제도 정상화
  - 재단 및 학교 관계자의 개방형 이사 제한
  - 개방형 이사 선임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조치
- 재단 임원 친인척의 학교회계 담당자 제한으로 유착관계 근절
- 비리임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사립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22

보건의료 공약

메르스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
정의당이 보건의료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보건의료 정책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강화된 1차 의료로 인해, 국민들은 대학병원에서 지역으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대개혁되어,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로 지역
가입자의 박탈감은 해소될 것이며 보장성이 넓어진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지역과 계층의 건강 불평등은 완화될 것입니다.

1.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공공성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
3. 공정한 보험료 체계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대개혁

1.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공공성

❶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일차의료 강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❷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❸ OECD 평균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

❶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확대, 어린이입원비 100% 보장
❷ 계층간, 지역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불평등 해소

3. 공정한 보험료 체계

❶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
❷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 부담 해소

1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공공성

❶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일차의료 강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진단

- 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총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38명이 사망한 참사로 한국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음. 뻥뚫린 국가방역체계뿐 아니라 환자의 닥터쇼핑,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병원내 감염관리 무방비, 개인간병문화, 대형병원 응급실 집중, 공공의료의 부족 등 고질적인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임. 그러나 1년도 채 안된 지금 메르스가 던지는 교훈은 거의 잊혀져가고 있으며,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목소리도 줄어들고 있어 소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하는 현실임
- 메르스 참사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환자파악과 격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뿐 아니라, 환자가 임의적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닥터쇼핑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이는 일차의료의 기능이 마비되고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1차의료기관(동네의원)-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3차의료기관(대형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이뤄지는 환자의뢰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의료기관간 역할정립도 이뤄지지 않아 환자를 두고 의원과 병원이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고착되어 있음
- 특히 외래기능 중심의 동네의원, 입원기능 중심의 병원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조차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네의원은 1차의료의 역할로서 질병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의 기능이 취약한 상태임
-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된 대형병원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국민건강과 전염병 차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약속

-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일차의료 강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 재편
  - 동네의원→병원→동네의원으로 이어지는 환자 화송시스템 구축
  -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여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 억제
- 전국민의 포괄적인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한 건강담당의사제도 도입
  - 12세 미만 아동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담당할 건강담당의사제도 도입
  - 충분한 설명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수가제도와 자불제도 도입으로 신뢰와 존중의 환자 의사관계 복원

❷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진단

- 메르스 참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줌.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일개 병원의 노력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과 질병관리 당국, 정부가 일사분란하게 협력하여 대응해야 하는 특징이 있음. 공공의료란 단지 공공병원을 지칭하지 않으며,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역할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자금의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을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어 공공적 역할에 매우 취약함
  - 더욱이 현 정부는 의료 영리화만을 부추기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료 공공성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있음
  - 대표적인 정책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관광활성화,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원격의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의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약속

-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 감염병 예방 및 진료서비스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부 지원 확대
  - 법인의 공적 성격 강화 및 개인병원을 법인병원으로 전환 지원
  -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및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시설 인프라 지원
  - 모든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 단위로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시립요양병원 등을 묶는 공공의료 벨트 구성
  - 읍면동 단위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다양한 공공적 건강관리조직의 확충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 모든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 서비스발전기본법, 원격의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영리병원 허용 등 중단
  - 국민의 기본적 건강관리는 건강보험제도 하에 동네의원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 신종감염병, 중대 재해 및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인력 및 예산 확대하여 실질적인 헤드쿼터 기능수행
  - 보건소 내에 질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감염관리 인력 확충
  - 안전보건공단을 직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하고 인력 및 예산을 확대
  - 원청, 발주처가 재해 및 재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질수 있도록 기업살인법 적용
-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보건의료개혁 추진
  - 국회와 시민사회 참여가 보장된 대통령 직속 건강불평등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위원회 구성
  - 시도 및 시군구별 건강위원회 설치
  -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태계 구축
  - 환자 및 시민사회 주도의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❸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진단

- 보건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환자 전가가 메르스를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이었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도 채 되지 않음. 이로 인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보건의료 분야의 고용 인력은 전체 취업자 중 3.7%(1600만명 중 60만명)인데 반해, 독일 11.7%, 미국 7.7%, 일본 8.9% 수준에 불과함(보건의료노조). 또한 비슷한 규모의 병원 인력을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병원의 보건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함

〈미국과 국내병원의 보건의료인력 비교〉

미국(909병상)	한국(820병상)
비영리 민간병원	사립대병원
의사 649명	의사 342명
간호사 2,956명	간호사 646명
총직원 9,806명	총 직원 1,438명

* 자료: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 우리의 의료체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1시간대기 3분진료와 같은 현상은 의료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며,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의료진도 환자도 불만족하는 의료체계를 지속시키고 있음
-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의료인력의 부족은 병원 내 감염을 유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약속

- OECD 평균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종합병원, 중소병원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지원
  -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의료인력 공급 지원
  - 의사, 간호사 등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불균형 해소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불평등 해소

❶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확대, 어린이 입원비 100% 보장

진단

● 우리의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완전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음. 헌법 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명시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10조(건강권)는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상태임

-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낮은 보장률로 인해 환자의 병원비 직접 부담이 크고, 공공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커 소득수준간 의료양극화 및 건강불평등이 일상화되어 있음

● 대한민국은 GDP 대비 낮은 국민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가계 보건의료비 부담은 매우 큰 상태임. 이는 국민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적 비중이 낮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임

-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비는 GDP의 7.6%(97.1조원, 2012년)로 OECD 평균인 9.3%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임. 그러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은 2012년 54.5%로 OECD평균인 72%에 크게 못미쳐 국민의 실질 부담이 매우 큼
- 이의 주요 원인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직접 병원비 부담이 매우 큼.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오히려 후퇴(2007년 65%→2013년 62%)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계의 직접 보건의료비 지출은 연간 157만원(2008)→205만원(201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의료보험 지출(2012년 가구당 월 평균 28

만원 수준)이 급격히 늘고 있어 실제 피부로 느끼는 병원비, 의료비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가 무려 16.6조원(2015.8)에 이르러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매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
  - 현재 수준의 흑자 재원은 보장성 확대에 사용할 경우 연간 100만원상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하더라도 1년 반 이상 완전한 의료보장이 가능한 재원임

약속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우선 건강보험 흑자재원을 활용해 건강보험 보장률 62%→80% 이상으로 확대
  -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입원진료비 100% 보장
  -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입원진료비 90% 이상 보장
  -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적정 국민의료비 수준내에서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비의 사적 부담을 줄이고, 공적 부담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추진
  - 국회 내 보건의료 대개혁을 위한 특위 설치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추진

❷ 계층간, 지역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불평등 해소

진단

- 현행 건강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 지역간 격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료이용의 격차, 사망률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수준이 낮아 절대적으로 의료이용을 더 많이 해야 하나 실제로는 건강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 높음.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병원비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장벽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임

〈 전체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5분위별 급여현황(원) 〉

전체	1분위 (하위 20%)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상위 20%)	상위/하위 비율(%)
61,934	61,378	55,924	60,433	63,076	68,857	1.12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출생시 기대여명(2010년)은 남성 76.2세, 여성 83.1세인데 반해 전남의 경우 남성은 71.2세 여성 81.7세로 남성은 평균 5년, 여성은 1.4년의 격차가 발생되고 있음.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을 보면 30~44세 남성의 경우 중졸 이하는 십만명당 사망률이 709명, 고졸은 187명, 대졸은 84명으로 무려 8.4배에 이르는 사망 위험 격차가 발생되고 있음
- 의료이용의 불평등,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범 정부적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건강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건강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약속

- 계층간, 지역간 사망률 격차 등 건강불평등 해소
  - 사망률 격차 해소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
  -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인프라 집중 확충
  - 지방교부세 교부시 건강취약지역에 건강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강불평등지수 반영
-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건광관리체계구축
  - 출산 전부터 생후 12개월까지 모든 산모와 아이에게 보편적인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모든 초중고에 건강증진학교 확대 운영
  - 초중고 및 교육시설 근거 유해시설 설치 제한 및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공간에 술, 담배 광고 제한
  - 의사 및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청구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유해물질 및 유해환경 감소를 위한 규제 강화

- 허약 노인 대상의 보편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 건강담당의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 등이 연계되는 건강관리정보네트워크 구축

3 공정한 보험료 체계

❶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진단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음.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을 가진 일부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보다 더 적게 부담하고 있어 불공평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정의당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비경상소득,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이전소득을 제외하고 실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20%는 4.09%, 상위 20%는 2.89%만을 부담하고 있어 소득비례 부담이라는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있음

〈소득 5분위별 가계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비율, 2014년〉

소득 5분위별	건강보험료(A)	소득(B)	A/B(%)	건보료부과 대상 소득*(D)	A/D(%)
1	38,442	1,460,535	2.63	939,339	4.09
2	77,384	2,866,229	2.7	2,423,955	3.19
3	100,220	3,917,422	2.56	3,413,500	2.94
4	133,992	5,136,732	2.61	4,600,896	2.91
5	211,870	8,129,491	2.61	7,388,660	2.87
평균	112,389	4,302,352	2.61	3753,531	2.99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란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부과되거나 되어야할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지칭함

- 소득이 전혀 없었던 송파세모녀의 건강보험료가 50,130원인데서 드러나듯이 현행 건강보험료부과체계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소득이 전혀 없는 서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 고소득층일수록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줄어드는 불공평한 구조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음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 외에도 성연령, 재산,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각각 부과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재산(전월세 포함)에 과중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임(예, 1억 재산의 건강보험료: 7.7만원, 3억 재산의 건강보험료: 12만원 부과)
- 반면, 근로외 소득인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하고 있는 예가 적지 않음(직장가입자의 14.9%, 피부양자의 11.5%가 종합과세소득을 보유). 이들 소득은 대체로 우리 사회의 상위소득계층에 해당됨
- 그러다보니 실직하거나 은퇴 시에 소득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급격히 인상되는 일이 비일비재함

●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3년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약속을 번복하고 백지화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2015년 1월 문형표 장관 백지화선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당정협의로 연내 추진 약속, 지난 연말 다시 백지화함)

약속

●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폐지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전체 지역가입자의 72.8%인 552만 1천 세대가 총 3조 919억원의 건강보험료 절감
- 건강보험료 경감 세대당 평균 월 46,668원 절감

● 근로외 소득인 금융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과표소득 기준으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 평범한 직장가입자(83.3%)는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음(완전한 소득중심으로 개편시 추가보험료 수입이 더 크므로 오히려 건강보험료율 인하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근로외 종합소득을 가진 상위 소득계층 16.7%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68,460원이 인상되는 효과(이는 인상이 아니라 그간의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는 것임)

● 정의당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발의함

❷ 실손의료보험 규제로 민간의료보험 부담 해소

진단

●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만으로 병원비 해결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암보험,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가계의 민간의료보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료패널(2012)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4.3%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1인당 평균 월 83,854원을 지출하고 있음. 이를 전체 인구에 적용하면 무려 50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국민건강보험 재정(42조원, 2012년)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같은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5.78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가구당 평균 보험료 지출도 34만원(2012)으로 2008년 대비 급증하고 있어 가계의 사보험 지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임, 특히 민간의료보험 지출은 가계 소득 증가를 크게 상회해 증가하고 있음

		2008년	2012년
가입가구(%)		71.6	80.4
전체가구대비	평균가입개수	2.98	4.64
	월평균 보험료(원)	179,850	276,046
가입가구대비	평균가입개수	4.16	5.78
	월평균 보험료(원)	251,975	343,488

* 2014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특히 2007년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단 7년만에 국민의 70%인 3천 500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여 가계의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증가를 유발하는 주요 상품임

● 최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하는 실손의료보험료는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폭탄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의 지속적인 정체 혹은 하락, 도덕적 해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규제 폐지 때문임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체관계에 놓여 있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지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부분이 늘어나 실손의료보험료의 증가를 초래함.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증가하면 실손의료보험료는 줄어들게 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참여정부 때 고점(65%, 2007년)을 찍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62%, 2013년)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료 폭증을 부채질하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진료비 급증을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환자측의 도덕적 해이 및 건강보험 수가의 저수가를 비급여로 보상받으려는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음
- 또한 박근혜 정부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폐지해 버렸음. 지난해 정부는 보험료 인상 상한 규제 폐지, 표준약관 폐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보험사에 커다란 선물을 안겨준 바 있으며, 대신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대폭 축소되어 있음. 이에 보험사는 올해 역시 실손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바 있음

● 대부분의 민간의료보험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 혹은 고령자,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기왕력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음

- 정의당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가 가입대상인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실제 보험가입이 가능한 고령자는 30%에 불과하였음(고혈압, 당뇨병, 암병력, 기왕력 등이 있을 경우 모두 가입 거부됨)
-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시 기왕력에 의한 가입거부, 혹은 보험료 차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약속

- 민간의료보험법으로 보험규제 강화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으로 보험사 일방에 의한 선별가입, 기왕력자 가입거부 등 금지
  - 표준약관제도 확대,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부 등 보험사 횡포 근본적 차단
  -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규정을 없애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강화

23

복지일반 공약

복지 토대를 탄탄히 하겠습니다
책임증세로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복지를 OECD 꼴찌국가에서 OECD 평균국가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을
모든 국민의 보험으로 만들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말은 사라지고
조세정의가 바로 서, 고소득자, 대기업, 자산가는 자신의 능력과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1. 촘촘한 복지인력, 그물망 복지행정으로 복지강국 실현
2. 전국민 복지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3. 복지자치와 복지재정 확대

복지, OECD 꼴찌에서 평균으로

1. 촘촘한 복지인력, 그물망 복지행정으로 복지강국 실현

❶ 복지-고용-주거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실시
❷ 복지담당 공무원 확대로 찾아가는 국민복지 실현
❸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로 생애주기별 복지강국 진입
❹ 복지국가 대전환 위원회 설치, OECD 평균복지국가 실현 로드맵 마련

2. 전국민 복지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❶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❷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❸ 산재보험 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구축
❹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신설로 소상공인·지역가입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3. 복지자치와 복지재정 확대

❶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중단 및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
❷ 영유아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전국민적 사업의 국가책임제
❸ 사회복지세 도입 등 50조원의 복지 증세로 책임복지 실현

1 촘촘한 복지인력, 그물망 복지행정으로 복지강국 실현!

❶ 복지-고용-주거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실시

진단

-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복지 영역인 보건, 복지, 고용, 주거 영역은 중앙부터 지역까지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음. 보건복지는 보건복지부, 고용은 고용노동부, 주거는 국토교통부로 삼원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전달체계도 제각각임
- 복지공급체계의 이원화, 삼원화는 복지서비스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도 발생하게 해 국민들의 복지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게 함. 따라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복지-고용-주거를 국민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부 시스템 필요
- 특히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1차 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에 의한 2차 재분배만을 강조한다고 해서는 사회 양극화 해소는 요원함. 지난 시기 복지의 양적 확대는 이뤄졌으나,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 확대로 인해 1차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양극화 현상은 가속화되어 옴. 따라서 분배-재분배 역할을 하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약속

- 중앙부처 개편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건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주택청 신설
- 현금급여 전달체계 개편
  - 소득보장기구 신설

- 소득보장 관련 급여는 모두 '소득보장기구(사회보험의 현금급여 포함)'로 일원화

● 현물급여 전달체계 개편

- 사회서비스관리기구 신설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및 지역 복지자치 확대
- 사회보험 현물급여(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와 보육,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관리기구로 일원화해 제공
-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과 통합해 예방-치료-재활서비스 종합적으로 제공

● 지역 전달체계 개편 및 복지자치 강화

- 광역과 기초에 의료서비스과와 사회서비스과(의료 제외) 설치. 광역은 기초 총괄 관리
-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센터 설치. 사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총괄하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서비스가 공급되고 될 수 있도록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지역특성에 따른 인력양성계획과 서비스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❷ 복지담당 공무원 확대로 찾아가는 국민복지 실현

진단

● 2013년 현재 17개 중앙부처에서 총 292개 복지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자체에서도 약 4만개의 사업을 시행 중. 중앙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지자체를 통해 170개 사업(58%)이 전달되는 상황

〈중앙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구 분	계	복지부	보훈처	여가부	고용부	교과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지경부	기타
사업 수	292	126	38	22	21	19	15	12	5	9	25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안. 2014.8

● 보건사회연구원(2013)에 따르면,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5,249명에 달하고 담당복지대상자수도 1,545명에 달하는 상황임. 반면, 영국은 1인당 담당 인구수 284명, 호주는 806명임(2005년 기준)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인구수 및 기초보장수급자 수 〉

(단위: 명)

지자체 유형	전체	1개 동 평균				1개 읍 평균				1개 면 평균			
		서울시	광역시	도의 시	소계	광역시	도의 시	도의 군	소계	광역시	도의 시	도의 군	소계
1인당 인구 수	**5,249**	5,989	7,319	7,610	**7,182**	9,297	5,905	3,873	**5,106**	3,550	2,338	1,610	**1,950**
1인당 복지대상자	**1,545**	1,262	2,174	1,926	**1,872**	3,001	1,952	1,417	**1,750**	1,166	1,022	892	**950**
1인당 기초수급자	**129**	94	208	147	**156**	343	142	142	**152**	91	83	74	**78**

자료: 감사원의 지자체 현황 파악 원자료(2013. 5)를 통해 산출함.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2013

- 증가하는 복지업무는 대부분 지자체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음. 상황이 이러다 보니 깔때기 현상이라고 하여 모든 복지 관련 업무들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몰리는 상황임

약속

-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제공을 위해 복지공무원을 국민 5천명당 1명에서 국민 1천명당 1명으로 단계적 확대
- 신규선발 충원, 행정직 사회복지업무 유도 위해 승진 시 우대, 가점 부여 등 인사 조직제도 개선, 사회복지직 상위직급 확대
- 지자체 기준인건비제 개선

❸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로 생애주기별 복지강국 진입

진단

-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 여성 경제활동 증가, 가족 역할 및 구조 변화,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회서비스산업은 고용없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음
- 2013년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05년 이후 증가한 취업자의 약 42%(81만명)가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었으나 여전히 전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5.4%(2011년)로 OECD 평

균(10.2%)의 절반에 불과

● 반면,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 종사자 처우의 열악함, 시설 운영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회서비스 단가 및 인건비〉

구 분	활동지원	노인돌보미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도우미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사업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일상+사회) 생활 지원	노인의 일상(가사·활동, 주간보호)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간병+가사 지원)도모	출산가정 산후관리 지원	일상(신체+가사 활동)생활 지원
시간당 단가	8,810원	9,800원	9,500원	최대 800,000원 (12일)	43,500원 (4시간)
인건비(시급)	6,610원	7,425원	7,125원	6,818원	7,440원

*자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15.

● 또한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은 수익이 좋은 대도시로의 밀집을 불러오는 반면, 수익이 낮은 농어촌 지역은 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불러 옴. 임정기(2010)에 따르면, 수익성 및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평균시설수 6.9개로 대도시 12.3개소의 절반 수준임

● 사회서비스 영역은 일반 재화를 파는 분야가 아니라 대인서비스가 기본이므로 종사자 처우 수준이 사회서비스 질 수준으로 직결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지역간 불균등한 제공은 대국민 사회서비스의 질 하락 및 낮은 접근성 문제로 귀결되고 있음

약속

●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전환 및 창출
-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제공시 사회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인센티브 마련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및 인력 공급 · 관리 계획 마련

❹ 복지국가 대전환 위원회 설치, OECD 평균복지국가 실현 로드맵 마련

진단

- 사회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사회부총리 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나, 참여정부 시절에 발표되었던 '비전 2030(국가 차원의 최초의 종합 사회정책)'과 같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사회정책은 부재한 상황
-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복지국가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대한 중장기 종합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함
- 이제는 국가의 역할과 목적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어야 하며, 복지를 시민권으로 인정해야 함. 이에 따라 관료통제, 중앙집중, 가족책임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국민욕구, 지역밀착, 공공책임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함. 또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증세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함

약속

- 복지국가 대전환 위원회 설치
  - 중앙정부 산하에 '복지국가 대전환 위원회' 설치
  - 복지국가 이행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2025년 OECD 평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

2 전국민 복지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❶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진단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이 이뤄지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됨

구분	현 행	개편 후
부양능력 판단기준(소득)	• 저소득노인 · 장애인 ·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까지 인정 • 일반가구 130%까지만 인정	• '모든 가구'에 대하여 '중위소득+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 인정 ※ 부양의무자(4인가구) : 298만원(취약 423만원) → 485만원 변경
부양비 부과 기준선(부양능력 미약 구간)	•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130%	• 중위소득

* 출처: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2010년에만 117만명이 절대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하더라도 2016년 지원대상인 135만명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2010년의 155만명보다 더 축소된 상황임

〈저소득층 규모〉

구 분	인구수	비중(%)	가구수	비중(%)
기초수급자	155만명	(3.2)	88만가구	(5.0)
차상위계층	185만명	(3.8)	102만가구	(5.8)
- 비수급빈곤층	117만명	(2.4)	66만가구	(3.8)
- 소득인정액 120% 이하	68만명	(1.4)	36만가구	(2.1)
경상소득 120%~150% 이하	294만명	(6.1)	121만가구	(6.9)
합 계	634만명	(13.1)	311만가구	(17.7)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 빈곤실태조사」. 2011. 12/ *비중은 전체인구·가구 대비 비중임

● 빈곤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필요

약속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❷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진단

● 현재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거나 전무한 상황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

●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비중이 매우 낮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이마저도 감소한 상황임. 특히 시간제의 사회보험 가입 비중은 국민연금 13.3%, 건강보험 17.5%, 고용보험 18.8%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2014. 8			2015. 8					
	국민연금1)2)	건강보험1)	고용보험	국민연금1)2)	증감	건강보험1)	증감	고용보험	증감
〈 임금근로자 〉	67.9	71.4	68.8	67.4	-0.5	71.5	0.1	68.6	-0.2
o 정 규 직	82.1	84.1	82.0	82.0	-0.1	84.8	0.7	82.4	0.4
o 비정규직	38.4	44.7	43.8	36.9	-1.5	43.8	-0.9	42.5	-1.3
- 한 시 적	56.0	65.3	62.8	54.4	-1.6	64.1	-1.2	60.4	-2.4
·기 간 제	58.5	69.3	66.0	58.2	-0.3	69.4	0.1	64.6	-1.4
·비기간제	47.1	51.1	51.3	40.4	-6.7	44.6	-6.5	45.4	-5.9
- 시 간 제3)	14.6	17.8	19.6	13.3	-1.3	17.5	-0.3	18.8	-0.8
- 비 전 형	21.8	31.2	29.2	21.0	-0.8	31.1	-0.1	29.0	-0.2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제외자인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자가 포함되어 실제 가입 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 보다 낮음

※ 자료 : 통계청.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약속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가입자로 전면 전환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 지급
  - 실업급여 기간 확대 : 최대 1년
-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등
  - 최저임금액의 80%, 최대 1년 지원

    ※ 청년실업자의 경우는 '청년디딤돌급여'로 별도 지원

❸ 산재보험 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구축

진단

- 새누리당이 발의하여 환노위를 통과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6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명시한 산재보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산재보험 확대적용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음. 보험설계사의 경우 이미 민간보험에 단체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민간보험사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임
- 5개 직종(건설기계, 화물, 버스, 퀵 서비스, 문화예술인) 대상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은 보험료 전액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임의가입제도임. 시행한지 10여년 가까이 되고 있으나, 0.0003%만 가입하여 실효성이 없음
- 특수고용직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거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스스로 공단을 상대로 입직신고를 해야 함. 대다수 배달대행 업체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사업주 형식을 띤 수수료 지급형태의 계약을 요구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음. 2015년 7월 기준으로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42%에 불과한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음

- 1998년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임의 가입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건설현장은 2011년부터 임의 가입 적용대상이 되었음. 현행 산재보험법은 해외현장 노동자 출장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며, 파견은 임의 가입대상임. 출장과 파견 구분기준에서 통상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처리,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견처리하고 있음. 중동,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 근무 시 해당 국가 치료시설 미비로 귀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밖에도 소규모 건설공사는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배제되고 있음
- 소규모 음식점 등과 같이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동일한 재해 위험을 안고 있는 1인 사업장 또는 농민 등 자영업자들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산재보험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사업장이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예방 효과라는 이유로 차등보험요율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재해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도 효과가 불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산재 은폐의 기전으로 작동함.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 증가는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으로 반영되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을 더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사회적 연대를 원리로 하는 사회보험의 연대적 원리 및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에 위배됨. 산재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동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만들었는데, 위험에 따라 기여를 다르게 한다면 사회적 연대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강제 가입의 원칙과도 맞지 않게 됨.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평등이라는 인권적 가치에도 위배됨
-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실제 위험을 생산한 자는 보험요율이 낮고 힘이 없어서 위험을 떠안은 자는 보험요율이 높은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부정의한 제도임. 실제 상당수의 위험은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하청이나 용역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발생한 산재 결과에 의해 보험요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을 두 번 죽이는 것임

약속

-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 특수고용 · 해외파견 노동자 및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농민,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단계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중소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입
- 개인실적요율제 폐지 등 영세사업장에 불리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❹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신설로 소상공인 · 지역가입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진단

- 국내 보험료 지원 사례(공적연금 강화특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 보고, 2015.11)
  -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기준소득금액('15년 기준 91만원) 이하인 자는 본인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4만 950원을 정액 지원
  -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 노인 · 장애인 · 농어촌지역거주자 · 국가유공자 · 재해재난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하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의 경우, 1)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험료 전액, 2) 「병역법」 상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험료 전액, 3)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험료의 28%를 각각 지원하고 있음

● 지역가입자 지원 필요성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경우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임. 특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 및 납부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함

[참고: 해외사례]

-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저소득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감면 또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역시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일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유사한 제1호 가입자(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농어민, 학생 등으로 사업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의 가구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면제 기간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에는 포함되나 연금수급액은 보험료 전액납부시와 대비하여 일부만 지급됨.
- (대만) 직역연금·노동보험 등 기존의 공적연금에서 제외된 근로자, 자영업자, 무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감면할 뿐만 아니라 감면된 보험료의 일부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2015. 11.

약속

●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신설

- 월소득 14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및 지역가입자에게 '두루누리사회보험'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50% 지원

[현행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직장가입자만 지원)]

●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40%~60%까지 지원 (신규가입 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 2015년 9월 2일, 김제남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복지자치와 복지재정 확대

❶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중단 및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

진단

● 2015년 8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1,496개의 복지사업이 유사 · 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힘

● 이로 인해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정비방안이라는 이름 하에 축소되고 있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사업 통폐합의 피해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생존권은 국가에 의해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려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도 불수용 통보를 하는 등 이 제도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여건과 특색에 맞춰 자체 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음

●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와 정부의 지방분권화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음

약속

- 사회보장기본법 26조 개정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업 장려, 지역 복지 예산 확충(사회복지세 연 20조 도입)

❷ 영유아보육 · 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 등 전국민적 사업의 국가책임제

진단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되고 있음
- 2008~2015년 사회복지사업의 대응지방비 규모는 시 · 도비와 시 · 군 · 구비를 합해 2008년 10조1300억원에서 2015년 20조249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 같은 기간 동안 지방교부세는 2008년 31조9159억원(최종분 기준)에서 2015년 34조8880억원(당초분 기준)으로 9.3% 증가에 그침
-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비중은 2008년 자체사업이 57.4%, 보조사업이 42.6%였으나 2013년부터 보조사업 비중(52.0%)이 자체사업(48.0%)을 앞질러 2015년 보조사업이 58.1%, 자체사업이 41.9%로 역전되었음
-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이 가장 큰 5대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가정양육수당이며 2014년 기준 이들 사업의 지방비 부담 규모는 6조4463억원에 달함

〈5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2014년)〉

(단위: 억원, %)

	계	국비	지방비	지방부담율
기초연금급여	69,491	51,771	17,720	25.5
영유아보육료	84,729	33,292	17,227	60.7
의료급여	58,452	44,312	14,140	24.2
기초생활보장급여	42,505	33,847	8,658	20.4
가정양육수당	18,871	12,153	6,718	35.6
합계	274,048	175,375	64,463	23.5

자료-=보건복지 데이터 포털_'사회보장통계'

● 이들 복지사업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전국민 소득보장 성격의 현금급여이거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보편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지역간 격차가 발생할 필요가 없는 중앙정부 중심 사업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됨

❸ 사회복지세 도입 등 50조원의 복지 증세로 책임복지 실현

약속

●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충당

●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 결과에 따라 역할 및 재정부담 원칙 재정립

진단

● 모든 정치세력들이 복지 확대를 주장하나,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특히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잇따라 파기해 왔음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민부담률이 매우 낮음.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GDP 24.3%에 불과해 OECD 평균 34.1%에 비해 무려 9.8%나 부족, 2015년 GDP 약 1,546조원을 적용하면 OECD 기준 약 151조원이 부족분인데, 이는 2015년 중앙정부 복지지출(보건 · 복지 · 고용) 120조원 보다 더 많은 재원임. 전형적인 작은정부-작은복지 구조임

● OECD 평균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조세체계에 맞게 복지재원을 확대해야 함. 큰정부=복지정부론에 입각해 복지증세 필요

약속

● 50조 복지증세 (정의당 조세개혁안 세수 증감액 추계)

	세목	주요 내용	세수 증감
증액 세목	사회복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 · 증여세, 종부세액에 10~20% 부과	20조원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 25%	8조원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3조원
	소득세	5-15-25-35-45% 세율 개편	3.4조원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등	2조원
		월세소득 종합과세 등	3조원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4조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4.5조)	8.5조원
	상속 · 증여세	공제 5억 제한 등 실효세율 강화	1.6조원
		증여세재계산제, 세대생략 할증	추계 미정
		증액 세수 합계	+49.5조원
감액 세목	조세특례 제한법	생애최초 소득자 백만원 세액공제	추계 미정
		월세 세입자 주거비 세액공제 등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확대	
	개별소비세법	중소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0.5조원
		감액 세수 합계	-0.5조원
전체 증액 세수			49조원

※ 자세한 내용은 「조세재정 분야 공약」 참조

24

안전 공약

안전사회 첫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4.16 세월호 참사는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재난대응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일터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형참사와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이 달빛 아래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마을,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불안 없는 건강한 밥상을
보장하겠습니다.

1. 안전사회 첫 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2. 안전 최우선 정부 실현
3.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4.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 먹거리 걱정 없는 안전한 밥상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1. 안전사회 첫 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❶ 세월호 특별법 전면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보장
❷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선체 정밀조사 보장
❸ 세월호 교훈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2. 안전 최우선 정부 실현

❶ 국민안전처, '부'로 격상 - 국가재난안전협업체계 구축
❷ 공공기관 '안전 중심 경영' 구축
❸ 공직 전문성 강화, '재난안전 및 보건 직렬' 신설 및 공채
❹ 소방재정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3.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❶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정규직화
❷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❸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❹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❺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4.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❶ 다차원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마을 실현
❷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기준 강화
❸ 화학물질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5. 먹거리 걱정 없는 안전한 밥상

❶ GMO 완전 표시제 도입
❷ 방사능 오염 먹거리 규제 강화
❸ 식품첨가물 완전 표시제 강화

1 안전사회 첫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❶ 세월호 특별법 전면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보장

진단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의 비협조, 법률상의 미비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특별조사위의 구성, 조사활동 개시 시점, 종료 시점 등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불필요한 해석논란이 빚어져 정부-특조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의 정상적인 편성이 필수적이지만 특조위 예산은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를 통해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
- 한편 특조위가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새누리당이 국회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특검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음

약속

- 국회의 세월호 특검안 조속한 의결(19대 임기내)
-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과 조사예산 보장 등 세월호특별법 개정
  - 특조위 활동 보장, 업무권한 확대 및 구체화, 활동개시 및 종료시점 명확화,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강화 및 예산에 대한 협의권 강화, 4.16재단 설립 지원, 조사방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보장 등

❷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선체 정밀조사 보장

진단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미수습자 9명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도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필요함
- 세월호 인양작업을 맡은 중국 상하이샐비지가 지난해 8월부터 수중작업을 진행중이며 정부는 세월호를 7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 상하이샐비지가 유실방지 사각펜스를 설치했지만 세월호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물 속에 잠겨있어 선체의 부식, 파손 및 실종자 유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한편 특별조사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체정밀조사가 필수적이나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고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48억원)은 전액 삭감한 바 있음

약속

- 특별조사위원회의 감독 하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 특별조사위의 선체 정밀조사 보장
- 유가족과 협의해 인양 선체의 영구 보존 방안 마련

❸ 세월호 교훈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진단

- 세월호 참사는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임. 6800톤급 여객선이 무참히 침몰되는 동안 스스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외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구조체계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줬음
- 세월호 참사뿐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 1위, 자살률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안고 있음.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임을 입증하는

지표들임

- 국민소득 3만달러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미명 하에 성장과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미뤄온 결과에 다름 아님
- 이제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뒷전으로 해 왔던 우리 사회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 돈이 아니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 역시 생명 우선의 정부를 만들고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함. 그것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임

약속

- 주거, 교통, 교육, 노동, 레저와 문화향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 국회 안전사회전환특별위원회 설치, 세월호특별조사위 후속조치 실행

2 안전 최우선 정부 실현

❶ 국민안전처, '부'로 격상 - 국가재난안전협업체계 구축

진단

-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극적으로 보여준 결정적 사건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문제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설립됐지만,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본 조직에 대한 실효성과 안전문제 대응체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제기됨.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안전문제는 무

엇보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함. 이것이 가능해야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 중심의 민첩한 대응과 중앙-지방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국민안전처 업무의 본질은 국민안전문제를 총괄하는 생산조직으로서 '계선조직'의 성격을 가짐. 하지만, 실제 도입은 국무총리 직속의 처급 조직으로 참모조직의 위치로 도입됨으로써 실제 업무 성격과 조직의 법적 성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야기됨. 이러한 모순을 보완하고자 국민안전처장에게 장관급의 위상을 부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 조직이 다른 '부'처를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메르스 사태 때도 드러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문제를 총괄하기 위해 '부'급 조직으로 격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각 부서 간, 중앙-지방 간, 정부-민간 사이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함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신설되는 국민안전부 관할 '지역사무소' 설립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광역소방본부 체계를 활용하여 광역소방본부를 국민안전부 권역별 지역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약속

-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국가재난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제2의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 국민안전부 관할로 중앙-지역 간 상시 대응하는 '국민안전지역사무소'를 설립하고 광역소방본부 체계와 연계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시도안전관리위원회를 상설화시키고 이를 통해 각 부처, 정부간, 민간단체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협의회 형식의 상설 경계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함

❷ 공공기관 '안전 중심 경영' 구축

진단

- 안전문제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핵심 주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공공기관은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안전문제에 관한 검사와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민간업체 증가와 더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문제도 커져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내에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법적으로 체계화돼있지 않으며 인력 역시 전문성이나 규모면에서 모두 다양한 상황
- 현재 국가기반 시설 관리기관인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조직은 안전본부, 안전품질실, 비상안전계획실 등 명칭이 기관별로 다르고, 소속 역시 사장직속, 본부장급으로 다양함. 또한 안전전담 부서가 없이 각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안전 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조직돼 있지 않은 곳도 있음. 공공기관 안전 관련 인원 역시 10명 이하부터 80명까지 다양하고, 조직 운영이나 전문성도 기관별로 다양함
- 더욱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관련 점수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음. 실제로 201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지표 체계는 리더십 책임경영 범주, 경영효율범주, 주요사업범주로 구성돼 있는데 안전관련 점수는 '주요사업' 범주 정도에 해당하며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약속

- 안전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내 안전관리 조직과 인사체계 법제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경영평가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안전문제 검사·검증이 책임 있게 수행되도록 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 '실' 단위의 안전관리 담당기구 설치를 법제화
  - 공공기관 내 각 부서에 안전 담당 직원을 의무 배치하여 안전관리 부서와 상호 연계기능을 수행토록 함

- 내부임원, 안전점검 전문가, 위탁용역업체, 관련 NGO가 함께 심의 의결하는 '안전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경영평가 지표 도입

❸ 공직 전문성 강화, '재난안전 및 보건 직렬' 신설 및 공채

진단

-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관료 전문성 부재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직체계의 특성과 관련 있음. 우리나라 관료체계는 기본적으로 일반행정가 중심의 계급제를 바탕으로 함. 즉 직무에 따른 전문성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닌, 9급, 7급, 5급 공채를 통해 일반 능력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관료의 능력은 채용 후 여러 부처를 순환하는 순환보직을 통해 일반 능력 중심으로 향상되는 체계. 이런 원리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장에 산자부 출신이 임용되거나 해경 청장에 행정고시 출신이 임명될 수 있는 것
- 이러한 계급제적 폐쇄성 및 전문성 저하를 극복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직위분류제가 있음.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 법적으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실시가 용이한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즉 우리 제도는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계급제로서 핵심근간은 여전히 계급제에 바탕을 둠
- 실제로 현행 공무원 임용은 크게 일반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뉨. 그 중 행정직은 순환보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관료 전문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세월호 사건의 일부 원인이기도 함. 한편 기술직 공무원들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인허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등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어렵고 경험이 부족함
- 특히 재난 관리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이 일반 행정직(시설직 포함)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 및 재난관리 전문성과 거리가 있으며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책임의식도 떨어짐

- 현재 우리나라가 직위분류제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는 크게 고위공무원단 제도, 전입, 전출 시의 시험제도, 개방형직위제의 채용, 공모직위제의 도입 등임. 즉 민간전문가는 동 제도를 통해 공직에 진입하고 있는데 현재 인사혁신처는 민간 전문가 채용을 5급 이하 하위직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제도는 대부분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더욱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직위분류를 통한 전문직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채용방식이 민간 전문가 중 계약을 통한 임기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공직을 수행할 동기가 약하다는 것
- 따라서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 및 보건 분야 직렬을 도입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천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위분류제적 개혁이 필요함
- 이에 기존의 행정직, 기술직에 더해 안전직렬을 하위직뿐만 아니라 5급, 7급, 9급에 신설하여 공채를 통해 이들을 계약직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 정식 채용하고 순환보직 제한 및 맞춤형 성과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

약속

- 직위분류제적 개혁을 재난·안전과 보건 직렬에 우선 적용하여 안전문제에 관한 공직전문성을 제고함
  -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5급, 7급, 9급에 '재난·안전 직렬'과 '보건의료직렬' 신설하고 공개채용
  - 해당 직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제한 및 승진·보수·성과관리 체계 정비

❹ 소방재정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진단

- 화재나 재난 현지에 투입되는 소방관 현장출동인력이 기준보다 41%나 부족해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은 물론 소방관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음

- 소방장비도 부족해 소방관들이 방화도 안 되는 낡은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안전 장비를 사비를 털어 구입하는 경우도 있음
- 소방관들은 사용연한이 지난 구조사다리를 사용하는 비율도 20%에 달하고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안전장비 예산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토로
-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발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6.7%가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지난 3개월 동안 78.9%의 소방공무원이 근무일 외 출근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음
- 또한 응답자의 32.7%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33.2%가 개인안전장비(장갑, 랜턴, 안전화 등)를 자비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 소방관들은 또 현장 위험을 악화시키는 장비적 요소들로 장비의 노후화(73.1%)와 장비의 성능 부족(40.2%)을 꼽았음

약속

- 향후 5년내 소방인력 확충(기준치 충족 목표)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3교대근무율 100% 실현,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화, 지자체별 수당 차이 해소)
- 소방대응장비확충 국가 재정 지원 확대
  - 국고보조 대상(119구조장비확충 → 소방통신·전산 설비, 소방활동 장비, 소방청사 시설 개선 등)을 확대하고 기준보조율(현행 50%)을 70%로 상향 조정
  -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동산경기 부양 목적의 감면 중단 및 소방분야 투자비율 확대. 소방 및 안전분야 외 일반재원 전용시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과

3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❶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정규직화

- 유해위험 업무 정규직 전환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금지, 상시고용업무 정규직화

❷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 산재사망 ·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자 처벌 강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하한선 제도 도입, 하청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처벌, 산재사망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산재사망 사업장 영업정지 및 사업장 공표제도 도입
-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시민안전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공공안전 사고에 대한 정부 주요 책임자 처벌 강화

❸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 중규모 이상 사업장의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전 산업에 대한 안전보건 규제를 강화하고, 사업장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청 및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 안전보건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지원과 감독기능이 안전보건공단과 지방

노동청으로 분산된 것으로 직업안전보건청으로 통합하여 규제를 강화함. 직업안전보건청의 인력 및 예산을 두 배 이상 확충

- 전면 개정 또는 신설될 직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및 시민 알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자가 감시 활동 및 정책결정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

❹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 재해노동자가 최상의 치료, 재활을 통한 조기 직장 및 사회 복귀 실현
- 건강보험과 같이 병의원에 산재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권한 부여
- 산재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책임 부과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평가 기능 독립

❺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 특수고용 · 해외파견 노동자 및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농민,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단계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중소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입
- 개인실적요율제 폐지 등 영세사업장에 불리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4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❶ 다차원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마을 실현

진단

-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범죄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미비한 상태임
- 더구나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범죄예방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뿐 아니라 중앙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해야 시너지가 높아짐

약속

-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기본법 제정
  - 중앙정부의 의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업무범위 명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
- 우범지역 진단 및 물리적 환경개선,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전략 수립

❷ 원룸형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기준 강화

진단

- 지난 2015년 13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규제완화 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범죄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
-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주택유형으로 당시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함
- 이에 따라 소방시설, 외벽 마감재, 피난계단, 방화문 등의 기준이 취약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차량의 진입도로 및 인접도로 불법주차를 야기해 소방차와 구급차의 단지 내 진입을 막아 대형재난을 야기할 수 있음
- 정부가 뒤늦게 진입도로 기준, 가연성 외벽 마감재 사용금지 등 허가기준을 강화했으나 약 35만 가구에 달하는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없는 상태임

약속

-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존 건설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❸ 화학물질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진단

- 2012년 9월 구미불산누출사고로 5명 사망 18명 부상, 12,243명이 진료, 부식된 차량만 2000대 넘게 발생. 2013년에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충남 금산군 불산 누출, 2014년 여수 GS칼텍스 송유관 파손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
- 하지만 해당 기업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뿐더라 사고 이후에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음

- 구미불산누출사고 당시 주민은 물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 시청 공무원도 불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음. 금산누출사고 때는 해당 업체가 사실을 은폐해 주민이 대피할 시기를 놓치기도 함
-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장에서 어떤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이 필요
-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공장은 어떤 물질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독성이 있다면 어떤 종류인지를 공개해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에서 미리 화학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역사회 알권리를 위한 조항이 있으나 지역사회에 알려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가 70가지에 불과함
- 한편 국내에서 불산누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는 지역사회알권리법이 시행되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공개하였음

약속

- 화학물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를 구성하고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매뉴얼 마련

5 먹거리 걱정 없는 안전한 밥상

❶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진단

- 지난해 CJ제일제당·삼양·농심 등 한국의 대표적 식품업체들이 터키로 수출을 시도하다가 GMO 성분 검출로 통관을 거부 당한 바 있음
- 식품위생법은 그동안 GMO 성분 표시와 관련 함량 5순위 원재료가 아닌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해왔음
- 지난해 12월31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됐으나 가공식품의 경우 GMO의 유전물질(DNA)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성분 표시를 요구하는 예외조항은 건드리지 않았음
- GMO 대두 등을 이용해 만든 식용유가 사용된 가공식품은 여전히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유럽에서는 GMO 성분 잔류와 상관없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예외 없이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약속

- GMO 완전표시제 실시
  -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

❷ 방사능 오염 먹거리 규제 강화

진단

-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음
- 워킹맘연구소의 학부모 1천명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꺼려지는 식재료(1, 2순위 합계)는 방사선조사식품(71%), GMO(64%), 화학첨가물(38%), 감미료(17%), MSG 등 조미료(11%) 순인 것으로 나타남. 설문문항이 모호했음을 감안해도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음
-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별로 방사능 관련 급식조례가 일부 제정되긴 했으나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에 방사능 먹거리 안전 관련 조항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기준도 상이함

약속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시설 확보 근거 마련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 식재료 방사능안전검사 강화 및 실효성 확보

❸ 식품첨가물 완전 표시제 강화

진단

- 소시지, 햄, 베이컨에 많이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 합성보존료로 많이 쓰이는 안식향산나트륨, 건조과일의 갈변방지와 포도주의 산화방지 등에 사용되는 아황산염을 비롯해 발색제, 착향료, 감미료, 팽창제, 유화제, 합성보존료, 소포제, 산화방지제, 살균제 등의 용도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각종 식품첨가물은 441개에 달함
- 식품첨가물 가운데 아질산나트륨은 우울증, 뇌손상, 암을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안식향산나트륨은 피부염증, 간손상, 암 발생, 아황산염은 천식, 기관지염의 우려가 제기되어왔음

- 식품업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편승에 식품첨가물 규제를 현행보다 더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식품완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첨가물을 넣어도 사용 목적이 같다면 용도명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일괄표시가 허용되며,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 또는 포장크기가 작은 경우, 대형마트 등에서 만들어 파는 즉석식품인 경우에는 표시가 면제되는 등의 예외가 있음

약속

-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에 대해 예외 없이 표시 의무화

25

문화예술 공약

문화예술인 기본권부터 보장하겠습니다

문화를 생산하는 시민의 기본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술인들이 사회보험에 포괄되도록 해 창작의 열정이 생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에서 누구나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문화를 향유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1. 문화예술인 사회보장 및 일자리 창출
2. 문화예술 정책·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3.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4. 지역 문화격차 해소 및 생활예술 활성화

문화예술의 정의로운 전환

1. 문화예술인 사회보장 및 일자리 창출

❶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❷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❸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❹ 공공부문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2. 문화예술 정책·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❶ 정부·지자체 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❷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문화재정 확충
❸ 문화예술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❹ 문화예술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❺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3.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❶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문화예술교육 개편
❷ 동네에서 누리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❸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4. 지역 문화격차 해소 및 생활예술 활성화

❶ 문화기본선 도입으로 문화격차 해소
❷ 지역문화정책과 생활예술 활성화
❸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❹ 유휴공간 활용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❺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1 문화예술인 기본권 보장

❶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진단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0.7%에 불과했음. 도제식 전수, 팀별 계약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며,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만 강조하다보니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함
  - 계약 체결을 경험한 30.7% 중 서면계약인 경우는 25.5%, 구두계약인 경우는 5.2%
  - 분야별 계약 체결 경험은 영화(58.8%), 만화(58.2%), 연극(49.2%)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술(15%), 문학(16.6%), 사진(18.1%)은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
  - 부적절·부당한 계약체결을 경험한 경우는 12.%이며 특히, 만화 분야는 32.2%
- 한편, 다른 조사에서도 방송작가들은 68.8%가 구두계약이고, 서면계약은 6.6%으로 나타남. 고용 해지는 프로그램 개편이나 제작비 축소(46.3%), 담당피디와 불화나 메인작가 교체(13.9%), 일방적인 통보(12.1%) 등 불합리한 관행이 많음. 방송 배경음악을 공급하는 한 업체는 작곡가에게 저작권을 회사에 영구양도하는 계약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다고 함
- 지난해 말 표준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지난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는 6개 분야 32종에 그치고 있음. 문화부는 지난 2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미술 5종, 공연 2종의 표준계약서를 추가발표 하겠다고 발표함. 하지만 예술인복지법상의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가 대상으로 앞으로 모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세분화하여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2015년 현재 표준계약 개발 및 보급 현황]

분야	개발시기	표준계약서	종수
공연예술	2013.5.	ㅇ표준 창작계약서 ㅇ표준 출연계약서 ㅇ표준 기술지원계약서	3종
방 송	2013.8~ 2014.8.	ㅇ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ㅇ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ㅇ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 하도급, 업무위탁)	5종
영 화	2011.5. ~ 2015.10.	ㅇ표준 근로계약서 ㅇ표준 투자계약서 ㅇ표준 상영계약서 ㅇ표준 시나리오계약서 4종(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	7종
출 판	2014.6.	ㅇ표준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ㅇ표준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ㅇ표준 출판권 설정계약서 ㅇ표준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ㅇ표준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ㅇ표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ㅇ표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7종
저작권	2014.10.	ㅇ지적재산권 전부/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ㅇ저작권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4종
만 화	2015.4.	ㅇ출판계약서 ㅇ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ㅇ웹툰 연재계약서 ㅇ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 ㅇ공동 저작 계약서 ㅇ기획만화계약서	6종
합 계			32종

약속

-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세분화된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확대
  - 표준계약서 미사용, 불공정한 계약 체결 강요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예술인복지법에 '근로자 의제'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노동자로서 기본권 보장
  - 예술인의 노동조합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
  -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
- 방송, 출판 등 문화산업분야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
  - 방송콘텐츠산업 관련 표준보수지침 마련 및 준수 의무화, 제작비 최소쿼터제 도입으로 방상콘텐츠산업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최저임금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 중소규모 출판사, 게임개발사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

● 국회, 문화예술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체계적인 법 ·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예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 확대 등 검토

[참조] 정의당의 노동 · 일자리 공약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및 수습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 전면 적용
· 비정규직/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장기실업자 · 15시간 미만 노동자 고용안전망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
· 파견법 단계적 폐지, 원/하청기업의 공동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 회사/상사/동료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일반해고/정리해고 요건 강화
· 공기업 ·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급여(연 최대 54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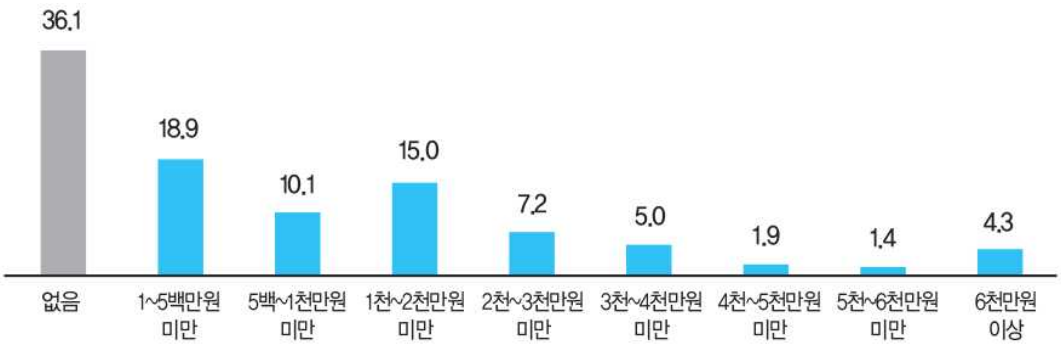
❷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진단

● 2011년 고(故) 최고은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이른바 '최고은법'이라고도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해 배우 판영진, 김운하, 우봉식 씨 등이 생활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함

● 문화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뿐이며, 그 중 36%는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단 한푼도 없었음.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도 다른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가입률이 훨씬 낮은 수준임

[지난 1년간 예술활동 수입] (단위 : %)



– 사회보험 가입률 : 건강보험(95.2%), 국민연금(56.8%), 산재보험(26%), 고용보험(25.1%)

● 예술활동 종사 형태는 전업 예술임과 겸업 예술인이 각각 50%로 나타났으며, 전업 예술인의 경우 프리랜서가 72.5%로 가장 많고, 기간제/계약직/임시직 9.8%, 고용주 6.5%, 정규직 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9년 및 2001년 발의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술인의 근로자 의제와 고용보험료 지원 등은 삭제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과 사업이 주를 이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2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이름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원 대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관련 창작준비금 지원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6470명만 혜택을 받는데 그쳤으며, 올해 예산 규모도 120억(4천명, 1인당 3백만원)에 불과함

약속

● 2016년 기준 248억원에 불과한 예술인복지 예산 대폭 증액
  - 1인당 3백만원에 불과한 창작준비금 현실화 및 대상 확대 등

● 더 많은 예술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예술인복지제도 개선
  - 자격증명제도를 자격인증 방식에서 경력관리 중심으로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 젊은 신진 예술인에 대한 '준예술인제도' 신설로 예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 계약 상대방의 사유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 현재는 표준계약서 체결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 장착지원제도 현실화
  - 필요경비 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생활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행 간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해 생활위기 예술인 간급지원

● 중장기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 제·개정
  - 독일의 '예술인사회보장법', 프랑스의 '엥떼르미땅' 제도 등을 참조

프랑스의 엥떼르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 : 출처) 문화연대

· 공연/영상예술분야 비정규직 예술가 실업보험제도로 프랑스 공연/영상 분야 예술가와 기술인력 중 2/3~3/4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자유계약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 예술가들도 대상이 됨
- 엥떼르미땅은 비정규직 예술인에게 연금 및 건강보험의 형태로 전달 엥떼르미땅의 운영재원은 노사 양자간 분담원칙에 따름
- 정부, 공연/영상예술 분야 비정규직노조, 사용자단체간 협상을 통해 수급조건, 급여액 결정

❸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진단

- 공공부문 문화예술시설 · 기관의 증가에 따라 지난 3년간(2010~2013년) 공공부문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는 약 5,861명이 증가했음. 직종별로는 공연기획, 박물관, 도서관기록보관, 공연시설, 공연시설 운영 직종이 가장 많이 증가했음
- 공공부문의 연극뮤지컬, 무용발레, 양악, 국악, 학예사, 전문직 등 6개 직종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김종진, 2015) 결과, 비정규직은 11.3%, 무기계약직은 15.9%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다수는 중앙정부에, 무기계약직 다수는 광역시도에 고용되어 있음
- 공공부문 문화예술 종사자의 직종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1년차 정규직은 총액 219.1만원(기본급 163.9만원)인데 비해, 무기계약직은 총액 155.8만원(기본급 87.7만원)에 그치고 있음. 휴일휴가 및 이직의 경우에도 휴일휴가는 정규직이 많이 사용하는 반면 이직은 비정규직이 더 높아 노동조건에 차이가 나타남

약속

- 공공 문화예술기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서 중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 대신 정규직으로 전환 필요
- 공공 문화예술 종사자의 직무, 고용, 학력, 기관별 격차가 존재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1년차 기본급의 직무별 통일 등) 체계 마련

[참조] 정의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공공기관에 간접고용 상한제, 간접고용 현황 공시제 도입
- 상시·지속 일자리는 간접고용도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걸림돌인 공공부문 정원과 표준인건비제의 합리적 조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이행실적 반영

❹ 공공부문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진단

-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 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임
- 현재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으로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연평균 5.7% 이상 인력수요가 늘고,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분야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00만명이며, 월 평균 임금은 202만원 수준으로, 저임금 비중이 39.2%에 달하는 등 일자리 질 문제가 있음. (2013년, 전국사업체 조사)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양극화 해소와 함께 공동체 복원의 효과가 있음. 정의당은 이미 GDP 대비 10%까지 풀뿌리 사회적 경제 육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공약한 바 있음

약속

- OECD 평균 수준으로 문화복지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고용 확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서비스 확대로 문화분야 일자리 질 향상
  - 지역/공공문화시설 추가 설치 및 도서관 사서 등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 지역 예술인이 직접 참여 관찰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발굴 후 공공서비스 공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

- 문화부와 노동부 협력사업으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육성교육과정을 협력체계 안에서 운영
- 학교교육, 마을교육과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2 문화예술 정책 · 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❶ 정부 · 지자체 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진단

● 2014년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5조 4항에 근거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목적은 좁은 의미에서 문화정책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전반에 걸쳐 문화적 권리를 고려하며,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지향해야 함

● 2015년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기초연구'(서울연구원),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범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음. 하지만 현재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알아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약속

● 문화부 사업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 전반을 잠재적 대상으로 설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전면 실행하도록 법률 · 제도 정비

- 일정규모 이상 사업 평가 의무화, 가이드라인 제시, 대상사업내에서 평가예산 확보
-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현행 사후영향평가에서 사전-사후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영향평가제도 관련 추진기구 설치 및 평가결과 반영 의무화 등

● 대규모 공간에 대한 문화적 활용사업에 문화영향평가제 의무화 및 생태문화공간 조성
- 도시재생 및 유휴공간 · 시설 활용 등에 있어 생태적 관점을 반영한 문화공간조성
- 지역 내 공원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상호연계하는 생태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추진

❷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문화재정 확충

진단

● 올해 중앙정부의 문화 · 체육 · 관광재정은 총 6조 6,390억원으로 국가재정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2010~2016년 동안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9.2%로 총지출 증가율 4.7%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며, 향후 5년간(2015~2019년) 증가율도 높음

● 하지만 체육과 관광분야의 양적 팽창이 재정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문화예술분야의 기본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4년 5,273억원에서 2014년 1,547억원으로 급감해 201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됨. 이에 따라, 취약계층 문화향유권 보호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많은 부분이 복권기금으로 충당되는 등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음

● 최근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은 폐지되고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도 예산이 1/5로 축소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 폐지 및 예산 축소의 이유를 문예진흥기금의 고갈로 이야기함. 또한, 공모사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던 방식에서 신청자 본인만 공모당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등 파행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

약속

● 중장기 문화산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간 재정 균등성 회복

● 문화예술진흥기금 대체재원 확보 및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확립
- 단기적으로는 문화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급한 기금 고갈 문제 해결

- 경마와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산업 수익을 재원으로 한 기금 적립금 조성
-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제도 마련

●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정부 문화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 사업별 보조금 매칭 방식에서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정지원으로 전환
-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❸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진단

● 우리 헌법 제22조는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치적 검열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 박근혜 정부 들어 예술가와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 정부와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예술가의 집이 압수수색 당하고, 연행되기도 함. 이는 예술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임

● 지난해 11월 열린 '(가칭)예술검열 반대와 문화민주주의를 지키는 문화예술인 만민공동회'에서 밝혀진 검열 사례만 하더라도 20여건이 넘는 상황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산실〉 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압력 행사와 국립국악원의 〈금요공감〉 프로그램 무단 변경 사례 등 공공기관의 반헌법적 검열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전혀 없었음

● 한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 이후 부산시는 부산영화제에 대한 감사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영화제 조직위원화를 탄압함. 지역축제나 영화제에 대한 관의 부당한 개입과 이로 인한 파행이 계속되고 있음. 예산 지원을 이유로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부당한 인사를 종용하면 관변행사로 전락해 결국 생명력을 잃을 것임

약속

● 예술활동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검열 행위에 대한 규제
- 예술지원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조사, 감사, 조정제도 도입

- 예술 활동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의무화

●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의 모욕죄 관련 처벌 조항 폐지

- 진실한 사실을 표현한 언사에 대해서도 명예감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주관적인 모욕감을 근거로 토론과 비판을 위축시키는 모욕죄(형법 제301조)

● 지역축제,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표준정관 등) 마련

❹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진단

● 문화산업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커지고 있음. 유통독점자본의 각종 불공정행위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이들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 제작·유통되도록 해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을 막고 있음. 또한, 음원차트, 베스트셀러 집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사재기를 동원한 집계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개봉한 영화 총 1,176편 중 관객수 상위 10개 영화의 관람객 수가 전체의 38%를 차지함. 아이돌그룹의 음반 발매는 전체의 5% 미만인데 반해, 이들의 방송출연은 전체 음악프로그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출판산업의 경우에도 이미 대부분의 동네서점이 폐업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음

● 창작과 향유의 권리까지 집어삼키는 문화산업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아직 근근히 창작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산업 콘텐츠들이 사라지게 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문화산업의 토대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약속

● 문화산업 관련 지표의 공정한 집계, 투명한 공개 및 다양성 확보

- 음원시장의 창작자 수익비율 확대 및 음원 다운로드 공시 등 사재기 관행 근절
- 음악방송 프로그램의 정기 모니터링 및 해당 소속사 공시, 방송 쿼터제 도입

-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집계방식 조정 또는 폐지, 사재기 법적 처벌 강화(등록 취소 등)

● 문화산업 독점 해소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령 · 제도 개선
- 한 영화가 점유할 수 있는 최대 스크린 수 제한, 영화 배급과 상영의 겸업 금지
- 방송 및 영화상영 등에 마이너리티쿼터제를 도입해 다양성 콘텐츠의 기회 확대
- 다양성 영화 전용관 확대 및 장애인극단 등 다양성 연극에 대한 지원 확대
- 게임 유통사와 개발사의 수익 분배구조와 비율 조정, 플랫폼 회사의 수익 분배비율 축소

● 지역도서관 예산 확대 및 복본 구매원칙 도입, 근대미술 기초연구지원 확대 등

❺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진단

● 문화콘텐츠산업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유행'을 만들어낸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의 심의와 검열,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담당하는 음반심의제도,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자의적인 영상물 등급분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툰 심의 등은 창작, 자율이 근간인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함

● 문화콘텐츠산업 창작자들이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제한상영가 등급, 명예훼손죄 고발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하는 것은 문화콘텐츠 생산을 저해함. 한쪽에서는 창조산업, 신성장동력, 차세대 유망 문화콘텐츠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창작의지를 꺾는 검열과 심의가 벌어지는 상황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창작의지를 떨어뜨리고 있음

약속

●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폐지 및 자율적인 시간제한 제도 등 민간자율규제 방안 마련

●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심의기구에 의한 음반 심의, 장기적으로 자율심의제도로 개선

● 민간자율 영화등급 분류제도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법령 제 · 개정

3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❶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문화예술교육 개편

진단

- 문화예술교육은 제도화 이후 지난 10년간 양적 팽창을 거듭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연간 지출액만 1,000억원이 넘는 규모에 이름. 문화예술교육은 기존 교과목 중심의 기능적으로 분화된, 지식전달 중심의 공교육을 감수성, 창의력,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합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됨
- 하지만 애초 '문화, 예술, 교육'의 연계와 통섭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가치보다 정량적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따라서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 방과후학교, 토요문화학교 등 공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문화예술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문화예술교육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은 대입 중심의 교육체계의 한계, 학교 및 지역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단체, 개인들과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 혁신학교나 몇몇 교사들에 의해 진행된 일부 실험적인 교육과정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스포츠클럽은 더욱 늘어났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도 많아짐. 교육부의 '2015년 학교체육 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지도자, 프로그램,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입시교육으로 인해 고등학생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율은 저조한 편임
- 한편, 문화예술분야를 지망하는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예체능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입시를 준비하기 어려워, 학원교습, 개인레슨 등 개인적으로

상당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함. 또한, 대학 진학 이후에도 인문사회 계열에 비해 비싼 등록금에 실습비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약속

- 공교육 혁신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통합적 교과목, 교육과정을 개발
  - 교육, 문화단체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한국의 교육현실에 적합한 프로그램 마련
- 학교스포츠클럽 및 리그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교사 및 지도자 확충
  - 학교스포츠클럽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및 체육지도자 확충 및 처우개선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초등학교 혁신학교 확대 및 일반 중·고교 진로과목 개설 등으로 예체능교육 활성화
  - 모든 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전환, 중고등학교는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진
  - 일반고간 거점학교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로 진로과목 개설, 교육과정 다양화
- 국가표준등록금으로 예체능계열 대학생의 등록금 등 학비 부담 완화
  - 대학 유형과 계열에 상관없이 전년도 가구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표준등록금 책정
  2014년 가구소득 기준으로 350만원, 2015년 사립대 예체능계열 등록금은 826만원
  - 대학의 과도한 이월금/적립금 등에 대한 통제로 교육환경 개선 및 실습비 등 규제
- 대학연합의 공동전형 확대 등 대입 전반의 개편과 함께 예체능 계열의 입시제도 개선
  - 과도한 예체능 사교육을 유발하는 현행 실기 위주 선발 방식의 대안 연구

❷ 동네에서 누리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진단

-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의 역할 구분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 그렇다보니,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사업의 예산을 관리하고 성과를 집계하는 '상위기관'의 목소리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기관들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전혀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현장에서 학교, 지역, 주민, 마을, 문화기관들을 연계하고 지

역조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 기관임. 하지만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중형 행정구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프로그램 운영주체들까지 모두 공모사업의 집행과 집계에만 매달리게 하고 있음. 지역/계층/세대별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

약속

- 문화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체계 재정립
-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원기관으로서 목표와 방향제시, 평가 · 조정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협력적 문화생태계 구축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지방정부 설립 및 중앙정부 지원으로 전환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세부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역할 담당

❸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진단

- 문화예술교육정책 확산과 함께 학교 예술강사는 2015년 현재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남. 하지만 정부의 질 보다 양을 중시하는 일자리 정책은 학교 예술강사들에게 반복적인 단기계약과 10년째 오르지 않는 강사수당을 강요하고 있음. 심지어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원은 올해부터 예술강사의 최대 수업시수를 하향조정해 추가 선발하도록 함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관련 단체협약에 나서고 있으나,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임. 지역센터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6년 지역센터와 근로계약 체결, 2017년 중앙일원화 검토'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강사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장이 필수적임

약속

- 예술강사들의 노동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강사 정규직화 추진
  - 단기적으로는 예산 및 정책의 권한을 가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책임 부과
  - 장기적으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예술강사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4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❶ 문화기본선 도입으로 문화격차 해소

진단

- 정의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 골목 삶을 책임지는 복지자치기본선, △ 아이와 부모를 위한 육아기본선, △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 등 '주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기본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폐지, 청년실업수당 도입, 영세자영업자 두루누리 2 도입 등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전국민 복지기본선 도입을 공약으로 함
-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함.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문화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에 중요한 기반시설이나 중소도시나 군에는 '문화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정의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 골목 삶을 책임지는 복지자치기본선, △ 아이와 부모를 위한 육아기본선, △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 등 '주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기본선'을 공

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폐지, 청년실업수당 도입, 영세자영업자 두루누리 2 도입 등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전국민 복지기본선 도입을 공약으로 함

● 2015년 부천문화재단은 '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보고서를 통해 문화마을 최소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문화적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소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와 움직임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의당은 복지기본선에 이어 지역간 또는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문화적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

약속

● 전국민의 문화기본선을 보장하는 최소기준 연구 및 제도화
  - 국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최소요건(공간, 비용, 프로그램 등) 조사 · 연구
  - 개인간 · 계층간 · 지역간 문화 격차를 분석할 수 있는 틀(지표) 개발 및 방안 제시

●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생활 향유권 보장
  - '배리어 프리 영화' 등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시청각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 보완대체의사소통 맞춤형지원 제도화 등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체계 강화
  - 문화기반시설 설계 및 환평경가에 보편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인 문화향유환경 개선
  -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확대로 장애인 예술교육, 창작활동 육성

● 농어촌 문화 취약지역 해소 및 복지 향상
  -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 및 교사 지원, 소규모 동아리활동 지원
  - 고령, 여성, 이주민 등 농어촌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 공동생활형 경로당을 조성하고 노인여가 프로그램, 공동작업장 등을 연계하여 활성화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복지 활성화
  - 지역 주민들의 이용빈도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문화시설 확충 및 전달체계 마련
  - 공공도서관, 작은영화관,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필수 기반시설로 지정, 확충
  - 현행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연계하여 복지기본선과 문화기본선 보장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의 사회적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자인 개념으로 1985년 건축가이자 휠체어 사용자였던 로널드 메이슨(Ronald Mason)에 의해 제시되었다.(권정인 외, 2015)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어자막을 넣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을 넣어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이 모두가 관람이 가능한 영화

❷ 지역문화정책과 생활예술 활성화

진단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해야 하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지역마다 여건과 특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하달하는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함
- 또한 지역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학교 체육관, 복지센터 등은 생활단위에서 시민의 삶에 밀접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 중임.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강좌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본 정보 공유 이외에 이들 기관들 간의 통합적 정책수립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약속

- 지역의 정체성과 생태계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 집행력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의무화
  - 문화예술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문화복지패널 운영으로 지역정책 내실화
- 생활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마련 및 지원정책 다각화
  -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생활예술 단체 및 공간 지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공공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새로운 생활예술공간 플랫폼 구축

❸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진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문화시설을 늘리고 있으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시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남. 특히, 2005년부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공공문화시설이 민간투자로 세워지면서 보편적인 접근권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료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유사·중복 설치되고 있음
-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 시 문화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정부가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각종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이후 경기장 운영부터 최근 송도 국제도시개발사업자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인천아트센터의 연간 운영비가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음

약속

-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은 시설 운영계획을 사전에 접수하고 사업예산 배정
-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시설은 최소운영기준을 마련해 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 도서관 사서 등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적정배치 의무화
  - 문화시설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필수 프로그램 운영 비율 등 제시
  - 문화시설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
- 중앙정부가 문화시설에 대한 이력관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평가
  - 당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 후 필요한 지원

❹ 지역 유휴공간 활용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진단

- 농촌인구 감소,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빈집과 빈점포, 사용되지 않는 공공토지 및 시설 등이 늘어나고 있음. 오래된 영화관, 학교, 관저 등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공간들이 방치되거나 매각 후 난개발되는 경우도 많음. 해외에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반면,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심각함. 서울의 대학로, 상수동, 삼청동, 경리단길 및 대전 대흥동, 부산 중앙동, 광주 대인시장과 대구 방천시장 등에서는 문화예술인들과 청년수공업자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음
- 문화유산정책은 국가 정체성, 역사문화교육, 문화관광 등의 관점에서 소중한 사회적 자원이자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의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등한시되어 옴. 문화유산정책들은 여전히 물리적 보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체계도 부족한 상황임

약속

- 지역내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 생활창작, 문화예술교육, 레지던시 등 다양한 공공 문화공간 · 시설로 활용
- 콘텐츠 중심의 문화유산정책 수립과 지역 차원의 문화유산
  - 문화유산 콘텐츠 연구/개발/활용 관련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 지역별로 문화유산 정책을 계획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구 설치
-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상가임대차 보장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 현행 연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 인하, 재개발 · 재건축시 퇴거보상제도 도입
  - 상가임대차영향평가 실시 및 그 결과에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대책 수립

상가임대차영향평가 후 예방대책의 내용) ① 입점 업종의 일정한 제한, ② 지역별 특성화사업 육성, ③ 마을공동체 복원, ④ 상생협력지역 선정, ⑤ 임대료 인상 억제 등

❺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진단

- 지자체들이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 부족한 인프라 구축,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아시안게임, 동·하계 올림픽, F1,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에 나서고 있음. 이미 아시안게임을 치른 부산과 인천은 올림픽 혹은 엑스포 유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함
- 하지만 F1대회 추가 유치에 실패한 전남 영암은 수천억 원을 들여 건설한 서킷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음. 인천시도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늘어난 부채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경기장 문제를 안고 있음. 평창동계올림픽은 활강슬로프가 건설되는 가리왕산 환경파괴와 경기장 사후활용방안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
- 이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국제스포츠이벤트를 지역개발의 계기로 인식하기 때문임. 단기적으로는 예산투자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함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음

약속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에 대한 통제
  - 유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 지방 재정부담에 대한 주민의사 반영 절차
  - 사전 타당성 분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대회시설의 사후활용 적절성 평가 반영
- 불필요한 특례조항을 정비하여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각종 난개발 사업 규제

26

언론 미디어 공약

독립언론 공정보도를 되찾겠습니다

우리는 언론과 미디어를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킬 것입니다.
막대한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TV채널들이 특정한 의견만을 전파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규모가 작은 지역의 언론을 활성화 해 민주주의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미디어와 컨텐츠 산업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나쁜 일자리를 개혁해,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바꿀 것입니다.

1.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2. YTN, 연합뉴스, 아리랑국제방송 정상화와 종편 규제
3. 미디어 이용자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
4.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
5. 신문 진흥과 지역신문 활성화
6. 방송콘텐츠 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
7.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
8.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 정책
9. 신문, 방송 광고의 불법 영업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
10. 출판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

노동과 시민을 위한 언론 생태계

1.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강화

2. YTN, 연합뉴스, 아리랑국제방송 정상화와 종편 규제

3. 미디어 이용자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

4.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

5. 신문 진흥과 지역신문 활성화

6. 방송콘텐츠 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

7.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

8.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 정책

9. 신문, 방송 광고의 불법 영업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

10. 출판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

❶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 · 공정성 강화

진단

- 청와대-방통위-이사회로 수직적 구조화된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 2015년 KBS 고대영 사장 선임 시 청와대의 개입여부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으나,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선임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었음
- MBC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방송독립침해 및 불법해고와 부당거래, KBS 고대영 사장 선임 청와대 홍보수석 개입 의혹, 이념편향 부적격 인사들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해결되고 있지 않음
- 방송법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있으나 여타 방송사업자들과의 차별성이 모호한 지위에 있음. 편성 부문에서는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와 동일하지만 방송광고에서는 PP와는 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 유료방송시장이 확장되면서 방송법 내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 내 지위는 더욱 모호해 졌으며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규제완화 요구시 PP와 같은 지위를, 진흥을 요구할 때는 지상파라는 특수성을 주장하는 모순을 보여 왔음. 특히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은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보다 재원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요구를 우선하게 만들어 정치권과 정부기관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킬 것

약속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과 공정보도제도 확립
  - 이사 선임에 있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권의 분할독식을 방지하고 시청자, 국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 이사회는 사장 등 임원 선임 시 특별의결정족수제를 도입해 이른바 '낙하산' 임명을 예방
  -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법상 노사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하고 인허가에 대폭 반영

●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와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 제정

- 국회 상임위가 청문화를 실시해 당사자와 관계자,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상을 규명
-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
- 공정보도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표적 해고된 언론인들과 부당전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해 '언론탄압 피해언론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 지상파 비대칭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확보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 현재 유료방송시장 내 지상파 방송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방송 프로그램(콘텐츠/편성) 및 채널 사업자로서의 공적 의무, 직접수신 이외의 추가적인 플랫폼 진입 방안(의무전송 확대, MMS 등), 방송광고 시장의 확장(미디어렙의 인터넷 광고 대행 등) 등 방송법과 관련 법령을 통해 명확히 함
- 종합편성을 수행하는 방송사업자이자 동일한 방송광고 시장 내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종편 4개 사 또한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받도록 함

❷ YTN, 연합뉴스, 아리랑국제방송의 정상화와 종편 규제 강화

진단

● 현재 종편과 더불어 PP 중 보도기능을 맡고 있는 채널은 YTN과 연합뉴스가 운영하는 뉴스Y 두 방송사. 연합뉴스의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화는 대통령이 여당에 속해 있을 경우 이사회 여야 추천 성향의 비율이 6대 1까지 확대될 수 있는 지배구조,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연합뉴스의 경영과 인사 모두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뉴스통신진흥법에서는 구독료 및 장비구입,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국고보조까지 명시하고 있어 정치권력에 의해 지배구조와 재원까지 좌우될 수 있는 형편임

● YTN은 한전KDN, 담배인삼공사, 마사회, 우리은행 등 공기업이 주요 주주로 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공기업들을 통해 정권이 언제라도 사장선임과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한계를 안고 있음. 사실상 '준공영언론사'인 연합뉴스와 YTN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뉴스통신사인 연합뉴

스의 특징인 속보성과 보도량의 우위가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서 다른 언론사들과의 경쟁 우위 요소가 되면서 뉴스 '도매/소매' 시장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 특히 지배구조와 재원의 정치 종속성이 높은 뉴스통신사가 포털 뉴스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 지형 전반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아리랑TV는 국제홍보방송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 위상과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음. 최근 방석호사장의 비리파문을 통해 경영진의 방만한 실태가 드러난 상황
- 종편에 의한 여론장악이 심각하나, 각종 특혜와 봐주기를 통해 재허가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경쟁구도인 지상파 및 기타 PP에 비하여 편법적인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

약속

- 정부 지원 뉴스통신사 및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성 확립
  - 양 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뉴스통신진흥법의 개정을 추진.
  - YTN은 공기업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사장선임과 제작자율성을 보장할 방안을 수립
- 방석호방지법(아리랑국제방송법) 제정
  - 국제홍보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리랑국제방송법'을 제정해 법률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 규제 틀을 마련
  - 방석호 전 사장의 불법비리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독립적 이사회를 설치하고 사장 및 임원 선출을 공정하게 진행. 특히 비리행위에 연루된 임원의 자진 사임을 금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임될 시 퇴직금 지급과 공공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금지.
  - 아리랑법제정시 주무부처, 여야간 이해관계보다는 국제홍보방송의 중요성을 우선에 두고 논의
- 종편 관련 재허가 요건 강화(미디어렙 포함) 및 의무전송 폐지
  -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해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

한 재허가 요건을 적용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에 비해 차별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편사업자를 지상파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로 정상화
- 미디어렙의 경우 1사 1렙에서 가능한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까지 포함하여 공/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재정비
- 재허가 심사항목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와 함께 특화된 내용–공공성/공익성, 편성의 다양성, 재정 및 경영, 외주제작사와의 공정거래 등–을 중심으로 새로 마련
- 일부 지상파 방송채널에도 적용되지 않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의무전송 규정을 현재 보도전문채널과 같이 선택적 의무전송(2개 이상 전송)으로 변경

❸ 미디어 이용자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

진단

- 현행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청자 권리는 제87조 시청자위원회와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방송사의 편성, 심의, 내용 등 방송 콘텐츠에 맞추어졌다는 한계가 있음. 다채널 방송 뿐 아니라 각종 결합상품으로 통신 서비스까지 이용하는 환경임을 고려하면 콘텐츠를 넘어 방송 채널의 구성, 통신 서비스 평가, 부당한 위약금 등 방송통신 융합에 걸맞는 시청자(이용자)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 시청자들의 역할은 협소하지만 방송사가 아닌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에게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IPTV법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제35조)가 유일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위상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져왔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목상 '민간독립기구'이며 따라서 방송과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해 '검열'이 아닌 '심의'라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동일한 민간심의기구라고 밝혀온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열절차가 입법의 형태로 계획되고 의도되었다는 점에서 민간인들로 구성되었고 지위의 독립성을 보장받아도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라는 행정기구

임은 분명하다고 밝힘. 방송통신심의의원회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광고에 대한 심의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었음

약속

- 지역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활성화
  - 개정 방송법에서는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SO, 위성방송, IPTV에 가입한 시청자들의 위원화를 지역별로 구성
  - 시청자위원회의 지역은 현재 77개 SO 권역을 광역화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로 결정, 지역별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은 ①지역 유료방송 이용실태 조사 ②방송통신 결합상품 가격 공개 요구 ③채널 변경 시 채널 추천권 ④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익채널 추천권 ⑤케이블 지역채널의 콘텐츠 제작 및 편성권 등으로 정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완전한 민간 독립 기구화
  - 현재 방송광고 심의를 방송협회에 위탁하여 자율심의로 전환한 것처럼 정치심의, 편파심의, 공안심의 논란 불러일으키며 제작·편성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구에 의한 검열을 종국적으로 폐지
  - 방송사들이 구성한 협의체에 의해 수행되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거나 기계적 중립성으로 치우칠 수 있는 "양적 균형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2항)부터 자율규제로 전환
  - 자율규제 이외의 심의 또한 소극적 수준의 심의로 축소하고 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방식을 도입

❹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

진단

- 방송통신위원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방송관련 규제기관 및 부문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추천 몫만 관행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서울과 지역이라는 구도에서 균형잡힌 인사추천과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의제 정치의 반영이라는 명목으로

의석수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인사를 배분해 온 탓에 정치적 구도에서 벗어난 지역, 여성, 노동과 같은 다른 구성의 논리는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

-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5년 6월 지원계획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지역 방송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 성과 중심의 계획이며 미흡한 계획조차 실천되지 않고 있음. 무엇보다 공민영 지역방송사들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액의 50%에도 못미치는 지원예산이 문제. 지원예산의 규모 뿐 아니라 지원 부문 또한 지역 방송에게 시급한 콘텐츠 유통이나 종사자들의 재교육에 쓰이기보다 제작비 지원의 비중이 더 높은 상황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2015년 상반기부터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장기적 위축을 대비하기 위해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 등 취약매체에 대한 결합판매 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검토 중. 현재 공민영 미디어렙에서 연간 광고판매 총액의 일정 비율을 결합판매 몫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방송의 경쟁력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교차보조와 같은 공익적 제도로서 이해되어야 함
- 케이블, 위성, IPTV의 세 유형의 사업자로 구성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약 1,800만 전국 가구 수를 넘는 2,700만 가구의 지역 가입자들을 확보하고 있음. 전국 가시청가구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사업자들은 지역 방송이 위치한 권역의 가입자들로부터 방송 수신료 뿐 아니라 통신 요금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 과거와 같이 유료방송은 시장 경쟁력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나눌 수 없는 상황
- 지역 방송의 가장 큰 한계는 다채널 방송 플랫폼에서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따라서 독립된 지역유료방송채널을 설립하고 지역상황에 맞는 자체콘텐츠들을 통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나아가 지역성을 구현할 필요성이 존재
- 지역방송에 맞는 평가항목이 부재하여, 지역방송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약속

- 방송 관련 규제 기관의 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 인사 배분
  - 방송통신위원회 5명의 상임위원을 비롯, 방통위 산하 9개의 위원회에 지역의 할당 몫

이 보장되어야 함

- 방통위의 위원구성은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 산하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개정하여 지역 인사의 구성을 보장
-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고 결합판매를 통해 지역방송의 재원를 지원하는 한국방송진흥공사(KOBACO)의 이사진에 또한 지역 광고의 공적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
- 18개의 지역 MBC에게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과 함께 인사 및 경영에도 관여하는 방송문화진흥회 또한 지역 추천인사가 할당되어야 함. KBS의 지역 방송이 미흡한 것에 반해 지역에 밀착된 방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영방송 계열사 체제가 MBC임을 고려하면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지역 인사의 할당 몫은 필수적임.

●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수립 및 '실천 방안' 마련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성과에 대한 국회 관련 상임위의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 방송종사자들의 의견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지역방송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 결합판매 지원 매체에 대한 결합판매는 현재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의 광고판매액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을 넘어선 유료방송 광고시장으로 확장
- 지원 매체의 결합판매 비율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체제작 편성 비율 뿐 아니라 인력채용, 방송 콘텐츠 유통 실적, 경영실적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계량화 된 기여도 등을 통해 지역방송사들이 내부 역량으로 조정가능 한 결합판매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

●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역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현재 납부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전용하거나 추가로 지역 방송통신발전기금(지역 미디어발전기금)을 조성
- 추가되는 재원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현재 납부하고 있지 않은 홈쇼핑 및 통신결합상품 매출액을 기금 납부 기준에 포함

● 독립된 유료방송 지역채널 설립

- 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거나 현재의 방송통신발전

가금에서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지원받는다면 증액되는 재원의 일부를 권역별 독립 지역방송채널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

- 독립 지역방송채널은 현재 케이블 SO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채널의 소유권을 해당 권역 내 공민영 지상파 방송사, 지역 언론사, 지역 풀뿌리 미디어 등의 컨소시엄에게 이전
- 독립 지역채널은 권역 내 지역방송사와 언론사들의 보도, 시사교양, 예능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현재 제작 중인 자체제작 비중을 높여 본방 편성 비율을 높임
-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지역 방송 및 언론사들의 수익으로 분배

● 지역방송에 차별화된 재허가 심사 항목 마련

- 방송사업자를 지상파 중앙 방송사, 지역 방송사, 유료방송사업자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지역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높은 배점을 부여. 첫째, 최고경영자 선임의 투명성. 둘째, 지역 방송 수익의 주주배당 제한. 셋째,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도 넷째, 지역방송 통폐합의 경우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지역 필요성 반영 평가 등

❺ 신문 진흥과 지역신문 활성화

진단

● 현재 신문은 방송에 비해 영향력과 경영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2015년 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6년 연장됨으로써 2022년까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집행이 가능해짐. 그러나 기금의 총액은 2009년까지 100억 원 대로 조성되다 2014년까지 점차 축소되어 64억 원이 되었음. 이에 비해 지원 언론사의 수는 2009년 58개 사업자에서 2014년 71개 사업자로 증가. 재정지원의 규모는 줄이고 지원 언론사의 수만 늘린 전형적인 실적 위주의 기금 운영. 기금 액수 뿐 아니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의 위상 또한 문제. 지역신문 지원정책은 문체부가 주무부서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위탁사업자로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할 지발위는 구체적인 사업 운용에만 국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위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업 운용

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지발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 제시”만을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

- 지역신문이 대상이 되는 지원 기금의 두 축인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중 지역신문의 디지털화에 지원되는 액수는 극히 미미. 2012년 기준 총 1,589억 원의 언론진흥기금 중 신문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할당된 예산은 8억 원으로 0.2%에 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에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언론진흥기금이 주로 취재지원과 유통구조 개선에 비중을 두는 반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구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지원 대상을 주로 종이신문에만 국한되어 있음. 장기적으로 지역 신문 또한 크로스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해야 지역 기업과 지자체에 의존하는 재원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독자적인 생존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

약속

- 미디어균형발전을 위한 신문 진흥
  -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 정부 출연금과 방송 · 통신 · 인터넷산업에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여 공적 기금을 조성
  - 신문에 여론 다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신문공동제작 · 배달, 선별 지원사업으로 신문읽기 지원, 콘텐츠 진흥 및 여론다양성 보장 사업 등에 지원
  - 신문·방송 겸영 사업자 지원은 제한한다.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에 관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한다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강화
  -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은 기금 총액의 확대와 명확한 지원 대상의 선정, 그리고 지발위가 사업운용의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
  - 지발위의 위원 구성과 위촉,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의 독립성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 지역신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 자체 역량으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전국 일간지보다 역량과 재원이 모두 부족한 지역 신문에 대한 디지털 사업 및 재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의 종사자들은 저임금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추가 업무와 노동 강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앙 일간지보다 더욱 절실한 지원이 요구됨

❻ 방송콘텐츠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MBN법)

진단

- 방송콘텐츠산업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지목되어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제작인력들과 일부 스타 연예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관계 속에서 일하는 상황
- 2015년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방송사에서 파견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적인 파견고용을 일삼고 있음이 드러났음. MBN에서 발생한 외주제작PD 폭행 사건을 통해서는 PD, 작가, 스태프 등 방송콘텐츠제작에 종사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음

약속

- 방송콘텐츠산업 노사정협의체 구축을 통한 표준보수지침 마련 및 준수 의무화
  -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아래 방송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와 표준보수지침을 마련
  - 제도 개선 논의에서 방통위와 문체부, 미래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방통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시
- 제작비 최소쿼터제 도입 통한 방송콘텐츠산업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 「남녀고용평등법」 방송콘텐츠 프리랜서에게까지 확대 적용
  -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 고용되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 사회보험을 통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❼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

진단

-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후 유료방송 시장에서 통신 기업에 의한 케이블, 위성 방송의 인수합병이 확대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음. 방송,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등이 결합 상품으로 소비되는 환경에서 유료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통신 사업자(IPTV)까지 포괄하여 유료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적 책무를 부여해야 하는 상황
- 2,700만 가입자 가구를 동일한 시장으로 경쟁하는 케이블, 위성, IPTV 사업자들은 향후 신규 가입자 확보가 아닌 경쟁 사업자들의 인수합병으로 수익 전략을 전환할 것. 여기에 O2O, OTT, MCN 등의 IT에 기반한 콘텐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계획
- 이 과정에서 지역별 콜센터, 설치/AS, 영업 등을 담당해 온 협력업체와의 부당한 계약,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강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또 유료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자회사 등으로 운영할 신규 사업들은 매출과 수익 규모에 따라 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 자명함

약속

- 통합방송법 재개정을 통한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 부여
  - 케이블 채널 구성의 지역 다양성 보장, 케이블, 위성, IPTV 사업자가 분담하여 조성하는 지역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의 광역 획정 후 지역 시청자위원회 법제화 등을 포함
-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 및 노동권 보장
  - 독과점 규제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 간 상호 겸영 및 지분 소유 규제,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승인기준/절차,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금지 등을 강화

❽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 정책

진단

- 뉴스 보도의 유통 채널로 확고히 자리 잡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는 향후 방송사와 신문사들의 수익 구조를 좌우할 중요한 플랫폼. 또 현재 조중동으로 편향되어 있는 종이 신문의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함
- 그러나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방송협회, 신문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기존 오프라인를 주도하는 이익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뉴스의 소비자인 시민단체, 생산자인 노동조합의 참여는 원천 봉쇄돼 있음
- 1월에 발표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뉴스제휴-제제 심사 규정안〉로는 대형 언론사가 주도하는 어뷰징 행위를 제제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한계를 보여줌. 따라서 포털 뉴스 서비스를 사실상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현행 법적 지위에 부여되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음
-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통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관한 심의 신청을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요청이나 방통심의위의 직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도입. 이 개정안은 '공인'에 국한한다는 일부 조건을 추가해 통과됐으나 여전히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함
-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중재절차 과정을 거쳐 기사를 '삭제'함으로써 기사의 검색을 차단하고 기사에 달린 댓글과 기사를 퍼온 글까지 모두 삭제의 대상으로 삼는 규제 강화 계획을 내놓았음.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명예훼손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조치로 삭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복, 과잉 규제임
- 2015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신문의 등록요건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 인력 수 제한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실험에 나서거나 소규모 인력으로 디지털에 특화된 저널리즘을 수행하려는 창의적 시도에 걸림돌이 될 규제가 될 것. 또한 현재 인터넷 신문사 중 다수가 인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등록 상태에 놓이게 되면 포털 검색에서도 차단되어 인터넷 여론 형성의 한 축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 이미 정의당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대응 중

약속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상화
- 언론중재위, 방통심의위 등의 정부 간섭 철폐
- 소수 독립 언론 활성화 제도 마련

❾ 신문, 방송 광고의 불법 영업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

진단

- MBN의 사실상 직접 광고 영업 뿐 아니라 대형 언론사와 방송사들의 홍보성 기사를 통한 수익 창출 구조는 이제 당연시 되고 있음. 정부 기관과 공기업이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실적 홍보는 물론이고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맺어 일정 분량의 기사를 작성해 주는 관행이 몇 년 사이 늘고 있음
- 협찬과 홍보를 빙자한 신문방송 광고의 불법 영업은 광고시장의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 이외에도 신문방송 기자들의 공정 보도를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
- 협찬과 홍보를 빌미로 한 사실상의 광고 강요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해야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지면 광고와 달리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협찬 광고까지 막을 수는 없음. 따라서 방송 협찬 광고의 경우 불투명하고 음성적인 거래가 아닌 공식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 연간 2조 8,000억 원대의 인터넷/모바일 광고시장은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포털 사업자의 높은 점유율로 인해 약 5,000억 원 규모만이 언론사의 인터넷/모바일 광고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음. 불균등한 광고 시장 점유율도 문제이지만, 해외 광고 시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의 인터넷 광고 시장 구조는 더 심각한 문제. 자금과 같은 인터넷 광고 시장의 평가 절하를 각 신문사가 개별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

약속

- 신문, 방송 광고 불법 영업 근절
  - 방통위 산하에 〈방송광고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산하에 〈신문광

고 불공정 거래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 불법 광고 영업을 근절할 제도를 마련토록 함

- 협찬 광고 법적 제도화 및 미디어렙 위탁을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
  - 협찬주와 방송사의 직접 거래를 막기 위해 지상파 공민영 렙에 협찬광고의 청약과 집행을 맡김으로서 양성화를 도모
  - 협찬을 중요한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종편의 경우 또한 미디어렙의 재정비 이전에라도 렙사를 통한 협찬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광고의 정당한 단가 책정과 솔루션 구축
  -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가진 코바코나 언론진흥재단이 평가 절하된 인터넷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소재를 집행할 솔루션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

⑩ 출판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

진단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는 2013년 기준 약 8천여 명이 일하고 있고, 정부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최대 2만 명으로 확충할 계획. 서울시 또한 '신홍합(신촌-홍대-합정) 밸리'문화예술특구를 추진 중
- 파주출판단지 입주 출판사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 각종 우수콘텐츠지원 사업, 북카페 허용 등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의 상당수가 저임금, 장시간노동, 인격 모욕 등으로 조기에 출판계를 떠나고 있는 실정

약속

- 10인 미만 중소규모 출판사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기준법 준수
  - 문체부와 소관 사단법인인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에 소속된 사업자들과 10인 미만 출판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기적인 근로 감독을, 진흥 기관은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과 안내를 실시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세종도서, 우수콘텐츠 지원, 우수문예지 등 지원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강화
- 외주출판노동자 보호를 위해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의 기능을 개편 및 확대해 출판사를 '건강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출판문화진흥원 등 진흥 기관이 적극 개입

27

ICT 공약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국민의 정보인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초고속인터넷은 보편적 서비스가 될 것이며,
누구나 동등한 망 중립성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웹 표준을 준수하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해 정의로운 ICT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ICT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부터 바꿀 것입니다.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ICT 생태계 조성'

1.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
2.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구글세 입법화
3.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 개선
4.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5. 누구에게나 동등한 망중립성 확보
6. ICT 생태계를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지원 강화
7. 웹표준 도입 강화
8. ICT노동인권센터 설립

❶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

진단

-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 11월 유선 통신 가입자 현황' 발표에 따르면, 국내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0만명을 돌파함. 초고속인터넷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자리 잡음
- IPTV가 인터넷과 뗄 수 없다는 점에서 초고속인터넷과 IPTV는 맥을 함께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음. IPTV는 케이블TV와 방송적 속성에서는 차별성이 거의 없음. 케이블TV가 수행해오던 공공성은 공익적 성격이 있는 도달과 보편성 성격의 공유를 의미. IPTV와 결합된 서비스인 초고속인터넷 역시 보편적 서비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보편적 서비스화는 기존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역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방송 미디어 관점에서 공적책무가 반영된 보편적 서비스를 의미해야 함
- 통신의 경우 공익성은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산업성이 핵심 가치로 존재. 통신 영역은 공익성을 최정점으로 다양한 가치를 구성한 방송과 달리 산업의 발전과 공정경쟁, 기술발전 등 산업적 측면이 강조됨
- ICT 분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서비스화가 시급함

약속

-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법제 개선으로 국민의 통신 및 방송요금 부담 경감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시장의 공공성 확보

❷ 조세 정의 실현하는 '구글세' 입법화

진단

-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구글세에 대한 액션플랜에 합의를 보고 이에 대한

중요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

-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제도와 조세조약을 악용해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각 국의 재정정책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러 이에 대해 세계적 비난이 거센 상황임
- 국내에서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세원이 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됨

약속

-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명 '구글세' 입법화

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인터넷 심의 제도 개선

진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인터넷게시물 일반에 대하여 삭제 및 폐쇄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임
- 국가인권위원회, UN 등에서 이러한 기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고, 일반적인 인터넷 내용심의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 이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2014년 9월 대통령과 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공인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방침을 밝힌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그 경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UN 인권 정례검토에서도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함

약속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일반적 행정심의 폐지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

❹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진단

- 2013년 UN 총회결의안에서 국가 감시를 감독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여 한계가 존재
- 선거개입 사건으로부터 최근의 이탈리아 해킹팀 논란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의 권력남용과 인터넷 댓글 감시 등 인터넷 훼손은 심각한 수준
-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국외 IT서비스로의 사이버망명이 확산되고 국내 IT산업의 전반적인 보안이 낮아짐
- 빅데이터 시대에 대량감시(mass surveillance) 형태로 이루어지는 감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홈플러스, IMS 코리아 사건 등 정보주체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상판매되는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약속

-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 국가정보원의 권력분산과 그에 대한 감독 강화
- 테러방지법 폐지법안 발의
- 정보인권법안 발의
  - 수사기관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허용을 금지
  - 2014년 통신감시에 대한 국제인권원칙에서 정한 필요성과 비례성, 투명성, 공적인 감독 등의 원칙을 입법화
-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 빅데이터 시대에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 조치 또는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소비자들의 무차별적 감시로부터 보호할 필요에 따른 입법마련

❺ 누구에게나 동등한 망중립성 확보

진단

- 망중립성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어야한다는 개념
-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가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
- 그러나 망을 차별 없이 동등하고 중립적으로 제공해야할 사업자들은 자본력에 따라 망 제공을 달리하고 있음. 즉, 자본이 있는 기업에게는 더 품질이 좋은 망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벤처나 중소기업에게는 품질이 떨어지는 망을 제공해 망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
- 망중립성 훼손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해는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약속

- 이유 없이 망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해 보편적 망중립성 확보

❻ ICT 생태계를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지원 강화

진단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는 누구나 자유롭게 SW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높은 기술로 꼽힘.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오픈소스 SW 프로젝트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대표적인 패키지 SW업체들도 최근 오픈소스 SW 프로젝트를 강화할 정도로 오픈소스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오픈소스 SW 산업 육성을 위해 해마다 지원책을 마련해 왔음. 그러나 국내 오픈소스 SW 시장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함. 업계는 지난해 국내 오픈소스 SW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0.1%에 못 미친다고 분석함

● 업계는 국내 혈세로 운영하는 오픈소스 SW 산업 육성 예산이 국내 기업에 골고루 지원되지 못하고 해외 기업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약속

● 국내 중소기업, 개인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 강화

❼ 웹표준 도입 강화

진단

● 세계 웹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컨소시엄 W3C(World Wide Web)이 2014년 HTML5 를 웹표준 권고안으로 발표한 이후 웹표준 작업이 활발히 진행. HTML5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모바일에서도 최적화된 표준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티브엑스(Active X)와 같은 비표준 기술을 사용 중임.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폐쇄 기술로 추가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음

●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주요 민간 웹사이트 100곳 중 70% 가량이 액티브 엑스 기술을 사용 중임. 이 비율은 해외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수치

약속

● 기업, 정부 등에서 웹표준 도입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책 강화

❽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진단

-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ICT 노동자들은 부당한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음. 특히, 짧은 기간에 일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한 노동시간과 야근에 늘 시달리고 있어 비정상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
-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해야하는 정부의 역할도 미흡. ICT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책도 거의 없는 상황. ICT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할 콘트롤타워가 없음

약속

-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ICT노동자들을 위한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 고용보험기금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약 20억원 규모의 센터설립기금 출원

28

정치·국회공약

정치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치가 다시금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대정당이 벌이는 '그들만의 리그',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특권은 없애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반영되는 국회,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인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치를 진짜 주인인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특권 없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 실현
민주적 정당체제 실현
선거제도 대개혁
정치참여 활성화와 참여 민주주의 확대

국민의 얼굴을 닮은 20대 국회

1. 특권 없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 실현

❶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❷ 국회의원 겸직금지로 정치투명성 제고
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 강화
❹ 교섭단체 제도 폐지로 국회 운영 민주화
❺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시화로 일하는 국회 실현
❻ 행정입법 감독권 강화로 '시행령 통치' 근절
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로 충분한 예결산 심의 보장

2. 민주적 정당체제 실현

❶ 지구당 복원으로 풀뿌리 생활정치 구현
❷ 거대정당 독식하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❸ 정당 후원회 설치 허용으로 소액다수 후원 보장
❹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 인터넷 상시 공개

3. 선거제도 대개혁

❶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❷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의 대통령 선출
❸ 선거일 유급휴무일화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
❹ 투표 접근성 확대로 투표율 제고
❺ 사전투표제 확대시행
❻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❼ 공무담임권 가로막는 고액 기탁금 제도 개선

4. 정치참여 활성화와 참여 민주주의 확대

❶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❷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만18세로 하향조정
❸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❹ 장애 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❺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국민투표 활성화

1 특권 없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 실현

❶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진단

-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국회운영위원회에 있으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음.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적으로 차관보다 높고 장관보다 낮은 수준임
- 세비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1년에 각각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로 구성되어 있음. 회기 1일마다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할 경우 매월 정액 지급되는 금액은 약 1,031만원이고, 이를 연액으로 환산한 후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가산한 국회의원의 세비 연액은 약 1억3,796만원임
- 세비 이외의 의원지원 경비는 「국회사무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사무실 운영지원,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등 공무출장 지원, 정책홍보물 유인비·정책자료발간비·정책자료발송료 등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비가 있음
-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주요 20개 국가 중 구매력 기준으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위, 국민소득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도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5.27배로 3위로 장차관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급여가 높은 편임
- 국회는 지금까지 법률과 규칙의 개정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결정해왔으며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률, 규칙과 달리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국회의원의 세비의 규모나 인상 여부는 가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또는 예산안 처리시에 알려지고 있어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왔음

● 또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거나 국회의 장기파행으로 인해 회기중이더라도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도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정액으로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반드시 정비될 필요가 있음

약속

●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는 최저임금의 5배(연 7561만원)를 넘지 않도록 함

● 국회로부터 독립되어 전원 외부인사(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국회의원 세비를 산정하고 심사위원회가 정한 세비를 그대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

❷ 국회의원 겸직금지로 정치투명성 제고

진단

●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에 대해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며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과 영향력 행사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이에 거대양당은 총선과정에서 각종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공약을 했으며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이 제출된 바 있었음

● 제19대 국회에서는 국회쇄신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2013년 8월에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2014년 3월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겸직 범위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 그러나 2014년 4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겸직금지 예외조항인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범위에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한 법인 및 단체의 비상근, 무보수 겸직을 허용하는 등 겸직금지 규정을 대폭 완화한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켜 많은 비판을 받았음. 5월 법사위에서는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킴. 윤리심사자문위는 최종심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

였으며 국회의장은 10월 31일 겸직의원 명단을 최종 확정·통보하고 11월 3일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겸직내용 일체를 공개하였음

- 공개된 국회의원 명단에는 겸직불가 및 사직권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겸직금지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9명은 3개월 이내 해당 직위에서 휴직 또는 사직의 방법으로 사퇴해야 하며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강제규정이 없어 사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약속

-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엄격히 적용하여 정치 투명성을 강화함.
  - 현행 국회법의 겸직금지 조항의 예외규정인 '공익목적의 명예직'의 범위와 관련해서 개정 국회법이 처음 적용된 지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 '사직권고'의 판단을 받은 사례를 유형화하여 겸직금지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규칙안의 규정에 반영하도록 함.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예외조항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 특히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국회의장의 '사직권고' 통보대상 국회의원들의 겸직현황을 살펴보면, 체육단체장의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직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 강화

진단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규정한 이후 10차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의회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대항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권리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 그러나 헌법의 취지와는 달리 부정부패·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의원들을 되풀이해서 감싸는 이른바 '방탄국회'로 국회가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음

● 현행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안 보고 또는 표결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개최조차 되지 않는 현실

● 이미 존재하는 국회법의 처리절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담은 국회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당의 결의가 없는 한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은 반복될 것임

약속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 강화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제한

- 각 정당은 소속의원이 부패·비리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경우 회기 중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함. 또한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명시하여 정당이 책임지고 불체포특권 방지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❹ 교섭단체 제도 폐지로 국회 운영 민주화

진단

● 현행 국회법 상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됨. 교섭단체는 법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수립,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 특위 구성, 각종 인사 추천권, 발언기회의 배분, 입법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회운영에 관한 협상권한을 독점하고 있음

● 그러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인 의원 20인 이상이라는 규정은 해외사례를 볼 때 보편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거대양당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높은 기득권의 장벽일 뿐임. 이미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정당득표율에 비해 과다의석을 점유한 거대양당이 교섭단체 제도를 통해 소수정당의 국회운영 참여를 가로막음으로써 이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는 장치가 되

고 있음

- 또한 교섭단체 제도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도 제약이 되고 있음. 일부 안건의 경우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협상으로 처리방향이 결정되면 해당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지 못한 체 표결하게 되는 '거수기'로 전락

약속

- 현행 국회법상 국화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 · 실질화 하고 교섭단체 제도는 폐지함
- 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모든 원내정당은 국화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 이를 통해 국화운영에서부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의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는 의회정치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도록 함

참고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간의 협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본회의장 의석배정 (제3조) △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 작성 (제5조의2 제①항)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 국회 사무총장의 임면 (제21조 제③항) △ 국회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안 제출 (제46조의3 제①항)
제5장 교섭단체 · 위원회와 위원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설치 (제46조의3 제①항) △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제48조 제③항) △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제56조) △ 의장의 전원위원회 비개회 결정에 대한 동의권 행사 (제63조의2 제①항) △ 상임위 구성 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설치·구성 (제62조의2 제③항)

제6장 회의	△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제72조) △ 본회의 비공개 결정 (제75조 제①항) △ 의사일정 변경 (제77조) △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 지정 (제85조 제①항) △ 신속처리대상 안건 적용 제외 (제85조의2 제⑧항)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안, 국회의장 지정 세입예산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 적용의 예외 (제85조의3 제②항)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지정 안건 (제86조 제②항) △ 법률안의 심사종료 1일 경과 후 본회의 상정 규정의 예외 (제93조의2) △ 원안 또는 위원회 심사보고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 없는 수정동의안의 제출 허용 (제95조 제⑤항) △ 교섭단체대표연설 추가 실시 (제104조 제②항) △ 동일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의 결정 (제104조 제③항, 제④항) △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의 결정 (제104조 제⑤항) △ 본회의 개의 중 5분 자유발언의 허가 (제105조 제①항) △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 결정 (제105조 제③항) △ 무기명투표의 예외 (제112조 제⑤항) △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로 변경 실시 (제112조 제⑨항)
제7장 회의록	△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한 회의록 불게재 (제118조 제①항)
제8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과 질문	△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대리출석·답변 승인 (제121조 제③항) △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대정부질문 추가 시간 허가 (제122조의2 제③항) △ 의제별 대정부질문의원 수의 결정(제122조의2 제④항) △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의 결정(제122조의2 제⑤항) △ 긴급현안질문시간 총 120분에 대한 연장 결정 (제122조의3 제⑤항)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 폐회 중 정부와 행정기관에 서류 등의 제출 요구(제128조 제③항)

※ 위와 같이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각종 협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각 위원회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사항)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항들이 있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조사 시행 특위 구성 또는 해당 상임위의 확정 (제3조 제③항)

※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 관련 협의(제7조의2 제②항)

주요 국가 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단위: 명, %)

구성요건		해당 국가
1석 또는 교섭단체 없음	0	미국, 영국, 호주
	1	네덜란드(0.67%) 노르웨이(0.6%), 덴마크(0.56%), 스웨덴(0.29%)
2석 ~ 9석	2	포르투갈(0.87%), 일본(0.4%)
	3	아르헨티나(1.2%)
	5	룩셈부르크(8.3%), 벨기에(3.3%), 스위스(2.5%), 오스트리아(2.7%)
10석 ~19석	12	캐나다(4.0%)
	15	스페인(4.0%)
20석		프랑스(3.5%), 이탈리아(3.2%)
30석		독일(5%)
기타		브라질(재적 10% 혹은 9개주 이상 하원선거에서 5%이상 득표)

주요국가 의회(하원)의 교섭단체 제도

국가	명칭	승인 요건	의원 수	의원 정수 대비	주요 권한
네델란드	Fracties	1	150	0.67%	위원회 구성시 협의. 교섭단체 대표에 수당 지급. 보좌 직원 및 사무실 경비 국고지원. 의석수에 따른 사무실 제공
노르웨이	Parliamentary Groups	1	165	0.6%	의석수에 비례하여 의장단 구성에 참여. 위원회 위원 지명. 보조금 및 사무실 지원
덴마크(단원)	Folketing Groups	1	179	0.56%	의석수에 따라 재정적 지원, 사무실 지원
독일	Fraktion	재적 5%	603	5%	의장단에 참여. 토론자 지명, 법안발의, 대정부 질문과 동의 및 수정안 제출
룩셈부르크 (단원)	Political Groups	5	60	8.3%	운영위원회 참여. 위원회 위원 지명. 사무실 및 시설 제공. 재정 지원
미국	Parties	-	435	-	다수당이 의사일정 작성. 소수당은 발언권, 시간배정, 위원회직원 임명권 보유. 양당은 공히 위원회 위원 지명권을 행사하고, 보조금, 사무실 제공
벨기에	Political Groups	5	150	3.3%	각종 위원회에 세력비에 따라 참여, 의원보조금, 사무실 배정, 교섭단체 대변인은 예산토론 등에서 우선권 행사
브라질	Parties	*	513	-	의사일정 작성에 참여, 의석수에 비례하여 위원회 참여
스웨덴(단원)	Party Groups	1	349	0.29%	의장단 협의회 참여. 위원회 위원 지명. 보조금.
스위스	Groups	5	200	2.5%	교섭단체대표회의 참여. 보조금, 사무실 제공
스페인	Parliamentary Groups	15	350	4.0%	대변인회 참여. 의사일정 재심의 요구. 위원회 위원 지명. 사무실, 설비, 보조금 지급
아르헨티나	Parliamentary Blocs	3	257	1.2%	교섭단체대표는 의회운영위 위원이 되고 의사일정 작성에 참여, 교섭단체수에 따라 위원회 의석 및 의원사무실 배정
영국	Parties	-	659	-	의사일정 협의. 위원회 위원 지명시 협의. 재정적 지원. 사무실. 제1야당 당수 및 총무에 보수 지급
오스트리아	Klubs	5	183	2.7%	의장단회의참여, 의사일정 결정에 참여, 세력에 비례하여 위원회 위원에 선출, 공적 보조금 지원, 원내사무실 및 직원 배정
이탈리아	Parliamentary Groups	20	630	3.1%	교섭단체대표회의에 참여. 위원회 의원 지명. 의석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 사무실 및 시설 제공
일본	회파	2	480	0.4%	위원회 위원지명, 본회의 발언자 지정. 조사연구 지원금 제공. 원내 사무실 제공
캐나다	Political Parties	12	301	4.0%	의사일정 작성에 참여. 의석수에 비례하여 위원회 참여, 12인 이상 정당에게 연구기금 제공
포르투갈	Parliamentary Groups	2	230	0.87%	의사일정 작성하는 의장단 회의에 참여. 위원회 위원 지명. 보조금 및 사무실 지원
프랑스	Group Politique	20	577	3.5%	우리 국회와 유사한 운영
호주	Parties	-	150	-	제1야당에게 특별한 지위가 부여됨, 토론에서의 우선권, 의사일정에 관한 비공식적 협의권, 위원회 의원 지명권이 부여되고 또한 사무실 및 당직자에 대한 특별수당이 제공됨

*출처: 함성득, 임동욱,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화와 정국 역학", 「21세기 한국의 정치발전과 정치학」 (2001년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2001, pp. 7~8)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관한 국회법 연혁

대 별		의원정수(인)	교섭단체 구성요건
제헌~제5대	제헌	200	20인 이상
	제2대	210	
	제3대	203	
	제4대~제5대	233	
제5대	민의원	233	20인 이상
	참의원	58	10인 이상
제6대~제8대	제6대~제7대	175	10인 이상
	제8대	201	
제9대~제19대	제9대	219	20인 이상
	제10대	231	
	제11대~제12대	276	
	제13대~제15대	299	
	제16대	273	
	제17대~제19대	299	

❺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시화로 일하는 국회 실현

진단

- 매년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회기 중 20일간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안 검토시기와 중복되어 집중도가 떨어짐
- 국정조사의 경우 이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야합의의 실패로 국정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그 활동기간이 짧아 쟁점사항의 경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 특히 피감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지연과 거부, 증인출석 거부의 경우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없음
-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을 채택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증인채택이 불가능함

● 또한 현행 국정조사제도의 문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별도로 조사계획서 채택이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없으면 조사개시가 불가능함

약속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

- 각 상임위원회는 임기 개시 후 2개월 안에 소관 행정부처에 대한 4년 단위 감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함
- 소관 위원회는 4년 단위 계획에 입각하며 매년 1월31일까지 소관 행정부처에 대한 연중 감사계획을 제출함
- 총 감사기간에 대한 제약 없이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30일 이상 감사계획을 제출하여 횟수와 시기에 있어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정기국회 전에 종료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함
- 국정조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관위원회 과반 의결로 국정조사 개시(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가 가능하도록 함
-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조사하기 어려운 사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더불어 특별위원회 구성권을 별도로 만들어 조사시행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회 출석, 시정, 징계, 변상, 예산감액 등을 요구하고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기관장에 대한 출석과 소명 요구 및 해임건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함
- 자료제출의 거부와 해태 및 기피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수단을 마련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특정 사항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 또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석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증인을 각각

선정하도록 함

-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국회모욕죄에 벌금형을 신설하고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의 사유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차별적으로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❻ 행정입법 감독권 강화로 '시행령 통치' 근절

진단

- 최근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지침 등 위임입법에 의한 통치가 심각한 헌정체제 교란행위로 등장하고 있음
- 대통령-집권당대표-야당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는 헌법 제98조 2항과 관련하여 위임입법 통제가 국회의 행정부 감독권 행사 현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음.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위임입법 통치행위는 확산되어 왔으나 현재 국회는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임
- 또한 각 법률의 위임입법 현황은 법제처 국가통계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부처별 관할 위임입법에 대한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약속

- 위임입법에 의한 통치행위가 헌정체제 교란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입법 감독권을 강화함
  - 각 위원회의 분기별 해당부처 행정입법의 심사 의무화
  - 행정입법 심사 지원 전담부서를 국회에 신설하여 전담부서의 업무로 국회차원 「위임입법DB(가안)」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상시적인 스크린 강화

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화로 충분한 예결산 심의 보장

진단

- 헌법상 국회의 정부예산에 대한 심의권한은 입법 및 행정부 감독기능과 함께 입법부의 핵심적인 권한과 기능임. 국회법상 정부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됨
-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4년에 첫 시행된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규정이란 국회가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정부예산안 등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한 것임. 이는 국회가 헌법상의 정부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
- 국회는 헌법상 정부예산안 심사기간이 60일에 불과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시기를 기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2014년에는 100일전, 2015년에는 110일전, 2016년에는 120일전으로 규정하였음
- 2014년에 처음 적용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규정으로 인해 12년만에 국회는 헌법상 처리시한인 12월 2일 정부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였음. 그러나 처리시한에만 쫓겨 11월 30일 24시 공식 심사절차를 종료하여 예산부수법안 관련 상임위에서의 법안심사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체 거대양당 원내지도부 간의 막판 '밀실협상'에 의해 본회의 개최 직전에서야 수정안의 주요내용이 합의되는 진통을 겪은 바 있음
-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시한에 쫓긴 '졸속·부실심사'나 비공개 예산심사과정에서의 고질적인 '쪽지예산' 등의 문제점은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규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점이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사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가재정법 상 기재부 장관은 행정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 안이 제출되어도 국회가 이 안을 심의하거나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음
- 현재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각 소관위원회가 각개격파 식으로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결

산심사를 통한 감독권 또한 무력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예결특위는 '상설' 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결산 및 예산안 심사 시기 이외에는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또한 타 상임위와는 달리 위원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여 국회가 예산심의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통한 전문성을 높이고 국가재정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음. 때문에 국회의 국가 예산 심의·확정권의 책임 있는 행사를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함

약속

-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날림 예결산심사', '쪽지예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
  - 예결특위의 소관 업무를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관한 사항'과 '감사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신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타 상임위와 겸임을 금지하도록 함
  - 예결특위의 소관업무에 정부제출 예산편성지침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견서 제출, 예산편성지침안에 입각한 각 소관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심사 가이드라인 제공, 결산심사안에 대한 국회 의견서 제출, 결산안에 대한 소관위원회 결산심사 가이드라인 제공, 정부 예산편성지침안 대비 최종예산안 비교, 의견서 제출 등을 포함함
- 예결특위는 연중 운영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게끔 의무화. 아울러 4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5월말까지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현행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는 타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권한과의 충돌문제, 상임위의 기본기능인 법안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 인사청문 권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한 논의단계에서는 현재의 예결특위 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위원회 복수화'(예: 재정경제 예산소위, 사회문화예산소위, 외교국방예산소위 등)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우선 가능하도록 함

2 민주적 정당체제 실현

❶ 지구당 복원으로 풀뿌리 생활정치 구현

진단

- 2004년에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지구당이 폐지되었고 2005년에 일부 개정하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단 사무소의 설치는 금지함
- 2002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대선정치자금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구당이 불법정치자금의 유통경로로 지목됨. 2004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지구당이 폐지됨
- 1962년 처음 지구당 조항이 신설되었을 때 박정희 정권은 신생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전체 지역구 3분의 1 이상의 지구당을 설치해야 정당등록을 허용하였음
- 현행 당원협의회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규정됨. 지구당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수직적 권력구조, 고비용,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의기구화, 유급직원 금지, 당원협의회장 선출과 3명 이상의 운영위원을 두어 권력독점을 방지하려고 하였음
- 당원협의회는 법정 조직이 아니어서 편법이 있어도 규제하기 힘들다는 점, 최소한 인력과 활동을 위해 편법적인 자금운영 가능성, 지구당 폐지 이후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조직 급증, 당원협의회 운영을 선출직 공직자나 예전의 지구당의 위원장들이 맡는 사례 등 개선효과가 거의 없음. 현역의원은 사무실을 둘 수 있고 유급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등 현역의원이 있는 정당만 유리함

약속

- 지구당 부활

- 지구당은 정책개발, 시민교육, 정책선전, 정책정당화 등 정당과 지역 유권자를 연결하여 풀뿌리 민주주주의를 확대하는 보루임. 또한 중앙당의 독주를 막고 정치체제 전반에 걸쳐 권력 분산의 역할을 함
- 정당법 개정을 통해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지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3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구당의 투명한 재정과 회계 감사를 위해 현행 중앙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와 동일하게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함

❷ 거대정당 독식하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진단

- 현재 국고보조금은 ① 동일한 정당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 총액의 50% 균등지급 ② 5석~19석 정당에 총액의 5%씩 지급하고 5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2%씩 지급 ③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 ④ 나머지 절반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 이 같은 조항은 20석 이상이냐, 아니냐라는 불합리한 교섭단체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득표율 기준보다 우선하는 기준을 적용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정당이 획득한 유권자의 지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정치의 빈익빈부익부를 조장하여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물질적 기반에 다름 아님
- 헌법재판소 역시 2015.12.23.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거대정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배분·지급 구조의 개선을 권고하였음

약속

-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득표수 위주로 바꾸고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
  - 소수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소액다수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정당 국

고보조금 배분 기준(현행 직전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2%) 이상 득표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의 20%를 균등 배분하고 ②국고보조금의 40%는 의석수에 따라 ③국고보조금의 20%는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며 ④ 국고보조금의 20%는 당비와 기부금 등 정당의 총 수입과 연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제를 적용

❸ 정당 후원회 설치 허용으로 소액다수 후원 보장

진단

-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을 마지막으로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었음
- 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정당후원회 회계보고'에 따르면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5년 한 해 동안 중앙당 및 시·도당후원회의 모금총액은 약 90억원이었음
- 당시 모금액 기준 1등을 한 정당은 바로 민주노동당으로 약 62억원을 모금해 정당 후원회 모금액의 70%를 차지하였음. 이에 반해 원내 1, 2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2억원, 11억원을 모금하는 데 그쳤음
- 민주노동당이 받은 후원금 한 건당 금액을 따져보면 중앙당 후원회의 경우 28,960원, 시도당 후원회의 경우 98,570원으로 정당 후원회 중에서 건당 금액이 가장 적었으나 기부 건수는 15만5천여 건으로 전체 정당 후원회 기부 건수의 93%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였음
- 하지만 정당 후원회 제도를 폐지한 이른바 '오세훈법'에 의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후원"이라는 모범적인 정치자금 모금문화를 앞장서 실현하고 있던 이런 정당이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없애겠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도입한 제도의 엉뚱한 희생양이 되고 말았음
- 정당이 지지를 받는 후원자들로부터 정당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에 속함
-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원에 가입해야만 하며 정당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에 따라 소속 정당이 아닌 정

당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당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교원·공무원 등이 지지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없음

- 이에 헌재는 2015.12.23.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약속

-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를 부활시켜 정당의 지지자들이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소액다수 후원제도 활성화
- 법인단체의 기부 허용 문제는 정경유착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
- 정당 후원회를 부활하는 대신 정치자금의 투명성 기준은 강화함. 익명 후원(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금지 및 모든 기부내역에 대해 기부자의 직업을 포함한 상세한 신원과 자금 출처를 완전하게 상시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임

❹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 인터넷 상시 공개

진단

- 정치자금의 투명성 면에서 여전히 공개기간, 범위, 방식 등에서 미흡
- 현재 정당 및 선거 관련 후보 후원회 수입·지출의 공개는 회계보고 후 3개월 이내에 선거비용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인터넷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국회의원 후원회는 매년 2회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공개(미국은 연간 200달러이상, 일본은 연간 5만엔 이상, 독일은 1만유로 이상, 영국은 1,500파운드 이상)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공개비용이 높고 영국과는 비슷한 수준임. 독일보다는 낮음
- 나아가 유권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공개 기간도 3개월로 제한되어 있음

약속

●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 인터넷 상시 공개로 정치자금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정치 신뢰도 제고

3 선거제도 대개혁

❶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진단

●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임. 그러나 단순다수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여 사회적 대표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제도로서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표를 사표화(死票化)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국회의원 다수대표제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의석률 비례성 비교>

선거구분	정당명	득표율(%)	의석률(%)	보너스율(%)
2000년 제16대	한나라당	39.0	49.3	10.4
	새천년민주당	35.9	42.3	6.4
	자유민주연합	9.8	5.3	-4.5
2004년 제17대	열린우리당	42.0	53.1	11.1
	한나라당	37.9	41.2	3.3
	민주노동당	4.3	0.8	-3.5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43.4	53.5	10.1
	통한민주당	28.9	26.9	-2.0
	자유선진당	5.7	5.7	0.0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42.8	50.6	7.8
	민주통합당	36.5	42.3	5.8
	통합진보당	10.3	4.3	-6.0
	자유선진당	3.2	1.0	-2.2

● 소선거구제에서의 표의 등가성 왜곡은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득표율과 실제 의석률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음

●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도입은 정치개혁의 핵심 사안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고 동시에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볼 수 있음

약속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의석 전체를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함. 배분된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지역구 당선자로 채우고 나머지를 비례대표 후보로 채움

●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유효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게 의석 배분 자격 부여

● 정당명부 제출은 전국 단위로 하고 후보 공천은 당내 경선을 비롯한 민주적 방법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법제화

❷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의 대통령 선출

진단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만으로 당선자가 나왔음. 당선된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대비 지지율이 30%대 수준에 불과했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득표율〉

연도	당선인	유효득표율(%)	선거인수 대비 투표비율(%)
1987(13대)	노태우	36.64	32.96
1992(14대)	김영삼	41.96	28.04
1997(15대)	김대중	40.27	31.98
2002(16대)	노무현	48.90	34.33
2007(17대)	이명박	48.67	30.52
2012(18대)	박근혜	51.60	38.93

- 헌법 제 67조 제 3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최소한의 당선 기준으로 득표자 총수의 1/3이상을 규정. 역대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득표율을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소수' 대통령은 통치력을 뒷받침하는 지지기반의 약화로 국정운영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서 대표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일 것임
-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국가 권력에 대표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유권자에게 최소한 두 번의 검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중한 선택을 유도할 수 있음
- 또한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두 번의 기회는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기회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
- 이처럼 결선 투표제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의회선거나 대통령선거에서 사용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선거 및 의회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통령제 국가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략 36개국(프랑스,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등)이 결선투표제를 취하고 있음

약속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결선투표제는 상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있음
  -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자의 방식, 즉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아무도 없는 경우 상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2차 투표는 1차 선거일 2주 후 실시하도록 함
  - 헌법 제67조 제5항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개정

❸ 선거일 유급휴무일화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진단

- 우리나라의 투표제는 지정투표구와 거소투표, 부재자 투표로 획일화 되어있었지만, 2012년 18대 대선에는 재외국민투표와 선상투표가 진행되었음
- 2012년 대선을 통해 재외국민은 1971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였고, 선거 사상 처음으로 선상투표가 치러짐
- 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휴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선거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의 내용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노동자가 직접 고용주에게 투표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렵고, 이를 거절하는 고용주를 노동자가 실명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국민의 정치 참여의 핵심적인 제도인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상황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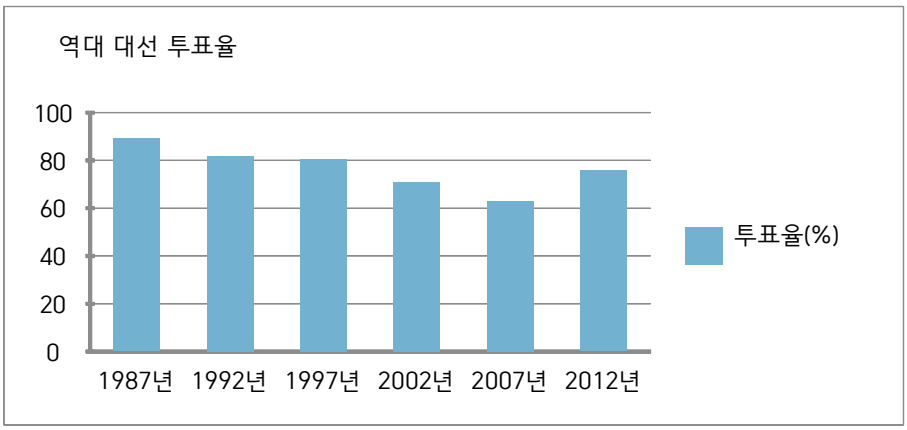
-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일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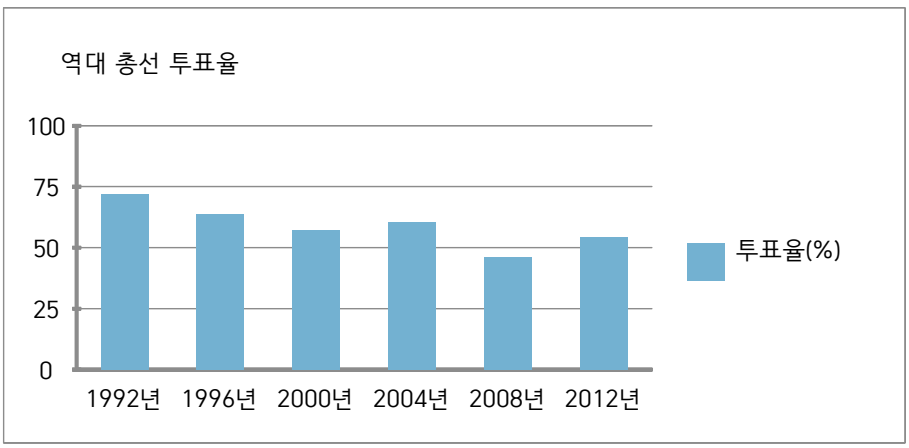
❹ 투표 접근성 확대로 투표율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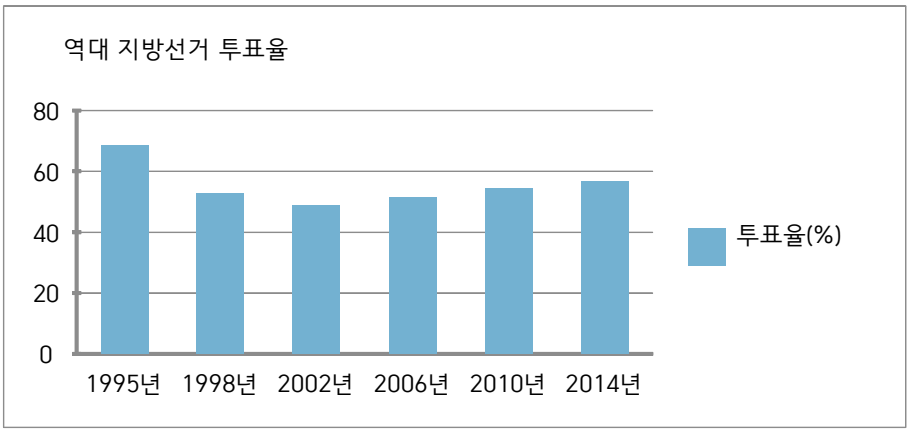
진단

●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정치 참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투표율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음

▶ 주요 선거 투표율 추이







- 다만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기존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임. 이는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면서 높아진 국민의 정치적 관심도로 볼 수 있지만, 18대 대선부터 허용된 재외국민 투표와 선상투표가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18대 대선과 같은 예외적인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대선투표율에 비해 낮음
- 저조한 투표율은 국민 참여의 위기이자 정치 대표성의 위기라 할 수 있음. 국민의 정치불신과 양극화 등 사회, 정치, 제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하는 것임
-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가 투표하는 행위가 거래비용 면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높아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되기도 함. 따라서 지난 18대 총선에서 '투표확인증'을 통한 문화시설 할인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낮은 차원의 유인이었음
- 행위에서의 거래비용 측면에서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요구됨

약속

- 전자투표제 도입 등 투표방법의 다양화
- 공공장소 투표소 확대 (버스, 철도, 항공 터미널 등 시민 이동 공간에 투표소 설치)
-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표 인센티브 부여

❺ 사전투표제 확대시행

진단

-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뿐 일반 사기업체의 경우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해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휴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전투표제도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금요일과 토요일)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
- 한국정치학회가 2011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에서 투표하지 못한 사람의 64.1%가 현행법에 따른 투표시간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했으며 투표가 불가능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한 환경을 지적하였음
- 세계적으로 사전투표제는 확대되는 추세. 스웨덴과 덴마크는 선거일 3주 전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일본은 중의원 선거시 사전투표기간 10일, 참의원 선거시 사전투표기간 15일이 주어짐. 미국 대선은 사전투표기간이 평균 14일 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의 기간은 유권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약속

- 투표율 제고와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2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

❻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진단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국회의 의석 유무 및 의석수, 정당추천 여부 등에 의해 정해지며 이러한 게재순위에 따라 선거벽보도 게시됨
- 원내정당이나 원내정당의 후보는 의석수의 순으로, 원외정당이나 원외정당의 후보는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가 결정됨
- 기호순번제에 따르면 기존의 거대 정당이 매 선거마다 앞 순위를 차지하게 되어 거대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5석 이상 원내정당, 직전 선거 3% 이상 득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 사이의 차별로 선거의 공정성에 역행
- 또한 기호순번제는 거대양당에 대한 '묻지마' 1번, 2번 '줄투표'와 유권자의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음.

약속

- 기성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현행 기호순번제를 폐지
- 기호순번제의 대안으로는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하는 기호추첨방식, 투표용지와 선거벽보의 게재순위를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는 순환배열 방식(제6회 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시행), 기호제도 폐지 등이 있음
-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기존 정당에 대한 관성적인 투표가 아니라 정치참여 핵심 제도인 선거에 신중한 참여를 유도

❼ 공무담임권 가로막는 고액 기탁금 제도 개선

진단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한 바율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15% 이상–전액, 10%이상 15% 미만–반액)
- 기탁금 제도의 명분은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확보하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바용의 사전확보 한다는 것임
- 하지만 지난 1972년 제4공화국 때 도입된 현행 고액 기탁금 제도는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포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의 후보자 등록을 어렵게 하여 참정권과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권한을 저해하고 재력의 유무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차별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보통선거를 시행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대다수에서 기탁금제도를 아예 두지 않고 있으며 기탁금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상징적, 명목적인 수준에서 기탁금을 책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의원 1년 봉급의 2%에 해당하는 1,000불의 기탁금을 요구한 선거법도 다액이라 이를 구할 수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출마기회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

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88헌가6)

- 프랑스 역시 과거 상원 200프랑(약 3만8천원), 하원 1,000프랑(약 19만원)의 기탁금마저 문제가 되어 1995년에 폐지한 바 있음
-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도 선거기탁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세계 주요국가의 의회선거 기탁금 제도

국가	기탁금	반환기준
영국(하원)	500파운드(약 87만원)	5%
네덜란드(하원)	(정당별)11,250유로(약 1,555만원)	0.5%
캐나다	1,000달러(약 98만원)	10%
호주상원	2,000달러(약 190만원)	4% (선호투표 1순위 기준)
호주하원	1,000달러(약 95만원)	4% (선호투표 1순위 기준)
뉴질랜드(지역구)	300달러(약 26만원)	5%
뉴질랜드(비례대표)	(정당별)1,000달러(약 87만원)	0.5%
인도상원	10,000루피(약 18만원)	1/6
인도하원	25,000루피(약 45만원)	1/6
말레이시아상원	5,000링깃(약 166만원)	12.5%
말레이시아하원	10,000링깃(약 331만원)	12.5%
터키	7,734리라(약 385만원)	반환하지 않음
홍콩(직접선거)	50,000달러(약 716만원)	3%
홍콩(직능단체별)	25,000달러(약 358만원)	3%
대만	200,000위안(약 719만원)	10%
싱가포르	16,000달러(약 1,364만원)	12.5%
대한민국	1,500만원	15%
일본(중의원)	300만엔(약 2,824만원)	10%

약속

- 공직후보자 기탁금을 현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참정권 확대
- 기탁금 반환 기준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득표시 전액, 5% 이상 10% 미만 득표시 반액으로 완화

4 정치참여 활성화와 참여 민주주의 확대

❶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진단

-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음. 제약이 있다고 해도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현재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 여타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 뿐 만 아니라 기타 정치 활동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주요국 공무원 정치활동 관련 규정, 허용여부와 범위〉

국가	허용여부	허용되는 정치활동
일본	일부제한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서명운동 등 허용
미국	일부제한	정당활동, 단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공직후보 출마 및 선거운동은 제한적 허용(연방, 주별)
독일	정치활동 허용	정당활동과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제한, 공직후보 출마 허용
영국	정치활동 허용	일반공무원 기준 국회의원후보 출마 외 모든 정치활동 허용
프랑스	정치활동 허용	정당활동, 정치자금기부, 공직후보출마, 선거운동 등이 모두 허용
캐나다	정치활동 허용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허용
호주	정치활동 허용	제한 없이 허용, 출마 시 상급자와 협약, 출마 시 공직 사퇴
뉴질랜드	정치활동 허용	제한 없이 허용, 출마 시 미리 통보
핀란드	제한 법률 자체가 없음	제한 없이 허용
스웨덴	제한 법률 자체가 없음	제한 없이 허용
노르웨이	제한 법률 자체가 없음	제한 없이 허용
덴마크	제한 법률 자체가 없음	제한 없이 허용

- 특히 영국, 미국, 일본에서 두고 있는 법적 제한 규정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 공정성을 의미할 뿐이지 정당가입이나 당비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법적 제한이 없다고 봐야함
-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약속

-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전면 보장
-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 허용
- 교원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 출마 허용

❷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조정

진단

-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진 바 있으며,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은 25세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은 만 18세가 되면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의무가 부과되고 공무담임권이 인정되며 청소년 보호법 대상에서도 제외되지만 참정권만은 여전히 부여되지 않음
- 현행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병역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함.
- 참정권만 만19세 이상으로 지정한 것은 오늘날의 청소년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참여에 대한 통로가 무한히 제한되고 있은 것
- 특히 현대에 요구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은 '좋은 시민'이자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지닌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만19세 이상이 되어야만 참정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시대에 부합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어렵게 만들고 청소년들의 권리 저해는 물론 민주주의 후퇴를 조장하는 일이기도 함

●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보장은 현 고령화 시대에서 문제되는 노인과잉대표와 같은 젊은 세대의 과소대표로 인한 세대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 다만 젊은 세대의 과소대표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세계 167개국 중 90%에 달하는 150개국이 18세 또는 그 이하의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18세(또는 16세)가 아닌 나라는 한국 밖에 없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선거권	피선거권
오스트레일리아	18 (17세도 등록가능)	18
오스트리아	16	18 (대통령 35세)
벨기에	18	18
캐나다	18	18 (상원 30)
칠레	18	21 (상원, 대통령 35세)
체코	18	18
덴마크	18	18
에스토니아	18	21 (지방의원 18세, 대통령 40세)
핀란드	18	18
프랑스	18	23세(하원), 30세(상원)
독일	18 (일부 주 16세)	18 (대통령 40세)
그리스	18	18
헝가리	18	18
아이슬란드	18	18
이스라엘	18 (지방선거 17세)	21
이탈리아	18 (상원선거는 25세)	25 (지방의원 18세, 상원 40세, 대통령 50세)
일본	18	25(중의원), 30(참의원)
한국	19	25 (대통령 40)
룩셈부르크	18	21
멕시코	18	21 (상원 25, 대통령 35)
네덜란드	18	18
뉴질랜드	18	18

노르웨이	18 (생일전이라도 가능)	18
폴란드	18	21
포르투갈	18	18
슬로바키아	18	18
슬로베니아	18	18
스페인	18	18
스웨덴	18	18
스위스	18 (지방선거 16세)	18
터키	18	18 (대통령 40)
영국	18	18
미국	18 (일부 주 생일전이라도 예비선거 투표권 부여)	25 (상원 30, 대통령 35)

자료=위키피디아

약속

- 선거권과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 피선거권 연령도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권 연령에 맞추고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40세에서 35세로 하향 조정

❸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진단

- 여성들의 과소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전부터 많은 사회적 호응을 얻어옴
- 현재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여성 50%, 지역구 30%의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지만 실제 정당과 의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
-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 규정은 일종의 강제 조항이긴 하나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시의 벌칙은 지방선거에만 적용될 뿐 국회의원 선거에는 마련되어있지 않음. 또한 지역구 선거 여성할당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무제가 아님

- 법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 정치의 활성화를 이루어 내고 여성의 대표성도 확보해야 할 것.
-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19대 국회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50% 여성할당을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 마련, 지역구 국회의원 30% 여성할당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 다만 국회에서 최소한의 성별 균형이 이뤄지기 위해 여성 정치인의 양적 확대에 관해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공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빈약한 상태
- 결국 선거 시기가 되면 여성정치인을 급하게 '발굴'하려다보니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명망가, 재력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공천되거나 비례대표에서 유리한 순위를 차지했음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성평등이라는 의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후보 추천 시 여성을 30%이상 추천 의무화'만으로는 어려움

약속

- 여성할당제 의무화와 구체적인 벌칙조항 확립

❹ 장애 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진단

- 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언제나 떠오르는 화두임.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은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침해 사례가 수집됨
- 지난해 점자형 선거공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별도로 제작해 제출하거나 일반형 선거공보에 음성 출력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약속

● 장애 특성 맞춘 복합적 방식으로 선거정보 제공

– 시각장애인에게 배포되는 투표안내문은 점자, 확대활자, 바코드, 음성녹음 CD까지 함께 제공. 비장애인들이 활자로 된 선거공보와 라디오, TV,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것을 고르듯이 장애인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❺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국민투표 활성화

진단

● 우리나라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어 확정되도록 필수적 국민투표를 채택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는 여섯 번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됨

〈역대 국민투표 시행 사례〉

시행일	투표율	찬성률	사유
1962년 12월 17일 (월)	85.3%	78.8%	헌법 개정
1969년 10월 17일 (금)	77.1%	65.1%	헌법 개정
1972년 11월 21일 (화)	91.9%	91.5%	헌법 개정
1975년 2월 12일 (수)	79.8%	73.1%	헌법 개정 및 정부 신임
1980년 10월 22일 (수)	96.9%	91.6%	헌법 개정
1987년 10월 27일 (화)	78.2%	93.1%	법 개정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 지금까지 시행된 국민투표는 순수한 국민투표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 마지막 6차 국민투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로써 이전의 국민투표와는 다르게 가장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후로 국민투표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음. 다시 말

해 국민투표는 헌법상의 권리이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이 자금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였으며 그 권리 또한 헌법상에서 잠자는 권리로 존재함

-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민투표 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헌법개정' 해석의 문제와 독점적인 '대통령 부의'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특히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로써의 국민투표가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만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투표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민은 어느 때이건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싶을 때 대표자에게 위임된 결정권을 철회하고 직접 국민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권리를 내포하는 것임

〈외국의 국민투표 제도 현황〉

스위스	미국	독일
- 연방헌법 제 136조 제2항을 통해 연방 차원의 국민투표를 헌법상 제도로 보장하고 있음. - 의무적 국민투표 (헌법개정)와 선택적 국민투표 (일반법률)가 있음. - 의회가 제안한 법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서 결정됨. -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들을 모두 공개 토론과 국민투표로 결정함.	- 연방헌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투표, 정책 국민투표 등의 제도는 주(州)헌법에 명시되어있음. - 국민투표는 보통 총선거 투표용지에 포함하여 실시. 세율인상 등 중요안건의 경우 헌법은 의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민투표를 의무화하는 주(州)도 있음. - 공기업 설립, 지방정부의 자치헌장 제정 및 개정, 지방채 발행 시 국민투표를 실시함.	- 국민투표는 1997년 자르란트 주를 마지막으로 3개의 도시주를 제외한 13개의 모든 주에서 제도화됨. - 일반적으로 국민청구에 근거하여 국민투표를 실시. - 일부 주에서는 의회의 발의에 의한 국민투표를 인정함. - 국민투표에 붙여지는 질문서는 발기인의 안이 그대로 사용되며, 의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 또한 국민청구와 관련한 의안의 의회가 부결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민에게 제시해야함.

- 스위스, 미국, 독일 이외에도 영국에서의 선거제도 개편안 국민투표(2011년 5월), 덴마크의 유럽경제통화동맹 가입 국민투표(2000년 9월), 폴란드 EU가입 국민투표(2003년 6월), 아이슬란드 정부 보증 빚상환 국민투표(2011면 4월)처럼 이미 많은 나라에서 국민투표는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영국에서는 EU탈퇴 여부를 2016년에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우리나라를 외국사례와 비교할 때 국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위로부터의 제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만 표명할 수 있는 수동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민주적 참여의 절차와 통로의 개방과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에 의한 정부로 변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

약속

- 주요 조약의 체결, 파병, 기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 의무화
- 국회 또는 일정수의 국민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허용(헌법 개정)

29

정부행정 공약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개혁하겠습니다. 부패비리와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1. 투명한 정부

❶ 부정부패 원천 차단, 「김영란법」 강화
❷ 사리사욕 없는 공직수행,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 도입
❸ 국민 세금 낭비 방지,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축소

2. 책임지는 정부

❶ 질 좋은 규제확립,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개혁 평가위원회'로
❷ 시장실패 책임지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으로 공공성 회복
❸ 제 식구 감싸기 차단, '감사원'을 국회로

1 투명한 정부

❶ 부정부패 원천 차단, 「김영란법」 강화

진단

-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개혁하고자 정부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임용제 확대 등을 포함한 민-관 인사교류를 가속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관료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정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민-관 유착관계, 이른바 '관피아'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반드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제도가 전제되어야 함
- 지난해 3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은 기존에 비해 보다 강화된 조항들을 도입했지만, 원안에 비해 상당부분 후퇴했음. 반면 서울시는 보다 강력한 제도를 도입함. 공무원의 부정부패 관련 조항을 보다 강화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 전문성 증대가 민관유착으로 귀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약속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음 네 가지를 추가 도입
  - 1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직무 관련성' 적용 폐지
  - 부정청탁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기본으로 두고, 예외사유를 적용
  - 적용대상은 현행 '공직자와 배우자'에서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
  - 처벌조항 강화(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및 징벌적 몰수제도 도입)

❷ 사리사욕 없는 공직수행,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 도입

진단

- 지난해년 3월 이른바 '김영란 법'이 통과되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관리감독 및 처벌은 보다 강화됐으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에 관한 부분이 배제됨으로써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구조 개혁에는 실패했음
- 이해관계 충돌이란, 장관의 자기 자녀 특채 고용 등을 포함해 공직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 하는데 있어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감독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는 UN 반부패협약, OECD 가이드라인,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 된 사항이며,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함.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충돌 방지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공무가 사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함

약속

- '투명한 공직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의무 사이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즉시 중지
  - 공직자 취임 시 뿐만 아니라 매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 각 부처에 이해관계 충돌 심사관을 도입하여 이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제정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을 조사하며,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❸ 국민 세금 낭비 방지,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축소

진단

● 2015년 8월 임시국회에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제기됐음. 무엇보다 국정원의 불법 민간 사찰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약 4,70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됐음. 특수활동비의 경우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배정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통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움. 이로써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기가 용이함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단위: 억 원)

	2014년도	2015년도(안)
국가정보원	4,712	4,802
국방부	1,779	1,794
경찰청	1,233	1,264
법무부	269	279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147	149
대통령 경호실	119	119
해양경찰청	106	110
국회	84	84
미래창조과학부	75	78
국세청	54	54
감사원	39	39
통일부	18	19
총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	12
외교부	11	10
관세청	7	7
국민권익위	5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8	0.8
공정거래위	0.5	0.4
합 계	8,671.3	8,826.2

자료 : 이춘석의원실 보도자료, 「특수활동비 내년에도 또 는다」, (2015.11.7.)

- 2015년 기준 19개 부처 및 기관에 약 8,800억 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편성됐으며, 이중 국정원이 약 4,800억 원으로 가장 많음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주로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금, 정보 활동비, 정보원 관리비 등에 주로 쓰임. 따라서 법적으로 편성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집행 후에도 그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예산임. 특수활동비의 목적상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문제가 됨
- 실제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련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때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여 문제가 된바 있음. 즉,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 등 일반적인 회계 처리가 일부 또는 전부 필요하지 않아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지만, 경비의 총액만 알 수 있을 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정보위 의원들도 알 수 없음
- 2006년 9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해 4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감사를 실시했는데, 상당 부문이 유관 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등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했으며, 구체적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어 확인조차 불가능 한 경우가 있었음
- 또한 2008년 국회는 결산 심의과정에서 특수활동비는 일체의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특수활동비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방법이 부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각 중앙 부처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한 바 있음

약속

- 특수활동비로 지출할 수 있는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
  - 국회가 부처별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평가후 특수활동비 배정 부처 및 규모 조정
- 특수활동비 사후결산제도를 도입하여, 5년 혹은 10년이 지난 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통제장치 마련

2 책임지는 정부

❶ 질 좋은 규제확립,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개혁 평가위원회'로

진단

-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16년 만에 대폭 손질하여,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 개정, 13개 조문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음. 핵심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이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하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규제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현재 지자체와 각 정부부처는 규제총량을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음. 특히, 국토부는 장관의 적극 지시 하에 규제총량을 줄이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음. 건설사 실무진들과의 회담을 통해 등록 규제 약 2,800건을 총점 5만 5000점으로 정하고, 3년 내로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점수가 큰 덩어리 규제를 줄이고자,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그린벨트 내의 용도변경 범위를 90여 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동식물 관련 행위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을 완화시킴. 또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를 경제규제로 분류 해 이를 규제완화 대상으로 설정했음. 국토부의 그린벨트 등의 규제완화는 바로 규제 총량을 빠른 속도로 줄이기 위한 결과이며 성과 중심의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규제의 질적 평가를 배제한 채 총량 중심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제2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우려됨. 따라서, 규제개혁은 무조건적인 양적 축소가 아니라 비효율성은 제거하되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적 평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개혁이

필수적임

- 현재 우리나라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규제의 신설,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회,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음. 중앙정부기관은 이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기관의 최종판단이 된다고 할 수 있음. 즉,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 규제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만이 민간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은 기재부장관, 행자부 장관, 산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에 한정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임. 즉, 위원구성이 경제계에 편중돼 있고, 환경, 노동, 사회안전망 등에 관한 대표성이 배제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대통령만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을 국회추천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함. 또한 현재 정부 측 위원 기재부, 행자부, 산통부 장관으로 한정된 것을 최소한 환경, 안전, 복지, 노동, 여성의 고려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여성가족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

약속

-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개혁평가위원회'로 명칭 변경
- 대통령만이 추천할 수 있는 민간위원을 국회 추천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기재부, 행자부, 산업통상부 장관만 참여하는 중앙정부부처 위원을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여하도록 변경

❷ 시장실패 책임지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으로 공공성 회복

진단

●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무엇보다 공공성 및 책임성의 확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 304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음

[주요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감 원인] (단위: 조원, %)

구 분	2007	2011	증감액	금융부채 증감원인				
				정부정책사업	공공요금	자체사업	해외사업	기타(회계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40.9	89.8	48.9	29.3	0.0	19.6	0.0	0.0
한국전력공사	14.6	31.1	16.5	0.0	8.0	5.9	1.4	1.2
한국가스공사	7.2	23.1	15.9	0.0	5.7	5.0	2.0	3.2
한국도로공사	16.4	23.2	6.8	3.6	1.3	1.9	0.0	0.0
한국석유공사	3.0	11.9	8.9	0.0	0.0	-1.9	8.8	2.0
한국철도공사	5.0	11.0	6.0	1.3	1.6	1.0	0.0	2.1
한국수자원공사	1.0	11.3	10.3	8.5	0.5	1.3	0.0	0.0
한국광물자원공사	0.4	2.0	1.6	0.0	0.0	0.5	0.6	0.5
대한석탄공사	1.1	1.4	0.3	0.2	0.0	0.1	0.0	0.0
합계	89.6	204.8	115.2	42.9	17.0	33.4	12.8	9.0
(비중)			(100.0)	(37.2)	(14.8)	(29.0)	(11.1)	(7.9)

자료: 감사원,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 실태」, 2013.5.

●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 및 과도한 부채, 그리고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관피아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한 바 있음. 특히 토지, 전력, 철도, 수자원, 항만 등 우리나라 핵심 자원을 다루는 공공기관 들이 2012년 기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기관으로 파악됐음

●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함. 가령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9년 3.0조원에서 2012년 13.8조원으로, 부채비율은 29.1%에

서 122.6%로 급격히 증가했음. 주요 원인은 동기간 4대강과 관련한 약 10조원을 대부분 금융부채로 조달했기 때문임

-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정권의 영향력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인사에도 동일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감사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와 각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감사 제도를 개혁해야 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문제점과 개혁방안]

-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동안 주무부처별로 다기화 되어 있던 공공기관 소유권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공운위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이는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만들어짐
- 하지만, 공운위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기재부 장관 추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공공기관의 경영감독기능은 기재부 및 공운위가, 사업감독기능은 주무부처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 돼 있음. 하지만 동 법률은 경영감독 기능과 사업감독 기능의 목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시 하지 않아, 주무부처의 정책에 의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시, 이를 사전에 감독통제 할 수 있는 기재부의 제도적 수단이 미흡한 실정. 또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기재부의 경영감독 수행에 본질적 한계가 존재함. 또한 공운위는 최종심의·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감독권이 부재 해, 의사결정기구로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운위 민간위원의 구성요건을 개혁해야 함
- 이를 위해, 현재 기재부 장관이 전원 추천하는 민간위원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을 포함시켜야 함. 또한 국회 추천 민간위원에 노동 및 시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여 공운위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전체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아가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결정하되 경영감독기능은 공운위

가 전담하도록 하고, 공운위 위원장을 현행 기재부 장관에서 민간위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공공기관 이사회 및 내부지배구조 개혁]

-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경영감시와 전략적 지도 기능을 공기업 이사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과 역량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며, 2008년에서 2012년 동안 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안건 중 기각된 안건이 거의 없음
- 결국, 공공기관 내부의 경우, '관피아' 등의 문제로 인해 공공기관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경영감시 및 통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내부 직원의 비리 및 복리후생의 문제, 역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 인사 전반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확립하고 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감독에 관한 체계개혁이 실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내부관리감독을 위한 이사회의 독립성 및 인사제도 개편이 요청됨
- OECD가 2015년에 새롭게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기업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분리를 권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이사 추천권한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임명권은 기재부 장관에게 있음
- 하지만 임추위 위원은 당해 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자인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구조임. 또한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장 및 비상임이사의 제청 또는 임명권을 가짐에 따라 주무부처가 임원 선임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더욱이 현재 공운법은 임추위가 이사회 후보를 추천할 때 그 자격요건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무엇보다 이사 자격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해당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

한 구체적인 자격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의 지역여론과 직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자 및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 위원으로 임명토록 해야 함

- 한편,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음. 따라서 본 공공기관 역시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겸임을 금지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

[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표결 현황]

기관명	2008~2012 이사회 표결 현황			
	안건 수	반대표가 제시된 안건 수	수정가결된 안건 수	기각된 안건 수
한국가스공사	268	-	23	-
한국석유공사	198	28	20	1
한국전력공사	242	6	13	3
한국지역난방공사	201	29	26	-
한국중부발전(주)	189	2	18	2
한국수력원자력(주)	200	1	11	-
한국서부발전(주)	168	1	6	1
한국동부발전(주)	157	6	4	4
한국남부발전(주)	59	-	22	-
한국남동발전(주)	167	13	8	-
인천국제공항공사	249	-	16	-
한국공항공사	124	4	26	-
부산항만공사	137	17	26	13
인천항만고사	125	4	37	-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약속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현행 기재부 장관만이 추천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을 국회에도 추천권 부여
- 공공기관 이사회의 이사 자격을 구체화하고 해당 지역 및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를 임명
-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겸임 금지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❸ 제 식구 감싸기 차단, '감사원'을 국회로

진단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헌법상의 기구임. 현행 헌법은 제 97조에서 감사원의 권한과 지위를 규정하고, 제 98조에서 감사원의 구성, 제 99조에서 감사원의 의무, 제 100조에서 감사원법의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이 때문에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이 아님, 그리고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과 조직,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있으며, 국가활동, 특히 재정의 효율적이며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및 건전한 국가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 현행 헌법 및 법률에 의하면,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문화상 조직상의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 이명박정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양건 감사원장 중도 사퇴 및 사업에 대한 부실 감사, 세월호 특별감사, 자원외교 감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의 독립성, 신뢰성 문제가 있었음.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에 대한 표적 감사와 같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감사권 남용의 문제, '중요감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수시 보고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 또한 감사원은 국가재정에 대한 감사 및 통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감사원 업무에 법규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직무감찰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즉 감사원이 회계감사 및 이와 관련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업무에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업무범위는 감사원의 구성을 정부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할 때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현행 감사위원의 자격도 고위공무원, 판검사 등 법조인으로 매우 협소하고, 임명절차 역시 최소한의 검증 없이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이 근원적으로 훼손되고 있음

약속

-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권한 조정으로 전문성 강화
- 감사원의 직무감찰 업무를 폐지하고 성과감사(재정감사 및 통제) 중심으로 재편
- 감사위원의 자격을 다양화하여 감사 전문가가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
-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4년 중임제에서 최소 6년 이상으로 변경함

30

사법 공약

사법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1987년 이후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진행되어 온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민주화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대법관부터 판사에 이르는 법원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감시와 민주적 통제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의 관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으로부터 특별검사 상설기구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설치 및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1. 사법부 민주화
2.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
3. 사법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군사법제도
4. 국민을 위한 변호사 시험제도 개편

만인 앞에 평등한 사법

1. 사법부 민주화

❶ 대법관 자격 및 임명 절차 개혁
❷ 관료화·서열화 판사인사제도 개혁
❸ 헌법재판관 구성 및 지명절차 개혁

2.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

❶ 특별검사 상설화, 기구특별검사제 도입
❷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특별감찰관제도 폐지
❸ 대통령 직속 검찰청 설치, 검찰총장 국회 제청

3. 사법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군사법제도 개혁

❶ 평시 군사법원 폐지
❷ 관할관 확인조치권·심판관제도 폐지
❸ 군검찰 개혁

4. 국민을 위한 변호사 시험제도 개편

❶ 사법시험제도 폐지, 로스쿨 준칙주의 및 예비시험제도 도입

1 사법부 민주화

❶ 대법관 자격 및 임명절차 개혁

진단

-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에 따라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임. 따라서 대법관은 법률 전문성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용절차를 보면, 헌법 제104조 제1항과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및 비당연직 3명(여성 1명을 포함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전문가)임. 그런데, 이러한 추천위원회 구조는 사실상 대법원장만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추천하게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때문에 대법원 구성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추천위원회의 부실 검증 등의 문제가 있음
-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용자격은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는 대법관이 될 수 없음. 이에 따라 서열과 출신에 따라 대법관이 구성되어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 및 변화하는 시민들의 가치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초적인 한계가 있음

약속

-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추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법관 추천권을 국회를 포함 법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추천방식을 개편하며, 대법관추천위원회 역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 법률가가 아닌 법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인원을 법률에 규정

❷ 관료화 · 서열화 판사인사제도 개혁

진단

-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고 규정하여 법관의 독립성보장을 통한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조직 및 구성, 특히 법관인사 제도는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눈치보기만을 유발하고 있음
- 법관은 헌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재임명제도에 따라 10년에 1번씩 재임명을 받게 되어 있음. 이러한 법관의 재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고, 연임불가 사유를 3가지(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 근무성적, 품위)로 들고 있음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성적’ 문제로 ‘사건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평정 요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그리고 절차 역시 연임 부적격인 경우 회의 출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 내지 자료제출 기회가 있으나, 인사평가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없음. 결국 현행 판사인사제도는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되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상의 독립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약속

-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법관 인사권을 고등법원 등으로 분산시킴
  - 법관 연임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인사평가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신설함

❸ 헌법재판관 구성 및 지명 절차 개혁

진단

- 헌법 제11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 3인씩 지명)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리고 헌법재판관 자격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판사, 검사 및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는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음. 특히 '탄핵 및 정당해산 심판'과 같은 정치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및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다양성 존중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와 법의 정의가 실현될 것임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통합진보당 해산'과 같은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과 개선의 요청이 있음. 또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판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이 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며, 1대부터 5대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출신, 현 헌법재판소장은 검사출신임
- 헌법재판관 구성 방식 역시 문제가 있음.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있음. 그런데 임명직 공무원인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

명하는 것 역시 헌법을 대상으로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 그리고 대통령 및 국회 여당 지명권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은 공식적인 검증 및 심사 절차 없이 지명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동의없이 임명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에 걸맞는 법률 전문가보다 정치 및 사법권력에 밀착된 법률 전문가가 지명될 수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반영하여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됨

약속

-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
  - 헌법재판관 임명 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
  -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개선함.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폐지하고,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은 축소하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확대함
  -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가 다양한 사회의 이해와 가치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함
  - 판검사 출신 헌법재판관 인원을 제한하고, 법학 교수 등 법전문가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개혁

❶ 특별검사 상설화, 기구특별검사제 도입

진단

- 2014년 3월 특정범죄의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등에 있어 검찰과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을 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상설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임명절차,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등 수 많은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논쟁이 지속되었음
- 법제정 당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은 법제정 이후 발생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통하여 현행 특검법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냄. 여당인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후 현행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특검법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한계로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절차, 즉 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 권력형 비리인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문무일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지만,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증인회유 정황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이완구 전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과 공소시효지남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됨
- '성완종리스트 사건'에서 확인되었듯, 현행 특검법은 검찰과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권을 지닌 특별검사를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도입이 불가피함

약속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현행 ‘제도특검제도’를 폐지하고 상설기구로 특별검사를 임명, 운영하는 ‘기구특검제도’를 도입함
  - 수사대상에 대통령과 친인척, 국무총리 등 장관, 장관급 장성, 대통령비서실 등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감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요청 사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청한 사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발 사건 등 포함
  - 현행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국회와 법조계 중심으로 구성하며, 국회에서 인사청회를 거친 후보자 1인을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❷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특별감찰관제도 폐지

진단

-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75개 국가 중 43위,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27위인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2011년과 2012년 43위, 2013년 46위로, 공무원의 부패척결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또한 대통령친인척,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높지 않음. 이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등 검찰권력을 제어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기도 함
-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신 대통령 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도’를 제시하였고, 제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2015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듯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단 한건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음. 이는 특별감찰관제도의 태생적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약속

- 특별감찰관법 폐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률 제정
  -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검찰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며, 현행 특별감찰관제도는 폐지함
  - 수사 대상은 특별검사제도의 수사대상이 아닌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 간부(2급 내지 3급 이상) 및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으로 하며, 수사 과정에서 특별검사제도 수사 대상이 연루된 사건은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인계함

❸ 대통령 직속 검찰청 설치 및 검찰총장 국회 제청

진단

-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임명은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중 1명을 제청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의결 및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더구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친자 사건'에서 확인되듯이,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조차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 전체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커녕 통제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검찰조직의 정치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약속

- 검찰청을 법무부와 분리시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함
- 국회에 검찰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천위원회가 3인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등을 거쳐 국회에서 1인의 검찰총장을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3 사법정의와 원칙을 실현하는 군사법제도 개혁

❶ 평시 군사법원 폐지

진단

- 현재 군사법원은 고등법원 1개, 보통군사법원 83개(육군 49개, 해군 14개, 공군 19개)가 설치되어 있음. 그리고 2014년 기준 군판사는 현원 기준 총 46명으로 보통군사법원 1개당 0.5명의 군판사가 근무하고 있음. 군사법원법 상 보통군사법원은 1인 혹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법원은 상설기구가 아니라 재판부가 구성될 때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방식임. 따라서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음
- 2011년 이후 군 검찰에 입건된 범죄사건은 총 27,499건이었으며, 그 중 기소 사건은 41.7%에 해당하는 11,460건이었음. 2013년 이후에는 매년 6천 건 이상, 1일 평균 16건이 넘는 범죄사고가 발생하였음. 범죄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형법' 사건 5,075건(18.5%), '교통범죄' 6,946건(25.3%), '폭력범죄' 6828건(24.8%), '성범죄' 1,598건(5.8%), '기타형법' 3,640건(13.2%) 등으로 나타남. 결국 군사기밀범죄 등을 포함하더라도 순정 군사범죄는 전체 범죄의 20%가 되지 않음
- 사병 범죄 대부분이 구타, 가혹행위 등 사실상 비군사적 성격의 범죄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범죄사건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다면 일반 법원에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 사건들임. 또한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 경력을 보면 2014년 기준 '단기복무자'가 전체 군판사의 61.7%일뿐만 아니라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재판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 그리고 군판사 임용 전 군검찰관 혹은 법무장교 등으로 근무하는 등 독립성 문제가 있고, 각 군별 군판사 담당 사건 수의 불균등의 문제가 있음

약속

- 군사법원법 폐지, 전시 · 해외파병 등 군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평시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헌법이 정한 특별법원으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전시나 해외파병 등의 경우에 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법원칙의 실현을 통하여 사법 정의가 군사법제도에 관철되도록 함

❷ 관할관 확인조치권 · 심판관제도 폐지

진단

- 현행 군사법제도 상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지휘관인 관할관은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형의 판결에 대한 형의 확인과 함께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가지고 있음
-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을 변경하는 행위로, 사실상 3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임. 또한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 대상 범죄는 대부분 교통, 폭력 등 임무수행과 무관하고, 감형 대상 역시 장교 중심으로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사되어 군사법원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등 사법정의와 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임. 따라서 관할관확인조치권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함. 다만, 징병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건, 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는 장병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할 수 있는 '감형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군사법제도 상 군사법원은 군판사 외에 장교 중에서 법에 관한 소양이 있고,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을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관으로 포함시키고 있음. 심판관제도는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재판을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심판관을 임명한 지휘관의 개입을 방지할 수 없어 재판의 독립성 · 공정성을 훼손하며,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등 사법정의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제도임

약속

- 군사법원법 폐지, 전시·해외파병 등 군사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지휘관의 감형건의권' 조항 포함
  - 전시·해외파병 등 상황과 상관없이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폐지하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감형을 건의할 수 있는 '감형건의권' 부여
  - 전시·해외파병 등 군사법원이 설치되더라도, 지휘관이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를 폐지하여, 군인이더라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도록 함

❸ 군검찰 개혁

진단

- 2011년 이후 군 검찰에 입건된 범죄사건은 총 27,499건이었으며, 그 중 기소 사건은 41.7%에 해당하는 11,460건이었음. 2013년 이후에는 매년 6천건 이상, 1일 평균 16건이 넘는 범죄사고가 발생하였음. 범죄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형법' 사건 5,075건(18.5%), '교통범죄' 6,946건(25.3%), '폭력범죄' 6828건(24.8%), '성범죄' 1,598건(5.8%), '기타형법' 3,640건(13.2%) 등으로 나타남. 결국 군사기밀범죄 등을 포함하더라도 순정 군사범죄는 전체 범죄의 20%가 되지 않음
- 범죄사건의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범죄사건 중 기소사건은 41.7%인 11,460건이었음.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 27.4%, '성범죄' 42.9%, '군형법' 사건 44.1% 등으로 나타남. 또한 신분별로 보면 장교의 '폭력범죄, 성범죄' 기소비율이 사병이나 부사관보다 낮아,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을 통해 '군기강 확립'이라는 군검찰의 소명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군검찰 조직은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설치되었으나, 평시 군사법원이 폐지될 경우 현재와 같은 조직체계를 필요로 하지 않음. 그리고 순정군사범죄만을 처리할 경우 군검찰이 처리할 사건은 연 1,000여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군검찰 조직은 축소되어야 함

약속

● 군검찰청법 제정

- 군검찰 관할 사건을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순정군사범죄로 함.
- 현재의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검찰 조직을 폐지하고 5~6개의 광역검찰단으로 재편하고, 국방부에 고등검찰단 1개를 설치함

4 국민을 위한 변호사 시험제도 개편

❶ 사법시험제도 폐지, 로스쿨 준칙주의 및 예비시험제도 도입, 변호사 시험 강화

진단

● 2017년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앞두고 로스쿨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

● 로스쿨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기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실시되고 있음.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제도가 법조계의 배타적 독점으로 인한 권력화 현상, 인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 소모적인 현상과 함께 사법시험 낙오생 등 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로스쿨제도는 과다한 수업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한 특수층 진학, 선발과정에서의 나이, 학력 등의 차별 문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률 전문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음

●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의 장단점이 있으나, 대학교육의 정상화,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권 보장,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 전문가 양성 등의 취지

에서 볼 때 로스쿨제도의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과제임. 높은 수업료와 입학 과정의 문제는 인가주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인가주의를 준칙주의(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승인)로 변경함으로써 로스쿨 입학 기회 확대와 수업료 인하를 유도하고, 또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고서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운영함. 그리고 변호사 시험제도를 강화하여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법률 전문성을 높이도록 함

약속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
  - 로스쿨 인가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를 도입하며, 로스쿨 미입학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예비시험제도를 운영함
  - 변호사 시험제도 개선으로 능력있는 변호사 양성과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

31

지방자치 공약

텅 빈 지방재정부터 채우겠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한다는 대원칙에 충실한 지방자치개혁을 이룰 것입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자율권을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 관계가 되고,
자치를 과감히 확대하고 주민의 참여의 폭은 넓힐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1.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실현
2.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 관계 구축
3. 과감한 지방분권
4. 지방자치 활성화
5. 주민참여 확대

자치와 균형의 미래전환

1.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실현

❶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 국가책임제
❷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역경제 연계 강화
❸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금지
❹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❺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❻ 특별교부세 폐지, 재난안전교부세 증액

2.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 관계 구축

❶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❷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강화
❸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제도 폐지

3. 과감한 지방분권

❶ 사무이양 및 자치행정권 확대
❷ 자치인사·조직권 강화
❸ 자치입법권 강화
❹ 자치경찰제 도입

4. 지방자치 활성화

❶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로 예산낭비 근절
❷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❸ 인사청문회 도입·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❹ 지방의회 역량 강화

5. 주민참여 확대

❶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요건완화
❷ 주민참여 활성화
❸ 읍·면·동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1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실현

❶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 국가책임제

진단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되고 있음
- 2008~2015년 사회복지사업의 대응지방비 규모는 시·도비와 시·군·구비를 합해 2008년 10조1300억원에서 2015년 20조249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지방교부세는 2008년 31조9159억원(최종분 기준)에서 2015년 34조8880억원(당초분 기준)으로 9.3% 증가에 그침
-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비중은 2008년 자체사업이 57.4%, 보조사업이 42.6%였으나 2013년부터 보조사업 비중(52.0%)이 자체사업(48.0%)을 앞질러 2015년 보조사업이 58.1%, 자체사업이 41.9%로 역전되었음
-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부담이 가장 큰 5대 사회복지사업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가정양육수당이며 2014년 기준 이들 사업의 지방비 부담 규모는 6조4463억원에 달함

<5대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2014년)>

(단위: 억원, %)

	계	국비	지방비	지방부담율
기초연금급여	69,491	51,771	17,720	25.5
영유아보육료	84,729	33,292	17,227	60.7
의료급여	58,452	44,312	14,140	24.2
기초생활보장급여	42,505	33,847	8,658	20.4
가정양육수당	18,871	12,153	6,718	35.6
합계	274,048	175,375	64,463	23.5

자료-=보건복지 데이터 포털_'사회보장통계'

● 이들 사회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보장 성격의 현금급여이거나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임. 따라서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

약속

●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충당

● 2015년 기준 2055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 구조조정을 통해 도로 및 관광자원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인하하여 지역 재정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 5대 사회복지사업의 중앙정부 부담을 100%로 할 경우 지방비 부담 총 6조5천억원 감소 효과 발생

❷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역경제 연계 강화

진단

●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로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비교해 전혀 변하지 않았음

● 복지사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가 많아졌으나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매우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5.1%(당초예산 기준)로 떨어졌으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243개 지자체 가운데 126개 단체에 달함

● 이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말뿐이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연락소' 정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 현재 지방소비세 전환률은 부가가치세의 11%로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보전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 역시 독립세화라는 의미 외에 지방세수 확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지방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경제성장 노력이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약속

●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배분기준에 지역 토착적 매출액을 소비지표로 포함시켜, 지역의 매출신장이 지방소비세수 증대로 이어지게 함

● 지역경제 연계효과가 높고 각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역개발세 및 지역관광세 등 신규세원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 과세권 부여

❸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금지

진단

● 2013년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총액은 약 16조759억원으로 감면율은 23.0%에 달함. 이는 전년도보다 6473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감면율도 0.8%포인트 늘어났음. 이는 2014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총부채 약 28조원을 2년이면 모두 갚을 수 있는 규모임

●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비과세 · 감면은 0.55%에 그쳤고 나머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한 비과세 · 감면이었음

● 이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취득세 · 등록세 감면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이 남발된 결과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한정하고 감면총량제 실시, 중과세 배제 등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율을 국세 수준(14%)으로 낮추겠다며 정비를 추진중이나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지방세를 건드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음

약속

- 지방세 비과세·감면시 재원보전대책 마련 및 사전협의 의무화
- 지방세 감면 조례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지방의회에 의한 감시와 통제 강화

❹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진단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현행 19.24%로 조정된 2006년 이후 10년 동안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율은 변하지 않고 있음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는 73.45%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이 줄어들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만 처리하는 지방행정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약속

- 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단계적으로 5%p 인상하여 24.24%로 확대

❺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진단

-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 보통교부세는 시·군과 같이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합산해 산정한 후 이를 특별시와 광역시에 일괄적으로 교부하고 있음(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 자치구의 경우 시·군과 달리 도로·상하수도·도시계획 등의 사무를 특별시와 광역시가 직접 처리하고 지방세 세목도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해왔음
- 하지만 보통교부세가 처음 도입될 때와 달리 자치구의 재정지출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즉 과거 개발시기에는 도시개발의 중복 방지를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를 비롯해 자치구 재정지출이 '개발'이 아니라 '복지'로 바뀌었음
- 2014년 자치구 총계 예산 기준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은 50.9%로 일반시의 26%, 군의 18%에 비해 자치구의 재정압박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줌
- 현행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중심의 자치구 재정조정제도는 이런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대 전환이 필요함

약속

-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도 일반 시·군과 같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도록 하여 자치구의 재정소요 반영률을 높여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지방교부세법 개정)
-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세 세목 조정도 추진

❻ 특별교부세 폐지, 재난안전교부세 증액

진단

-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3%로 2016 회계연도 정부 제출 예산안 기준 1조292억원에 달함
-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집행하는 △지역현안특별교부세(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가 재원의 40%를 차지하고 △국가시책특별교부세(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가 재원의 10%를 차지하며 △국민안전처에서 집행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가 재원의 50%를 차지함
- 이 가운데 국가시책특별교부세와 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정부는 특별교부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가의 보도처럼 특별교부세 삭감을 들고 나왔음.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의식해 경쟁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자기 지역구에 끌어오는 행태를 반복해왔음

약속

- 지자체 길들이기에 활용되고 중앙정부와 국회의원의 짬짜미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특별교부세 폐지
- 특별교부세를 재난 · 안전관리교부세로 명칭 변경하고 지역현안특별교부세와 국가시책특별교부세 근거 삭제. 재난안전 복구 및 대비 재원 증액(올해 예산 기준 5146억원에서 6861억원으로 증액 효과)

2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 관계 구축

❶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진단

-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 · 종속적인 상하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현재 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시 · 도 · 특별자치시 · 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협조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전달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시 · 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정도의 권한만 갖고 있으며 이마저도 중앙정부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임

약속

- 지방 4대 협의체가 참가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제도화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지방 4대 협의체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상설기구화(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협력회의는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 정책의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심의

●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에 거부권 부여

- 협력회의 안건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거부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의 정책 집행시 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❷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강화

진단

●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분담 등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의조차 안 열리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임

●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논란 등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을 압박 및 악화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총 지출 중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2005년 14.5%에서 2015년 31.1%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재정압박이 되어 왔음. 특히, 자치구의 복지비 비중은 2005년 26.9%에서 2014년 50.9%로 복지비 자출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장 심각한 상황임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 비중은 2008년 35%에서 2012년 39%로 매년 1%p씩 증가함

약속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의장 공동체제로 하고, 광역·기초단체장 협의체 현행 1인에서 3인으로, 광역·기초의회의장 협의체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늘려 총 10인으로 위원 구성.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 개최하도록 함. →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개정

●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및 국고보조사업 시행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의견수렴 등 협의절차를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개진권 강화 → 지방재정법 제26조, 제27조 개정

❸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 조정제도 폐지

진단

- 최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 조정제도가 지자체 복지 축소와 지방정부 자율권을 후퇴시키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 조정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신설 ·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려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도 불수용 통보를 하는 등 이 제도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가 여건과 특색에 맞춰 자체 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음
-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체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와 정부의 지방분권화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음
- 더구나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자체사업이나 지역특성을 살린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정비 · 조정을 압박하고 있음
- 이렇게 하다가는 복지후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업만 전달하는 통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약속

-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 조정제도 폐지(사회보장기본법 개정)
- 사회보장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복지사업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재편
- 일방적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 추진 중단

3 과감한 지방분권

❶ 사무이양 및 자치행정권 확대

진단

- 역대 정권별 사무이양 완료 실적을 보면, 김대중 정부 약 860여 건, 노무현 정부 약 980여 건, 이명박 정부 약 530여건으로, 노무현 정부까지 사무이양 노력이 가속화 되다, 이명박 정부에 잠깐 주춤했음. 그러나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의 사무이양 확정 및 완료 실적은 현재 0건으로, 사실상 정부 사무이양 작업은 중단된 상황임
-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바율은 김대중 정부 이후 7:3 구조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 자치사무 바율은 노무현 정부에 57.9%까지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에 63.5%까지 증대하였음
- 김대중 정부 이후 자치행정권 강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감독 및 조사권, 제재 및 취소지시권, 사전승인권 등의 세부 권한이 변화하지 않았음
- 이명박 정부에 해당 사무 감사 전 법령 위반여부 의무확인제가 도입됐는데 이는 자치행정권을 후퇴시키는 제도임

약속

-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바율을 7:3에서 6:4로, 자치사무 바율을 63.5%에서 75% 이상으로 단계적 증대함
- 중앙정부의 자치사무 조사권, 취소 지시권, 사전 승인권 폐지

❷ 자치인사 · 조직권 강화

진단

- 노무현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도입, 한시기구 설치권 이양, 기구 · 정원 승인권 폐지 · 이양, 이명박 정부의 기구 · 정원 운영 자율화, 지방공무원 훈련권, 시군구 협의승인권 이양 등을 통해 자치인사 · 조직권이 확대되어 왔음
- 박근혜 정부의 경우 인구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과 직무 난이도에 맞게 기구 · 직급을 설치 · 책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치인사 · 조직권 강화 노력이 지난 정부보다 미흡한 상황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 중 1명은 반드시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에 국가직 공무원을 임용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은 일반직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아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고자 할 때 갈등이 발생함
- 인건비 추가 자율운영기준 인건비 3%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구 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음

약속

- 기준인건비 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 이양
-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할 경우 부단체장에 비일반직 공무원 출신 인사 임용권 부여
-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기획조정실장 직급을 각각 차관급, 차관보급으로 격상함
- 서울시외 광역지자체 실 · 국장 직급을 현행 3급에서 1~2급으로 격상함
- 한시기구 설치권한 확대
- 기구 · 정원 기준 제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기준 규정 삭제

❸ 자치입법권 강화

진단

-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이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이 법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무효화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또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도록 해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약속

- 자치입법권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과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를 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법 개정)
- 조례의 실효성 제고 : 조례도 법률의 유형 가운데 하나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 등)을 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함

❹ 자치경찰제 도입

진단

-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 설치 당시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다른 이슈에 밀려왔으며 정권이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선호하고 지방재정이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도입이 좌절됨
- 박근혜 정부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대선공약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3항에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으나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역대 정권에서 논의된 자치경찰제도는 다음과 같음

정부	도입단위	특징
국민의 정부	시도 단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절충형(일본형) - 지자체 경비 부담 원칙(시도 소속 국가경찰 인건비만 국가가 부담)
참여정부	시군구 단위	- 주민밀착형,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유럽형) - 재정자립도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일부 지원
이명박 정부	- 사군구 단위에 선택적으로 실시 - 시도 역할 강화	- 광역단위의 역할 강화 - 경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

- 국가경찰제는 민주성이 취약하고 시민이 아니라 국가 중심의 경찰행정, 주민참여와 협력의 미흡, 정치적 중립성의 상실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
- 또한 비대화로 인해 비효율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지방행정과의 갈등이 잦고,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우며 지방의 종합적인 행정 수행에 장애가 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약속

-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시 · 군 · 구 단위로 자치경찰을 설치하여 주민밀착형,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교통, 방범 등 민생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며 점차 권한을 확대
-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확보 :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및 민주적 구성 · 운영
-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 불균형 방지

4 지방자치 활성화

❶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로 예산낭비 근절

진단

-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 전시성 · 선심성 사업 추진 등 예산낭비가 이어지고 있음
- 정부는 이를 빌미로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전적으로 전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은 주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인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역시 문제이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자치권 제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임

약속

- 긴급재정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의 내실화, 통합부채 관리, 민자사업 규제 등으로 재정건전성 유도
-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 · 융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 중 자체사업비가 1백억원(광역은 3백억원) 이상 소요될 경우 주민공청회 개최와 사업승인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지방재정법 개정)
-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사전 · 사후 공개 의무화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 확대(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감사에 따른 예산조정 요구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❷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진단

- 동시지방선거 실시는 선거비용 및 정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나 유권자 1명이 한 번에 7~8가지 투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살리지 못하고, 후광효과와 줄투표로 인한 상위 공직후보에 대한 편승현상, 하위 공직후보의 자율성 부재 등의 문제도 낳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무관심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광역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의 10%, 기초의 경우 기초의원 정수의 10%에 불과해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기 어렵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약속

-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 제고
  -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변질된 지방선거의 원래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 단체장 선거와 의원 선거를 분리
- 정당지지도와 의석수의 비례성 확보
  - 지방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의 30% 이상으로 확대

❸ 인사청문회 도입 ·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진단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등 고질적인 인사권 남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
- 하지만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이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권 남용에 대해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일부 지방의회에서 인사검증조례 제정이나 인사청문간담회 개최 등으로 우회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없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는 감사실, 기획감사실 형태로 부단체장 산하로 설치되어 있어 독립성이 미비하며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집행부의 자체감사가 유지되는 한 감사기구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근절될 수 없음

약속

-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
  -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권한 명문화
  - 전문성, 도덕성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 구축으로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
  -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인사정문회의 인터넷 중계 실시.
- 독립적 감사기구 도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 실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검사 및 사무감사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는 지방의회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지방자치법 개정).
  - 감사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구성하고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❹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진단

-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
- 집행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의회로 순환보직하면서 전문성도 떨어지고 '쉬어 가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음. 심지어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를 대신해 의정활동을 방해하기도 함
- 지방의원들의 예결산 심의, 입법조사 등을 보조할 전문위원들이 부족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 2015년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약 169조원을 지출해 중앙정부(약 167조원)보다 규모가 크고 지방교육예산까지 합치면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은 4:6의 구조임
- 국회의원들은 인턴 포함 9명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고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유급보좌인력 한 명 없이 혼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회별 평균 전문위원 수가 광역의회는 8.8명, 기초의회는 3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함
- 지방의회에 대한 인력과 재정의 지원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시각이 있으나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재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약속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의회 직렬 신설, 광역 및 기초 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
- 지방의원 정책지원기구 설치 및 공동보좌관제 도입
  - 광역의회에 '의회조사처'와 같은 입법 및 정책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
  - 상임위별 전문위원 확충 및 광역의원 정당별 공동보좌관제 도입

5 주민참여 확대

❶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요건완화

진단

-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높은 주민참여임. 그간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도입되었음
- 그러나 활용성과는 미흡하여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요건이 엄격하다는 비판도 큼
-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213건의 조례안이 청구됐고, 가결률이 51.2%(109건), 부결 27건(12.7%), 각하·철회·폐기 71건(33.3%) 등이었음. 15년간, 213건이면, 연 14.2건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엄격한 주민조례 청구요건, 청구대상 제한, 어려운 서명수집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시행된 이후, 총 8회가 실시됐는데, 중앙부처 장관이 청구한 주민투표가 5건, 지방자치단체장 1건, 시민청구 2건 등이었음. 시민연서 청구 주민투표 사례는 서울시 무상급식지원과 영주시 면사무소 이전이었음. 서울시의 주민투표율은 25.7%로 법정개표 요건 33.3%를 넘지 못해 결과가 공개되지 못했음. 주민투표제도의 미활성화 사유로는 국가사무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투표제한 등 투표금지 대상이 많고,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임
- 주민소송은 2005년에 도입되어, 2015년 8월 말 기준, 29건이 청구됐고, 그 중 26건이 종결됐음. 종결된 사건 중 소취하 1건을 제외한 25건 모두 주민이 패소했음. 주민소송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이유는 복잡한 소송과정, 장시간 소요, 주민참여 저조 등임
- 주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감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 주민감사청구를 위해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인 수가 지역별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감사청구인 수는 경남 200명, 제주 150명,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은 100명 이상인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300명 이상임

- 주민소환제도는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청구요건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청구권자 총 수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회의원은 20%이상의 주민 연서가 필요함. 그간, 총 8회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는데, 하남시의원 2명의 주민소환이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6건은 소환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이 법정요건인 33.3%를 넘지 못해 소환이 되지 않았음. 한편, 중도 신청취하, 서명부 미제출 등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되지 못한 경우는 58건이며, 현재 의왕시장, 홍준표 지사 등 2명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추진 중임.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은 소환발의 정족수가 지나치게 높고, 법령상 청구사유 제한요건이 없어 정치적 악용 혹은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약속

- 주민조례 제정 · 개폐 청구기준 완화
  - 광역시도와 50만 이상 대도시는 주민 총수 1/100이상 1/70이하를 1/150 이내로 낮춤
  - 기초 시군구의 경우 1/50이상 1/20 이하를 1/100 이내로 낮춤
-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
  - 기존 광역 · 기초단체 구분 없는 5~20%의 서명요건을 광역자치단체는 3%이상, 기초자치단체는 10% 이상으로 완화
  - 또한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 주민의 생활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히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
-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요건 완화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청구제기 기간을 기존 당해 사무처리 날짜 혹은 종료 이후 2년 제한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림
- 주민소환제도 소환발의요건 완화
  -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7% 이상, 기초단체 중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10% 이상, 지방의원 15% 이상으로 완화

❷ 주민참여 활성화

진단

- 다양한 주민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 실적이 미흡한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제도 자체에 대해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거나 관심도가 낮은 주민들을 유인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임
-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개별 부처 차원의 분산적 참여제도 운영으로 참여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미약한 상황임. 또한 주민들의 참여 채널에 대한 지식 정보가 부족하여 참여방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용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주민참여 자체를 활성화 할만 또 다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정부주도 주민참여 증진 제도들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금전적 인센티브 혹은 보수가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약속

- 주민참여 관련 표준화된 매뉴얼 제공
- 통합적 참여 관리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지수 개발
- 주민참여 평가단 구성
- 주민참여 유도 예산확보 및 주민참여 인터넷 창구 홈페이지 구축
- 주민참여 인센티브제 도입

❸ 읍·면·동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진단

-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가와 교육 중심 프로그램 결정·운영이 중심일 뿐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행정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음
- 또한 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대표성, 전문성이 취약하고 토호세력, 관변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장악하기 쉬움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될 예정.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고유 행정기능을 제외하고 사전협의 업무, 위탁 업무,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근린자치 조직으로 제시됨
- 하지만 당초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사무기구와 통합 설치하는 통합형,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의결·집행기구화하는 주민조직형 모델까지 제시되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협력형 모델만 실시되고 있음
-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지역대표, 주민대표, 직능대표 공개 모집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관변단체 인사, 기관장 등이 중심이 되어 대표성이 취약하고 여전히 관변자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음

약속

-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확립 :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화하고 기존 읍·면·동사무소는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로 전환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강화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 실질적인 근린자치 실현

32

국방개혁 공약

안보 민주화로 비핵평화를 보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유능한 안보정당이 될 것입니다.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다른 민주국가처럼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전력, 부대, 인력구조를 일대 혁신해 강하고 효율적인 군대로 변모시키며,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군을 전문화할 것입니다.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병영문화가 정착되어 더 이상 청년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부모들은 걱정없이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안보 민주화'
2. 40만 군 병력으로 '2025년 목표군' 건설
3. 한국형 모병제 : 6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자 중 모병
4. 군 '입대 예약제'로 자기주도형 군 입대
5.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병영문화 구현
6. '전역 디딤돌' 정책

1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안보 민주화'

진단

● 예비역 장성을 국방장관으로 임용하는 관행이 장기간 지속

- 국방장관(예비역 대장, 육사 31기) 외에 현재 차관(예비역 중장, 육사 35기) 및 국장급 이상 16개 직위 중 대부분이 육사 출신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점유하는 패권적 국방 운영체제

* 해군과 공군 출신은 창군 이래 단 1회만 장관으로 진출

- 특정 군맥·학맥으로 연결된 국방부는 한국군 장교들의 집단정신과 이익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군부대

* 미국의 국가안보법, 골드워터-니콜스법은 군 출신의 국방장관 임용을 엄격히 금지

● 국방의 관리·운영에서 공공성이 실종되고 사조직이 주도

- 국방 전반의 관리·운영에서 군인의 직업적 편견을 통제할 수 있는 문민통제(civil control)가 실종되어 민주헌정에 위배
- 군 내·외부의 유력자와의 근무인연이나 특정 군맥이 진급과 보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눠먹기 인사로 장교단의 불만 팽배

* 2013년 장경욱 기무사령관은 군 유력자 5인의 인사 영향력을 경고하다 경질

● 주류 군맥에 의한 군피아(군+마피아) 형성으로 대규모 방산비리 초래

- 장기간 군 출신 선·후배 간의 폐쇄적 군맥 형성으로 대규모 방산비리와 부패

* 사관학교 선후배 간 결탁으로 박근혜 정부 수사 결과 2000억 방산 비리 적발

약속

● 국방장관과 국방 주요직위의 민간인 임용을 일명 〈군피아 방지법〉으로 의무화

- 군 출신 중 군에서 전역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장·차관 임용 금지
- 군의 의견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권으로 행사하도록

권한을 보장

- 한국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규정하는 포괄법령으로 〈국방기본법〉 제정
- 군 운영에 있어 중기예산계획, 조직과 정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군이 자발적으로 예속되도록 하는 규범체계의 강화로 시민주권이 관철되는 국방체제로의 전환

● 특정 군맥의 군 운영에 대한 영향력 차단을 위한 육·해·공군 순환보직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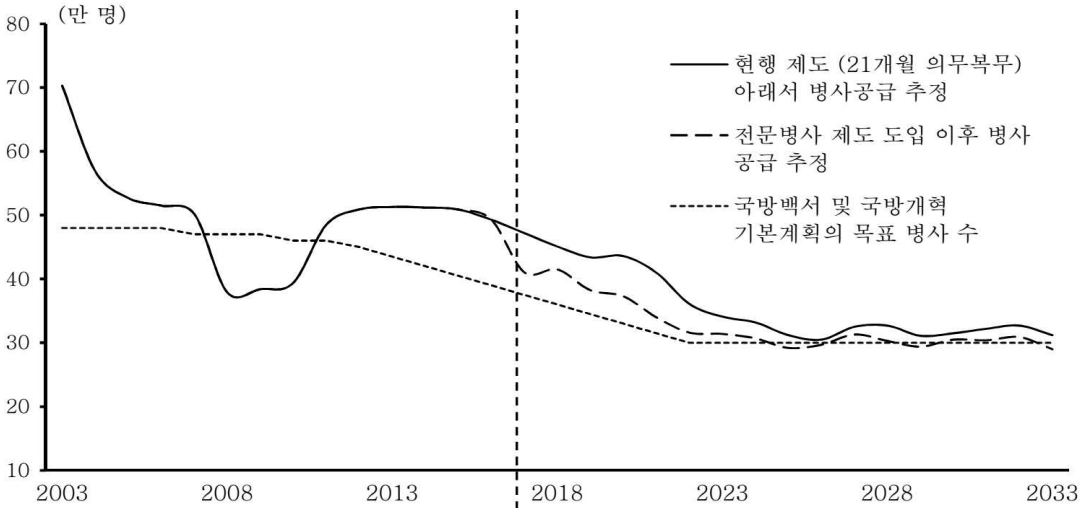
- 합참의장은 육·해·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하고, 합참 요원의 육·해·공군 비율 2:1:1 준수

2 40만 군 병력으로 '2025년 목표군' 건설

진단

● 현재 62만 명의 한국군은 2025년에는 50만 병력 유지도 어려운 실정

〈표〉 병사 수급 전망



출처 : 이주호, 전문병사 제도도입에 따른 군 인력체제 개편의 경제분석(2015)

- 현 21개월 군 목부기간을 유지한다하여도 2025년에는 인구 감소로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 2025년에 21세가 되는 남아 인구는 22만5000명으로 2016년 대비 11만 명이 줄어들어 심각한 병역자원 부족사태에 직면
- 박근혜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30)'에서 2022년까지 50만으로 감군하고 병사 숫자를 30만으로 유지한다하고 있으나 실현 불가능

● 병력 숫자 유지를 위해 군대 내 부적응이 예상되는 자원까지 무리하게 징병

- 2014년 현재 전체 징병대상자의 89%를 현역으로 징집하여 신체허약자, 질병자, 심리이상자 상당수가 군에 유입. 적정 징병 비율 76%를 초과하는 무리한 징집 지속

*징병 대상자 중 신검 결과 순수 면제 비율은 1960년대에는 약 38.5%, 1970-80년대에도 32.1%이다가 1990년대에는 18.3%,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가 2013년에는 0.2%로 저하

- 2016년 말 기준 군의 부적응·자살 우려자를 수용하는 일명 '그린 캠프' 입소자가 3000명 선을 돌파하였고, 이중 자대 복귀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는 추세로 사실상 그린 캠프가 군대 내 '인간 불량품'을 만드는 수용소로 전락
- 2014년 말 기준 군대 내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일명 '관심병사'가 8만6000명으로 전체 병사의 20%에 육박
- 군에서 병사에 대한 상담, 인성검사, 생활기록부 관리 등으로 초급간부의 부대관리 업무 폭주. 전방 초급간부 평균 밤 10시 퇴근, 하루 14~16시간 근무

약속

● 군 병력 2025년까지 40만으로 감축

- 총 40만(간부 20만, 병사 20만)으로 정부 국방계획 대비 병사 10만 명 추가 감축 불가피
- 징집률 76%선 유지로 신체허약 및 부적응 우려자는 과감하게 군 입대 차단
- 병력감축을 위해 부대구조를 과감하게 통폐합 : 군 지휘계층 단순화, 유사부대 통합, 군의 각종 학교, 정비창, 휴양소, 병원, 법원에서 현역 병력을 철수하고 전원 공무원이나 계약직으로 업무 수행

● 예비군 정예화로 현역 병력 부족 보완

- 현재 300만 명 수준의 예비군을 10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 중 10만 명을 정예 직업예비군제로 전환
- 직업예비군은 1년에 1개월 이상 군에 복무하며 복무 기간 중 현역과 동등한 잔급 및 보수를 지급
- 병력의 예비역 의존도를 20% 수준으로 확대

● 군의 정예화·과학화를 위한 2025 목표군 개념

- 핵심 개념 :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적 충분성 확보
- 전력구조 : 재래식 무기체계 과감한 도태 및 핵심전력 위주로 구조조정

*노후 무기체계의 도태 및 육·해·공군 합동전력 위주로 전력구조 재편

- 부대구조 : 지휘체계의 단순화·간편화로 합동작전의 간섭을 줄이는 경쾌한 지휘구조

*다단계화 된 지상군 지휘구조(6단계)에서 1단계 폐지

- 인력구조 : 병사 위주에서 간부위주로 병력의 패러다임 전환

3 '한국형 모병제'로 군의 체질 전환

진단

● 징병된 병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부과하는 비합리성

- 우리 군은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최전방의 전투 임무를 가장 나이어리고 경험 없는 장병에게 떠맡기는 비합리성을 초래

*전방 초소의 경우 20대 초반의 동년배 소초장(소·중위), 부소초장(하·중사), 병사 등 구성원 전원이 무경험자로서 전문성이 필요한 임무에 대처가 곤란

- 직업의식이 없이 타율적으로 배치된 병사집단은 노크 귀순(2013년), 숙박 귀순(2015년) 사건과 같은 경계의 실패와 목함 지뢰사건(2015년)과 같은 연이은 작전의 실패를 초래
- 징병된 병사 위주 조직에 가장 중요한 전투임무를 부여한 결과 군은 재래식이며 병력

집약적인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

- 현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제1방어선(알파선)에서 선방어 개념을 고수할 경우 군 작전계획상으로도 전방병력의 40%가 손실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

● 부대배치와 직무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이 박탈된 비전문가 집단

- 해·공군 등 일부 모병을 제외하고 지상군 대부분이 개인의 희망, 선호부대, 선호 직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타율적으로 근무환경을 부여
- 전시에 인명이 경시되는 소모전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야전의 전투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는 상황이 상시화
- 임무수행에서 부대 특성을 감안한 전문 교육과정이 없이 단순·반복 임무를 수행하도록 기계적인 집단으로 전락시켜 조직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 자동으로, 규정대로만 움직이는 비전문가집단에 안보의 가장 큰 책임을 부여

약속

● '한국형 모병제(의사 모병제)'로 주요 전투임무를 직업군인으로 전환

-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2025년까지 전방부대는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
- 병력 구성

  *간부 20만 : 장교 10만, 부사관 10만

  *징집 의무복무병사 : 10만, 의무복무기간 6개월

  *전문병사 : 10만, 징집 의무복무자 중에서 선발, 4년 의무복무 후 간부지원 자격 부여

  *전문병사 인건비에 연간 2조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나 국방개혁으로 이를 상회하는 예산 절감이 가능
- 현재 지상군 전방경계 소요병력 10만 명에서 징집병사를 전문병사로 대체
- 징집 의무복무자는 교육과 훈련, 행정·지원 업무만 수행

● 고숙련 직업군인 위주로 병력을 재편하면서 방어개념을 현대적으로 전환

- 전방 상시 경계투입 병력을 최소 필수인원만 잔류시키고 후방으로 재배치

  *현대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후방에서 장사정 무기 동원이 가능

  *전방전투지역(훼바 알파)후방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면 전시 초기 병력 손실율이 40%

에서 17%로 감소(2013년 김병관 예비역 대장의 연구)

- 전방 경계 과학화로 인력 위주에서 장비 위주로 경계 및 방어개념을 전환

4 군 '입대 예약제'로 자기주도형 군 입대

진단

● 고졸자의 군 복무로 인한 차별과 좌절의 확대

〈표〉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까지 기간, 군복무기간, 제대 후 첫 직장까지의 기간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고등학교 졸업~입대(개월)	24	20	2	131
군복무기간(개월)	21	21		
제대~첫 직장(개월)	31	21	1	146

자료: KLIPS(한국노동패널), 2014

- 고졸 입대자의 경우 입대 연령 미달과 입영 대기로 졸업 후 입대까지 평균 24개월이 소요되지만 군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리하여 88%가 실업상태로 대기
- 군 복무 후에도 경력과 학력에서의 불리함으로 첫 직장까지 평균 31개월이 소요되므로 군 복무로 인한 직·간접적인 총 손실 기간은 입대 대기(24개월)+복무기간(21개월)+취업대기(31개월)을 합한 76개월에 육박함
- 21개월 군 목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기회비용은 760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20대 청춘 전반기 6년이 넘는 기간을 사회적 잉여로 살아야 하는 대다수 고졸들에게는 군 복무가 사회 경쟁에서 영원히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질곡으로 작용

● 대졸자의 경우도 실제 군 복무 기간 외에 복학 대기, 군 복무로 인한 스펙 보완을 합하면 실제 손실 기간은 31개월에 육박

- 2009년부터 2011년간 9급-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남성의 평균 합격 연령은 30.3세 여자는 27.9세로 남자가 2.4세 많고 평균응시 회수도 남자는 8회, 여자는 6.1회로 나

타나 군 복무 기간만큼 기회손실이 발생(김일생, 2015)

- 군 복무 중 한 일과 현재 일 또는 전공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병사의 70.8%가 '관련 없다'고 답변('한국교육고용패널' 2007-2012년 조사자료). 4년제 대졸자의 경우 그 비율이 72.2%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군 복무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연구도 있음

약속

● 청년 생애주기에서 군 복무로 인한 총 손실을 획기적으로 감축
- 고졸자 : 76개월 총손실 기간을 30개월 이내로 단축. 1억4000만원 기회이익 증가
- 대졸자 : 31개월 총손실 기간을 26개월 이내로 단축. 3000만원 기회이익 증가

● 방안 1 : 맞춤식 군 입대로 18세 군 입대 보장 및 고졸 우선권 부여
-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맞춤식 병역안내로 18세가 되면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도 원하는 부대에 입대가 가능하도록 우선권 부여. 24개월 대기기간 완전 해소
- 청년 생애주기에 맞추어 졸업-군복무-취업이 일직선상에서 관리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여 군 복무로 인한 학력 차별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

● 방안 2 : 부대별 모병제도로 원하는 부대와 주특기 선택
- 전 부대가 5년 단위의 인력 충원계획을 공개하도록 하여 청년이 원하는 부대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특기로 입대할 수 있도록 사단급 부대별 모병제 실시

* 청년들에게 부대현황과 병영생활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택 지원

- 청년이 원할 경우 개인 맞춤식 병역상담관을 배치하여 취업과 학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
- 청년이 원하는 대로 군 입대가 불가능할 경우 국가는 적극적인 보상

● 방안 3 : 청년·병역·취업 정책을 융합하는 청년 생애주기모델 적용
- 청년정책, 병역정책, 취업정책이 상호 분리되어 서로를 잠식하는 현 정책구조를 개선하여 상호 융합형 청년 생애주기 모델을 재구성
- 자기주도형 군 입대로 자율성을 확대하면 융합될 수 있도록 청년 생애주기 모델을 통합
- 2025년 목표군 건설 이전에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하는 과도적 방안으로 운영

5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병영문화 구현

진단

- 지휘관이 임명한 군 장교가 재판장이 되는 군사법원 운영으로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 민간 법원(60여개)보다 많은 방만한 군사법원(80여개)을 운영하면서 군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재판이 좌우되는 법치주의의 훼손
  - 군사법원과 군 검찰이 동일 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의 소지 상존
- 군 인권 감독관 설치가 미루어지면서 외부의 군 인권실태 감시 장치가 부재
  - 인권감독관(옴부즈만)에 대한 국회 법률처리가 지연되어 설치 여부가 불분명하고, 감독관이 소속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 국회, 국방장관으로 각기 다른 방안이 제기되어 논란만 하고 있는 실정
  - 인권감독관의 불시조사권, 부대방문권, 자료요구권 등 그 권한의 범위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 표류
- 군 부적응자에 대한 집단처벌의 일환으로 집단 따돌림이 만연되어 있으며, 부적응자를 격리 수용하는 그린 캠프 운영
  - 군대 내 반인권 사건이 과거 권력자 개인이 집단을 처벌하는 데 있었다면 최근에는 집단이 한 개인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 의무대 6인이 윤 일병을 구타
    * 2014년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 : 부대원 전원으로부터 받은 모멸감이 그 원인
    * 해병대 기수열외 문화 : 부적응자를 집단이 따돌림. 2010년 총기난사 사건으로 비화
  - 군대 내 부적응자, 자살우려자 등을 집단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하는 개념으로 설계된 그림 캠프에 연간 3000명이 입소. 계속 입소자는 증가하고 입소 후 자대 복귀율은 저하되는 경향

약속

- 군사법원 폐지, 군은 기소권만 유지
  - 군사법원은 평시에는 폐지하고 전시에만 운영되는 것으로 제도 전환

    *군은 기소만 유지하도록 군 검찰단만 운영
- 인권 감독관 국회 소속으로 설치
  - 군 불시방문과 자료요구 및 조사 권한을 보유한 독일 군 옴부즈만을 도입한 군 인권감독관 설치
- 그린캠프 폐지, 현역 부적합자 조기 전역
  - 사실상 감금 상태로 인권 유린의 여지가 있는 그린캠프를 폐지하고 전문 병원에 위탁 진료 및 재활을 활성화
  - 현역부적합자 처리 요건을 완화하여 사단급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권한 위임
  - 현역 부적합자 증명 요건을 완화하여 지휘관 의견과 상담관의 관찰 결과, 약간의 병원 진료기록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

6 '전역 디딤돌' 정책

진단

- 헌신의 군 의무복무, 그러나 자긍심 대신 박탈감
  - 군 의무복무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음
  - 그럼에도 군 의무복무 사병들은 2016년 1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64만9932원에도 못 미치는 월 19만7000원(2016년 병장 월급 기준)의 봉급을 받고 복무 중. 그리고 군복무로 인해 학업 및 취업 활동 등이 단절되는 사회적 공백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 군 의무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합리적 대우 필요

- 국방부는 여성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정책인 군 가산점 제도 도입 추진으로 사회적 분란만 자초
- 최소한의 보상책으로 장병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돕는 '전역 디딤돌 정책' 필요.

● 국방전직교육 단기복무 부사관에 미제공, 사병에 대한 진로·컨설팅은 아예 부재
- 국방전직교육원은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제공하는 5개 과정의 체계적인 진로·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5년 미만)에 해당하는 부사관급 전역예정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 군 의무복무 사병에 대한 진로, 취업 컨설팅은 아예 부재.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 등의 한계로 사병 대상의 서비스 제공은 엄두도 낼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음

약속

● 군 복무 사병에 대한 체계적 진로·취업 컨설팅 정책 신설
- 국방전직교육원 내 진로·취업 관련 교육과정 신설
- 사단 단위로 각각의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강사 파견
- 군복무 기간 18개월 이상, 혹은 전역 예정 4개월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시행(시행 초기에는 대학 미재학 사병 우선 지원)

● 부사관급 이상 전역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 확대
- 단기복무(5년 미만)에 해당하는 부사관급 전역예정자도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전직교육원 내 소집교육 대상 분류를 '장기복무자/중기복무자/부사관급 단기복무자/단기복무 사병'으로 수정. (현재 '장기/중기/단기'로 분류)
- 부사관급 이상 전역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 교육 예산 증액

33

외교·통일 공약

평화와 상생의 동아시아로 나아가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은 평화·상생의 주도자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위기에 빠진 비핵화와 남북관계, 한국외교를 구출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중견·평화·가교 국가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마련하며,
주변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경협 등 남북교류협력을
부활·활성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1.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담대한 실천
2. 평화 환경 조성 중견국 외교
3.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의 부활·활성화·제도화

중견 · 평화 · 가교 국가 대한민국

1.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담대한 실천

❶ 우선은 대화 재개 여건 조성,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북미 적대적 관계 청산과 수교 지원 등 포괄적 타결 실행

❷ 동아시아 차원 전통적·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 증진
: 평화공동체의 토대 형성

2. 평화 환경 조성 중견국 외교

❶ 미 · 일 · 중 · 러 간 조화(균형)외교

❷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SOFA 전면개정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❸ 과거사 철저 반성 기초한 평화로운 미래 구축의 '신 한일관계' 정립

❹ 제3세계 발전 기여외교,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 · 평화군축 이바지 평화외교

❺ 재외동포청 등 설립 종합적 재외동포정책, 재외국민보호 획기적 강화

3.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의 부활 · 활성화 · 제도화

❶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조속한 재가동 추진

❷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상설화

❸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등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한국 경제 활력 제고,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❹ 유라시아 대륙경제 시대 구축, 대륙과 해양의 가교가 되는 한반도

❺ 특사 파견 혹은 조속한 당국회담 재개, 국회 · 지자체 · 민간의 교류 재개→ 정상회의 등 각급 당국회의의 정례화

1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담대한 실천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등 포괄적 타결 실행, 동아시아 전통적·비전통적 다자 안보협력 :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

❶ 우선은 대화 재개 여건 조성,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북미 적대적 관계 청산과 수교 지원 등 포괄적 타결 실행

진단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

-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2월 7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해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해 미국을 위협할 ICBM 발사 잠재적 능력(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고 천명)을 과시함
- 수 년 동안 북의 핵능력은 크게 증강되어 핵무기와 핵물질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다종화는 물론,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가 진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우리 국민이 만성적 안보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실효성 부재의 즉자적 정책 남발

- 정부는 4차 핵실험 이전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하면서도, 북의 핵능력 증강을 막을 어떤 실효적 정책도 추진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
-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외치며 중국의 동참과 협력을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 추진, 6자회담 무용론 등 중국의 반발을 사는 등 외교 파탄,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긴장만 고조시키고 우리의 피해가 큰 자해적 조치를 남발하는 등 남북관계 파탄, 북의 위협을 빌미로 한 테러방지법 등 악법 통과 강행과 비판 여론 봉쇄 등으로 안보와 관련한 우리 내부의 단결 파괴 등의 행태를 일삼고 있음

●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 제기와 북-미의 평화협정 관련 접촉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17일 호주의 비숍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병행론을 제기한 이후, 23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거듭 주장

- 지난 연말 북미 간에 평화협정 관련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케리 장관은 "북한이 일정기간 동안 비핵화에 동의하면 평화협정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어느 정도 실행이 된 후에는 비핵화를 이룰 방법 및 그 실행에 대한 밀고 당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약속

* 정부가 이하의 구상 및 원칙 등에 입각한 종합적 계획 및 실천 이행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결의하고 구체적 실천에 나서도록 압박

● 우선은 대화 재개를 위해 (가칭) '신 2.29합의' 등 여건 조성
  - 북 핵미사일 동결, 국제적 감시 동의 대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약속, 공격적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북이 위협으로 느끼는 공격적 행위 배제) 등
● 비핵화 6자회담, 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기 포괄적 타결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합의 형성(사전에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이끌어냄)
● 남북미중 정상의 한반도 평화선언 혹은 종전선언
● 북-미 적대적 관계 청산과 수교, 북-일 과거사 청산과 수교 지원

❷ 동아시아 차원 전통적 · 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 증진 : 평화공동체의 토대 형성

진단

●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발생 원인인 한반도의 전쟁과 정전체제, 그리고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박근혜 정부도 '동북아평화구상'을 내세우며 다자안보협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나 핵심적 안보현안을 해결할 적극적 정책도 실천도 부재했음
● 동아시아 차원 다자안보협력이 핵심 현안을 외면하고 비전통적 안보협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함

- 현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지역 차원 안보협력과 관련해서 환경문제 등 비전통적 안보에서 군사안보 등 전통적 안보로 나아가는 단계적,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취함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이나 미-중, 중-일 및 역내국가 다수가 휩쓸리고 있는 군비경쟁과 해양영토와 주변 수역을 둘러싼 갈등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전통적 안보에 모든 것이 종속되어서도 안 될 것임. 그러나 동 문제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풀기 위한 노력은 방기한 채, 비전통적 안보협력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공허함

● 비핵화 등 전통적 안보문제와 환경 등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

- 한국으로서는 한반도비핵화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핵확산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핵군축을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3 비핵지대화'('동남아비핵지대'는 이미 존재) 등 추진 필요
- 나아가 군비를 급속히 늘려 주변국의 의심을 사거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식으로 군비경쟁에 무리하게 동참하기 보다는 공동안보를 선도하고, 군비동결과 상호군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전략이 요구됨

약속

●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동북아, 강대국 중심 군비경쟁과 갈등 고조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토대 형성

- '동북아 3+3 비핵지대화' 추진

: 한반도 비핵화 탄력 부여 및 일본 핵무장 가능성 차단 효과. 남 · 북 · 일 비핵 3국(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핵보유국가가 아님)에 대한 미 · 중 · 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명기

-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과 이 지역 주둔 미군의 군비 동결과 군축 추진

: 미국의 여전한 압도적 군비와 동아시아·서태평양 회귀 전략, 중국 등의 급속한 군비팽창의 대결. 그러나 각 국가 간, 동아시아 역내 '안보딜레마'는 심화되는 악순환 탈출

- 해양영토분쟁의 합리적 해결 추구
- 핵발전소 안전, 외환위기 예방, 황사·미세먼지와 전염병, 국제적 조직범죄 등에 대한 공동 대처 등 비전통적 안보협력 강화

●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외교·국방·경제 장관회의 정례화
- 현재 서울에 있는 한·중·일 사무국 강화
- 북한, 몽골, 러시아 등의 확대 참여 추진

2 평화 환경 조성 중견국 외교

미·일·중·러 간 조화외교, 수평적 한미관계, 신한일관계,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세계 비핵화·평화·군축 기여 평화외교

❶ 미·일·중·러 간 조화(균형)외교

진단

● 미·중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음. 그러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동아시아에서는 갈등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음.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미·중은 북 핵 해법 등 북한 문제에 대한 대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임. 그러면서도 미중은 한반도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또 한반도 문제로 양국 관계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도록 '관리'에 합의를 함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 편에 쉽사리 힘을 싣는 것이 아니라 균형외교를 전개해야 함.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우리임을 자부하고 그런 역할을 주변강국과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활동을 전개해야 함. 나아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지정학적 이익을 노려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학적 이익을 공유, 확대할 수 있도록 조화외교를 일관되게 전개해야 함. 그것이 미국 일극시대에서 미·중 양강 시대로 전환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과 경제적 안정 등 안보를 지키는 금도임

- 그러나 현 정부는 일본과의 12.28 위안부 합의,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동참 요구, 사드 배치 추진 등으로 압박에 나서고 있음. 이는 그 이전에 일본과는 극단적 갈등을 보이는 반면 천안문 망루에 오르며 중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연출하던 모습에서 완전히 일변한 것임. 이렇게 극단을 오가며 한중 관계와 한미일 관계를 쓸데없이 대립항으로 가져가고 있음
- 한국이 한중 관계와 한미일 관계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나아가 대중 동맹의 선봉에 서게 되는 행위는 중국 부상의 국제질서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자칫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 그리고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며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외교안보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할 수 있음
- 대통령만 보이는 이미지 외교, 대통령 독단에 휘둘리는 감정 외교에서 벗어나, 이름만 남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되살리고 현실에서 구현해가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
- 현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말 그대로 구상에만 그치고 결과를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거나 반대로 치닫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전개하지 않기 때문임.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현재와 미래에 안보를 유지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임. 남북관계 개선이 미-일-중-러가 에워싼 동북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렛대를 강화시킬 것임

약속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 사이 균형외교 전개
  - 한미중, 한미일, 한중일, 한중러 관계 등 다차원적 외교의 활성화
  - 한중 외교·안보·경제 전략대화를 한미 수준으로 격상 및 정례화
-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대결구도를 예방해 대중 동맹의 전초 기지로 전락하는 것 예방
  - 한미동맹의 대중 동맹으로의 변환 예방 및 한미일 3각 동맹화 반대 혹은 참여 거부
  - 그 대신 남북한 및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모두가 참여하는 6자회담 재개와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강화

● 지정학적 대립 대신 지경학적 공동이해 추구를 제창·선도하는 조화외교

- 북한 SOC 및 특구 등에 대한 중국은 물론 미국 등의 국제적 개발 참여 유도
-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1단계 중국, 러시아와의 연결, 2단계 한일 해저터널을 통한 일본과의 연결

❷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SOFA 전면개정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진단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환수하겠다고 함. 그러나 핵 문제 악화 등을 핑계로 이에 대한 완전한 대책 수립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 때 한 차례 연기되었던 전작권 환수시기를 빨라야 2020년대 중반,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켜버림

● 불평등한 한미SOFA로 인해 2015년 불거진 탄저균 반입 사태뿐만 아니라,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미선이·효순이 사건 등 미군에 의한 피해와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 이에 따라 국민들은 직접적인 고통과 함께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고 있음. 수평적인 국가관계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 구축에도 지장

약속

●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로 안보주권 실현, 국제사회 중견국가로서 위신 회복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위한 국회 결의와 행정부의 실천 강제를 위한 입법

●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전면개정

- 탄저균 반입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물자의 반입, 반출시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위험물질에 대해 사전 협의와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
- 부당하고 불평등한 모든 규정(적용대상, 형사재판권, 피의자 특혜, 환경오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개정 추진

❸ 과거사 철저 반성 기초한 평화로운 미래 구축의 '신 한일관계' 정립

진단

● 2015년 12월 28일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문제적 합의

- 피해 당사자와 관련 단체는 물론 그동안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이 아닌 군의 관여 인정과 일본 정부 예산을 한국 주도 재단에 투입한다는 부족하고 모호한 해결책. 그럼에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일본 측의 요구를 덜컥 수용
- 합의 이후 아베 총리 등은 일본 국내와 유엔 무대에서 '국가책임, 전쟁범죄 부인' 언행 자행.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도리어 소녀상 이전 등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합의 이행의 전제 조건이라는 일본 정부와 우익의 적반하장에 역이용당하고 있음
-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동 합의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 간 재협상(재협의) 등을 요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잘된 합의라고 강변하고 비판론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며, 재협상 주장을 일축하고 있음

● 극단을 오가는 대일 정책의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한일군사협정까지 추진하며 일본에 밀착한 모습을 보이다, 2012년 8월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하며 천황문제를 건드림. 이로 인해 오히려 일본 국민 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와 반한 감정 유발의 부작용 일으킴
-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 거의 3년이 다 되도록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하며 그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내세움. 그러다가,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밀려 갑자기 11월 2일 정상회담을 갖고 12.28합의에 이름
-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에 기초해 관계 개선과 협력 추구에 합의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과 비교됨

●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에 기인하는, '법적 보상은 끝났다'는 일본 측의 자세

- 일본 사람들은 아베와는 달리 일본군위안부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런 입장

- 이는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에 기인함. 동 협정의 기본조약은 1910년 한국병합(병탄) 조약 등이 강제에 의한 불법이요 원천무효라는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고, 병합과 식민지배는 합법이었으나 해방에 의해 해소되었고 배상이 아니라 단지 보상과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일본 측의 입장이 관철된 듯한 뉘앙스를 풍김

약속

-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위안부 등의 과거사 문제 근원적 해결
  -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 '신 한일협정'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1910년 한일병탄조약이 불법이며 원천무효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거나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하는 방안 추진
-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 (가칭)'신한일관계 정립 선언'을 통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며 한일관계 정립과 발전,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기여 등 천명. 그런데 동 선언은 동아시아 차원의 대안적 질서 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막연하고 소홀한 한계를 보임. 그런 한계를 넘고 진영 간 대결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동아시아 평화·공동번영 공동체' 건설을 천명
- 일본의 군사대국화-한미일 3각 동맹화 반대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 일본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배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배제 등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 재개정에 따른 안보 우려 사항 존재. 그 해결을 위한 양 정부 차원의 구체적 해법 수립과 국회 보고 및 동의, 이행 상황 보고 및 추인
- 일본 평화헌법 수호와 한국 헌법의 평화국가 지향 조항의 구현을 위한 양국 국회와 정당, 시민단체 등간의 다차원적 연대 강화

❹ 제3세계 발전 기여외교,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평화군축 이바지 평화외교

진단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를 자부하면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의 변모를 자랑하고, 파병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지구촌 남북문제(남반구에 주로 분포한 제3세계의 저발전과 부유한 국가들과의 불평등 및 그들 국가 내부의 불평등 심화), 세계적 차원의 비핵화와 평화군축 문제에서는 개도국 시절 외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국제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과 오도된 기준
  - 2014년도 한국의 ODA 액수는 GNI 대비 0.13%에 불과함. UN 권고수준인 GNI 대비 0.7%에는 턱없이 모자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2015년까지의 1차 기본계획(GNI 대비 0.25%)보다 낮은 2020년까지 0.20%로 제시되어 있음
  - 한국의 ODA 정책은 자원개발이나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활용하는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고 있음. 이는 '수원국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통한 원조효과성 증진'이라는 국제규범에 크게 못 미치며, 원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인권증진을 비전으로 삼는 것과도 대조됨
- 분쟁지역 파병 확대, 그러나 세계적 비핵화·핵군축 관련 외교 무대서는 소극적 행태
  -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의 일원 형태로 세계의 분쟁지역 곳곳에 군대 파병을 확대하고 있음. 심지어 UAE에는 원전 수출에 대한 대가, 즉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파병을 하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규탄과 비핵화에 대한 지지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세계적 비핵화나 군축을 위한 논의와 결정을 하는 국제무대에서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국제사회에서 거의 쟁점이 되지 않으며 미국이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 하지만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기 사용 위협 금지, 비핵국가의 안전보장, 핵군축 결의안 등에 대해 기권하고 있으며, 심지어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

한 핵군축 의무이행에는 반대까지 하는 투표행태를 보임

약속

-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 적극 전개
  - 2015년 9월 25일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발전에 대한 대안적 접근에 입각한 지원 정책 추진
  - 이권 중심 ODA 근절, 비구속성 원조 명문화 등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를 UN 권고수준인 GNI 대비 0.7%까지 단계적으로 증액
-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평화군축에 기여하는 평화주의 외교 관철
  - 분쟁지역 파병은 PKO로 제한, 무기 판매나 시장개척용 파병은 금지.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PKO법 등의 위헌적인 요소 개정
  - 중견평화국가들과 함께 세계적 핵군축과 핵무기 폐기, 군비경쟁 중단과 군축을 위한 외교활동 적극 전개

❺ 재외동포청 설립 등 종합적 재외동포정책, 재외국민보호 획기적 강화

진단

- 전 세계에 720만이 넘는 재외동포가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 한편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연루된 사건·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관료적 이해에 부딪친 재외동포청 설립 법제화
  -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청법 등이 제출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 당국의 각종 이유를 내건 반대와 여야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해 계류되어 있음

- 합리적인 반대 이유는 충분히 경청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외동포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관료적 이해에 부딪쳐 지체되어서는 안 됨

● 필리핀 등에 비해서도 부실한 재외국민 보호

- 정부는 이전에 비해 법률자문 지원시스템, 영사협력원 등이 확충되었다고 선전. 그러나 선진국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게 하는 필리핀 등에 비해서도 재외국민 보호에 크게 소홀한 실정임
-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법률에 의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 자체도 부재한 상황. 최소한 외국에서 그 공기관 등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위급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

약속

● 재외동포청 등 재외동포 정책 총괄 정부 기구의 조속한 설립 추진

- 재외동포청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 재외동포들의 본국에 대한 귀속감과 편리함을 제고하고 재외동포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

● 재외국민 보호의 획기적 강화

-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 등이 연루된 사건·사고 발생 시 누구나 현지법에 정통한 변호사 등의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가 지원 경비 등의 획기적 증대
- 이 사안을 포함,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적극적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의 조속한 제정 추진

3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의 부활·활성화·제도화

개성공단 재가동, 5.24조치 해제, 남북경제사회협정 체결,
유라시아대륙 경제시대 구축, 당국회담 재개와 정례화

❶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조속한 재가동 추진

진단

●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위기 상황

- 한국 정부는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한 대응을 내세우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함. 이에 대해 북은 남측 인원 전원 추방과 자산동결 조치로 맞섬
- 안보리 제재에 추가해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자 북은 자산청산을 발표함

●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명분도 합당치 않고 효과도 없는 자해적 조치

-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원의 현금,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됐다."며 이들 돈이 "노동당 서기실, 39호실 등에 들어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동 조치를 취한다고 밝힘
- 그러나 입증할 증거 여부에 대한 홍 장관 발언의 잇단 번복, "물표로 지급되는 임금의 70%는 대부분 북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통해 북 노동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무역업자에게 간다."는 관계자 증언에 비추어 보아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명분이 전혀 없음
- 설사 정부의 말을 전적으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한 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으로 들어가는 현금이 장거리로켓 1회 발사 비용의 1/10, 한 해 북중 무역액의 1/60에도 못 미쳐 그것 때문에 북의 핵-미사일 개발이 이뤄졌거나, 동 조치로 인해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입주 기업과 종사자 등 우리 국민이 도리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개성공단으로 인한 안보적 이익, 통일기반 구축 등이 모두 훼손

- 첫째, 1조원~수조원의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보상은 그만큼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것임. 둘째, 124개 입주기업, 60개 영업소, 5000여개 협력업체가 도산 등의 위기에 몰릴 것. 입주기업 종사자 3000여명,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약 12만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실업, 임금삭감 등의 위기에 몰릴 것임. 셋째, 직접적 경제 피해보다 간접적 피해는 훨씬 큼.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5억 달러 정도지만, 유통과정에서의 파급 효과는 60억 달러가 넘었음. 또한 한중 FTA에서의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관세 혜택 인정 등 잠재적 경제 가치가 손실됨. 넷째, 코리아리스크에 의한 외평채 금리 인상의 가능성 등

-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에게 첫째,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 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둘째,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감 완화와 남북 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의 시장경제 훈련 등의 통일 준비, 셋째, 전진 배치되어 있던 개성 일대 휴전선 부근 북한군의 후방 철수 등 군사적 이익과 긴장 격화 방지 등의 안보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음. 무엇보다도 5.24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동 공단이 유지됨으로써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 및 분쟁의 확전으로의 비화 방지를 막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역할을 해 옴. 전면중단 조치는 이런 이익을 모두 상실하는 자해적 조치임

약속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재가동 추진

- 실효성도 없고, 2013.8.14 개성공단 관련 남북 합의(법률적 효력 가짐)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규의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정부의 일방적 행정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함
- 현재 개성공단의 운명은 백척간두 상황임. 정부가 밝히는 이유와 목적에 비추어 보아 2013년과 같은, 갈등 끝 재가동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결코 낙관할 수 없음
- 하지만 남북한 평화적 공존과 경제협력을 아예 부정할 것이 아니라면, 개성공단은 반드시 재가동되어야 할 것임. 그것도 전력 차단 상태에서 장마철이 와, 자재와 설비가 망가지기 전에 조속한 재가동이 필요함
-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재가동 결의를 통해 압박해야 할 것임

● 특별법 제정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 정부가 현재 밝히고 있는 '남북경협기금 보험을 활용한 공단 투자액의 90% 지원'은 피해 일부에 대한 지원일 뿐임. 2013년 가동 중단 시 통일부에 신고된 1조 566억 원 중 기업들이 받은 보험금은 1761억 원으로 17%에 불과함. '대체부지 지원'은 개성공단 투자 이유와 상치됨
- 개성공단 입주기업 약 2000명의 노동자는 이미 해고통지를 받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5000여명이 곧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함.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실효적 대책은커녕 언급도 않고 있음
- 개성공단 전면중단 및 5.24조치 등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기업과 종사자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함. '정부 조치에 의한 남북 경협 기업과 종사자들의 피해 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

❷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상설화

진단

●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해버림. 다음의 표를 보면, 남북관계 단절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북한보다 남한의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남북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비교(2010~2012년)

(단위 : 만 달러)

구분		남한(A)	북한(B)	비교(A/B)
관광 사업	금강산	118,591	24,208	4.9배
	개성	3,300	3,900	0.8배
개성공단 사업		325,367	11,120	29.3배
남북교역		433,373	184,124	2.4배
항공기 우회 운항		9,975	2,855	3.5배
합계		890,607	226,208	3.9배

(출처) : 홍순직, 2013, "5.24조치로 인한 남북한 경제적 피해 추정".

* 이 수치는 직접 피해만 비교한 것임. 북한의 경우에는 남북교역과 금강산·개성 사업의 대부분이 남한의 원부자재 제공에 대한 임가공비나 인건비, 관광대가 등이므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간접효과는 제외했다고 밝히고 있음. 즉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등의 간접적 피해에 있어서는 북한

의 경우 거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면, 약 541억 달러에 달하는 남한의 직간접 피해는 북한의 거의 15배에 달한다고 추정됨.

● 이명박 정부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현격히 줄어듦. 5.24조치도 북의 산모, 영유아 지원 등은 부정하지 않음. 박근혜 대통령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마저도 끊길 가능성이 있음

- 2015년 10월 우여곡절 끝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으나, 일회성 행사로 그쳤고 아직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기다리고 있음.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지난 15년간 하루 12명씩 사망하였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이후 20차례 성사되어 약 1만 9천여 명이 가족을 만났으며, 이는 전체 이산가족상봉 대기자 12만 9천698명 중 15%에 불과함.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두 차례에 비해 참여정부 시절에는 10회에 걸쳐 총 10,002명의 상봉이 이루어짐. 하지만 그 경우를 적용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한 차례도 가족을 보지 못한 6만 3000여명의 사람들이 모두 상봉하려면 60여 차례의 상봉이 이루어져야 함. 결국 상봉의 정례화, 나아가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함
- 2006년 3억9273만 달러까지 늘었던 민간 지원은 2013년 283만 달러로 급감함. 5.24조치 탓이 큼. 물론 최근 북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며 북이 영유아 등에 인도적 지원에 시큰둥했던 것도 사실임. 그러나 백신과 의료체계 복구 지원이나, 북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산림녹화 및 국제사회에 약속한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력 등은 활기를 띨 수 있음
- 그런데 2월 16일 화해협력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북의 체제 붕괴를 언급한 대통령의 연설에 의해 모든 교류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됨. 남북의 화해협력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이 마치 북에 대한 일방적 지원, '퍼주기'에 불과한 듯한 참주선동을 대통령과 정부가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이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대통령 공약과 자금까지의 공식적 천명을 스스로 뒤집는 것임. 뿐만 아니라, 1988년 7.7 선언 이후 진보와 보수 정권을 망라한,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추구'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약속

- '5·24조치' 즉각 해제 혹은 폐기
-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상설화의 맞교환
- 식량난의 구조적 해결, 북한 산림녹화 사업 지원 등 상생 협력 사업의 재개
  - 남북의 화해협력, 특히 사회경제적 차원 북한 인민 인권 문제 해결 및 분단과 대결 체제에 따른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에 기여

❸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등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한국 경제 활력 제고,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진단

- 남북경협의 효과와 의의는 진보는 물론 보수도 인정하나, 현실은 큰 지체와 후퇴.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의 개성공단 철수 등 강경책이 맞부딪치며 경협은 큰 난관에 봉착함. 그러나 역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지렛대의 확보를 위해서도 경협을 다시 재개하고 활성화를 기할 필요
- 중국-대만 간 경협의 빛과 그림자, 남북 경협에의 교훈
  - 빛 : 정경분리에 의한 경협 등 교류협력의 안정화, 활성화
  - 그림자 : 대만 제조업 공동화로 인한 실업난, 저조한 임금인상 등 경협의 부작용, 중국 주도 흡수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청년층 등 대만인의 반발, 그로 인한 정권교체
- 남북 경협 활성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의 효과는 ① 잠재성장률 1% 이상 증가 및 남북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면 5% 정도의 성장 가능. 지하자원 공동개발의 경우 남한 광물자원 수요분의 50%만 북한에서 조달하더라도 연간 약 124억달러의 수입대체효과,② 북한경제 역시 발전해 일방적인 흡수통일로 인한 경제적 격차와 그에 따른 부작용 예방, ③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주변국과의 평화 환경 조성에 기여해 국방예산 절감, ④ 남북정권, 인민들의 상호 적대감 해소와 이해 증진 등

[표] 남북한 주요 광물자원 비교 및 가용 연한

	남한			북한	남한 수요분의 50% 북한 조달시 가용 연한
	보유 규모 (억 달러)	내수 규모 (억 달러)	자급률(%)	보유 규모 (억 달러)	
금	18	14.1	4	857	122년
철	7	231.6	1	8,775	76년
마그네사이트	-	0.8	0	24,048	60,120년
인상흑연	2	0.2	0	30	300년
인회석	-	1.5	0	270	360년
합계	27	248.2		33,980	122년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50, 통일한국의 경제적 미래," 『통일경제』, 2014.5, p.87.

주 : 보유 규모 및 내수 규모는 2011년 수입단가 기준.

위 표에는 빠졌지만 대한광업진흥공사, 2005,『북한광물자원개발 현황』라는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수입의존율 100%인 광물 자원 중 북한에 많이 매장되어 있는 광물 중 동은 2,155천 톤, 아연은 2,000톤, 몰리브덴은 수만 톤, 유연탄은 30억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무연탄은 약 57%를 수입하고 있는데 남한의 3.5억 톤에 비해 북한에는 117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함.

약속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남북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경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으로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 보장 및 남북관계 불가역화를 제도화
- 개성공단 재개 → 5.24조치 해제로 1단계에 그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2,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의 경협 재개 → 철도와 도로의 연결,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북 지하자원 수출금지 관련 UN 제재 해제 필요. 우선 남는 쌀 50만톤과 북한 석탄, 철광 교환 등으로 우회해 시작. 민생 목적은 허용 가능),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제3 개성공단의 건설 등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와 심화

❹ 유라시아 대륙경제 시대 구축, 대륙과 해양의 가교가 되는 한반도

진단

- 남북 철도 연결과 시베리아 철도 및 중국 철도와의 연계, 남북 고속도로 연결 및 아시안 하이웨이와의 연계, 남-북-러 가스관 건설 등은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큼. 박근혜 정부도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철의 실크로드' 등을 천명함
-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유라시아 대륙과의 인프라 연결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함. 시베리아 철도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경원선 철도 연결도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남북 협력과 휴전선 일대 공사는 부재한 채 남한만의 행사와 남쪽 지역 공사에 그침. 최근 대북 독자제재에 러시아가 포함된 나진-하산 물류사업 참여 금지도 포함시킴으로써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사실상 종언을 고함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서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경제 시대 구축은 ① 남북 경협 효과의 극대화, ② 남북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대결의 전위에 서지 않고, 해양과 대륙의 가교임을 자부, 그런 실제 환경 조성, ③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신냉전체제 예방, 동아시아 평화번영 공동체로의 전변을 이루는데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임

[표] 남북경제공동체와 유라시아 대륙경제 시대 구축의 경제적 효과

GDP (%, 달러)	2015~20 성장률	2020년 1인당	2021~30 성장률	2030년 1인당	2031~40 성장률	2040년 1인당	2041~50 성장률	2050년 1인당
남한	3.5	32,856	5.0	53,610	4.2	81,108	3.3	112,734
북한	14.8	2,729	12.1	8,602	9.8	22,010	8.2	48,353
남북한	3.8	22,961	5.4	38,827	4.7	61,697	4.0	91,588

* 2050년 통일 한국 혹은 남북경제공동체는 총 GDP 6조 8767억 달러로 세계 7위의 경제대국 예상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50, 통일한국의 경제적 미래," 『통일경제』, 2014.5, pp.68-71.

약속

-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가교 역할 수행
  - 남북 철도 · 도로 · 해운 · 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

- 남북경제공동체와 유라시아대륙경제 구축의 연계 : 목포-인천-개성-해주-황금평-대련-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환황해 경제권, 부산-포항-설악산금강산관광특구-원산-나선-블라디보스토크-동해 연안 일본 도시 등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권 형성, 한반도 + 동북3성 + 연해주 경제권 형성으로 유라시아대륙경제 시대 구축

●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 유도

-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및 대륙의 북방 및 남방 교통로와 연결, 남북러 가스관 건설 등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 한국 정부만의 단독 투자로는 부담이 큼. 그렇다고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SOC 민자 사업의 부작용을 북에서 재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동 재정 마련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국 주도 AIIB를 적극 활용할 필요. 그리고 북한의 AIIB 등 국제 금융 및 경협 기구 가입 추진,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충,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민간의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등 병행

❺ 특사 파견 혹은 조속한 당국회담 재개, 국회·지자체·민간의 교류 재개 → 정상회의 등 각급 당국회의의 정례화

진단

● '통일대박론' 대 남북관계의 파탄

- 통일대박 등 대통령과 정권이 주도하는 각종 통일담론이 넘쳐흘렀음. 그러나 현실의 남북관계는 '8.25합의' 후에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은 폐쇄되고 일체의 대화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황임
- 남북관계의 파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도 기인하지만, 현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표방하면서도 북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함
- 북한은 현 정부의 드레스덴선언, 통일준비위 등이 기본적으로 흡수통일의 속내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불신을 드러냄. 박 대통령이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1988년 7.7선언 이후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전면부정하고, 체제붕괴를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북의 이런 주장을 스스로 사후적으로 입증해버림

●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흡수통일은 환상이며, 결과는 대박이 아닌 쪽박!
  - 주변국이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통일이 아닌, 기꺼이 수용하고 동참하는 통일은 핵을 가진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와 남한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과는 상치될 수밖에 없음
  - 흡수통일이라고 하지만 독일 통일은 동의에 기반을 둔 통일이었음. 접촉에 의한 변화라는 원칙에 입각한 동방정책을 사민당은 물론 보수적인 기민당 정부도 일관되게 수행한 결과임
  - 과정도 없는 결과만의 통일은 예멘과 같은 양측 군대의 전면전 혹은 일부 무장세력의 저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그런 통일은 남한의 극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대박일지 모르지만, 절대다수 국민의 삶의 붕괴, 쪽박 찬 국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남북 당국은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대화를 재개해 위기를 관리하고,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의 길을 복원해야 함. 그리고 정상회담 등 당국 간 회담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어야 함. 그리고 장차 상설기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함
● 남북관계가 단지 중앙정부 당국에 일임되지 않고 정치권, 시민, 각급 자치단체 등 교류협력 주체의 다원화를 보장하고, 교류협력 내용의 풍부화를 기할 필요

약속

● 정부가 대화 복원 및 정례화를 통한 남북연합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 계획 및 실천 이행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결의하고 구체적 실천에 나서도록 압박
  - 예비단계로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조성된 강 대 강의 대결국면 중단,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특사 파견 혹은 당국회담 재개, 민간 교류협력의 허용
  - 1단계로 정상회담 조속 개최,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 민간 및 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 보장 :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2단계(정권교체 이후)로 상주대표부 설치 / 정상회의-통일안보 담당 장관급회의-통일·국방·경제·사회·문화 등의 부문별 실무자회의 등 각급 회의의 정례화 / 민간 및 자치단체의 교류를 전면 자율화
● 국회 차원의 남북회담 제안, 성사 및 이후 정례화
  -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 남북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대승적 입장에서 위기에 빠진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솔선수범

공약 소요예산 및 재원마련 방안

“[정의로운 복지증세]로 2025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실현”

1. 재원마련 방안의 원칙과 방향

▸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2014년)
작년 GDP 1,546조원 기준으로 복지지출이 OECD 평균에 173조원이나 부족

▸ 201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 GDP 24.3%에 불과. OECD 평균 34.1%에 비해 무려 9.8%나 부족. 전형적인 작은정부-작은복지 구조

▸ OECD 평균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선진국형 복지 조세체계 필요

▸ 정의당은 ‘사화복지세’ 도입 등 연간 50조원에 달하는 복지증세로 책임복지 실현

2. 재원마련 방안

①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 사회복지세법 제정(소득·법인·상속증여세 세액 등에 10~20% 부과)

② 법인세 강화
- 법인세 최고세율 MB정부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
-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도입

③ 소득세 강화
- 소득세율 체계 [5-15-25-35-45%]로 개편
-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④ 재산세 및 종부세 강화
- 과세 표준 누진세율 상향
-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등

⑤ 상속·증여세 강화

- 상속공제 5억으로 축소, 고액상속 과세 강화
- 거액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재계산제도 확대 강화

3. 예산추계 방식

- 공약에 따라 추가되는 연간 소요예산 제시
- 조세를 사용하는 주요공약 예산 제시

20대 총선 공약 재원소요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재원조달			재원소요	
내역		금액	분야	지출
사회복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액에 10~20% 부과	20조원	청년/고용 출산/육아	3.4조원 1.9조원
법인세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3조원	주거	2.8조원
소득세	5-15-25-35-45% 세율 개편	3.4조원	교육	5.9조원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등	2조원	노인	5조원
	월세소득 종합과세 등	3조원	보건복지/취약계층	16.1조원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4조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4.5조)	8.5조원	안전/자치 농업/환경	2.1조원 1.1조원
상속·증여세	공제 5억 제한 등 실효세율 강화	1.6조원	총계	38.3조원
	증여세재계산제, 세대생략 할증	추계 미정		
청년·서민 감세	생애최초 소득자 백만원 세액공제, 월세 세입자 주거비 세액공제 등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확대, 중소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0.5조원		
총계		**49조원**		

20대 총선 정의당 정책공약집

정의로운 대한민국

2016년 3월 31일 초판 1쇄 인쇄

2016년 3월 31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 정의당

펴낸이 : 정의당 정책위원회

펴낸곳 : (주)팝콘앤파트너스

디자인 : (주)팝콘앤파트너스

[공약개발단]

공약개발단 단장 :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

공약개발단 : 고광용, 김건호, 김명정, 김성달, 김수현, 김종대, 김종명, 김창민, 류성재, 문보현, 박웅두, 박철한, 송경원, 심은정, 유의선, 윤재설, 이승민, 이승환, 이종석, 임승준, 임준, 정경은, 정미나, 조동진, 좌혜경, 추혜선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
국민월급 300만원, 복지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2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인쇄 : 주)팝콘앤파트너스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62 02)335-0201

값 10,000원